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402-10

www.mogef.go.kr

#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3. 8.

2023. 8.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차 례

<b>요 약</b>	<b>1</b>
<b>I 개 요</b>	<b>53</b>
1.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총괄 .....	55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55
나.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특성 .....	64
2.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현황 .....	70
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	70
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역할 .....	76
3. 성별영향평가 지원체계 현황 .....	79
가. 성별영향평가 교육 .....	79
나.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	84
<b>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b>	<b>89</b>
1.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	91
가. 중앙행정기관 .....	91
나. 광역자치단체 .....	98
다. 기초자치단체 .....	107
라. 시·도교육청 .....	114

2. 기관별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	120
가. 중앙행정기관 .....	120
나. 광역자치단체 .....	137
다. 기초자치단체 .....	151
라. 시·도교육청 .....	167
3. 주요 정책개선 사례 .....	175
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및 사회안전망 확대 .....	175
나.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차별적 요인 개선 .....	185
다. 일·생활 균형 확산 .....	191
라.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199
마.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	212
바. 공공시설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평가 기준 개선 .....	225

### Ⅲ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233

1.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요 .....	235
2. 정책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	238
가.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 .....	238
나. 국민취업지원제도 .....	238
다. 노숙인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	239
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	241
마. 귀농·귀촌 지원정책 .....	241
바. 정신건강증진사업 .....	242
사. 생활체육 지원정책 .....	243
아. 사회보장기본계획 .....	244
자. 생활체감형정책 .....	245
3.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9년~2021년 평가과제) .....	247
가. 개요 .....	247

나. 2019년 권고과제 이행현황 ..... 248  
 다. 2020년 권고과제 이행현황 ..... 251  
 라. 2021년 권고과제 이행현황 ..... 265

4.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273  
 가. 기관별 과제 추진현황 ..... 273  
 나.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 275

##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293

1. 2022년 성별영향평가 운영 성과 ..... 295  
 가.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 295  
 나.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이행률 제고 ..... 296  
 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상 성별영향평가 추진 ..... 297  
 라. 특정성별영향평가 확대 ..... 299

2. 개선과제 ..... 301

## 부 록 303

부록 1. 주요 용어 설명 ..... 305  
 부록 2. 「성별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 307  
 부록 3. 2022년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작성 서식 ..... 319  
 부록 4. 2022년 부처별 성평등목표 ..... 334  
 부록 5.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338  
 부록 6. 2022년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적 ..... 381  
 부록 7. 2022년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 392  
 부록 8. 2022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제도 발전 포럼 실적 ..... 394  
 부록 9. 2022년 정책개선 사례 찾아보기 ..... 396

**표차례**

〈표 1〉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수(2021~2022) ..... 5

〈표 2〉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현황 ..... 6

〈표 3〉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 7

〈표 4〉 2021년, 2022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전체) ..... 8

〈표 5〉 2022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전체) ..... 9

〈표 6〉 2022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전체) ..... 10

〈표 7〉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추진 결과 ..... 12

〈표 8〉 2022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특성-신규/  
계속사업, 기관 평균 과제수 ..... 14

〈표 9〉 2022년 지방자치단체(광역시, 기초)의 공통주제 대상 과제 수 ..... 16

〈표 10〉 2022년 시·도교육청의 공통주제 대상 과제 수 ..... 16

〈표 11〉 2022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17

〈표 12〉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 현황 ..... 18

〈표 13〉 2022년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 19

〈표 14〉 2022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중앙행정기관) ..... 21

〈표 15〉 2022년 광역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 25

〈표 16〉 2022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광역자치단체) ..... 26

〈표 17〉 2022년 기초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 29

〈표 18〉 2022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기초자치단체) ..... 30

〈표 19〉 2022년 시·도교육청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 33

〈표 20〉 2022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시·도교육청) ..... 34

〈표 21〉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명 및 개선권고 과제 수 ..... 40

〈표 22〉 2019년~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권고 이행점검 결과 ..... 49

〈표 23〉 지방자치단체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2년) ..... 50

〈표 24〉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 실적(2020~2022) ..... 51

〈표 I-1〉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추진 결과 ..... 57

〈표 I-2〉 2022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특성-신규/  
계속사업, 기관 평균 과제 수 ..... 59

〈표 I-3〉 2022년 정책 분야별, 기관 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61

〈표 I-4〉 2022년 지방자치단체(광역시, 기초)의 공통주제 대상 과제 수 ..... 62

〈표 I-5〉 2022년 시·도교육청의 공통주제 대상 과제 수 .....	63
〈표 I-6〉 2022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64
〈표 I-7〉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 컨설팅 지원 실적(2020-2022) .....	66
〈표 I-8〉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기관 및 과제 수(2020-2022) .....	69
〈표 I-9〉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	71
〈표 I-10〉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현황 .....	72
〈표 I-11〉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	74
〈표 I-12〉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	75
〈표 I-13〉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책임부서 .....	76
〈표 I-14〉 2022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전체) .....	83
〈표 I-15〉 2022년 직군별·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	84
〈표 I-16〉 2022년 성별영향평가기관(센터) 현황 .....	86
〈표 I-17〉 2022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전체) .....	87
〈표 II-1〉 2022년 중앙행정기관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92
〈표 II-2〉 2022년 다수의 법령 개선 기관(중앙행정기관) .....	94
〈표 II-3〉 2022년 중앙행정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96
〈표 II-4〉 2022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중앙행정기관) .....	98
〈표 II-5〉 2022년 광역자치단체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99
〈표 II-6〉 2022년 다수의 법령 개선 기관(광역자치단체) .....	101
〈표 II-7〉 2022년 광역자치단체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102
〈표 II-8〉 2022년 계획 개선 기관(광역자치단체) .....	103
〈표 II-9〉 2022년 광역자치단체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105
〈표 II-10〉 2022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광역자치단체) .....	106
〈표 II-11〉 2022년 기초자치단체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108
〈표 II-12〉 2022년 다수의 법령 개선 기관(기초자치단체) .....	109
〈표 II-13〉 2022년 기초자치단체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110
〈표 II-14〉 2022년 계획 개선 기관(기초자치단체) .....	111
〈표 II-15〉 2022년 기초자치단체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112
〈표 II-16〉 2022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기초자치단체) .....	113
〈표 II-17〉 2023년 시·도 교육청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115
〈표 II-18〉 2022년 법령 개선 기관(시·도 교육청) .....	116
〈표 II-19〉 2022년 시·도 교육청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118
〈표 II-20〉 2022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시·도 교육청) .....	119
〈표 II-21〉 2022년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	121

〈표 II-22〉 중앙행정기관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123
〈표 II-23〉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법령	124
〈표 II-24〉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사업	126
〈표 II-25〉 중앙행정기관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128
〈표 II-26〉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법령	130
〈표 II-27〉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사업	135
〈표 II-28〉 2022년 광역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138
〈표 II-29〉 광역자치단체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139
〈표 II-30〉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법령	140
〈표 II-31〉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계획	142
〈표 II-32〉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사업	144
〈표 II-33〉 광역자치단체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145
〈표 II-34〉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법령	146
〈표 II-35〉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계획	148
〈표 II-36〉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사업	149
〈표 II-37〉 2022년 기초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151
〈표 II-38〉 기초자치단체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152
〈표 II-39〉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법령	154
〈표 II-40〉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계획	157
〈표 II-41〉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사업	159
〈표 II-42〉 기초자치단체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160
〈표 II-43〉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법령	161
〈표 II-44〉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계획	162
〈표 II-45〉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사업	165
〈표 II-46〉 2022년 시·도 교육청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168
〈표 II-47〉 시·도교육청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170
〈표 II-48〉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법령	170
〈표 II-49〉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사업	172
〈표 II-50〉 시·도교육청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172
〈표 II-51〉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사업	173
〈표 III-1〉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정책명	236
〈표 III-2〉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명 및 개선권고 과제 수	237
〈표 III-3〉 노숙인지원정책 개선권고 과제현황	240
〈표 III-4〉 생활체육지원정책 개선권고 과제현황	244
〈표 III-5〉 2019~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권고 이행점검 결과	247



〈표 III-6〉 아동정책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48
〈표 III-7〉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48
〈표 III-8〉 생활체감형정책(Ⅰ)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49
〈표 III-9〉 외국인 건강관리 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50
〈표 III-10〉 환경보건 종합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52
〈표 III-11〉 보건복지 분야 연구개발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54
〈표 III-12〉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55
〈표 III-13〉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정책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56
〈표 III-14〉 전문체육 분야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58
〈표 III-1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59
〈표 III-16〉 자살예방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60
〈표 III-17〉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62
〈표 III-18〉 노사관계 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63
〈표 III-19〉 코로나19 대응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65
〈표 III-20〉 장애인 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66
〈표 III-21〉 청년정책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68
〈표 III-22〉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71
〈표 III-23〉 정부 인력양성·직업교육 훈련 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72
〈표 III-24〉 광역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2년) .....	273
〈표 III-25〉 기초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2년) .....	274
〈표 III-26〉 시·도 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2년) .....	275
〈표 III-27〉 광역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78
〈표 III-28〉 기초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87
〈표 III-29〉 시·도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	292
〈표 IV-1〉 2022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공통주제 대상 과제 수 .....	299
〈표 IV-2〉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및 추진기관 현황(2020~2022) .....	300
〈표 IV-3〉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 실적(2020~2022) .....	302
〈부록 표 5-1〉 2022년 기관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338
〈부록 표 5-2〉 2022년 기관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349
〈부록 표 5-3〉 2022년 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359
〈부록 표 5-4〉 2022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369

**그림차례**

[그림 1] 2022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 4

[그림 2] 2021년, 2022년 중앙행정기관 정책 개선이행률 및 개선이행률 100.0% 기관 ..... 4

[그림 3]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추진현황 ..... 11

[그림 4] 정책분야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22) ..... 15

[그림 I-1]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신규사업 과제 비율(2021, 2022) ..... 60

[그림 I-2] 정책분야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22) ..... 61

[그림 I-3]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도출률(2020-2022) ..... 65

[그림 I-4] 개선사항 없음 비율 및 자체개선안 동의율(2020-2022) ..... 66

[그림 I-5] 중앙행정기관 정책 개선이행률(2017-2022) ..... 67

[그림 I-6]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사업 정책 개선이행률 100.0% 기관 수 ..... 68

[그림 I-7] 2022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평균 참여실적 ..... 80

[그림 I-8] 2022년 기관유형별 5급 이상 관리자 성별영향평가 교육 평균 참여실적 ..... 81

[그림 III-1]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절차 .....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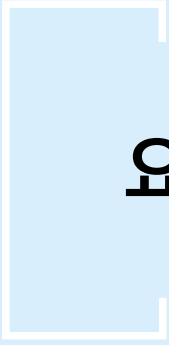
  

[그림 IV-1] 개선과제 도출률, 자체개선안 동의 및 개선사항없음 비율(2020-2022) ..... 295

[그림 IV-2]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컨설팅 지원 실적(2020-2022) ..... 296

[그림 IV-3]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이행률(2021~2022) ..... 297

[그림 IV-4] 성별영향평가 자체교육 참여 실적(2020~2022) ..... 301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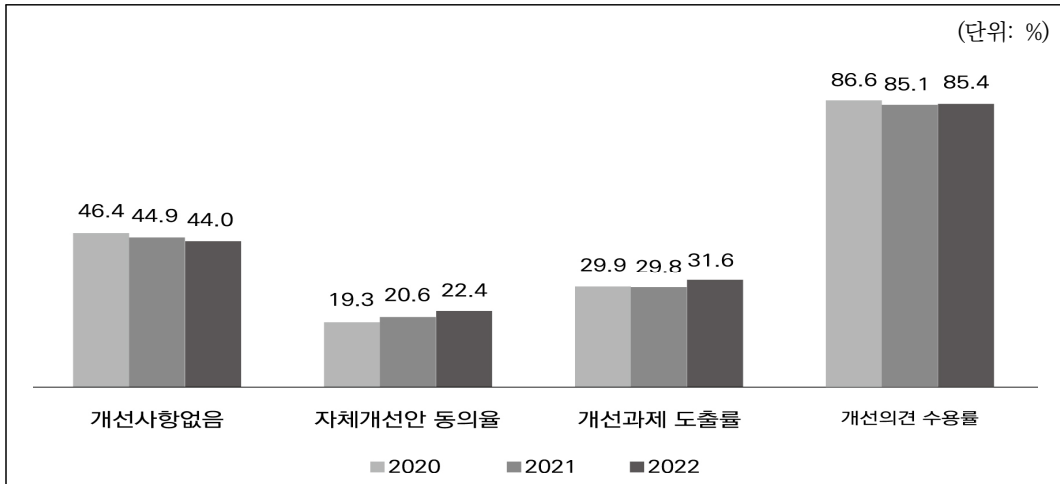




## 1 2022년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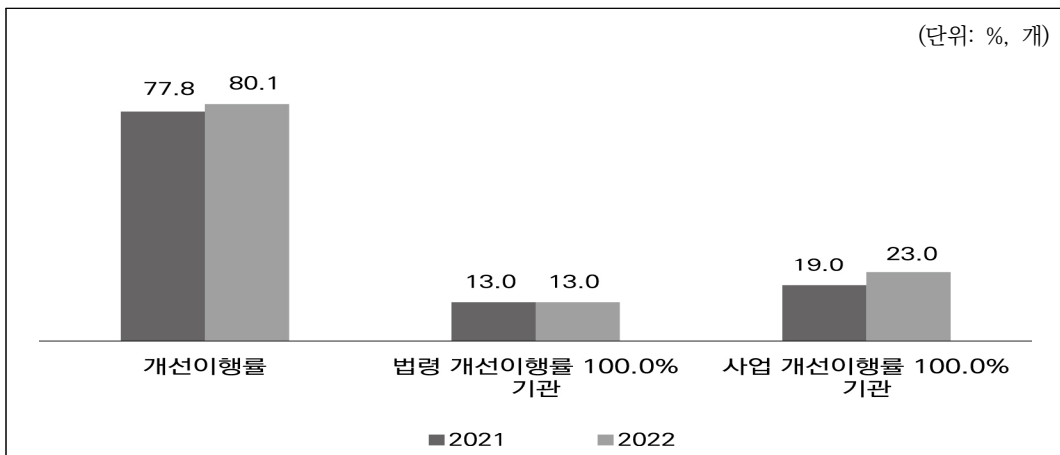
2022년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특징은 다음의 세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개선과제 도출률 증가 등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다음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이행률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수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2022년에는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자체개선안 동의율, 개선과제 도출률, 개선의견 동의율이 증가하였다. 최근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은 과제 수의 양적 증가에서 벗어나 내실있는 정책 개선안 도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를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하는 과제를 대상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정된 대상과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2022년에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확대했고, 특히 대상과제 선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늘렸다. 2021년 추진한 컨설팅 횟수가 35,623회였던 것이 2022년에는 35,737회로, 114회 늘어났고, 그 중에서 과제선정에 대한 컨설팅 횟수가 2021년 8,030회에서 2022년 8,884회로, 854회 증가하였다. 그 결과, ‘개선사항 없음’ 과제 비율이 감소하였고, 선정된 대상 과제에 대해 적절한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자체개선안에 대한 동의율이 높아졌고, 개선과제 도출률 및 개선의견 동의율이 증가하였다.



[그림 1] 2022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이행률이 높아졌다. 2022년 이행점검 대상 과제를 점검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개선이행률이 2021년에 비해 높아졌다. 중앙행정기관의 2022년 개선이행률은 80.1%로, 2021년 77.8%에 비해 2.3%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중 법령과 사업에서 개선이행률이 100.0%인 기관이 각각 13개 기관, 23개 기관으로, 2021년과 비교했을 때 법령 개선이행률이 100.0%인 기관 수는 동일하고, 사업 개선이행률이 100.0%인 기관은 4개 기관 늘어났다. 이것은 기관별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2021년, 2022년 중앙행정기관 정책 개선이행률 및 개선이행률 100.0% 기관

마지막으로,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수가 증가하였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및 사업 중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일반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연구기관 등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형태이다.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는 9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차원에서는 총 23개 과제가 이루어졌다. 2021년에 비해 특정성별영향평가 전체 과제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는 현재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플랫폼중사자 보호대책, 국민취업지원제도, 귀농·귀촌지원정책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은 장애인정책, 청년 대상 정책, 문화 관련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다루었는데,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등 청년과 관련한 정책이 23개 과제 중 7개 과제였다.

〈표 1〉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수(2021-2022)

(단위: 개)

연도	계	중앙	광역	기초	교육청
2022	32	9	12	6	5
2021	23	8	10	3	2

2

2022년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지원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진체계 및 전문가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첫째, 관련 민·관 위원들로 구성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1회는 대면회의, 2회는 서면회의로 진행하였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회의에서는 2021년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안,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등에 대해서 심의·조정하였다.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근거 조례를 마련한 기관 수가 시·도교육청은 증가하였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2019년에 100.0% 마련한 바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21년 226개 기관 중 223개 기관이 설치한 상태(98.7%)에서 2022년에는 변화가 없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 기관이 설치 근거 규정을 미제정한 상태이다. 설치근거를 마련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은 20개였다. 이들 기관은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예, 서울 중구, 강원도 강릉시, 전남 광양시 등), 양성평등위원회에 포함한 기관도 있었다(예, 경기도 광주시, 충남 서천군 등).

한편 시·도교육청은 2021년에 15개 기관에 이어 2022년 1개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총 16개 기관(94.1%)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21년 88.2%에 비해 5.9%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2〉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현황

(단위: 개(%)) ('22.12.31.기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전체 기관수	법적 근거 마련	전체 기관수	법적 근거 마련	전체 기관수	법적 근거 마련
17	17(100.0)	226	223(98.7)	17	16(94.1)



이 중에서 실제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광역 자치단체는 17개 기관 모두가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6개 기관 중에서 194개 기관(85.8%)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에 191개 기관(84.5%)이 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를 마련한 기관 중에서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일부 기관이 있다. 시·도교육청은 2022년 17개 기관 중 15개 기관(88.0%)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2021년 보다 2개 기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개(%))(’22.12.31.기준)

구분	전체 기관수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기관수	
전 체	260	226	(86.9)
광 역	17	17	(100.0)
기 초	226	194	(85.8)
교육청	17	15	(88.0)

둘째, 각 기관 내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운영하였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주로 소속 실장·국장(시·군·자치구의 경우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을 지정하였고, 실무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였다(지방자치단체는 6급, 시·군·자치구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주로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이었으며,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가 있는 부처(경찰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는 해당 부서를 책임부서로 지정하였다. 실무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기관별 성별영향평가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행정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내실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인지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2022년에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총 66,6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1년 교육실적 98,473명에 비해서 31,794명이 감소한 것이다. 한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136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 131명에 비해 5명 늘어났다.

〈표 4〉 2021년, 2022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전체) (단위: 명(%))

구분	교육 유형	직급별 교육 참가인원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실무담당
		합계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기타) <sup>c)</sup>		
2022	계	66,679(100.0)	6,100(9.1)	60,579(90.9)	136	376
	정책교육 <sup>a)</sup>	6,192(100.0)	450(7.3)	5,742(92.7)	48	144
	자체교육 <sup>b)</sup>	60,487(100.0)	5,650(9.3)	54,837(90.7)	88	232
2021	계	98,473(100.0)	6,483(6.6)	91,990(93.4)	131	495
	정책교육 <sup>a)</sup>	5,129(100.0)	546(10.6)	4,583(89.4)	59	137
	자체교육 <sup>b)</sup>	93,344(100.0)	5,937(6.4)	87,407(93.6)	72	358

주1 : a) 정책교육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워크숍 등('21년 실적은 위탁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실적의 합계)

주2 : b) 자체교육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직장교육과 강사초빙이나 내부강사 활용, 자체 워크숍 등

주3 : c) 특정직에는 군, 경찰, 검찰, 소방, 교육, 연구직 등 포함

교육유형별로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교육 66,679명의 9.3%가 정책교육에 참여하고, 90.7%가 자체교육에 참여하였다. 2021년에는 정책교육 5.2%, 자체교육 94.8%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정책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2022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전체)

(단위: 명)

구분		중앙	광역	기초	교육청
합계(66,679)		6,690	12,080	46,399	1,510
정책교육 <sup>a)</sup>	소계(6,192)	245	661	4,161	1,125
	5급이상(450)	74	122	99	155
	6급이하(5,742)	171	539	4,062	970
	성별영향평가책임관(48)	12	6	23	7
	실무담당(144)	18	12	86	28
자체교육 <sup>b)</sup>	소계(60,487)	6,445	11,419	42,238	385
	5급이상(5,650)	2,138	1,420	2,033	59
	6급이하(54,837)	4,307	9,999	40,205	326
	성별영향평가책임관(88)	4	5	78	1
	실무담당(232)	13	22	186	11

주1 : a) 정책교육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워크숍 등('21년 실적은 위탁교육과 찾아 가는 교육 실적의 합계)

주2 : b) 자체교육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직장교육과 강사초빙이나 내부강사 활용, 자체 워크숍 등

넷째, 2022년에도 중앙행정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 1개소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16개소를 위탁 운영하였다.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지원과 더불어 16개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총괄 및 관리·지원하였다. 16개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4개 지역양성평등센터 및 2개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포함)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 지원과 지역 양성평등 교육·문화사업 운영을 지원하였다.

2022년에 중앙센터 1개소 및 16개 지역센터 업무에 참여한 총 인력은 56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운영인력은 91명, 전문 컨설턴트가 475명이 참여하였다.

2022년에 지원한 전문가 컨설팅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26,048개 과제에 대해서 35,737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은 15,465개 과제, 성인지예산에 대한 지원은 10,583개 과제에 대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컨설팅 지원 분야는 과제선정 24.9%, 평가서 작성 48.9%, 검토의견 25.0%로, 2021년에 비해 과제선정 지원이 2.4%포인트 증가하였고, 검토의견이 2.5%포인트 감소하여 과제 선정에 대한 컨설팅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표 6〉 2022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전체)

(단위 : 개, 회(%))

구분(컨설팅 과제 수) <sup>a)</sup>		합계(회) (A+B+C+D)	과제선정(A)	평가서 작성 (B)	검토의견 (C)	기타 (D)
전 체	26,048	35,737(100.0)	8,884(24.9)	17,459(48.9)	8,947(25.0)	447(1.3)
성별영향평가	15,465	23,140(100.0)	5,669(24.5)	8,153(35.2)	8,947(38.7)	371(1.6)
성인지예산	10,583	12,597(100.0)	3,215(25.5)	9,306(73.9)	0(0.0)	76(0.6)

주 1 : a) 컨설팅 과정을 거친 과제와 기관에서 최종 평가 과제로 제출한 과제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 2 : 기타는 종합결과보고 검토 및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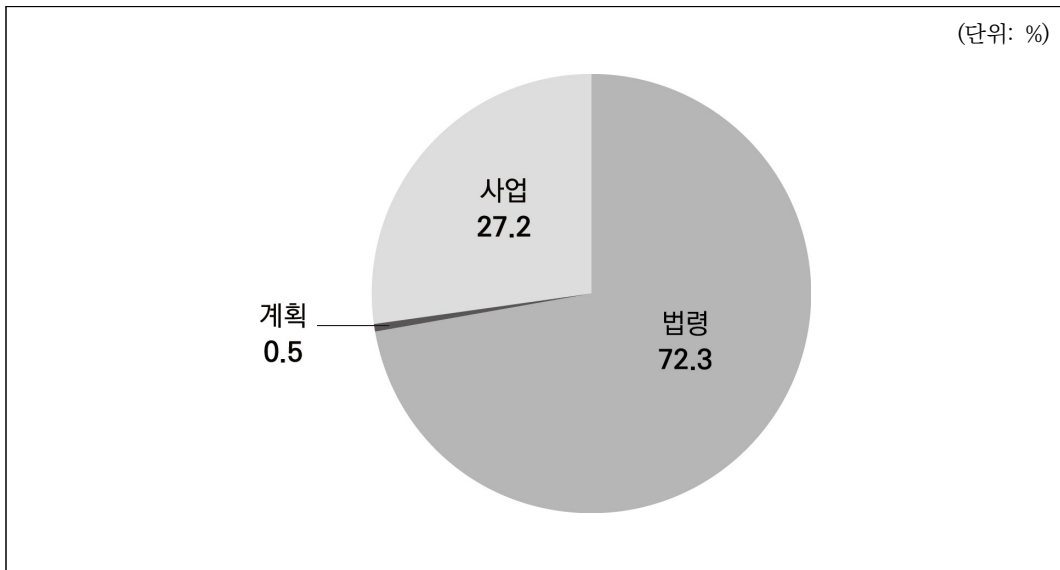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pp. 38~39를 활용하여 재작성.

다섯째, 전국의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컨설턴트의 성인지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 또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2022년에 각 센터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은 주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침을 이해하며, 성인지예산 제도 연계 강화 방안, 컨설팅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 컨설턴트의 역할, 컨설팅 효율성 제고 방안, 주요 분야(과학기술, 기후위기, 장애인 등)의 이슈와 성별영향평가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주요 정책 과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우수사례공유 등 맞춤형 교육 과정(청년일자리, K-디지털 직업훈련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16개 지역센터는 2022년에 양성평등기반구축 또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포럼을 각 1회, 총 17회 개최하였다. 중앙센터는 성별영향평가의 다각화(사업유형별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및 중앙기관 협업형 성별영향평가)에 관해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지역센터는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방향, 기후위기, 청년, 공간 등의 특정 정책 분야의 성주류화 방안, 성주류화 제도의 질적 제고,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공무원, 의회 의원, 컨설턴트, 양성평등 실현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3 대상 정책별 추진현황과 결과

2022년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06개 기관은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총 27,109개 과제 추진하였다.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대상 정책별로는 법령 성별영향평가 과제가 19,594개, 전체의 7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제는 7,388개로 27.2%를 차지하였고,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127개 과제, 0.5%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상 정책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수 비중은 거의 매년 유사하다. 법령 성별영향평가 과제수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추진현황

둘째, 대상 정책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성차별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된 과제가 10,956개 (55.9%)이고, 소관 기관이 법령 성별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자체개선안 동의’를 한 과제가 611개(3.1%)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중앙행정기관)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방자치단체)이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별도의 정책개선 의견을 통보한 ‘개선의견’

과제는 1,398개(7.1%)였으며, 이 중에서 1,086개(77.7%)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이 수용되었다.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정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된 과제는 29개(22.8%),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된 과제는 27개(21.3%),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과제는 70개(55.1%)로 나타났다.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68개(97.1%)가 소관 기관으로부터 수용되어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사업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된 과제가 941개(12.7%)였으며,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된 과제는 5,430개(73.5%),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과제는 1,017개(13.8%)로 나타났다.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된 과제의 비중이 법령이나 계획 성별영향평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 이것은 각 기관의 사업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공무원이 대상정책에 대한 양성평등한 조치사항을 적절하게 작성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969개(95.3%)가 소관 기관으로부터 수용되어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표 7〉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추진 결과

(단위: 개(%))

구분 (대상기관수)	대상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전체(306)	27,109(100.0)	11,926(44.0)	6,068(22.4)	2,485(9.2)	2,123(85.4)	6,630 (24.5)	
법령	19,594 (100.0)	10,956(55.9)	611 (3.1)	1,398 (7.1)	1,086(77.7)	6,629 (33.8)	
계획	127 (100.0)	29(22.8)	27(21.3)	70(55.1)	68(97.1)	1 (0.8)	
사업	7,388 (100.0)	941(12.7)	5,430(73.5)	1,017(13.8)	969(95.3)	0 (0.0)	
중앙 행정 기관 (44)	계	1,743(100.0)	1,296(74.4)	92(5.3)	93(5.3)	74(79.6)	262 (15.0)
	법령	1,595 (100.0)	1,269 (79.6)	30 (1.9)	34 (2.1)	21(61.8)	262 (16.4)
	계획	-	-	-	-	-	-
	사업	148 (100.0)	27 (18.2)	62 (41.9)	59 (39.9)	53 (89.8)	0 (0.0)

구분 (대상기관수)	대상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수용	일부수용	
광역 자치 단체 (17)	계	3,116(100.0)	1,002(32.2)	1,078(34.6)	310(9.9)	274(88.4)	726 (23.3)
	법령	1,874 (100.0)	921 (49.1)	78 (4.2)	149 (8.0)	123(82.6)	726 (38.7)
	계획	31 (100.0)	5 (16.1)	7 (22.6)	19 (61.3)	19(100.0)	0 (0.0)
	사업	1,211 (100.0)	76 (6.3)	993 (82.0)	142 (11.7)	132 (93.0)	0 (0.0)
기초 자치 단체 (226)	계	21,496(100.0)	9,353(43.5)	4,770(22.2)	2,045(9.5)	1,740(85.1)	5,328 (24.8)
	법령	15,586 (100.0)	8,558 (54.9)	495 (3.2)	1206 (7.7)	935(77.5)	5,327 (34.2)
	계획	95 (100.0)	23 (24.2)	20 (21.1)	51 (53.7)	49(96.1)	1 (1.1)
	사업	5,815 (100.0)	772 (13.3)	4,255 (73.2)	788 (13.6)	756 (95.9)	0 (0.0)
시·도 교육청 (17)	계	754(100.0)	275(36.5)	128(17.0)	37(4.9)	35(94.6)	314 (41.6)
	법령	539 (100.0)	208 (38.6)	8 (1.5)	9 (1.7)	7(77.8)	314 (58.3)
	계획	1 (100.0)	1 (100.0)	0 (0.0)	0 (0.0)	-	0 (0.0)
	사업	214 (100.0)	66 (30.8)	120 (56.1)	28 (13.1)	28 (100.0)	0 (0.0)

-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 주2 : b)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 주3 : c)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원안에 동의한 과제
- 주4 : d)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 주5 : e)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수용' 및 '일부수용' 과제(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개선의견 과제 수×100
- 주6 : f)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 주7 : '-'는 해당 없음 의미

셋째, 2022년에 신규로 시행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과제 비중은 전체 사업과제의 29.5%를 차지하였고, 계속사업 과제는 70.5%로 나타나 신규사업 과제의 비율은 2021년과 동일하다. 계속사업 과제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서를 2022년에 신규로 작성한 과제는 전체 사업 추진과제의 33.2%로 나타나, 2021년

요약  
 I  
 II  
 III  
 IV  
 부록

33.9%에 비해서는 0.7%포인트 감소하였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계속사업 중 신규로 작성한 과제의 비율이 31.8%, 28.5%로 2021년에 비해 각각 1.1%포인트, 6.0%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8〉 2022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특성-신규/계속사업, 기관 평균 과제수  
(단위: 개(%))

구분(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신규사업	계속사업		평균 과제 수
			신규작성	지속작성	
전 체 (306)	7,388 (100.0)	2,179 (29.5)	2,450 (33.2)	2,759 (37.3)	24.3
중앙행정기관 (46)	148 (100.0)	23 (15.5)	64 (43.2)	61 (41.2)	3.7
광역자치단체 (17)	1,211 (100.0)	312 (25.8)	385 (31.8)	514 (42.4)	71.2
기초자치단체 (226)	5,815 (100.0)	1,799 (30.9)	1,940 (33.4)	2,076 (35.7)	25.7
시·도 교육청 (17)	214 (100.0)	45 (21.0)	61 (28.5)	108 (50.5)	12.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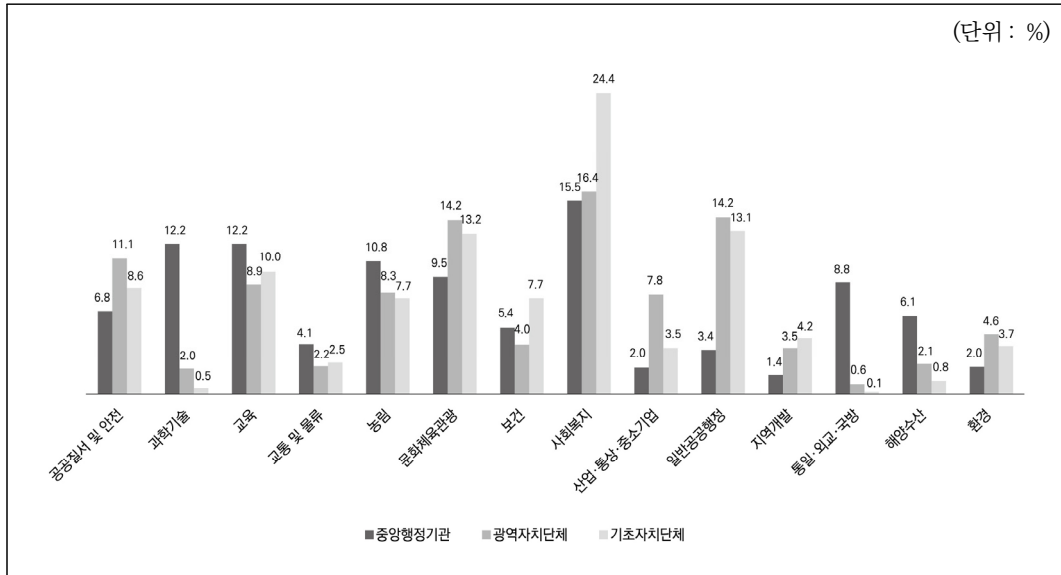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관리번호로 등록된 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넷째,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대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분류해보면, 여전히 사회복지 분야가 2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13.0%), 일반공공행정(12.7%), 교육(12.1%), 공공질서 및 안전(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비중의 높은 순서는 2021년과 다소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21년과 변함이 없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에서는 일부 변화가 있었다. 2021년에는 일반공공행정 > 교육 > 문화체육관광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202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다시 기관유형별로 정책분야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분야가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정책 분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은 과학기술분야와 교육분야가 각각 12.2%, 광역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분야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각각 14.2%, 기초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13.2%, 일반공공행정분야 각각 13.1%였다.



[그림 4] 정책분야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22)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목표와 지역성평등지수 향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2022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에서 제시한 공통주제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① 2022년에 신규로 수행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 ‘② ‘일자리 관련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청년지원 사업, 안전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통주제는 2021년에 이어서 동일하게 제시된 것이다. 한편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3년 이상 연속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대상 과제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한 일환이었다.

광역자치단체가 공통주제를 선정한 과제 수는 563개로 전체 사업 과제수 1,211개의 46.5%였고, 기초자치단체는 2,486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전체 사업 과제수 5,815개의 42.8%였다. 그중 광역자치단체가 ‘① 2022년에 신규로 수행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 중 공약사업을 선정한 과제수는 61개로 전체 과제 수의 5.0%,

② 사업분야(일자리 관련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청년지원 사업, 안전사업) 관련 사업은 502개로 전체 과제 수의 41.5%이다. 기초자치단체는 ‘① 2022년에 신규로 수행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 중 공약사업을 선정한 과제수는 448개로 전체 과제 수의 7.7%였고, ② 사업분야(일자리 관련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청년지원 사업, 안전사업) 관련 사업은 2,038개로 전체 과제 수의 35.0%였다. 시·도교육청은 공통주제를 73개를 선정하였는데, 전체 과제 수 214개의 34.1%였다. 그 중 공약사업은 28개(13.1%), 일자리 관련 사업 45개(21.0%)였다.

〈표 9〉 2022년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공통주제 대상 과제 수 (단위: 개(%))

	대상과제수 <sup>a)</sup>	공통주제1	공통주제2			
		공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청년지원 사업	안전 사업
지방자치단체 전체	7,026	509 (7.2)	1,022 (14.5)	183 (2.6)	551 (7.8)	784 (11.2)
광역자치단체	1,211	61 (5.0)	212 (17.5)	41 (3.4)	109 (9.0)	140 (11.6)
기초자치단체	5,815	448 (7.7)	810 (13.9)	142 (2.4)	442 (7.6)	644 (11.1)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서 관리번호로 등록된 사업성별영향평가 과제(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중에서 교육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상과제 수

〈표 10〉 2022년 시·도교육청의 공통주제 대상 과제 수 (단위: 개(%))

	대상과제수 <sup>a)</sup>	공통주제1	공통주제2
		공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시·도 교육청	214	28 (13.1)	45 (21.0)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서 관리번호로 등록된 사업성별영향평가 과제(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중에서 교육청에 해당하는 대상과제 수

여섯째, 2022년에는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총 92개 기관이 1,214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2021년에 107개 기관이 1,152개 과제를 추진한 것에 비해서 15개 기관이 감소하고, 62개 과제가 증가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은 5개 기관이 52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광역자치단체는 14개 기관이 388개를 추진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는 67개 기관이 719개를 추진하였다. 교육청은 6개 기관이 55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추진기관 수는 감소하였고 과제 수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만 증가하고, 그 외 기관은 감소하였다.

추진 결과 검토의견 통보현황을 보면, 전체 1,214개 과제 중 성차별적인 개선사항이 없어서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된 과제가 716개(59.0%)로 나타났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개선사항 있음'으로 통보된 과제는 483개(39.8%)로 나타났다. '개선사항 있음'으로 통보된 과제의 88.0%가 소관 기관으로부터 개선을 하겠다고 수용되었다.

〈표 11〉 2022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구분(기관수)	과제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개선사항 있음 <sup>c)</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d)</sup>	기타 <sup>e)</sup>
전체 (92)	1,214 (100.0)	716 (59.0)	483 (39.8)	425 (88.0)	15 (1.2)
중앙 (5)	52 (100.0)	13 (25.0)	25 (48.1)	22 (88.0)	14 (26.9)
광역 (14)	388 (100.0)	227 (58.5)	161 (41.5)	143 (88.8)	0 (0.0)
기초 (67)	719 (100.0)	448 (62.3)	270 (37.6)	242 (89.6)	1 (0.1)
교육청 (6)	55 (100.0)	28 (50.9)	27 (49.1)	18 (66.7)	0 (0.0)

- 주1 : a) 성별영향평가 대상인 정부홍보사업 중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 주2 : b)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 주3 : c)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및 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 주4 : d)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수용' 및 '일부수용' 과제(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 / 개선의견 과제 수 × 100
- 주5 : e) 2022년 12월말 현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진행 중인 과제

## 4 추진 기관별 특성 및 성과



2022년 306개의 성별영향평가 추진기관이 수립한 '개선계획 수립과제'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이행점검 결과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한 과제(20,479개)의 40.0%(8,191개)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 8,191개 중 4,074개 과제(49.7%)에 대한 정책개선을 완료하였다.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 중 과제 담당자가 자체개선안을 수립한 과제보다는 여성가족부 및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통보한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의 개선이행률(각각 44.7%, 64.2%)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2〉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 현황

(단위: 개, %)

대상기관수	추진 과제 <sup>a)</sup>	개선 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소계	자체 개선안	개선 의견 수용	소계	자체 개선안	개선 의견 수용
전 체 306	20,479	40.0	49.7	8,191	6,068	2,123	4,074	2,711	1,363
중앙행정기관 46	1,481	11.2	80.1	166	92	74	133	74	59
광역자치단체 17	2,390	56.6	43.7	1,352	1,078	274	591	420	171
기초자치단체 226	16,168	40.3	50.3	6,510	4,770	1,740	3,276	2,157	1,119
시·도교육청 17	440	37.0	45.4	163	128	35	74	60	14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자체개선안 동의 과제+개선의견 수용과제)의 비율(개선계획 산출률(%)) = 개선계획 수립과제(b)/추진과제 수(a) × 100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5 : e)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의 비율(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d)/개선계획 수립과제(b) × 100

## 가. 중앙행정기관

### 1) 개선계획 수립

2022년 4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481개의 법령·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자체개선안 또는 여성가족부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 법령·사업은 166개이다(법령 51개, 사업 115개). 51개의 법령에 대한 개선계획 중 38개 법령이 개정되었고(개선계획의 74.5%), 115개 사업에 대한 개선계획 중 95개 사업 개선(개선계획의 82.6%)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총 133개의 법령·사업에서 개선이 완료되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2018년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로 추진되었다.

〈표 13〉 2022년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단위: 개, %)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추진과제 <sup>b)</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법령	사업	법령	사업	법령	사업
전 체(46)	1,481	11.2	80.1	1,333	148	51	115	38	95
국 토 교 통 부	181	6.6	58.3	169	12	1	11	1	6
기 획 재 정 부	136	0.7	100.0	136	0	1	-	1	0
행 정 안 전 부	95	8.4	87.5	93	2	7	1	6	1
보 건 복 지 부	89	11.2	70.0	84	5	6	4	4	3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74	17.6	84.6	57	17	1	12	1	10
해 양 수 산 부	65	12.3	87.5	55	10	2	6	1	6
환 경 부	64	4.7	100.0	61	3	1	2	1	2
산 업 통 상 자 원 부	63	0.0	-	63	0	0	-	-	-
국 방 부	60	15.0	88.9	53	7	2	7	2	6
농 립 축 산 식 품 부	55	20.0	81.8	43	12	1	10	0	9
교 육 부	53	13.2	100.0	50	3	4	3	4	3
고 용 노 동 부	49	28.6	92.9	39	10	6	8	6	7
문 화 체 육 관 광 부	49	20.4	90.0	41	8	3	7	3	6
법 무 부	47	21.3	40.0	45	2	8	2	2	2
국 가 보 훈 처	44	4.5	100.0	42	2	0	2	-	2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35	2.9	0.0	33	2	0	1	-	-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법령	사업	법령	사업	법령	사업
소 방 청	28	10.7	100.0	27	1	2	1	2	1
산 립 청	27	11.1	100.0	22	5	1	2	1	2
중 소 벤 처 기 업 부	24	8.3	100.0	22	2	1	1	1	1
금 융 위 원 회	22	0.0	-	22	0	0	-	-	-
여 성 가 족 부	22	13.6	100.0	16	6	0	3	-	3
경 찰 청	20	20.0	50.0	17	3	1	3	1	1
인 사 혁 신 처	20	10.0	100.0	19	1	1	1	1	1
특 허 청	20	10.0	100.0	18	2	0	2	-	2
해 양 경 찰 청	18	11.1	50.0	16	2	0	2	-	1
문 화 재 청	17	23.5	75.0	13	4	0	4	-	3
질 병 관 리 청	17	5.9	100.0	14	3	0	1	-	1
공 정 거 래 위 원 회	11	0.0	-	10	1	0	0	-	-
외 교 부	10	50.0	60.0	5	5	0	5	-	3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10	10.0	100.0	8	2	0	1	-	1
기 상 청	9	22.2	50.0	8	1	1	1	0	1
방 송 통 신 위 원 회	9	22.2	50.0	8	1	1	1	0	1
법 제 처	9	11.1	100.0	8	1	0	1	-	1
통 일 부	7	28.6	100.0	5	2	0	2	-	2
국 민 권 익 위 원 회	6	0.0	-	5	1	0	0	-	-
국 무 조 정 실	4	0.0	-	4	0	0	-	-	-
농 촌 진 흥 청	3	100.0	100.0	0	3	-	3	-	3
병 무 청	3	33.3	100.0	2	1	0	1	-	1
관 세 청	1	0.0	-	0	1	-	-	-	-
국 세 청	1	100.0	100.0	0	1	0	1	-	1
방 위 사 업 청	1	0.0	-	0	1	-	-	-	-
새 만 금 개 발 청	1	100.0	100.0	0	1	-	1	-	1
조 달 청	1	100.0	0.0	0	1	-	1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00.0	100.0	0	1	-	1	-	1
대 검 찰 청	0	-	-	-	-	-	-	-	-
통 계 청	0	-	-	-	-	-	-	-	-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과제를 제외한 과제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자체개선안 등의 과제+개선 의견 수용과제)의 비율(개선계획 산출률(%)= 개선계획 수립과제(b)/추진과제 수(a)×100)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5 : e) 개선계획 수립 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의 비율(개선 이행률(%)=개선과제(d)/개선계획 수립과제(b)×100)

주6 : '-'는 해당 없음 의미

## 2) 개선실적 이행점검

2022년 중앙행정기관에서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74개이다. 이 중 59개의 과제(법령 16개, 사업 43개)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졌다. 중앙행정기관은 담당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통해 총 92개의 자체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중 74개의 과제(법령 22개, 사업 52개)를 개선하였다.

〈표 14〉 2022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중앙행정기관) (단위: 개, %)

구분	전체	개선의견 수용			자체개선		
		계	법령	사업	계	법령	사업
이행점검 대상과제	166	74	21	53	92	30	62
개선완료	133	59	16	43	74	22	52
개선 이행률 <sup>a)</sup>	(80.1)	(79.7)	(76.2)	(81.1)	(80.4)	(73.3)	(83.9)

주 : a) 개선 이행률(%) = 점검연도 기준으로 개선완료 수/점검대상 과제 수 × 100

## 3) 주요 개선사례

중앙행정기관이 2022년 여성가족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된 법령은 16개이다. 그 결과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교육부), 데이터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자문위원회(법무부), 국방혁신위원회(국방부), 지방시대위원회(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공모전 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보건복지부),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환경부), (근로자퇴직급여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고용노동부), 초광역권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해양수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평가위원회(소방청),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조사위원회(산림청) 등의 법령에서 규정한 16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조항을 반영하였다.

위원회 성별 균형참여 개선과 더불어 또 다른 정책개선내용으로는 데이터 산업 기반과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파악 요소로 ‘성별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정책 입안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취약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자 및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자”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인적 현황통계에 ‘성별’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제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화재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피난인원의 성별 현황을 포함하여 화재발생 시 성별이 고려된 피난 및 인명 구호 방안 모색의 초석을 이루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사업 분야에서는 43개 사업이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창의적인재육성-소부장분야전문인력양성-나노분야전문인력양성” 사업을 개선하여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교육 취소 시 패널티 적용을 제외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자연·공학계열 재학생 중 여성 비율이 평균 33.3%(전체 3,185명, 여성 1,062명)를 달성하여 자연·공학계열 대학 재학 및 졸업자 평균 여성비율 31.2%를 넘어서는 등 자연·공학계열 인력 양성에서 성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장병복지지원-보건복지지원-’23~’27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작성방향 연구”에서 각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야전부대(28개) 등의 의견(직급, 연령, 성별)을 반영하여 군 양성평등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중앙행정기관에서 2022년에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한 법령은 22개이며,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가사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가사 및 육아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다. 교육부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교사를 도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용어를 기존의 ‘보조인력’에서 ‘지원인력’으로 정비하여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조적 업무에서 지원하는 업무로 전환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법무부의 「출국대기실 운영규칙」에서는 신체·의류 및 휴대폰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성의 담당공무원이 검사하도록 하고, 방배정에서나 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했으며, 임신부 등의 인도적 처우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였다.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추행, 2차 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설정하고, 성희롱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성 관련된 범죄의 불법성과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편의 제공의 대상인 민원 취약계층의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 노인, 수급자,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신체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민원취약계층인 임신부를 포함하여 모성보호를 강화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의 구제를 위해 관련 지침의 개발·보급,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예방교육 이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종사자의 이용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분기준을 1차 위반 ‘경고’에서 ‘영업정지 3개월’로, ‘4차 위반 등록취소’에서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경고를 상향 조정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 또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중복서비스 수혜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환경 마련에 기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노무제공자 5개 직종(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확대와 더불어 이들의 생활안정 등에 기여하였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건강손상 자녀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근로자 보호 및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였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온라인 성범죄자를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호응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다음으로 52개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법무부는

“법무행정개선-양성평등정책 지원” 사업의 개선을 통해 2일(14h) 집중교육을 직렬(보호, 출입국, 본부, 교정, 검찰)별로 6회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입문단계’에서 벗어나 1회의 교육 내에서 ‘입문단계’에서 ‘심화단계’로 이어지는 성인지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사업에서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성희롱 행위자에 재발방지 교육 실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체육육성-스포츠윤리센터운영” 사업을 개선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예방 교육 대상을 학생선수 학부모 및 장애인 등으로 대상별 확대 시행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의 적합성이 향상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보험-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사업에서는 부부 등 영농종사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상품 개선을 통해 2021년 36.9%에서 2022년 37.2%로 여성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률 제고에 기여하였다.

## 나. 광역자치단체

### 1) 개선계획 수립

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는 2,390개의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자체개선안 또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 법령·계획·사업은 1,352개이다(법령 201개, 계획 26개, 사업 1,125개). 201개 법령에 대한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184개 조례의 제·개정(개선계획의 91.5%)이 이루어졌고, 26개 계획에 대한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11개 계획에 반영되었으며(개선계획의 42.3%), 1,125개 사업에 대한 개선계획 중 396개 사업에 대한 개선(개선계획의 35.2%)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591개의 조례 및 계획, 사업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었다.

〈표 15〉 2022년 광역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단위: 개, %)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 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전 체 (17)	2,390	56.6	43.7	1,148	31	1,211	201	26	1,125	184	11	396
제주특별자치도	302	76.8	18.1	111	4	187	41	4	187	36	0	6
경상남도	197	42.6	67.9	118	1	78	12	0	72	12	-	45
서울특별시	181	51.4	72.0	107	1	73	22	1	70	19	1	47
전라북도	168	23.8	70.0	130	2	36	16	2	22	15	1	12
광주광역시	167	50.9	63.5	92	1	74	11	1	73	11	0	43
경기도	162	76.5	43.5	41	1	120	8	1	115	5	1	48
대전광역시	153	69.3	79.2	75	2	76	29	2	75	29	2	53
부산광역시	147	60.5	40.4	76	2	69	20	2	67	18	0	18
인천광역시	140	55.7	32.1	60	3	77	2	3	73	2	0	23
대구광역시	130	31.5	48.8	70	1	59	7	0	34	6	0	14
세종특별자치시	127	50.4	18.8	59	7	61	4	6	54	3	3	6
충청북도	110	45.5	8.0	60	4	46	3	2	45	3	1	0
강원도	97	56.7	70.9	50	0	47	8	-	47	8	-	31
충청남도	94	63.8	11.7	41	0	53	7	-	53	7	-	0
울산광역시	77	68.8	54.7	29	2	46	5	2	46	5	2	22
전라남도	71	74.6	35.8	17	0	54	4	-	49	4	-	15
경상북도	67	67.2	31.1	12	0	55	2	-	43	1	-	13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자체개선안 동의 과제+개선의견 수용과제)의 비율(개선계획 산출률(%)) = 개선계획 수립과제(b)/추진과제 수(a) × 100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5 : e)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의 비율(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d)/개선계획 수립과제(b) × 100

주6 : '-'는 해당 없음 의미

## 2) 개선실적 이행점검

2022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 274개의 과제 중 171개의 과제(법령 111개, 계획 7개, 사업 53개)를 개선하였고, 자체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한 과제 1,078개 중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420개(법령 73개, 계획 4개, 사업 343개)이다.

〈표 16〉 2022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광역자치단체)

(단위: 개, %)

구분	전체	개선의견 수용				자체개선			
		소계	법령	계획	사업	소계	법령	계획	사업
이행점검 대상과제	1,352	274	123	19	132	1,078	78	7	993
개선완료	591	171	111	7	53	420	73	4	343
개선 이행률 <sup>a)</sup>	(43.7)	(62.4)	(90.2)	(36.8)	(40.2)	(39.0)	(93.6)	(57.1)	(34.5)

주 : a) 개선 이행률(%) = 점검연도 기준으로 개선완료 수/점검대상 과제 수 × 100

## 3) 주요 개선사례

2022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이행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개선이 이루어진 법령의 경우 다수가 위원회 규정에 성별 균형 조항을 포함하거나, 성별을 포함한 서식 규정 개정 혹은 성별분리통계를 산출하는 조항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그 밖에도 서울특별시는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자문하는 약자동행위원회에 성별균형 구성을 명시하였다(「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광주광역시는 노동권익보호위원회가 가사노동자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관련 요건을 추가하였다(「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충청남도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여자 종목을 추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장에게 모성보호 및 성희롱·성폭력·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의 책임을 부여하였다(「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경상북도는 ‘유모차(乳母車)’를 ‘유아차(乳兒車)’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성별고정관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성장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위원회에

성별균형 구성을 명시함으로써 민자유치 사업 추진의 정책 결정에 있어 성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 사례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기본계획』에서는 세종시 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에 있어 성별·연령·장애유무 등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상담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이 성별 균형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보화 시스템 설계 계획을 명시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또 다른 계획인 『시정4기 일자리 종합계획』에서는 일자리 창출 대상을 청년에서 여성, 청년, 신중년, 노인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성별, 세대별, 직무별 맞춤형 일자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광역자치단체가 이행한 사업에 대한 정책 개선에서 서울특별시의 “서울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육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성평등한 돌봄 환경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아동복지 증진-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법령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과제의 이행결과로,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에서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야기되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환경보건계획에 이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의 수립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환경보건위원회의 성별균형 구성을 명시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계획과 관련하여 기관이 제시한 자체개선 내용을 반영한 이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의 두 계획에서는 보행 및 교통편의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교통 개선을 도모하고(『제2차 대전광역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대책과 대상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 계획을 마련하였다(『제4차(2022~2026)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5개년 계획』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지원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개발 및 교육 진행에 성별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경기도의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서는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 및 권익 향상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 확보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보육 정책을 강화를 위해 추진과제를 확대하였다.

자체적으로 개선한 사업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의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여성들의 삶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지역특성화 이야기 발굴 과정에서 성차별적 내용을 삭제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고려를 명시하였다. 강원도의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공공의료기관 직원 대상 교육”에서는 위탁교육 계획 수립 시 교육에서 성별, 종교, 장애, 인종,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강원도의 또 다른 사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마을기업 육성”에서는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심사기준에 성별 균형 참여 내용을 기입하고, 약정 해지 사유에 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조를 명시하였다. 전라북도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을 개선하여 장애인여성의 장애친화산부인과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도청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를 진행하였다. 경상남도는 “건강가정육성 및 가족지원강화-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직접)”의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남성 한부모 가구주가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홍보하였다.

## 다. 기초자치단체

### 1) 개선계획 수립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16,168개의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자체개선안에 동의하거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 법령·계획·사업은 6,510개이다(법령 1,430개, 계획 69개, 사업 5,011개). 1,430개 법령에 대한 개선계획 중 1,274개 법령 개선(개선계획의 89.1%)이 이루어졌다. 94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69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개 과제(개선계획의 27.5%)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대해서는 수립된 5,011개 개선계획 중 1,983개 사업(개선계획의 39.6%)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17〉 2022년 기초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단위: 개, %)

기관명 (기관수)	추진 과제 <sup>a)</sup>	개선 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기초 전체(226)	16,168	40.3	50.3	10,259	94	5,815	1,430	69	5,011	1,274	19	1,983
경기도 (31)	3,289	41.8	49.5	1,993	40	1,256	178	29	1,168	159	9	513
전남 (22)	1,532	33.2	46.0	1,099	3	430	151	2	356	131	0	103
서울 (25)	1,441	37.8	55.6	956	0	485	107	-	438	96	-	207
경북 (23)	1,417	29.8	54.7	931	3	483	92	2	328	90	1	140
경남 (18)	1,403	59.8	60.5	817	5	581	264	3	572	237	2	269
충남 (15)	1,185	30.2	31.0	809	3	373	64	2	292	56	0	55
강원도 (18)	1,135	40.7	51.9	776	4	355	129	4	329	108	1	131
전북 (14)	1,037	25.9	47.2	730	0	307	97	-	172	83	-	44
충북 (11)	911	37.3	48.8	587	5	319	44	4	292	40	1	125
부산 (16)	809	51.9	42.4	447	12	350	107	11	302	93	2	83
인천 (10)	654	50.6	57.7	369	10	275	76	9	246	69	1	121
광주 (5)	424	49.3	43.5	261	0	163	47	-	162	46	-	45
대구 (8)	383	39.4	45.0	191	2	190	16	0	135	12	-	56
울산 (5)	277	54.9	50.0	153	3	121	45	2	105	41	1	34
대전 (5)	271	47.2	55.5	140	4	127	13	1	114	13	1	57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자체개선안 동의 과제+개선의견 수용과제)의 비율(개선계획 산출률(%)) = 개선계획 수립과제(b)/추진과제 수(a)×100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5 : e)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의 비율(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d)/개선계획 수립과제(b)×100

주6 : '-'는 해당 없음 의미

요 약

개 요

Ⅰ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Ⅱ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Ⅲ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 2) 개선실적 이행점검

2022년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개선의견을 수립한 과제는 1,740개이다. 이 중 2022년 한 해 동안 1,119개의 과제(법령 828개, 계획 14개, 사업 277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2022년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4,770개이고,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2,157개이다(법령 446개, 계획 5개, 사업 1,706개).

〈표 18〉 2022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기초자치단체)

(단위: 개, %)

구분	전체	개선의견 수용				자체개선			
		소계	법령	계획	사업	소계	법령	계획	사업
이행점검 대상과제	6,510	1,740	935	49	756	4,770	495	20	4,255
개선완료	3,276	1,119	828	14	277	2,157	446	5	1,706
개선 이행률 <sup>a)</sup>	(50.3)	(64.3)	(88.6)	(28.6)	(36.6)	(45.2)	(90.1)	(25.0)	(40.1)

주 : a) 개선 이행률(%) = 점검연도 기준으로 개선완료 수/점검대상 과제 수 × 100

## 3) 주요 개선사례

2022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이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특히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공무원의 치료·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였다. 강원도 평창군의 「평창군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자녀(子女)’, ‘부모(父母)’를 다양한 가족형태(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등)를 반영하는 표현인 ‘아이’, ‘보호자(保護者)’로 개선하였다. 충청북도 진천군의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입장 제한 대상자에 성추행이나 음란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을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도서관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질환 발생자인 ‘여성’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력을 강화하였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행내용이다. 강원도 태백시 『제5기 태백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과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보호·교육·돌봄 지원의 다양화를 모색하였다.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추진방향>에 “여성 농업인을 위한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확대 및 기회 제공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더해 기술교육과 농기계보급 및 교육에도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하였다.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개선한 사업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다문화 가족언어발달지원사업-다문화가족언어발달지원사업”을 통해서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를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성인지예산서 상 성과목표인 사업대상자 이주여성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였다. 경상남도 양산시 “일자리 창출-신증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개선하였는데, 노동공간이 사적 공간으로 여겨지는 가사관리사의 업무 특성상 직장 내 성희롱의 대응 취약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기업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일자리 사업의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2022년에 자체적인 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개선이 완료된 446개 조례 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 「단양군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이 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수립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경상남도 합천군은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통해 이장이 성폭력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자체개선 계획 이행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 창원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1인가구 안심홈지원 등 여성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창원맘 커뮤니티센터 설치’를 통해 양육기 부모를 위한 정보공유와 힐링 공간의 제공을 계획하였으며, 창원시 여성인재 발굴 및 DB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보장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역 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동 역량 강화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자체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 서구는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지원-다문화 경연대회(북&다문화 축제 추진)” 사업에서 행사 안내판 작성 시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작성하여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데 언어적 불편함이 적도록 유도하였으며, 수유실(붉은색 표기로 주목성 높임) 및 유아용 변기시트 구비로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직장 운동 경기부 및 전문체육 육성-실업태권도팀 육성” 사업의 개선을 통해 지도자 및 선수단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및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부고발이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 연계를 통한 성희롱, 폭력피해 등 인권침해에 대한 정기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상담창구를 마련하였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에는 책자 발간 용역 연구 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등의 내용을 수록하는 등 여성 독립운동사를 포함하였다. 전라북도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힐링교육사업-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골드-쿡 과정 등 남성을 위한 특별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교육 공간 내에서 참여자들의 양성평등을 고려한 공간 약속문(인권존중, 양성평등 언어문 등)을 담은 양성평등 약속문을 게시하였다.

## 라. 시·도교육청

### 1) 개선계획 수립

2022년 17개의 시·도교육청은 440개의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자체개선안을 제시하거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 법령·사업은 163개이다(법령 15개, 사업 148개). 15개 법령에 대한 개선계획 중 14개 법령에서 개선(개선계획의 93.3%)이 이루어졌고, 148개 사업에 대한 개선계획 중 60개의 사업 개선(개선계획의 40.5%)이 이루어졌다.

〈표 19〉 2022년 시·도교육청별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산출 현황

(단위: 개, %)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 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전 체(17)	440	37.0	45.4	225	1	214	15	0	148	14	-	60
충청남도교육청	86	33.7	58.6	59	0	27	2	-	27	2	-	15
경상북도교육청	55	3.6	50.0	27	0	28	2	-	0	1	-	-
경상남도교육청	38	26.3	60.0	28	0	10	0	-	10	-	-	6
광주광역시교육청	27	85.2	52.2	4	0	23	0	-	23	-	-	12
대전광역시교육청	26	76.9	55.0	6	0	20	1	-	19	1	-	10
인천광역시교육청	26	26.9	71.4	19	0	7	0	-	7	-	-	5
울산광역시교육청	23	0.0	-	9	0	14	0	-	0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2	45.5	10.0	12	0	10	1	-	9	1	-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2	54.5	0.0	10	0	12	0	-	12	-	-	-
경기도교육청	21	33.3	85.7	12	0	9	3	-	4	3	-	3
서울특별시교육청	21	47.6	60.0	12	1	8	2	0	8	2	-	4
강원도교육청	20	35.0	28.6	13	0	7	0	-	7	-	-	2
부산광역시교육청	20	60.0	25.0	10	0	10	3	-	9	3	-	0
대구광역시교육청	18	0.0	-	2	0	16	0	-	0	-	-	-
전라남도교육청	9	88.9	12.5	2	0	7	1	-	7	1	-	0
충청북도교육청	6	100.0	50.0	0	0	6	-	-	6	-	-	3
전라북도교육청	0	-	-	-	-	-	-	-	-	-	-	-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자체개선안 동의 과제+개선의견 수용과제)의 비율(개선계획 산출률(%)) = 개선계획 수립과제(b)/추진과제 수(a) × 100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5 : e)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의 비율(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d)/개선계획 수립과제(b) × 100

주6 : '-'는 해당 없음 의미또한 "0"건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2202년 시·도 교육청의 추진실적의 경우, 총 16개 기관에서 이행한

요 약

개 요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 2) 개선실적 이행점검

2022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을 수용하거나 자체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163개이다. 이 중 2022년 한 해 동안 법령 14개, 사업 60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개선의견 수용 과제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14개(법령 6개, 사업 8개)이고, 자체개선 과제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60개(법령 8개, 사업 52개)이다.

〈표 20〉 2022년 개선계획 수립과제 이행점검 결과(시·도교육청)

(단위: 개, %)

구분	전체	개선의견			자체개선		
		소계	법령	사업	소계	법령	사업
이행점검 대상과제	163	35	7	28	128	8	120
개선완료	74	14	6	8	60	8	52
개선 이행률 <sup>a)</sup>	(45.4)	(40.0)	(85.7)	(28.6)	(46.9)	(100.0)	(43.3)

주 : a) 정책개선 이행률(%) = 점검연도 기준으로 개선완료 수/점검대상 과제(개선계획 수립과제) 수 × 100

## 3) 주요 개선사례

2022년 시·도교육청의 법령 개선의견 수용 정책개선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경기도교육청의 민원조정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의 기숙사선정위원회 등 시·도교육청의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산학생안전 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수영장 내 불법촬영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도교육청 사업에 대한 정책개선사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운영”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개선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양성평등한 홍보물을 발간하고자 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독서문화진흥-도서관운영지원” 사업에서는 보호자 동반 독서프로그램 홍보 시 남성 보호자의 참여를 독려했다.

시·도교육청의 법령에 대한 자체개선 사례는 위원회 규정에 성별 균형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청원심의회와 정보화위원회,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를 비롯해 충청남도교육청이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의 소송심의위원회 등이 있다.

사업에서 이행된 자체개선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협력종합 예술활동-예술꿈담터(연습장)구축” 사업에서 공간 사용의 성별 격차 및 성별 요인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성인지적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을 통해 영재교육원 교사의 성별균형을 확보함으로써 여학생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여성 교사 비율을 제고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영재교육원의 과정별 영재특강 강사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반영하였고(“영재 교육-영재교육원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의 예산을 확대하였다(“방과후 학교및돌봄교실-돌봄교실운영”).

## 마. 주요 개선사례

2022년도 법령과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과제의 정책개선 내용은 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및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 성별 고정관념 해소 또는 정책 내에 포함된 차별 요인 개선 사례, 일·생활 균형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추진 사례,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한 사례, 성별 및 다양한 시민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개선을 추진한 사례, 공간 및 공공시설 설립 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사례 등이 있다.

과제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법령 18개 과제, 사업 21개 과제로 총 39개 과제를 수록하였다. 수록사례 선정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의 사례들을 모두 포함하였고, 개선 내용면에서는 해당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례, 성별 격차가 현격한 분야에서 이를 개선한 사례, 시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 사례, 성별·연령·장애 등 여러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이 정책에도 반영되어 있어 이를 개선한 사례, 지속적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분야에서 이를 해소 또는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한다

해도 기존에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사례로 소개된 적이 있는 동일기관의 동일사례는 수록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 1)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및 사회안전망 확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해 정책개선을 추진한 사례로, 해양수산부는 “해운인력양성지원-해사고등학교지원-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지원” 사업에서 현재 해사고등학교 여학생 모집 인원을 전체 정원의 10%로 정하였던 것을 11.3%로 확대 명시하였다. 그리고 해양산업분야 내 여성 전문인력 진출 확대 및 이를 위한 여학생 역량강화를 위해 해양분야 여성인력 진출 사례 소개, 여학생 대상 진로상담 지원, 해사고 이수 필수 교육에 양성평등 교육 포함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하여「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무제공자 5개 직종(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산업육성-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에서 밭작물 농업에 참여하는 주 농업인 층이 여성임을 고려해, 향후 사업 추진 시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구체적으로 참여 농업인의 성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자 성별 기입란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의 시행지침을 개선하였다. 또한 사업의 시행지침에 여성농업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노동부담 완화를 위하여 여성친화형 농기계 도입을 권장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사업 신청자가 지원서 제출 시 지원서 내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활용 계획을 기술하도록 사업 추진 계획서의 서식을 변경하는 개선을 추진 하였다.

## 2)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차별적 요인 개선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조례」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 예방’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미디어월에 표시할 수 없는 ‘표시금지 사항’(조례 제5조)에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인천시 부평구는 “부평안전체험관 운영” 사업에서 재난안전대응 경험이 취약한 여성, 초보 부모 등 다양한 시민층의 안전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규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안전체험관 교관들의 성인지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안전체험관 내 체험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하였다.

## 3) 일·생활 균형 확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과 관련해 이전까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생식기능과 생식능력에 영향을 주는 생식독성물질 8종을 추가하였다. 그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생식기능과 생식능력에 영향을 주는 생식독성물질 8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포함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을 다루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생식기능 등에 영향을 주는 물질임을 고지받는 등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어 근로자 보호 및 건강한 출산 지원을 강화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가사 및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하였다. 국방부는 국방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군 어린이집 입소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소예약 시스템 개발, 면 소재지 이하의 지역에 군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우선 신규 설치 등 보육환경 개선 내용을 반영하였다.

#### 4)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하여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시 성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종사자의 폭행·상해, 성희롱·성폭력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경상북도 칠곡군은 「칠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에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로 ‘성범죄 예방, 불법촬영 단속 및 미아 찾기’를 추가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여성 인구비율을 반영한 CCTV 취약지역 지수 도입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국민 수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강원도 정선군은 「정선군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성평등한 노인문화 조성’ 사업을 추가로 명시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다. 경기도 파주시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소년 대상의 성평등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해 파주시가 지원가능한 사업에 ‘성평등한 인재 육성 사업’을 포함하여 개정하였다.

#### 5) 성별 및 다양한 시민 특성 고려한 사업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데이터정책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는 내용과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데이터 산업 종사자의 성별 인력 현황 조사를 포함하여 데이터 산업 분야의 성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복지법 시행령」의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구체화하는 조항에서 체육인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조사 시 성별, 나이, 종목 등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여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과정 등에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민원취약계층의 범위를 임신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편의를 위한 시설 제공을 명시하였다. 법무부는 「출국대기실 운영규칙」에서 신체·의류 및 휴대폰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성별의 담당공무원이 검사하도록



하고, 방배정, 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했으며, 임신부 등의 인도적 처우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였다.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항목으로 성별을 포함한 인구학적 요소 등을 고려한 공동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을 추가하였다.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시민영양관리조례」에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운영 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양식생활 조사시 연령별, 성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다.

### 6) 공간 및 공공시설 설립 시 성인지 관점 반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에서 모범공동주택 평가 세부항목 내에 성별, 연령, 장애 등 주민 다양성을 고려한 행사 개최 현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운영 현황, 관리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권리확보 등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 여부, 관리종사자의 성별을 고려한 분리된 휴게공간 마련 여부 및 관리종사자를 위한 인권 및 권리교육 실시(이수) 여부 등을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제운사거리 인근 변종유흥업소를 정비하여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인 “청년자립 및 성장-청년창업희망스타트”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원사업 심사 시 양성평등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하였다.

5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과 성과



가.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 및 개선권고 현황

2022년에는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9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고, 2023년 6월 기준, 2개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해 관계기관에 개선권고를 하였다.

〈표 21〉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명 및 개선권고 과제 수 (단위: 개)

대상정책명	개선권고 과제 수
• 생활체육지원정책	5
• 노숙인지원정책	7
•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예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예정
•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예정
• 귀농·귀촌 지원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예정
• 정신건강증진사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예정
• 사회보장기본계획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예정
• 생활체감형 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예정
① 우체국 편의시설 개선	
②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 1)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 특정성별영향평가

4차 산업의 발전으로 노동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와 고용주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의 규모도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의 규모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며, 온라인상에서 노동의 여부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 업종에 따른 성별 분리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플랫폼노동자 문제는 상대적으로 남성 집중 직종(배달·운송 등)의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 집중 직종(음식점, 보조·서빙, 가사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관심은 적다. 여성과 남성은 소득, 안전, 건강 등에서 서로 다른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 성별 차이와 노동 특성을 고려한 플랫폼종사자 보호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한 결과, 첫째, 플랫폼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수혜자의 성별 인원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주로 남성 중심 업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플랫폼노동에서 젠더폭력 및 괴롭힘 등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나 제도화된 피해자 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매개로 한 경우 다른 일자리로 이직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 권익보호 및 복지 확충, 2) 모부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3) 산업안전보건정책, 4) 직업능력 개발 정책, 5) 집단적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와 관련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

## 2)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성별영향평가

2021년부터 시작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일종의 실업부조프로그램이다. 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 등에 따라 지원유형을 구분하여 고용플러스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제도 유형에 따른 심사요건, 선발조건 등 지원요건 및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상담 등의 지원내용은 성별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첫째, 일자리 연계율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고, 지역에 따라 협의체 운영 방식이 상이하였다. 둘째 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이행에서 전통적인 성별직종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여성 구직자의 절반 정도가 해당되는 비경활선발형의 취업연계율이 30%대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계협업기관의 상담사가 행정처리를 위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 지역 내 구직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적극 연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2) 중앙(시)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운영 내실화 3) 성별직종분리가 완화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강화, 5) 시스템 접근의 어려움 해결과 관련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

### 3) 노숙인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노숙인지원정책은 복지지원과 자립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 노숙인 수는 감소하였으나, 여성노숙인은 점차 증가하고, 자녀를 동반한 모자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노숙인 등 규모는 14,404명으로 2016년 대비 약 17.8% 감소, 거리 노숙인 중 여성은 2016년에 비해 증가(6.4%→9.2%)하였다. 즉, 노숙인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설 입·퇴소를 반복하는 회전문 현상, 만성화가 빈번하여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높은 실업률, 주거여건 악화 등 불리한 정책환경으로 노숙으로 전락하기 쉬운 주거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숙인지원정책은 노숙인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는 근로와 생활기술 습득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건강상 장기 입소가 필요한 노숙인은 재활 및 요양시설에 입소해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노숙인은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노숙에 이르는 배경, 노숙 이후의 경로, 노숙의 위험성과 어려움, 일 경험과 경제적 상황, 질병의 유형 등이 성별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성별 차이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노숙인지원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숙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노숙인 분포와 상태에 비해 여성 노숙인시설 분포는 불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노숙인은 폭력 및 착취에 취약하고, 정신질환 유병비율이 높아 신체, 정신, 심리적 지원을 더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노숙인실태조사’, 「노숙인복지법」 등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여성 노숙인 시설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성 입소 노숙인의 고령화 및 가족동반 노숙 등으로 인해 의료 분야·돌봄 분야에서 노숙인의 성별과 노숙인의 고령화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7개 과제를 개선권고 하였다.

#### 4)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하고, 2019년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른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 사업의 정책대상은 돌봄과 의료의 복합적 수요가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등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경우 공통프로그램의 마련은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높고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다. 또한, 돌봄노동이 주로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돌봄인력 확보 등 구체적 지역사회통합돌봄운영안의 마련에 있어 성별에 따른 필요 자원과 역할 등 성인지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사업 수혜에 대한 성별 분석을 기초로 대상자별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여성의 돌봄 부담 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여성의 욕구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요양 등 돌봄노동의 직종별 위계를 바탕으로 공급인력을 설계하면서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저임금 노동으로 전환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여성 노인은 자녀, 이웃, 친구 등 다차원적인 정서적,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성 노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고립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1)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욕구 평가 기준 개선, 2) 양질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 3)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성인지성 강화, 4)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

### 5) 귀농·귀촌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시민의 농촌 순유입 지속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기대,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 등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1차·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귀농·귀촌 단계별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귀농·귀촌 준비지원, 농촌지역 내 취·창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 지원, 영농정착 지원금, 농지 우선 제공, 거주환경조성, 귀농귀촌 단계별 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귀농가구소득 증대, 생활만족도 증대 등과 같은 정책 목표가 실현되려면 가족형태, 가족주기, 가구원의 연령과 성별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농업·농촌의 성별화된 구조는 토지와 주택, 일자리, 사회활동과 관계 등 기회와 자원 접근성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

이에 귀농·귀촌지원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첫째, 여성의 귀농·귀촌 주도성이 증가하는 현실과 남성 가구주 가구 중심의 정책·제도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 특히 비혼, 1인가구, 여성 귀촌인의 정책 접근성이 취약하였다. 둘째,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여성 참여율 높으나 정책만족도는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의 정보 획득은 공공기관 의존도가 높은 반면, 실제 공적 정보제공 서비스는 미흡하였다. 넷째, 여성의 귀농·귀촌 교육 참여율은 높지 않았다. 다섯째, 대다수의 여성 귀농·귀촌인이 마을·지역에 소속감을 못 느끼고 있었고, 그중에는 이주 후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방안을 법령, 통계, 지원체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

## 6) 정신건강증진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최근 국민의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예방 활동을 통한 국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의 경우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이나 상태에서 성별 차이가 발견되며,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정신건강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 및 생애주기별 활동 특성과 연계한 정신건강 위해요인 등을 분석하여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을 제외한 대다수의 정신건강 문제들이 남자 아동·청소년보다 여자 아동·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증양부처에서 측정하는 정신건강 문제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자와 아동·청소년인 내담자의 성별 매칭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와 사업들을 크게 1)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 2)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프라 및 제공 대상 범위 확대, 3) 정신건강 상담 강화, 4)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 역량 강화, 5) 정신건강 저해 약물에 대한 접근성 제한 조치 강화로 구분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

## 7) 생활체육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2021년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클럽법」 제정을 통해 스포츠권이 확립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패러다임의 법적 기반을 획득하여 모든 개인의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생활체육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생활체육지원정책은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체육시설 조성 및 지원, 지도자 양성 및 배치, 스포츠클럽 육성에 중점을 두며, 국민생활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체육지원정책은 다양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관계와 리더십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활동 참여종목 다양성 및 시설 접근성 등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체육활동에서의 성별 격차와

성별 전형성을 파악하고, 양성평등한 생활체육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생활체육지원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년) 규칙적 체육활동 미참여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형 사업에 대한 여성의 선호도가 남성보다 높다는 점에서 여성 대상 교육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필요가 있었다. 특히 대회 지원 사업의 대회 운영 종목은 양성 적합/선호 종목과 남성 적합/선호 종목 중심이 많은 실정으로 여성 적합/선호 종목은 매우 적고,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종목으로 인식 되어온 종목에 한정된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 성평등한 사업 지원을 위한 성과지표 관리체계 개선, 2) 여성 선호도가 높은 교육형 사업 지원 확대, 3) 교육형 사업의 생활체육 미참여자 비율 확대, 4) 여성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형 씨름지원사업 확대, 5) 대회 연계 교육형 사업 확대, 6) 여성 참여 리그 및 대회 확대, 7) 여성의 대회형 씨름지원사업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5개 과제를 개선권고하였다.

## 8) 사회보장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보장 체감도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주기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특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분야별 핵심 분야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노동, 실업, 교육, 일·생활, 은퇴 등 생애주기별 핵심영역별 위험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에 포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하여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과제에서 양성평등 관점이 부족하고, 각 사회보장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여성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둘째, 근로빈곤과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의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빈곤과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체 공적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는 여성보다 남성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장기요양 등 노인돌봄과 지역사회거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 노인이 가용할 수 있는 돌봄 자원(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 배우자 돌봄을 받지 못함)이 남성 노인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돌봄일자리의 경우, 장기요양 일자리가 성평등한 일자리가 되지 못하는 원인은 최저임금으로 수렴되고 있는 임금수준에 있었다. 이러한 현황 및 문제점을 고려하여 1)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2) 근로빈곤과 근로장려금, 3) 노후빈곤과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 4) 장기요양 등 노인돌봄과 지역사회거주, 5) 돌봄일자리(장기요양 일자리를 중심으로) 분야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

### 9) 생활체감형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생활체감형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는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정책 중 사회적·경제적 편견이 반영되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중요하고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개선과제를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2년 생활체감형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우체국 편의시설 개선’,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체국 편의시설의 성별 구분 설치 등 편의시설에 대한 성인지적 고려가 필요하나 현재 우체국 편의시설을 양성평등하게 설계·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양성평등한 우체국 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휴게실, 탕비실, 샤워 및 탈의실, 화장실 등에 성별 구분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특성,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성평등한 우체국 편의시설 구축을 위해 행정규칙 제정 및 「우정건축물 설계 기준」의 편의시설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하여 월경 건강 및 권리, 피임, 성매개감염병, 임신전 검사, 난임 지원, 임신 중단 등에서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1) 월경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해서는 월경건강 관련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내실화 및 일회용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노출독성 평가 등 추가 연구를 실시하며, 생리대 위해성 평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2) 피임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청소년 관련 센터를 통한 청소년 대상 피임 교육 및 피임도구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3) 성매개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성매개감염병 관련 상담, 검사, 치료 등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축적과 남성청소년 HPV 무료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4) 임신전 검사와 관련해서는 임신전 필수 검사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각 지자체별 임신전 검사 사업의 격차 해소를 위해 표준안을 제시하여 각 지자체별 임신 전 검사 사업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5) 난임 지원과 관련해서는 난임·우울증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난임·우울증센터의 무료 상담 대상자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배우자, 조부모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 등이 개선안으로 제시되었다. 6) 임신중단과 관련해서는 유산유도제 도입과 국가필수 의약품 지정 관련 TF를 구성하여 약물 임신중단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고, 불법유통 약품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이 개선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7) 전 사회적으로 성·재생산 건강 관련 정책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2019년~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이행점검

2019~2021년에 수행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기관에 정책 개선권고를 한 258개 과제에 대해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점검방법은 2023년 2월에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 보고' 자료와 2022년 이행점검 실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2019년 개선권고 과제는 79.0%, 2020년 과제는 68.9%가 이행완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개선권고 과제의 경우는 대부분 개선조치 기한이 2023년 6월 이후이지만 24.7%가 2022년 중에 조기 이행완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나 개선기한이 되었음에도 이행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 2019년~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권고 이행점검 결과  
(단위: 개, (%))

특정평가 수행연도	개선연도 개선권고 과제 수(A)	2019년 완료	2020년 완료	2021년 완료	완료합계(B)	이행중(기타) <sup>1)</sup> (C=A-B)
2019	81	39	18	7	64(79.0)	17(불수용 7)
2020	104	-	37	36	73(70.2)	31(불수용 3)
2021	73	-	-	18	18(24.7)	55(불수용 0)

주1 : 이행중 과제 수에는 기타(불수용 또는 사업중단으로 인해 이행 불가능한) 과제 수 포함

주2 : '-'는 해당 없음 의미

주3 : 2019년 불수용 과제 7개 중에는 사업종료 과제 1개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각 행정기관이 제출한(2023.2)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 및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활용

## 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016년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에 총 23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역자치단체 12개, 기초자치단체 6개, 시·도교육청 5개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기관 중에서 12개 기관(70.6%)이 실시하였고,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6개 기관 중에서 6개 기관(2.7%), 시·도교육청은 전체 17개 중에서 5개 기관(29.4%)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지방자치단체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2년)

기관명	정책명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대구광역시	대구시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창업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문화시설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전광역시	시설설치사업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울산광역시	울산시 청소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경기도	경기도 전통시장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강원도	강원도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전라남도	전남 관광콘텐츠 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경상남도	경상남도 문화전시 공공시설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창업 인프라조성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 아라뱃길 청년창업 공간 운영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구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강화군	창업한 청년 사업강화 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경기도 용인시	문화도시 조성 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인천광역시 교육청	남성육아휴직 실태 및 개선방안
경상북도 교육청	교가·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
경상남도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특정성별영향평가
전라남도 교육청	학생생활규정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지역 초·중·고 교가 및 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

## 6 2022년 성별영향평가 과제

### □ 성별영향평가 자체교육 참여 확대

2022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에서 교육 참가 인원이 2021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교육 참가 인원이 2021년에 비해 31,794명이 감소하였다. 내실있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체교육 참가인원이 2021년 93,344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 60,487명으로, 32,857명이 감소하여 그 감소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자체 교육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22년 성별영향평가 교육에서 실무담당자의 교육 참여자가 2021년에 비해 119명이 감소하였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2021년에 비해 5명 증가하였다.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담당자의 교육 이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24〉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 실적(2020~2022)

(단위: 명)

연도	직급별 교육 참가 인원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실무담당
	합계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기타)		
2022	66,679	6,100	60,579	136	376
2021	98,473	6,483	91,990	131	495
2020	87,001	6,121	80,880	131	351

## □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확대

2022년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기관의 비율은 광역자치단체는 100.0%, 기초자치단체는 98.7%, 시·도교육청은 94.1%이다. 기초자치단체는 2022년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기관이 없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1개 기관이 설치 근거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총 17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기관이 모두 구성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는 226개 기관 중 194개 기관이 구성하였고, 시·도교육청은 17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2022년에 각각 3개 기관, 2개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기관 수에 비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 수는 적다. 내실있는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을 위해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기관들은 위원회 구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I

## 개 요

- 
1.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총괄
  2.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현황
  3. 성별영향평가 지원체계 현황





## 1

##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총괄



##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1) 법령·계획·사업별 추진 결과

2022년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평가는 전체 306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총 27,109개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sup>1)</sup> 2022년에는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추진과제가 30,659개였던 것에서 3,550개가 감소하였다. 감소된 과제는 주로 법령 성별영향평가가 감소된 것에 따른 것이다(2021년 22,886개, 2022년 19,594개).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평등한 조치사항이 필요하지 않아 '개선사항 없음'이라고 통보된 과제는 전체 27,109개 중에서 11,926개(44.0%)였으며, 각 기관이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자체개선안에 동의한 과제는 6,068개(22.4%), 여성가족부(중앙행정기관)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별도로 정책개선 의견을 통보한 '개선 의견'은 2,485개(9.2%)로 나타났다. '개선 의견'으로 통보된 과제 2,485개 중에서 85.4%인 2,123개 과제가 정책 소관기관으로부터 수용되었다. 따라서 2022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자체개선안을 제출한 6,068개 과제와 개선 의견을 수용한 2,123개의 과제, 총 8,191개 과제에 대해서 정책개선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를 대상과제 유형별로 보면 첫째,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2022년에 총 19,594개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것은 2022년 전체 추진과제의 72.3%에 해당된다. 그리고 2021년 22,886개 과제에 비해서 3,292개 과제가 감소한 것이다.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성차별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된 과제가 10,956개(55.9%)이고, 소관 기관이 법령 성별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자체개선안 동의'한 과제가 611개(3.1%)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중앙행정기관)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방자치단체)이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별도의 정책개선

1)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에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대상 과제로 통보되거나 법령·정책이 중단된 과제 6,630개(24.5%)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법령 과제가 6,629개로 99.9%를 차지한다. 제·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법령은 원칙적으로 모두 성별영향평가 대상이지만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금·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등은 체크리스트만 작성하고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은 제외된다.

의견을 통보한 ‘개선의견’ 과제는 1,398개(7.1%)였으며, 이 중에서 1,086개(77.7%) 법령 과제에 대한 개선의견이 수용되어,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정도는 양호한 편이다.

둘째, 계획 성별영향평가는 2022년에 총 127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이것은 2022년에 추진된 전체 과제의 0.5%에 해당된다. 그리고 2021년에 99개 과제에 비해서 28개 과제가 증가한 것이다.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된 과제는 29개(22.8%),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된 과제는 27개(21.3%),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과제는 70개(55.1%)로 나타났다.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68개(97.1%)가 소관 기관으로부터 수용되어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2021년에 비해서 과제수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계획 과제 선정과 평가 내용이 상당히 개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된 과제가 2021년에는 31.3%였던 것에서 2022년에는 22.8%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계획을 적절하게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업 성별영향평가는 2022년에 총 7,388개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추진과제의 27.3%에 해당된다. 2021년 7,674개 과제에 비해서 286개 과제가 감소한 것이다. 추진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된 과제가 941개(12.7%)였으며,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된 과제는 5,430개(73.5%),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과제는 1,017개(13.8%)로 나타났다.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된 과제의 비중이 법령이나 계획 성별영향평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 이것은 각 기관의 사업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공무원이 대상정책에 대한 성평등한 조치사항을 적절하게 작성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에서 95.3%가 소관 기관으로부터 수용되어 2021년보다 3.9% 포인트 수용률이 증가하였다.

〈표 I-1〉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추진 결과

(단위: 개(%))

구분 (대상기관수)	대상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전체(306)	27,109(100.0)	11,926(44.0)	6,068(22.4)	2,485(9.2)	2,123(85.4)	6,630 (24.5)	
법령	19,594 (100.0)	10,956(55.9)	611 (3.1)	1,398 (7.1)	1,086(77.7)	6,629 (33.8)	
계획	127 (100.0)	29(22.8)	27(21.3)	70(55.1)	68(97.1)	1 (0.8)	
사업	7,388 (100.0)	941(12.7)	5,430(73.5)	1,017(13.8)	969(95.3)	0 (0.0)	
중앙 행정 기관 (46)	계	1,743(100.0)	1,296(74.4)	92(5.3)	93(5.3)	74(79.6)	262 (15.0)
	법령	1,595 (100.0)	1,269 (79.6)	30 (1.9)	34 (2.1)	21 (61.8)	262 (16.4)
	계획	-	-	-	-	-	-
	사업	148 (100.0)	27 (18.2)	62 (41.9)	59 (39.9)	53 (89.8)	0 (0.0)
광역 자치 단체 (17)	계	3,116(100.0)	1,002(32.2)	1,078(34.6)	310(9.9)	274(88.4)	726 (23.3)
	법령	1,874 (100.0)	921 (49.1)	78 (4.2)	149 (8.0)	123(82.6)	726 (38.7)
	계획	31 (100.0)	5 (16.1)	7 (22.6)	19 (61.3)	19(100.0)	0 (0.0)
	사업	1,211 (100.0)	76 (6.3)	993 (82.0)	142 (11.7)	132 (93.0)	0 (0.0)
기초 자치 단체 (226)	계	21,496(100.0)	9,353(43.5)	4,770(22.2)	2,045(9.5)	1,740(85.1)	5,328 (24.8)
	법령	15,586 (100.0)	8,558 (54.9)	495 (3.2)	1206 (7.7)	935(77.5)	5,327 (34.2)
	계획	95 (100.0)	23 (24.2)	20 (21.1)	51 (53.7)	49(96.1)	1 (1.1)
	사업	5,815 (100.0)	772 (13.3)	4,255 (73.2)	788 (13.6)	756 (95.9)	0 (0.0)

구분 (대상기관수)	대상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수용률	수용률	
시·도 교육청 (17)	계	754(100.0)	275(36.5)	128(17.0)	37(4.9)	35(94.6)	314 (41.6)
	법령	539(100.0)	208(38.6)	8(1.5)	9(1.7)	7(77.8)	314 (58.3)
	계획	1(100.0)	1(100.0)	0(0.0)	0(0.0)	-	0 (0.0)
	사업	214(100.0)	66(30.8)	120(56.1)	28(13.1)	28(100.0)	0 (0.0)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주2 : b)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주3 : c)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원안에 동의한 과제

주4 : d)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개선 의견을 제시한 과제

주5 : e)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수용' 및 '일부수용' 과제(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개선의견 과제 수 × 100)

주6 : f)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주7 : '-'는 해당 없음 의미

## 2)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특징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과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세부사업이다(법 제5조 및 영 제2조).

법령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국가기밀에 관한 법령 제·개정안 등은 체크리스트만 작성하고, 이러한 제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제·개정 추진 법령은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계획 성별영향평가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성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 소관 계획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 단체는 기관별로 해당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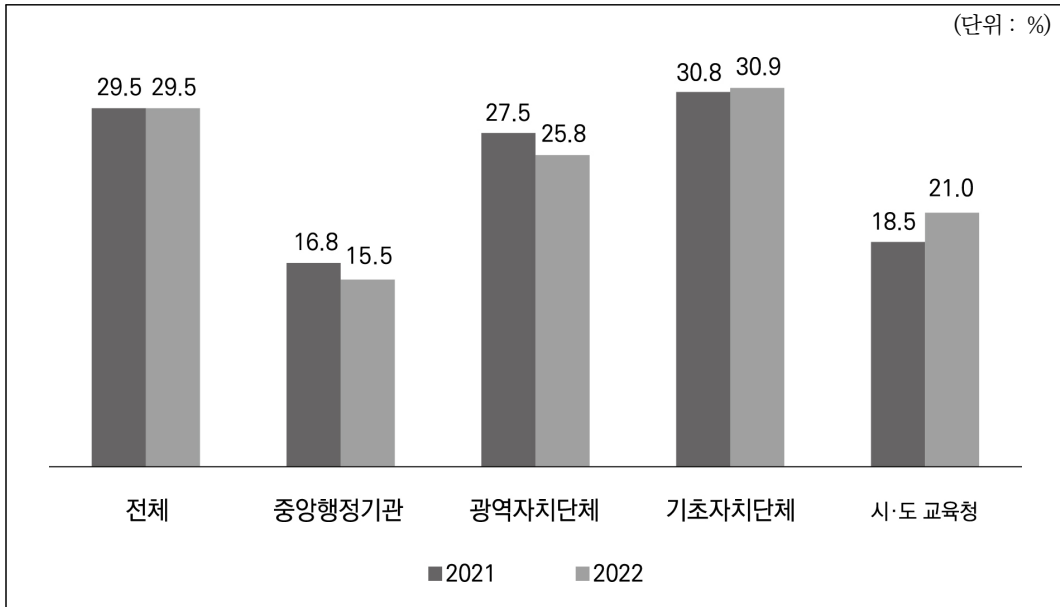
사업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정책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부처별 성평등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고, 각 부처는 이 사업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협의한 후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목표와 지역성평등지수 향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2022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통해서 제시한 공통주제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2022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청년지원 사업, 안전 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통주제는 2021년에 이어서 동일하게 제시된 것이다. 한편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3년 이상 연속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대상과제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한 일환이었다.

2022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특성을 보면 첫째, 신규로 시행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과제 비중은 전체 사업과제의 29.5%를 차지하였고, 계속사업 과제는 70.5%로 나타났다. 신규사업 과제는 2021년 29.5%와 동일하였다. 계속사업 과제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서를 2022년에 신규로 작성한 과제는 전체 사업 추진과제의 33.2%였다.

〈표 I-2〉 2022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특성-신규/계속사업, 기관 평균 과제 수 (단위: 개(%))

구분(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신규사업	계속사업		평균 과제 수
			신규작성	지속작성	
전 체 (306)	7,388 (100.0)	2,179 (29.5)	2,450 (33.2)	2,759 (37.3)	24.3
중앙행정기관 (46)	148 (100.0)	23 (15.5)	64 (43.2)	61 (41.2)	3.7
광역시자치단체 (17)	1,211 (100.0)	312 (25.8)	385 (31.8)	514 (42.4)	71.2
기초자치단체 (226)	5,815 (100.0)	1,799 (30.9)	1,940 (33.4)	2,076 (35.7)	25.7
사·도교육청 (17)	214 (100.0)	45 (21.0)	61 (28.5)	108 (50.5)	12.6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관리번호로 등록된 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그림 I -1]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신규사업 과제 비율(2021, 2022)

둘째,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대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분류해보면, 여전히 사회복지 분야가 2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13.0%), 일반공공행정(12.7%), 교육(12.1%), 공공질서 및 안전(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비중의 높은 순서는 2021년과 다소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21년과 변함이 없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에서는 일부 변화가 있었다. 2021년에는 일반공공행정 > 교육 > 문화체육관광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202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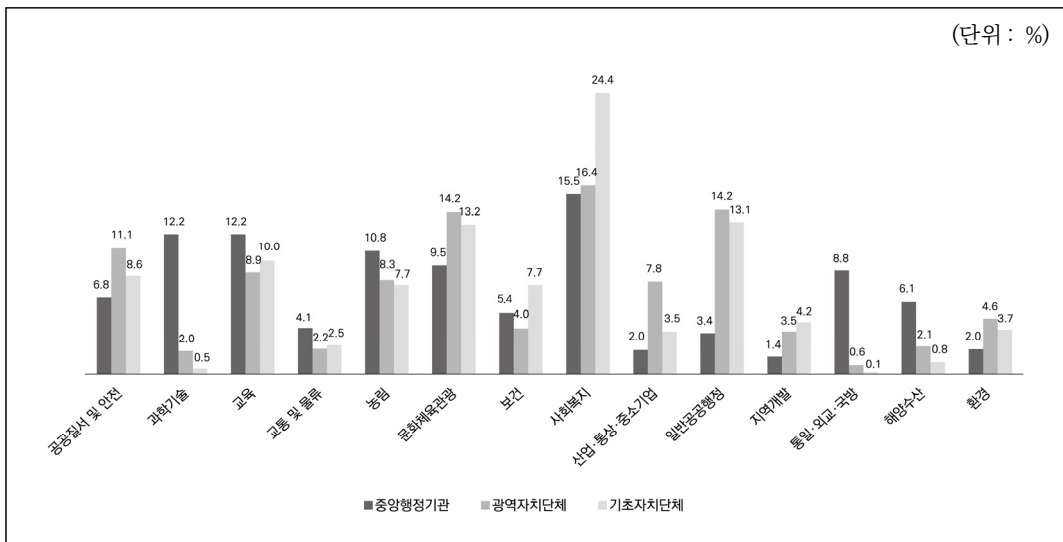
이를 다시 기관유형별로 정책분야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분야가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정책분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은 과학기술분야와 교육분야가 각각 12.2%, 광역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분야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각각 14.2%, 기초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분야가 13.2%, 일반공공행정분야 13.1%를 차지하였다.

〈표 I-3〉 2022년 정책 분야별, 기관 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정책분야	계 <sup>a)</sup>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전 체	7,388 (100.0)	148 (100.0)	1,211 (100.0)	5,815 (100.0)	214 (100.0)
공공질서 및 안전	649 (8.8)	10 (6.8)	135 (11.1)	500 (8.6)	4 (1.9)
과학기술	73 (1.0)	18 (12.2)	24 (2.0)	31 (0.5)	0 (0.0)
교육	897 (12.1)	18 (12.2)	108 (8.9)	584 (10.0)	187 (87.4)
교통 및 물류	179 (2.4)	6 (4.1)	27 (2.2)	146 (2.5)	0 (0.0)
농림	562 (7.6)	16 (10.8)	100 (8.3)	446 (7.7)	0 (0.0)
문화체육관광	963 (13.0)	14 (9.5)	172 (14.2)	765 (13.2)	12 (5.6)
보건	506 (6.8)	8 (5.4)	49 (4.0)	447 (7.7)	2 (0.9)
사회복지	1645 (22.3)	23 (15.5)	198 (16.4)	1419 (24.4)	5 (2.3)
산업·통상·중소기업	304 (4.1)	3 (2.0)	95 (7.8)	206 (3.5)	0 (0.0)
일반공공행정	940 (12.7)	5 (3.4)	172 (14.2)	761 (13.1)	2 (0.9)
지역개발	289 (3.9)	2 (1.4)	42 (3.5)	245 (4.2)	0 (0.0)
통일·외교·국방	24 (0.3)	13 (8.8)	7 (0.6)	4 (0.1)	0 (0.0)
해양수산	82 (1.1)	9 (6.1)	26 (2.1)	47 (0.8)	0 (0.0)
환경	275 (3.7)	3 (2.0)	56 (4.6)	214 (3.7)	2 (0.9)

주 : 정책 분야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시 선택 분야에 따라 맞춤형 점검포인트가 제시됨에 따라 기관에서 기재한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상 정책 분야 분류에 근거하고, 국방 분야는 통일·외교 분야에 추가하여 전체 14개 분야로 분류함.

주 a) 2021C서울마포009 정책 분야 누락하여 수기 입력



[그림 I-2] 정책분야별,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22)

다음으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목표와 지역성평등지수 향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공통 주제 ‘① 2022년에 신규로 수행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 ② 사업분야(일자리 관련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청년지원 사업, 안전사업)’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다.

광역자치단체가 공통주제를 선정한 과제 수는 563개로 전체 사업 과제수 1,211개의 46.5%였고, 기초자치단체는 2,486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전체 사업 과제수 5,815개의 42.8%였다. 그중 광역자치단체가 ‘① 2022년에 신규로 수행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을 선정한 과제수는 61개로 전체 과제 수의 5.0%, ② 사업분야(일자리 관련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청년지원 사업, 안전사업)’ 관련 사업은 502개로 전체 과제 수의 41.5%이다. 기초자치단체는 ‘① 2022년에 신규로 수행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을 선정한 과제수는 448개로 전체 과제 수의 7.7%였고, ② 사업분야(일자리 관련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청년지원 사업, 안전사업)’ 관련 사업은 2,038개로 전체 과제 수의 35.1%였다. 교육청은 공통주제를 73개를 선정하였는데, 전체 과제 수 214개의 34.1%였다. 그 중 공약사업 28개(13.1%), 일자리관련 사업 45개(21.0%)였다.

〈표 I -4〉 2022년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공통주제 대상 과제 수 (단위: 개(%))

	대상과제수 <sup>a)</sup>	공통주제1	공통주제2			
		공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청년지원 사업	안전 사업
지방자치단체 전체	7,026	509 (7.2)	1,022 (14.5)	183 (2.6)	551 (7.8)	784 (11.2)
광역자치단체	1,211	61 (5.0)	212 (17.5)	41 (3.4)	109 (9.0)	140 (11.6)
기초자치단체	5,815	448 (7.7)	810 (13.9)	142 (2.4)	442 (7.6)	644 (11.1)

주 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서 관리번호로 등록된 사업성별영향평가 과제(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중에서 교육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상과제 수



〈표 I-5〉 2022년 시·도교육청의 공통주제 대상 과제 수

(단위: 개(%))

	대상과제수 <sup>a)</sup>	공통주제1	공통주제2
		공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시·도교육청	214	28 (13.1)	45 (21.0)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서 관리번호로 등록된 사업성별영향평가 과제(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중에서 교육청에 해당하는 대상과제 수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총 1,214개 추진하였으며, 2021년 1,152개 과제에 비해서 62개 증가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경찰청(40개), 국방부(6개), 보건복지부(3개), 여성가족부(2개), 농촌진흥청(1개) 등 5개 기관이 52개 과제를 추진하여 총 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4.5%를 차지하였다. 2021년 8개 기관이 64개 과제를 추진했던 것에 비해, 기관수와 과제수 모두 감소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230개), 인천광역시(55개), 대전광역시(40개), 충청북도(18개), 경상남도(13개), 부산광역시(12개) 등 14개 기관이 388개를 추진하여 전체의 32.0%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2021년에 14개 기관이 170개를 추진했던 것에 비해서 218개 과제가 증가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동구(159개), 충청북도 청주시(44개), 인천광역시 남동구(41개), 부평구(40개), 서구(32개) 등 67개 기관이 719개를 추진하여 전체의 59.2%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2021년에 77개 기관이 835개를 추진했던 것에 비해서 추진기관수나 과제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한편 교육청도 6개 기관이 55개 과제를 추진하여, 2021년에 8개 기관이 83개 과제를 추진하였던 것에 비해서 감소하였다. 2022년 교육청 추진과제는 전체의 4.5%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2022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는 2021년에 비해서 광역자치단체의 과제수 확대가 돋보이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2021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자체 가이드라인 배포, 자체 홍보물 검토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곳(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도 있어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을 통한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I-6〉 2022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구분(기관수)	과제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개선사항 있음 <sup>c)</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d)</sup>		기타 <sup>e)</sup>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전체 (92)	1,214 (100.0)	716	(59.0)	483	(39.8)	425	(88.0)	15	(1.2)
중앙 (5)	52 (100.0)	13	(25.0)	25	(48.1)	22	(88.0)	14	(26.9)
광역 (14)	388 (100.0)	227	(58.5)	161	(41.5)	143	(88.8)	0	(0.0)
기초 (67)	719 (100.0)	448	(62.3)	270	(37.6)	242	(89.6)	1	(0.1)
교육청 (6)	55 (100.0)	28	(50.9)	27	(49.1)	18	(66.7)	0	(0.0)

- 주1 : a) 성별영향평가 대상인 정부홍보사업 중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 주2 : b)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 주3 : c)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및 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 주4 : d)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수용' 및 '일부수용' 과제(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 / 개선의견 과제 수 × 100)
- 주5 : e) 2021년 12월말 현재,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진행 중인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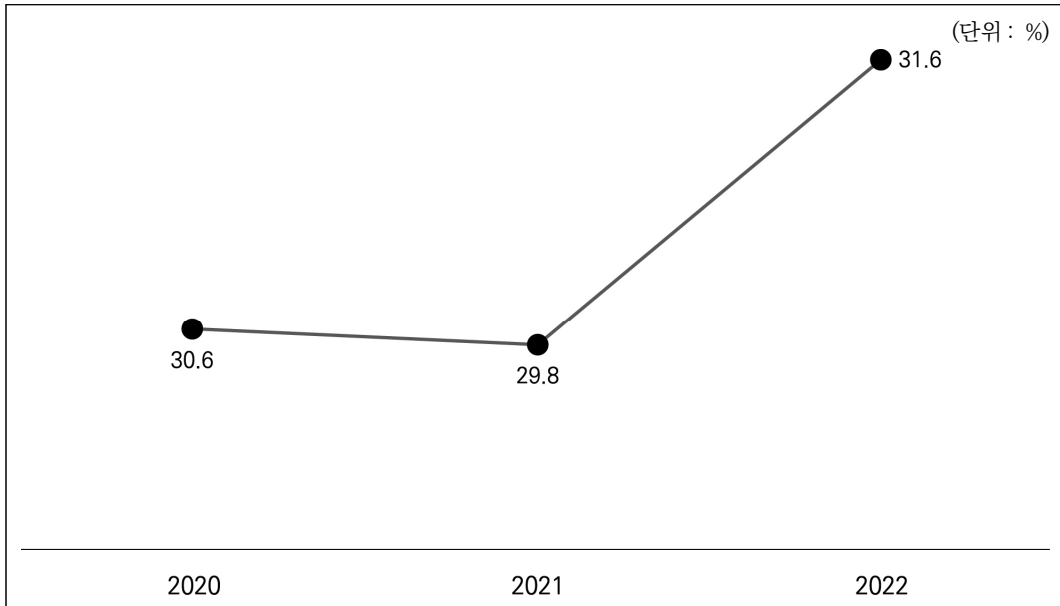
다음으로 2022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검토의견 통보현황을 보면, 전체 1,214개 과제 중 성차별적인 개선사항이 없어서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된 과제가 716개(59.0%)로 나타났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개선사항 있음'으로 통보된 과제는 483개(39.8%)로 나타났다. '개선사항 있음'으로 통보된 과제의 88.0%가 소관 기관으로부터 개선을 하겠다고 수용되었다. 기관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7에 제시하였다.

## 나.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특성

### 1)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2022년에는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은 과제 수의 양적 증가에서 벗어나 내실있는 정책 개선안 도출에 집중하고자 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개선과제 도출률이

29.8%에서 31.6%로, 1.8%포인트 증가하였고, 개선의견 수용률은 2021년 85.1%에서 2022년 85.5%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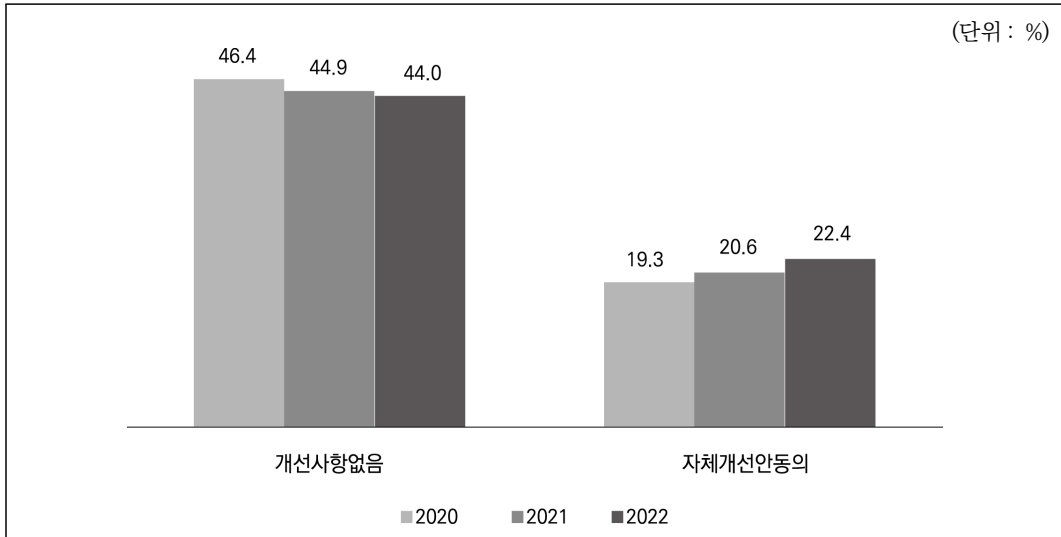


[그림 I-3]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도출률(2020~2022)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하는 과제를 대상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선정된 대상과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2022년에는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2021년 35,623회였던 컨설팅을 2022년에는 35,737회 실시하였다. 특히 대상과제 선정 컨설팅을 강화하였는데, 2021년 8,030회 컨설팅 지원을 했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8,884회의 컨설팅을 추진하여 대상과제 컨설팅 지원이 854회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20년 ‘개선사항 없음’ 비율이 46.4%, 2021년 44.9%, 2022년 44.0%로 ‘개선사항 없음’ 대상 과제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그리고 선정된 대상 과제에 대해 적절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자체 개선안에 대한 동의’ 비율도 2020년 19.3%, 2021년 20.6%, 2022년 22.4%로 높아지고 있다.

〈표 I-7〉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 컨설팅 지원 실적(2020-2022) (단위: 개,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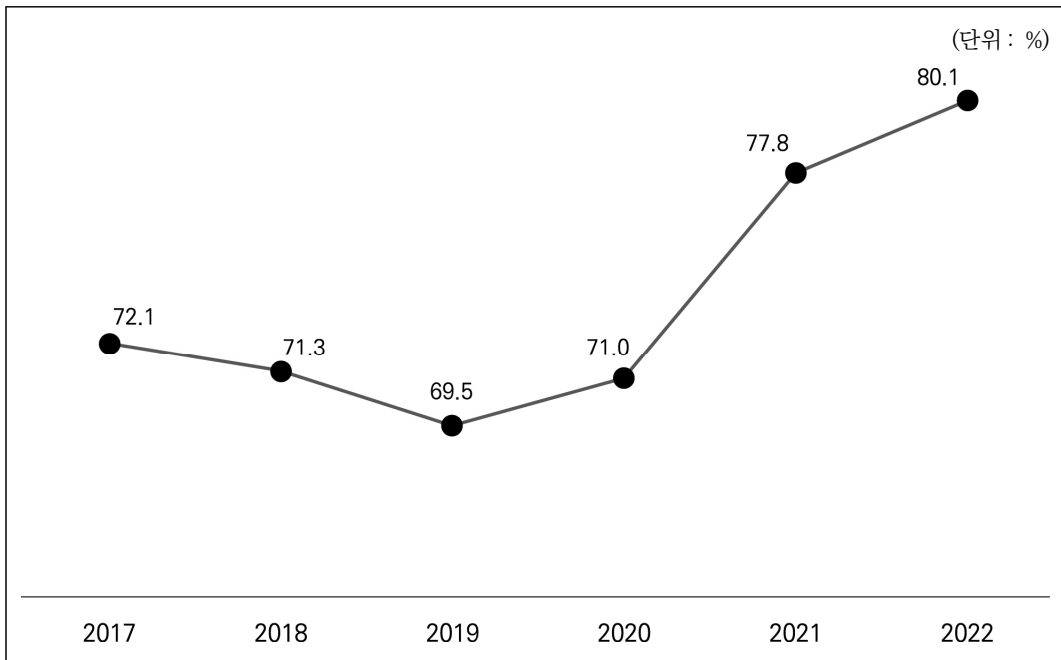
구분(컨설팅 과제 수)		합계(회) (A+B+C+D)	과제선정(A)	평가서 작성 (B)	검토의견 (C)	기타 (D)
2022	26,048	35,737(100.0)	8,884(24.9)	17,459(48.9)	8,947(25.0)	447(1.3)
2021	24,873	35,623(100.0)	8,030(22.5)	17,440(49.0)	9,993(27.5)	360(1.0)
2020	26,027	33,302(100.0)	7,446(22.4)	15,515(46.6)	9,633(28.9)	708(2.1)



[그림 I-4] 개선사항 없음 비율 및 자체개선안 동의율(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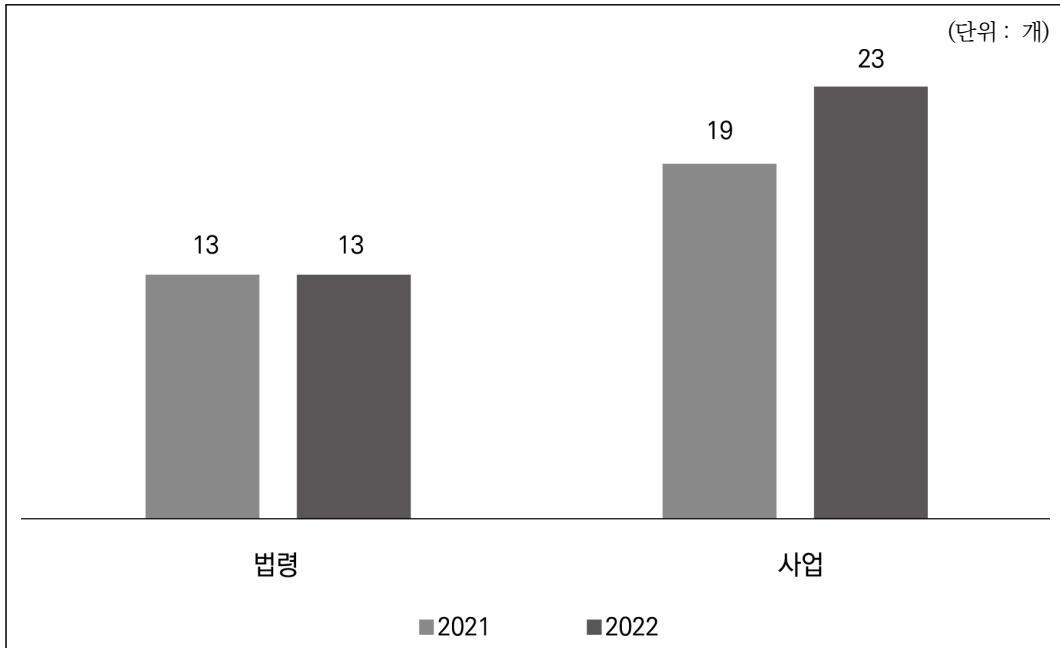
## 2)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이행률 제고

2022년 이행점검 대상은 법령 성별영향평가(2012년~2022년 미이행 과제), 계획·사업 성별영향평가(2021~2022년 미이행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2013~2021년 미이행 과제)였다. 2022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점검결과, 중앙행정기관의 개선이행률이 높아졌다.



[그림 I-5] 중앙행정기관 정책 개선이행률(2017-2022)

또한 2022년에 개선이행률 100.0%인 중앙행정기관의 수가 2021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22년 법령 개선이행률이 100.0%인 기관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환경부 등 총 13개(34.2%)로, 2021년 이행률이 100.0%인 기관이 13개 기관이었던 것과 동일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개선이행률이 100.0%인 기관은 해양수산부(6개), 교육부(3개), 농촌진흥청(3개) 등 총 23개 기관으로, 2021년 19개 기관 보다 4개 늘었다. 개선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관이 노력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의 성과가 특정 기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I-6]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사업 정책 개선이행률 100.0% 기관 수

### 3)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증가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수가 증가하였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및 사업 중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주요 정책,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일반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연구기관 등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형태이다.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는 9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차원에서는 총 23개 과제가 이루어졌다. 2021년에 비해 특정성별영향평가 전체 과제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는 현재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 국민취업지원제도, 귀농·귀촌지원정책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장애인정책, 청년 대상 정책, 문화 관련 정책 등이 다양한 정책을 다루었는데,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등 청년과 관련한 정책이 23개 과제 중 7개 과제였다.

〈표 I -8〉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기관 및 과제 수(2020-2022)

(단위: 개)

연도	계	중앙	광역		기초		교육청	
			기관	과제수	기관	과제수	기관	과제수
2022	32	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12	인천시 연수구,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 강화군, 경기도 용인시	6	인천, 경북, 경남, 전남, 제주	5
2021	23	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제주	10	인천시 부평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3	서울, 인천	2

## 2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현황



### 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 1)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및 시행령 제10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제11조(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과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주요 기능은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것이다.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주요 기능

-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에산서 또는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2년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정부위원 7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8명, 총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교육부 정책기획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국무조정실 교육문화 여성정책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촉직 위원은 교육인 4명, 연구기관 2명, 법률전문가 1명, 청년 1명으로 구성하였다. 2022년에는 2021년과 비교해



교육인과 연구기관의 위원 수에 변동이 있고, 시민단체 위원 대신 청년 위원을 포함 하였다.<sup>2)</sup>

2022년에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총 3회에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출석회의 1회, 서면회의 2회로 개최되었다. 주요 안건은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안)과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안)에 대해 심의·조정을 하였다.

〈표 I-9〉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일정	주요 심의·조정 내용
1차 본회의(출석)	2022.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제1차 개선권고(안)</li> <li>•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li> </ul>
2차 본회의(서면)	2022.7.2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안)</li> <li>•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2차 개선권고(안)</li> </ul>
3차 본회의(서면)	2022.11.24.~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제3차 개선권고(안)</li> </ul>

## 2)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고 있다.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조정하는 중앙위원회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2022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에서는 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민간위원 위촉시 현장활동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현황을 보면,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7개 기관 모두가 설치 근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2019년에 이미 모두가 제정을 완료하였다. 조례명은 모두 성별영향평가조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2021년에는 위촉직 위원이 교육인 3명, 연구기관 3명, 시민단체 1명, 법률전문가 1명이었다.

기초자치단체는 2021년 설치 현황에서 변동이 없는데, 전체 226개 기관 중에서 경기도 양평군과 경북 구미시, 전부 완주군을 제외한 223개 기관(98.7%)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3)</sup> 조례는 대다수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에 근거하고 있었고, 일부 기관은 양성평등 기본조례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한 기관도 있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은 20개였는데, 이 중에서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예, 서울 중구, 강원도 강릉시, 전남 광양시 등), 양성평등위원회에 포함한 기관도 있었다(예, 경기도 광주시, 충남 서천군 등).

한편, 시·도교육청은 17개 중에서 대구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94.1%)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1년에 15개였던 것에서 1개 교육청(서울교육청)이 증가한 것이다. 조례명은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10〉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현황

(단위: 개(%))(‘22.12.31.기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기관명	법적 근거 현황	기관명	법적 근거 현황	기관명	법적 근거 현황
전체 기관수 17(100.0)	17 (100.0)	전체 기관수 226(100.0)	223 (98.7)	전체 기관수 17(100.0)	16(94.1)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조례	서울특별시 기초 25	25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조례	부산광역시 기초 16	16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
대구광역시	성별영향평가조례	대구광역시 기초 8	8 (100.0)	대구광역시교육청	미제정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조례	인천광역시 기초 10	10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조례	광주광역시 기초 5	5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

3) 양평군은 2023년 3월 제정 예정이며, 완주군은 2023년 상반기에 제정 예정이고, 구미시는 2022년 하반기로 예정하였으나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기관명	법적 근거 현황	기관명	법적 근거 현황	기관명	법적 근거 현황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조례	대전광역시 기초 5	5 (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조례	울산광역시 기초 5	5 (100.0)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평가조례	-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조례	경기도 기초 31	30 (96.8)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조례	강원도 기초 18	18 (100.0)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충청북도 기초 11	11 (100.0)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충청남도 기초 15	15 (100.0)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전라북도 기초 14	13 (92.9)	전라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전라남도 기초 22	22 (100.0)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조례	경상북도 기초 23	22 (95.7)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조례	경상남도 기초 18	18 (100.0)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조례	-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

위와 같이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한 기관들 중에서 실제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 현황을 조사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2020년부터 17개 기관 모두 위원회 구성을 완료<sup>4)</sup>한,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6개 기관 중에서 194개 기관(85.8%)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에 191개 기관(84.5%), 2020년에 175개 기관(77.4%)이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미구성한 기관이 상당히 존재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4) 여성가족부(2021).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48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청은 전체 17개 기관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은 15개 기관(88.0%)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구성 기관은 대구시교육청, 전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이다.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인적구성 규모는 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로 구성된 기관도 있었다. 인원 규모는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스스로 정하고 있다.

〈표 I-11〉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개(%))(’22.12.31.기준)

구분	전체 기관수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기관수
전 체	260	226(86.9)
광 역	17	17(100.0)
기 초	226	194(85.8)
교육청	17	15(88.0)

한편, 기초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의 현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수준에서 소관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곳은 부산광역시 기초(16개), 대구광역시 기초(8개), 광주광역시 기초(5), 대전광역시 기초(5개), 울산광역시 기초(5개), 전라남도 기초(22개), 경상남도 기초(18개)로 나타났다. 그 외는 대체로 80%~90% 정도의 기초자치단체가 구성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충청북도 기초(11개)의 위원회 구성비율은 63.6%, 전라북도 기초(14개)는 50.0%로 낮게 나타났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운영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

〈표 I-12〉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개(%))(‘22.12.31.기준)

전체 기관수	구성	
전 체 (226)	194 (85.8)	-
서울특별시 기초 (25)	20 (80.0)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기초 (16)	16 (100.0)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기초 (8)	8 (100.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기초 (10)	9 (90.0)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광주광역시 기초 (5)	5 (100.0)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기초 (5)	5 (100.0)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기초 (5)	5 (100.0)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도 기초 (31)	24 (77.4)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하남시, 포천시
강원도 기초 (18)	15 (88.9)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충청북도 기초 (11)	7 (63.6)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남도 기초 (15)	14 (93.3)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기초 (14)	7 (5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전라남도 기초 (22)	22 (100.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기초 (23)	19 (82.6)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기초 (18)	18 (100.0)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요  
요

I  
개  
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 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역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주로 소속 실장·국장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에 각 기관에서 직접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입력한 현황을 기준으로, 45개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책임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주로 정책기획관, 기획조정관 등 기획조정 담당부서의 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46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9개 기관이 성별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2019년부터 지정, 배치하여 2022년에도 이어져 왔다. 해당기관을 보면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농림축산식품부를 들 수 있다.

실무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 책임부서의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 그에 상응하는 직위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13〉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책임부서

기관명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책임부서	기관명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책임부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 정책관	교육문화여성 정책관실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법무감사혁신 담당관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법제처	기획조정관	혁신행정감사 담당관실
외교부	조정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실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혁신행정담당관

기관명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책임부서	기관명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책임부서
통일부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실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실
국방부	군인권개선 추진단장	양성평등정책과	관세청	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실	조달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통계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촌여성정책팀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병무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부무 담당관
환경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실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실	소방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성별영향평가과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혁신행정담당관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혁신행정담당관	산림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기업환경정책과	특허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행정부무담당관실	기상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부무 담당관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기관명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책임부서	기관명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책임부서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재정 담당관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담당관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정책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주 : 2023.1월에 각 기관에서 직접 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입력한 현황 기준. 인사იდ동 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주요 역할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대상 정책의 선정, 평가서 작성, 평가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 소속 공무원 교육,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실무담당자의 주요 역할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기관별 성별영향평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주요 역할(법 제14조, 영 제12조, 지침)**

-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역할 : 아래 사무 총괄
  -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사업 포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사업 포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실무담당자의 역할 :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업무 보좌
  -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사업 포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
  -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사업 포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지원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 사항
  -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 3 성별영향평가 지원체계 현황



#### 가. 성별영향평가 교육

2022년에는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실시한 목적은 각 행정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인지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각 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관리자,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는 정책 담당 공무원, 성인지 예결산 업무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교육에 참여하였다.

2022년에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총 66,679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교육실적 98,473명에 비해서 31,794명이 감소한 것이다. 한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136명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 131명에 비해 5명 늘어났다.

2022년에는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정책교육’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실시한 교육·워크숍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희망하는 기관에 온라인 영상을 송출하여 실시한 찾아가는 교육 등이 포함된다. 정책교육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 사업 담당자 등 업무 역량 제고, 성인지 예·결산, 성인지 통계, 분야별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제도의 이해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교육 대상 및 기관 별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자체교육’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실시한 교육으로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육과 강사초빙이나 내부강사 활용, 자체 워크숍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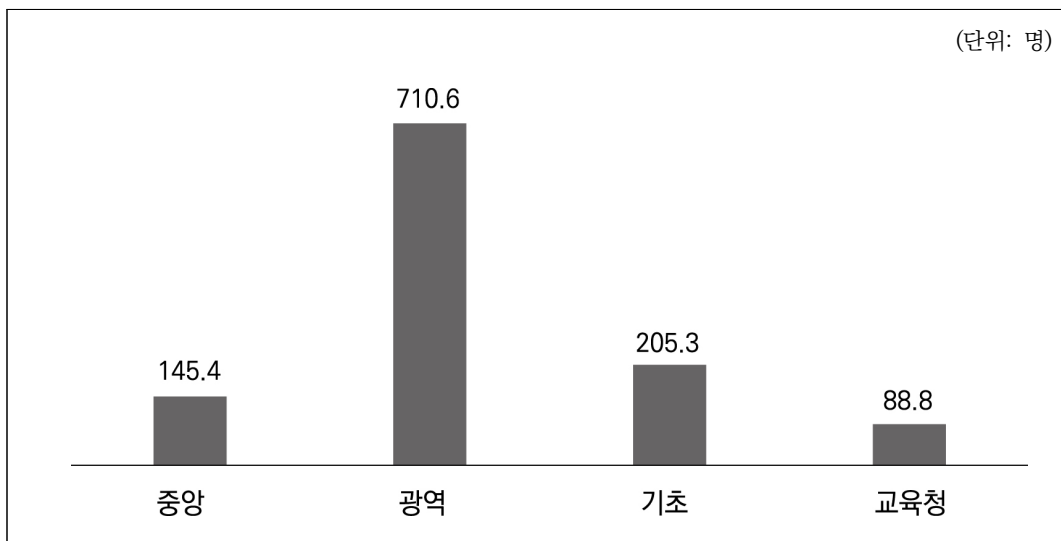
2022년에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공무원 교육의 전체적인 추진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첫째, 교육유형별로 보면, ‘정책교육’ 참여공무원은 총 6,192명으로 나타났다.

5) 각 기관별 상세한 교육실적은 ‘부록 6. 2022년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적’ 참고

한편,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주관한 ‘자체교육’에 참여한 공무원은 60,487명으로서 전체 교육 참여자의 90.7%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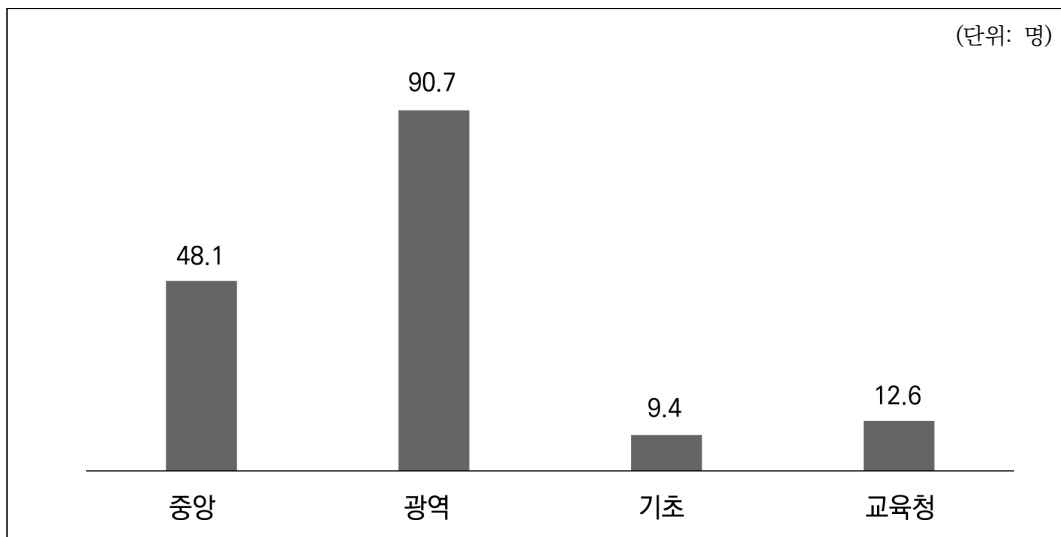
둘째, 기관유형별로 보면, 2022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자는 총 6,690명(10.0%)으로서 지난해 3.5%였던 것보다 6.5%포인트 증가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12,080명(18.1%)으로서 지난해 15.7%였던 것보다는 2.4%포인트 증가하였다. 기초자치단체는 46,399명(69.6%)으로서 지난해 79.9%였던 것보다는 10.3%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시·도교육청은 1,510명(2.3%)으로서 지난해 0.9%보다는 1.4%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를 다시 기관유형별 평균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145.4명(46개 기관별), 광역자치단체는 710.6명(17개 기관별), 기초자치단체는 205.3명(226개 기관별), 교육청은 88.8명(17개 기관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양적 규모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참여실적이 가장 높지만, 기관유형별 평균 참여실적을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매우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7] 2022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평균 참여실적

셋째, 직급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5급 이상 관리자가 6,100명(9.2%)으로 지난해 6.6%였던 것보다는 2.6%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 6급 이하 참여자는 60,579명(90.8%)으로 지난해 93.4%보다는 약 2.6%포인트 감소였다. 따라서 2022년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참여는 5급 이상 관리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참여가 다소 감소한 특징을 보였다. 이것은 2021년 교육실적과도 정반대의 경향이다.

이를 다시 직급별/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5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2,212명으로서 전체 5급 이상 관리자 교육 참여자의 36.3%를 차지하였고, 광역자치단체는 1,542명(25.3%), 기초자치단체는 2,132명(34.9%), 교육청은 214명(3.5%)이 참여하였다. 기관유형별 평균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48.1명(46개 기관별), 광역자치단체는 90.7명(17개 기관별), 기초자치단체는 9.4명(226개 기관별), 교육청은 12.6명(17개 기관별)으로 나타났다. 역시 광역자치단체가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8] 2022년 기관유형별 5급 이상 관리자 성별영향평가 교육 평균 참여실적

넷째, 각 행정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부서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136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지난해에 비해 5명 늘었다.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전체 306개 행정기관별로 각 1인씩 지정되어 있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고려할 때 약 44.4%가 참여한 것이다. 향후 보다 더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기관유형별로 보면 다소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6명이 참여하여, 전체 지정기관 46개 중에서 약 34.8%가 참여한 셈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지정기관 17개 중에서 11명이 참여하여 약 64.7%가 참여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101명이 참여하여 전체 지정기관 226개 중에서 44.7%가 참여하였다. 교육청은 8명이 참여하여 전체 지정기관 17개 중에서 47.1%가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각 기관별로 1인씩 지정되어 있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교육 참여실적은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낮은 실적을 보여주었다.

한편, 실무담당자 교육 참여실적을 보면, 2022년 기준 전체적으로 376명이 참여하여 지난 2021년에 495명이 참여했던 것에 비하면 119명이 감소한 것이다.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전체 306개 행정기관별로 각 1인씩 지정되어 있는 실무담당자를 고려할 때 122.9%가 참여한 것이다. 각 기관별로 적어도 1명 이상은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한 셈이다. 인사이동으로 실무담당자 변동이 있었거나 또는 교육에 2회 이상 참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실무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 비해서는 높은 교육 참여율을 보였다.

실무담당자 교육실적을 기관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소속 실무담당자는 31명이 참여하여, 지정된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 46명 중에서 약 67.4%가 참여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소속 실무담당자는 34명이 참여하여, 지정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실무담당자 17명 중에서 200.0%가 참여하였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실무담당자가 평균적으로 2회 이상 교육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자치단체 소속 실무담당자는 272명이 참여하여, 지정된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실무담당자 226명 중에서 약 120.4%가 참여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소속 실무담당자는 평균 1.2회 이상 교육에 참여한 셈이다. 시·도 교육청 소속 실무담당자는 39명이 참여하여, 지정된 17개 교육청의 실무담당자 17명 중에서 229.4%가 참여하였다. 교육청별 소속 실무담당자는 평균 2회 이상 교육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I-14〉 2022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전체)

(단위: 명)

구분	교육 유형	직급별 교육 참가인원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실무담당
		합계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sup>a)</sup> , 기타)		
전 체	계	66,679	6,100	60,579	136	376
	정책교육 <sup>a)</sup>	6,192	450	5,742	48	144
	자체교육 <sup>b)</sup>	60,487	5,650	54,837	88	232
중 앙	계	6,690	2,212	4,478	16	31
	정책교육	245	74	171	12	18
	자체교육	6,445	2,138	4,307	4	13
광 역	계	12,080	1,542	10,538	11	34
	정책교육	661	122	539	6	12
	자체교육	11,419	1,420	9,999	5	22
기 초	계	46,399	2,132	44,267	101	272
	정책교육	4,161	99	4,062	23	86
	자체교육	42,238	2,033	40,205	78	186
교육청	계	1,510	214	1,296	8	39
	정책교육	1,125	155	970	7	28
	자체교육	385	59	326	1	11

주1 : a) 정책교육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워크숍 등('21년 실적은 위탁교육과 찾아 가는 교육 실적의 합계)

주2 : b) 자체교육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직장교육과 강사초빙이나 내부강사 활용, 자체 워크숍 등

주3 : c) 특정직에는 군, 경찰, 검찰, 소방, 교육, 연구직 등 포함

한편,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정책교육 중 업무담당 정책교육 참여자에 대해 직군별·직급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2년 정책교육 중 업무담당 정책교육에 참여한 일반직 참여자는 1,808명이었으며, 군, 경찰, 검찰, 소방, 연구직 등 특정직 참여자는 289명으로 나타났다. 일반직은 지난 2021년 1,404명에 비해서 404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7급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중에서 3급 이상은 13명으로 지난해 24명보다

감소하였다. 4급은 30명으로 지난해 69명보다 감소하였고, 5급은 154명으로 지난해 255명보다 감소하였다.

기관유형별로 전체 참여실적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245명으로, 2021년 147명에 비해 증가했고, 광역자치단체는 121명으로, 2021년 172명에 비해 51명 감소하였는데, 5급 이상에서 감소폭이 컸다. 기초자치단체는 1,362명으로 2021년에 1,068명에 비해서 294명 증가하였다. 그리고 교육청은 369명으로 2021년 228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15〉 2022년 직군별·직급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단위: 명)

구분	계	일반직							특정직 <sup>b)</sup>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군, 경찰, 소방	교육, 연구직	기타
전체 <sup>a)</sup>	2,097	1,808	13	30	154	349	652	610	289	30	125	134
중앙	245	190	9	5	48	61	38	29	55	28	6	21
광역	121	105	1	7	23	35	31	8	16	2	7	7
기초	1,362	1,244	0	12	45	213	445	529	118	0	17	101
교육청	369	269	3	6	38	40	138	44	100	0	95	5

주1 : a)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정책교육 6,192명 중 찾아가는 교육 참여인원 4,095명을 제외한 실적

주2 : b) 특정직에는 군, 경찰, 검찰, 소방, 교육, 연구직 등 포함

## 나.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및 시행령 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 성별영향평가센터 위탁운영 목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지원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성별영향평가법 등 제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체계적 운영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운영안내. p.3

2022년에는 중앙행정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 1개소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16개소를 위탁 운영하였다.

다음으로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참여 인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운영 안내 지침을 통해서 각 센터별로 센터장 1명을 비롯하여 성별영향평가팀에 3명 이상(전문인력 포함)을 배치하도록 하였고, 지역 성평등 교육·문화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전문인력 포함)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력배치 기준은 2021년과 동일하였다. 그 결과, 2022년에 전국 17개 센터 업무에 참여한 총 인력은 운영인력과 컨설턴트를 합해서 56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에 524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42명 증가하였다. 지난 2020년에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 16개 지역센터에 국비지원 전문인력 1인을 추가 배치한 효과가 2022년에도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컨설팅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역센터에서 컨설턴트 수를 늘린 영향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 운영인력은 91명으로 파악되었다.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센터가 8명, 경남센터 6명으로 많았다. 나머지 지역센터들은 각각 3명~5명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 지침을 잘 준수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컨설턴트는 47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는 40명이 참여하였다. 지역센터들 중에서는 서울센터가 50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기센터 43명, 인천센터 37명, 대전·세종 36명, 전남센터 32명 순으로 컨설턴트 참여 인원이 많았다. 그 외 다른 지역센터들도 모두 10명 이상의 컨설턴트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2022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운영 안내』(p.28)에서 제시한 기준선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전국 성별영향평가센터별 운영인력과 컨설턴트 참여 인력은 다음과 같다.

〈표 I-16〉 2022년 성별영향평가기관(센터)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사업대상	위탁기관명	인력	
			운영	컨설턴트
계		17	91	475
중 앙	중앙행정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8	40
지 역	서울지역 자치단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	50
	부산지역 자치단체	부산여성가족개발원	4	23
	대구지역 자치단체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4	19
	인천지역 자치단체	인천여성가족재단	4	37
	광주지역 자치단체	광주여성가족재단	4	19
	대전·세종지역 자치단체	대전세종연구원	4	36
	울산지역 자치단체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3	21
	경기지역 자치단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8	43
	강원지역 자치단체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4	24
	충북지역 자치단체	충북여성재단	5	20
	충남지역 자치단체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4	30
	전북지역 자치단체	전북연구원	5	18
	전남지역 자치단체	전남여성가족재단	4	32
	경북지역 자치단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4	15
	경남지역 자치단체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6	27
	제주지역 자치단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5	21

주 1 : 2022.12.31 기준

주 2 : 컨설턴트는 중복 인원 포함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17개 성별영향평가센터)

한편,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16개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는 2022년에도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하였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컨설팅 실적은 전체적으로 26,048개 과제에 대해서 35,737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이 17,459회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검토의견 작성 지원이 8,947회로 많았으며, 과제선정 지원은 8,884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컨설팅 지원은 지난 2021년에 총 35,632회 했던 것에 비해서 약 105회 늘었다. 특히 2022년에는 과제선정에 대한 컨설팅이 2021년에 비해 854회



늘어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것에 내실을 기하였고, 그 결과 ‘개선사항 없음’ 과제수가 감소하였다. 이를 다시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실적을 보면, 법령·계획·사업·홍보물 과제 15,282개에 대해 22,598회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 담당 부서의 183개 과제에 대해 542회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기관 담당 부서에 대한 컨설팅은 주로 대상과제 선정과 기타(종합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것이었다.

둘째,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실적을 보면,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해서는 10,510개 과제에 대해서 12,134회 지원하였다. 기관내 제도운영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73개 과제에 463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기관 담당 부서에 대한 컨설팅은 대상사업 선정과 총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표 I-17〉 2022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전체)

(단위: 개, 회)

구분(컨설팅 과제 수) <sup>a)</sup>		합계(회) (A+B+C+D)	과제선정(A)	평가서 작성 (B)	검토의견 (C)	기타 (D)	
전 체		26,048	35,737(100.0)	8,884(24.9)	17,459(48.9)	8,947(25.0)	447(1.3)
성별영향 평가	계	15,465	23,140(100.0)	5,669(24.5)	8,153(35.2)	8,947(38.7)	371(1.6)
	소계	15,282	22,598	5,265	8,140	8,947	246
	법령	5,586	5,895	56	489	5,229	121
	계획	97	105	0	21	83	1
	사업	8,910	15,880	5,209	7,629	2,947	95
	홍보물	689	718	0	1	688	29
	기관	183	542	404	13	0	125
성인지 예산	계	10,583	12,597(100.0)	3,215(25.5)	9,306(73.9)	0(0.0)	76(0.6)
	소계	10,510	12,134	2,811	9,303	0	20
	예산	8,405	9,836	2,811	7,005	0	20
	결산	2,105	2,298	0	2,298	0	0
	기관	73	463	404	3	0	56

주 1 : a) 컨설팅 과정을 거친 과제와 기관에서 최종 평가 과제로 제출한 과제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 2 : 기타는 종합결과보고 검토 및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pp. 37~38을 활용하여 제작성.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컨설턴트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2022년에 각 센터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은 주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침을 이해하며, 성인지예산 제도 연계 강화 방안, 컨설팅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 컨설턴트의 역할, 컨설팅 효율성 제고 방안, 주요 분야(과학기술, 기후위기, 장애인 등)의 이슈와 성별영향평가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등 맞춤형 교육과정(청년일자리, K-디지털 직업훈련사업 등)을 총 4회(436명 참여) 실시하였다.

# II

##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1.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2. 기관별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3. 주요 정책개선 사례



# 1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 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2022년에 총 1,743개의 법령·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다. 법령 성별영향평가 1,595개, 사업 성별영향평가 148개이다. 이것은 2021년에 2,182개 (법령 1,984, 사업 197)였던 것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439개 과제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성별영향평가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법령 제·개정 과제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2022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체개선안 또는 여성가족부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 법령·사업 과제는 166개로 나타났다(법령 51개, 사업 115개).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특정성별영향평가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①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성별영향평가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38개 기관이 1,595개 과제를 평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제·개정 법령안 중 성차별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통보된 ‘개선사항 없음’ 과제가 1,269개(79.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이 법령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자체개선안으로 제출한 원안에 동의한 과제는 30개(1.9%)였으며, 여성가족부가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통보한 과제는 34개(2.1%)로 나타났다.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과제 중에서 법령 소관 기관이 이를 수용한 과제는 21개로, 개선의견 수용률은 61.8%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2021년에 80.3%였던 것에 비해서는 18.5% 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다. 이로써, 2022년에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법령 성별영향평가 중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자체개선안 과제와 개선의견 통보과제 중 수용된 과제를 합해서 51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38개 과제가 개선이 이루어졌다.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가장 많이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194개)로, 그중 1개 과제 「국토기본법 시행령」에 대해서 개선의견이 통보되었으며, 개선의견이 수용되었다.

〈표 II-1〉 2022년 중앙행정기관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기관명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 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제외 <sup>f)</sup>	개선계획 과제 <sup>g)</sup>	개선 과제 <sup>h)</sup>
전 체 (38)	1,595 (100.0)	1,269 (79.6)	30 (1.9)	34 (2.1)	21 (61.8)	262 (16.4)	51	38
국 토 교 통 부	194 (100.0)	168 (86.6)	0 (0.0)	1 (0.5)	1 (100.0)	25 (12.9)	1	1
기 획 재 정 부	143 (100.0)	134 (93.7)	1 (0.7)	1 (0.7)	0 (0.0)	7 (4.9)	1	1
행 정 안 전 부	125 (100.0)	85 (68.0)	4 (3.2)	4 (3.2)	3 (75.0)	32 (25.6)	7	6
보 건 복 지 부	98 (100.0)	78 (79.6)	5 (5.1)	1 (1.0)	1 (100.0)	14 (14.3)	6	4
해 양 수 산 부	82 (100.0)	53 (64.6)	0 (0.0)	2 (2.4)	2 (100.0)	27 (32.9)	2	1
국 방 부	72 (100.0)	51 (70.8)	1 (1.4)	1 (1.4)	1 (100.0)	19 (26.4)	2	2
산업통상자원부	70 (100.0)	60 (85.7)	0 (0.0)	3 (4.3)	0 (0.0)	7 (10.0)	0	0
환 경 부	68 (100.0)	60 (88.2)	0 (0.0)	1 (1.5)	1 (100.0)	7 (10.3)	1	1
교 육 부	62 (100.0)	45 (72.6)	2 (3.2)	3 (4.8)	2 (66.7)	12 (19.4)	4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 (100.0)	55 (90.2)	0 (0.0)	2 (3.3)	1 (50.0)	4 (6.6)	1	1
법 무 부	57 (100.0)	37 (64.9)	7 (12.3)	1 (1.8)	1 (100.0)	12 (21.1)	8	2
문화체육관광부	49 (100.0)	37 (75.5)	3 (6.1)	1 (2.0)	0 (0.0)	8 (16.3)	3	3
고 용 노 동 부	47 (100.0)	32 (68.1)	5 (10.6)	2 (4.3)	1 (50.0)	8 (17.0)	6	6
국 가 보 훈 처	47 (100.0)	42 (89.4)	0 (0.0)	0 (0.0)	-	5 (10.6)	0	-
농림축산식품부	44 (100.0)	42 (95.5)	0 (0.0)	1 (2.3)	1 (100.0)	1 (2.3)	1	0
소 방 청	39 (100.0)	25 (64.1)	0 (0.0)	2 (5.1)	2 (100.0)	12 (30.8)	2	2
식품의약품안전처	37 (100.0)	31 (83.8)	0 (0.0)	2 (5.4)	0 (0.0)	4 (10.8)	0	-
경 찰 청	29 (100.0)	16 (55.2)	1 (3.4)	0 (0.0)	-	12 (41.4)	1	1
산 립 청	26 (100.0)	21 (80.8)	0 (0.0)	1 (3.8)	1 (100.0)	4 (15.4)	1	1
인 사 혁 신 처	26 (100.0)	18 (69.2)	1 (3.8)	0 (0.0)	-	7 (26.9)	1	1
금 융 위 원 회	23 (100.0)	22 (95.7)	0 (0.0)	0 (0.0)	-	1 (4.3)	0	-
여 성 가 족 부	23 (100.0)	15 (65.2)	0 (0.0)	1 (4.3)	0 (0.0)	7 (30.4)	0	-
중소벤처기업부	23 (100.0)	21 (91.3)	0 (0.0)	1 (4.3)	1 (100.0)	1 (4.3)	1	1
특 허 청	20 (100.0)	18 (90.0)	0 (0.0)	0 (0.0)	-	2 (10.0)	0	-
해 양 경 찰 청	18 (100.0)	16 (88.9)	0 (0.0)	0 (0.0)	-	2 (11.1)	0	-

기관명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 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제외 <sup>f)</sup>	개선계획 과제 <sup>g)</sup>	개선 과제 <sup>h)</sup>
질병관리청	17 (100.0)	14 (82.4)	0 (0.0)	0 (0.0)	-	3 (17.6)	0	-
공정거래위원회	16 (100.0)	10 (62.5)	0 (0.0)	0 (0.0)	-	6 (37.5)	0	-
문화재청	15 (100.0)	13 (86.7)	0 (0.0)	0 (0.0)	-	2 (13.3)	0	-
법제처	10 (100.0)	8 (80.0)	0 (0.0)	0 (0.0)	-	2 (20.0)	0	-
기상청	9 (100.0)	7 (77.8)	0 (0.0)	1 (11.1)	1 (100.0)	1 (11.1)	1	0
방송통신위원회	8 (100.0)	7 (87.5)	0 (0.0)	1 (12.5)	1 (100.0)	0 (0.0)	1	0
원자력안전위원회	8 (100.0)	7 (87.5)	0 (0.0)	1 (12.5)	0 (0.0)	0 (0.0)	0	-
국민권익위원회	7 (100.0)	5 (71.4)	0 (0.0)	0 (0.0)	-	2 (28.6)	0	-
외교부	7 (100.0)	5 (71.4)	0 (0.0)	0 (0.0)	-	2 (28.6)	0	-
통일부	6 (100.0)	5 (83.3)	0 (0.0)	0 (0.0)	-	1 (16.7)	0	-
국무조정실	5 (100.0)	4 (80.0)	0 (0.0)	0 (0.0)	-	1 (20.0)	0	-
병무청	3 (100.0)	2 (66.7)	0 (0.0)	0 (0.0)	-	1 (33.3)	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00.0)	0 (0.0)	0 (0.0)	0 (0.0)	-	1 (100.0)	0	-

-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 주2 : b) 여성가족부(중앙)가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 주3 : c) 여성가족부(중앙)가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원안에 동의한 과제
- 주4 : d) 여성가족부(중앙)가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 주5 : e)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수용' 및 '일부수용' 과제(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 / 개선의견 과제 수 × 100)
- 주6 : f)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 주7 : g)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 주8 : h) 개선계획 수립과제(g)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 주9 : '-'는 해당 없음 의미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가장 많은 개선을 추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체개선과제 5개, 개선의견수용과제 1개를 이행하였다. 고용노동부가 개선한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이다. 법령의 개선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건강손상자녀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자체개선과제 4개, 개선의견수용과제 2개를 이행하였다. 행정안전부가 개선한 법령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요  
요

I  
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개선결과를 살펴보면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명시가 4개 과제이고, 민원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시설 이용자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할 것을 명시하였다.

〈표 II-2〉 2022년 다수의 법령 개선 기관(중앙행정기관)

(단위: 개, %)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고용노동부	39	15.4	100.0	5	1	6	5	1	6
행정안전부	93	7.5	85.7	4	3	7	4	2	6
교육부	50	8.0	100.0	2	2	4	2	2	4
보건복지부	84	7.1	66.7	5	1	6	3	1	4
문화체육관광부	41	7.3	100.0	3	0	3	3	0	3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여성가족부의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자체개선안 등의 과제+개선의견 수용과제)의 비율(개선계획 산출률(%)) = 개선계획 수립과제(b)/추진과제 수(a) × 100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5 : e)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의 비율(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d)/개선계획 수립과제(b) × 100

## ②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022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40개 중앙행정기관이 148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2021년에 44개 기관이 197개 과제를 추진한 것과 비교하면 기관수와 과제수 각각 4개, 49개 감소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차별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통보한 ‘개선사항 없음’ 과제가 27개(18.2%)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1년에 5.1%에 비교하면 증가한 것이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자체개선안에 동의한 과제는 62개(41.9%)였으며, 여성가족부가 정책개선 의견을 별도로 통보한 사업과제는 59개(39.9%)로 나타났다. 별도로 통보된 개선의견 과제 중에서 53개 과제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개선의견 수용률이 89.8%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1년에 개선의견 통보과제가 143개(72.6%)였고, 이 중에서 개선의견 수용과제가 124개, 수용률이 86.7%였던 것에 비해서는 수용률이 증가한 것이다.

2022년에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사업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자체개선안 과제와 개선의견 통보과제 중 수용된 과제를 합해서 115(자체개선안 동의와 개선의견 통보 과제 121개의 95.0%)개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1년에 168개(자체개선 동의와 개선의견 통보 과제 187개의 89.8%)였던 것에 비하면 5.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소관 사업에 대한 정책개선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중에서 95개 과제가 개선되었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가장 많이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7개)로, 그 중 5개 과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체개선안을 제시하였고,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이 통보되었으며, 그 중 7개 과제에 대해 개선의견이 수용되었다. 이 중 “SW융합인력양성-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3D프린팅 혁신성장 거점조성-3D프린팅전문인력양성교육”, “과학교육사업-과학교육(손익)-과학관전문인력양성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R&D)”, “ICT산업 기반확충-3D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3D프린팅 전문교육 및 인식확산-지역특화 3D프린팅 산업전문교육”, 4개의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 “방송콘텐츠진흥-방송콘텐츠진흥-1인미디어산업기반조성”, “창의적인재육성-소부장분야전문인력양성-나노분야전문인력양성”, “SW융합인력양성-이노베이션아카데미”, “SW융합인력양성-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ICT이노베이션스퀘어운영, ICT이노베이션스퀘어확산”, “인공위성개발-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연구성과확산지원-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육성-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 6개의 ‘개선의견 수용’과제, 총 10개 과제에 대해 이행하였다.

〈표 II-3〉 2022년 중앙행정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기 관 명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개선계획 과제 <sup>f)</sup>	개선 과제 <sup>g)</sup>
전 체(40)	148 (100.0)	27 (18.2)	62 (41.9)	59 (39.9)	53 (89.8)	115	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100.0)	2 (11.8)	5 (29.4)	10 (58.8)	7 (70.0)	12	10
농림축산식품부	12 (100.0)	2 (16.7)	4 (33.3)	6 (50.0)	6 (100.0)	10	9
국토교통부	12 (100.0)	1 (8.3)	6 (50.0)	5 (41.7)	5 (100.0)	11	6
고용노동부	10 (100.0)	0 (0.0)	4 (40.0)	6 (60.0)	4 (66.7)	8	7
해양수산부	10 (100.0)	4 (40.0)	3 (30.0)	3 (30.0)	3 (100.0)	6	6
문화체육관광부	8 (100.0)	1 (12.5)	4 (50.0)	3 (37.5)	3 (100.0)	7	6
국방부	7 (100.0)	0 (0.0)	4 (57.1)	3 (42.9)	3 (100.0)	7	6
여성가족부	6 (100.0)	3 (50.0)	1 (16.7)	2 (33.3)	2 (100.0)	3	3
외교부	5 (100.0)	0 (0.0)	1 (20.0)	4 (80.0)	4 (100.0)	5	3
보건복지부	5 (100.0)	1 (20.0)	1 (20.0)	3 (60.0)	3 (100.0)	4	3
산림청	5 (100.0)	3 (60.0)	1 (20.0)	1 (20.0)	1 (100.0)	2	2
문화재청	4 (100.0)	0 (0.0)	4 (100.0)	0 (0.0)	-	4	3
교육부	3 (100.0)	0 (0.0)	2 (66.7)	1 (33.3)	1 (100.0)	3	3
환경부	3 (100.0)	1 (33.3)	1 (33.3)	1 (33.3)	1 (100.0)	2	2
경찰청	3 (100.0)	0 (0.0)	3 (100.0)	0 (0.0)	-	3	1
농촌진흥청	3 (100.0)	0 (0.0)	3 (100.0)	0 (0.0)	-	3	3
질병관리청	3 (100.0)	2 (66.7)	0 (0.0)	1 (33.3)	1 (100.0)	1	1
통일부	2 (100.0)	0 (0.0)	2 (100.0)	0 (0.0)	-	2	2
법무부	2 (100.0)	0 (0.0)	1 (50.0)	1 (50.0)	1 (100.0)	2	2
행정안전부	2 (100.0)	1 (50.0)	0 (0.0)	1 (50.0)	1 (100.0)	1	1
중소벤처기업부	2 (100.0)	1 (50.0)	0 (0.0)	1 (50.0)	1 (100.0)	1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100.0)	1 (50.0)	0 (0.0)	1 (50.0)	1 (100.0)	1	1
국가보훈처	2 (100.0)	0 (0.0)	1 (50.0)	1 (50.0)	1 (100.0)	2	2
식품의약품안전처	2 (100.0)	1 (50.0)	0 (0.0)	1 (50.0)	1 (100.0)	1	0
특허청	2 (100.0)	0 (0.0)	2 (100.0)	0 (0.0)	-	2	2
해양경찰청	2 (100.0)	0 (0.0)	1 (50.0)	1 (50.0)	1 (100.0)	2	1

기 관 명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개선계획 과제 <sup>f)</sup>	개선 과제 <sup>g)</sup>
방 송 통 신 위 원 회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1	1
공 정 거 래 위 원 회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1 (100.0)	1 (100.0)	0 (0.0)	0 (0.0)	-	0	-
인 사 혁 신 처	1 (100.0)	0 (0.0)	1 (100.0)	0 (0.0)	-	1	1
법 제 처	1 (100.0)	0 (0.0)	1 (100.0)	0 (0.0)	-	1	1
국 세 청	1 (100.0)	0 (0.0)	1 (100.0)	0 (0.0)	-	1	1
관 세 청	1 (100.0)	1 (100.0)	0 (0.0)	0 (0.0)	-	0	-
조 달 청	1 (100.0)	0 (0.0)	1 (100.0)	0 (0.0)	-	1	0
병 무 청	1 (100.0)	0 (0.0)	1 (100.0)	0 (0.0)	-	1	1
방 위 사 업 청	1 (100.0)	1 (100.0)	0 (0.0)	0 (0.0)	-	0	-
소 방 청	1 (100.0)	0 (0.0)	1 (100.0)	0 (0.0)	-	1	1
기 상 청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1	1
새 만 금 개 발 청	1 (100.0)	0 (0.0)	1 (100.0)	0 (0.0)	-	1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00.0)	0 (0.0)	1 (100.0)	0 (0.0)	-	1	1

주1 : a) 성별영향평가 대상인 법령·계획·사업 중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주2 : b) 여성가족부(중앙)가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주3 : c) 여성가족부(중앙)가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원인에 동의한 과제  
 주4 : d) 여성가족부(중앙)가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주5 : e)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수용' 및 '일부수용' 과제(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개선의견 과제 수×100)  
 주6 : f)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7 : g) 개선과제는 개선계획 수립과제(f)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8 : '-'는 해당 없음 의미

2022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6개 이상 개선계획과제를 이행한 기관은 7개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개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 10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하였다. 사업 참여에서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실시하며 성별분리 통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개선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개 과제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9개 과제를 개선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선한 사업의 내용의 대부분이 성별통계 구축이었는데, 그 중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의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 전체 농업인의 안전한 농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부 등 영농종사자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하는 개선도 이루어졌다.

〈표 II-4〉 2022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중앙행정기관)

(단위: 개, %)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70.6	83.3	5	7	12	4	6	10
농림축산식품부	12	83.3	90.0	4	6	10	3	6	9
고용노동부	10	80.0	87.5	4	4	8	4	3	7
국방부	7	100.0	85.7	4	3	7	3	3	6
국토교통부	12	91.7	54.5	6	5	11	5	1	6
문화체육관광부	8	87.5	85.7	4	3	7	3	3	6
해양수산부	10	60.0	100.0	3	3	6	3	3	6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 대상인 법령·계획·사업 중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자체개선안 등의 과제+개선의견 수용과제)의 비율(개선계획 산출률(%)) = 개선계획 수립과제/추진과제 수(a)×100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5 : e)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d)/개선계획 수립과제(b)×100

## 나. 광역자치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는 2022년에 총 3,116개의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다. 법령 성별영향평가 1,874개,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31개, 사업 성별영향평가 1,211개이다. 그 결과 자체개선안 또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별도 개선의견 통보사항을 수용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 법령·계획·사업 과제는 1,352개로 나타났다(법령 201개, 계획 26개, 사업 1,125개). 이것은 2021년에 1,429개였던 것보다 77개 과제가 감소한 것이다.

①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성별영향평가는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에 실시한다. 2022년에 광역자치단체의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17개 기관이 1,874개 과제를 평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1년에 1,969개 과제를 실시한 것에 비하면 95개 과제가 감소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가 2022년에 실시한 법령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개정 법령안 중 성차별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통보된 ‘개선사항 없음’ 과제가 921개(49.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무원이 법령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자체개선안으로 제출한 원안에 동의한 과제는 78개(4.2%)였으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별도로 정책개선 의견을 통보한 과제는 149개(8.0%)로 나타났다.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과제 중에서 법령 소관 기관이 이를 수용한 과제는 123개로서 개선의견 수용률은 82.6%로 나타났다. 이것을 2021년과 비교하면 자체개선안 동의 비율은 4.2%였던 것과 동일하고, 개선의견 수용률은 77.2%였던 것에서 5.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2022년에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한 법령 성별영향평가 중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자체개선안 과제와 개선의견 통보과제 중 수용된 과제를 합해서 201개로 나타났다. 이것도 2021년 198개 과제에 비해서는 3개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 184개 과제가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2022년 광역자치단체의 법령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계획 수립 과제수와 개선의견 수용률이 증가하여 2021년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표 II-5〉 2022년 광역자치단체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기관명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개선 계획 과제 <sup>g)</sup>	개선 과제 <sup>h)</sup>
전 체(17)	1,874 (100.0)	921 (49.1)	78 (4.2)	149 (8.0)	123 (82.6)	726 (38.7)	201	184
전 라 북 도	172 (100.0)	114 (66.3)	5 (2.9)	11 (6.4)	11 (100.0)	42 (24.4)	16	15
경 상 남 도	171 (100.0)	102 (59.6)	6 (3.5)	10 (5.8)	6 (60.0)	53 (31.0)	12	12
서 울 특 별 시	157 (100.0)	83 (52.9)	1 (0.6)	23 (14.6)	21 (91.3)	50 (31.8)	22	19

기관명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개선 계획 과제 <sup>g)</sup>	개선 과제 <sup>h)</sup>
제주특별자치도	143 (100.0)	66 (46.2)	28 (19.6)	17 (11.9)	13 (76.5)	32 (22.4)	41	36
대전광역시	141 (100.0)	45 (31.9)	14 (9.9)	16 (11.3)	15 (93.8)	66 (46.8)	29	29
광주광역시	136 (100.0)	79 (58.1)	0 (0.0)	13 (9.6)	11 (84.6)	44 (32.4)	11	11
인천광역시	122 (100.0)	57 (46.7)	0 (0.0)	3 (2.5)	2 (66.7)	62 (50.8)	2	2
부산광역시	118 (100.0)	51 (43.2)	12 (10.2)	13 (11.0)	8 (61.5)	42 (35.6)	20	18
대구광역시	116 (100.0)	63 (54.3)	4 (3.4)	3 (2.6)	3 (100.0)	46 (39.7)	7	6
울산광역시	100 (100.0)	22 (22.0)	0 (0.0)	7 (7.0)	5 (71.4)	71 (71.0)	5	5
세종특별자치시	95 (100.0)	55 (57.9)	0 (0.0)	4 (4.2)	4 (100.0)	36 (37.9)	4	3
충청북도	87 (100.0)	57 (65.5)	3 (3.4)	0 (0.0)	-	27 (31.0)	3	3
충청남도	86 (100.0)	34 (39.5)	1 (1.2)	6 (7.0)	6 (100.0)	45 (52.3)	7	7
경기도	71 (100.0)	33 (46.5)	2 (2.8)	6 (8.5)	6 (100.0)	30 (42.3)	8	5
강원도	62 (100.0)	41 (66.1)	1 (1.6)	8 (12.9)	7 (87.5)	12 (19.4)	8	8
경상북도	56 (100.0)	6 (10.7)	0 (0.0)	6 (10.7)	2 (33.3)	44 (78.6)	2	1
전라남도	41 (100.0)	13 (31.7)	1 (2.4)	3 (7.3)	3 (100.0)	24 (58.5)	4	4

- 주1 : a) 성별영향평가 대상인 법령·계획·사업 중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 주2 : b)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 주3 : c)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원안에 동의한 과제
- 주4 : d)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 주5 : e)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수용' 및 '일부수용' 과제(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개선의견 과제 수×100)
- 주6 : f)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 주7 : g)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 주8 : h) 개선과제는 개선계획 수립과제(g)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 주9 : '-'는 해당 없음 의미

광역자치단체의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5개 이상의 조례를 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5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령에 대한 개선을 가장 많이 추진한 기관으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111개의 추진과제 중 41개 법령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중 36개를 개정하였다. 위원회 성별균형 참여와 성별통계 구축을 위한 서식 변경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서 신규임용 시험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제6조제3항), 신규임용응시 조건인 신체조건을 폐지함으로써(제19조제3항단서 및 별표6의2), 경제적, 신체적

차이로 인해 임용응시에 제약이 없도록 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서민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을 학교박청소년까지 확대할 것(제2조의2)을 명시하여 사업수혜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을 줄이고자 했다.

대전광역시 75개 법령 추진과제 중 29개 법령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9개 법령 모두를 개선하였다. 위원회 성별균형 참여와 성별통계 구축을 위한 서식 변경을 주된 개선내용으로 하였다.

〈표 II-6〉 2022년 다수의 법령 개선 기관(광역자치단체)

(단위: 개, %)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제주특별자치도	111	36.9	87.8	28	13	41	25	11	36
대전광역시	75	38.7	100.0	14	15	29	14	15	29
서울특별시	107	20.6	86.4	1	21	22	1	18	19
부산광역시	76	26.3	90.0	12	8	20	12	6	18
전라북도	130	12.3	93.8	5	11	16	5	10	15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자체개선안 동의 과제+개선의견 수용과제)의 비율(개선계획 산출률(%)) = 개선계획 수립과제/추진과제 수(a) × 100)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5 : e)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d)/개선계획 수립과제(b) × 100)

## ②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022년에 광역자치단체는 3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13개 기관이 31개를 추진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가 7개로 가장 많이 실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충청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각 4개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2021년에 11개 기관이 28개 과제를 추진한 것에 비해서 기관수가 2개, 과제수는 3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4개 기관(강원, 충남, 전남, 경북)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지 않았다.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도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3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광역자치단체는 적어도 1개 이상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적어도 1개 이상 계획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광역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차별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통보한 ‘개선사항 없음’ 과제가 5개(16.1%)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1년에 25.0%였던 것과 비교하면 8.9%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이 계획 성별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자체개선안에 동의한 과제는 7개(22.6%)로 나타났다. 자체개선안 동의는 2021년에 25.0%였던 것에 비해서 2.4%포인트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별도로 개선의견을 통보한 과제는 19개(61.3%)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19개를 모두 수용하여 개선의견 수용률이 100.0%이다.

2022년에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한 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자체개선안 과제와 개선의견 통보과제 중 수용된 과제를 합해서 26개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1년에 20개였던 것에 비해서 6개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 11개 과제가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II-7〉 2022년 광역자치단체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기관명(기관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개선계획 과제 <sup>f)</sup>	개선 과제 <sup>g)</sup>
전 체 (13)	31 (100.0)	5 (16.1)	7 (22.6)	19 (61.3)	19 (100.0)	26	11
세종특별자치시	7 (100.0)	1 (14.3)	2 (28.6)	4 (57.1)	4 (100.0)	6	3
충 청 북 도	4 (100.0)	2 (50.0)	0 (0.0)	2 (50.0)	2 (100.0)	2	1
제주특별자치도	4 (100.0)	0 (0.0)	1 (25.0)	3 (75.0)	3 (100.0)	4	0
인 천 광 역 시	3 (100.0)	0 (0.0)	1 (33.3)	2 (66.7)	2 (100.0)	3	0
부 산 광 역 시	2 (100.0)	0 (0.0)	0 (0.0)	2 (100.0)	2 (100.0)	2	0
대 전 광 역 시	2 (100.0)	0 (0.0)	2 (100.0)	0 (0.0)	-	2	2
울 산 광 역 시	2 (100.0)	0 (0.0)	0 (0.0)	2 (100.0)	2 (100.0)	2	2
전 라 북 도	2 (100.0)	0 (0.0)	0 (0.0)	2 (100.0)	2 (100.0)	2	1
서 울 특 별 시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1	1
대 구 광 역 시	1 (100.0)	1 (100.0)	0 (0.0)	0 (0.0)	-	0	0



기관명(기관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개선계획 과제 <sup>f)</sup>	개선 과제 <sup>g)</sup>
광 주 광 역 시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1	0
경 기 도	1 (100.0)	0 (0.0)	1 (100.0)	0 (0.0)	-	1	1
경 상 남 도	1 (100.0)	1 (100.0)	0 (0.0)	0 (0.0)	-	0	

-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 주2 : b)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 주3 : c)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원안에 동의한 과제
- 주4 : d)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 주5 : e)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수용' 및 '일부수용' 과제(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개선의견 과제 수 × 100
- 주6 : f)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 주7 : g) 개선계획 수립과제(g)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 주8 : '-'는 해당 없음 의미

계획에 대한 개선을 완료한 광역자치단체는 3개의 계획에서 개선을 이행한 세종특별자치시, 각각 2개의 계획에서 개선을 이행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와 1개 계획에서 개선을 이행한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충청북도가 있다. 이행된 개선의견 내용으로는 대부분이 성별통계 구축, 성별균형 참여의 내용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5개년계획』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 모델 개발에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것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교육과정에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에서 교통약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 다수였다.

〈표 II-8〉 2022년 계획 개선 기관(광역자치단체)

(단위: 개, %)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대 전 광 역 시	2	100.0	100.0	2	0	2	2	0	2
울 산 광 역 시	2	100.0	100.0	0	2	2	-	2	2
경 기 도	1	100.0	100.0	1	0	1	1	-	1
서 울 특 별 시	1	100.0	100.0	0	1	1	-	1	1
세종특별자치시	7	85.7	50.0	2	4	6	1	2	3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전 라 북 도	2	100.0	50.0	0	2	2	-	1	1
총 청 북 도	4	50.0	50.0	0	2	2	-	1	1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자체개선안 등의 과제+개선의견 수용과제)의 비율(개선계획 산출률(%)) = 개선계획 수립과제/추진과제 수(a) × 100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5 : e)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의 비율(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d)/개선계획 수립과제(b) × 100

주6 : '-'는 해당 없음 의미

### ③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2022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1,211개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2021년에 17개 기관이 1,336개를 추진한 것에 비해서 125개가 감소한 것이다. 그 결과, 성차별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통보된 '개선사항 없음' 과제가 76개(6.3%)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1년에 8.5%였던 것과 비교하면 2.2%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자체개선안에 동의한 과제는 993개(82.0%)로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2021년에 81.0%였던 것에 비해서 1.0%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이 외에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통보한 사업과제는 142개(11.7%)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소관 사업 담당부서가 132개 과제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93.0%로 나타났다. 개선의견 수용률은 2021년에 91.5%였던 것에 비해서 1.5%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2022년에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한 사업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자체개선안 과제와 개선의견 통보과제 중 수용된 과제를 합해서 1,125개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0년에 1,211개였던 것에 비해서 86개 과제가 감소하였다. 이 중에서 396개 과제가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II-9〉 2022년 광역자치단체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기관명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개선계획 과제 <sup>f)</sup>	개선 과제 <sup>g)</sup>
전 체(17)	1,211 (100.0)	76 (6.3)	993 (82.0)	142 (11.7)	132 (93.0)	1,125	396
제주특별자치도	187 (100.0)	0 (0.0)	168 (89.8)	19 (10.2)	19 (100.0)	187	6
경 기 도	120 (100.0)	3 (2.5)	110 (91.7)	7 (5.8)	5 (71.4)	115	48
경 상 남 도	78 (100.0)	6 (7.7)	68 (87.2)	4 (5.1)	4 (100.0)	72	45
인 천 광 역 시	77 (100.0)	4 (5.2)	68 (88.3)	5 (6.5)	5 (100.0)	73	23
대 전 광 역 시	76 (100.0)	1 (1.3)	75 (98.7)	0 (0.0)	-	75	53
광 주 광 역 시	74 (100.0)	0 (0.0)	69 (93.2)	5 (6.8)	4 (80.0)	73	43
서 울 특 별 시	73 (100.0)	0 (0.0)	30 (41.1)	43 (58.9)	40 (93.0)	70	47
부 산 광 역 시	69 (100.0)	2 (2.9)	60 (87.0)	7 (10.1)	7 (100.0)	67	18
세 종 특 별 자 치 시	61 (100.0)	6 (9.8)	31 (50.8)	24 (39.3)	23 (95.8)	54	6
대 구 광 역 시	59 (100.0)	25 (42.4)	34 (57.6)	0 (0.0)	-	34	14
경 상 북 도	55 (100.0)	12 (21.8)	43 (78.2)	0 (0.0)	-	43	13
전 라 남 도	54 (100.0)	5 (9.3)	48 (88.9)	1 (1.9)	1 (100.0)	49	15
충 청 남 도	53 (100.0)	0 (0.0)	52 (98.1)	1 (1.9)	1 (100.0)	53	0
강 원 도	47 (100.0)	0 (0.0)	36 (76.6)	11 (23.4)	11 (100.0)	47	31
울 산 광 역 시	46 (100.0)	0 (0.0)	43 (93.5)	3 (6.5)	3 (100.0)	46	22
충 청 북 도	46 (100.0)	1 (2.2)	45 (97.8)	0 (0.0)	-	45	0
전 라 북 도	36 (100.0)	11 (30.6)	13 (36.1)	12 (33.3)	9 (75.0)	22	12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주2 : b)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주3 : c)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원인에 동의한 과제  
 주4 : d)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주5 : e)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수용' 및 '일부수용' 과제(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개선의견 과제 수×100)  
 주6 : f)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7 : g) 개선계획 수립과제(f)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8 : '-'는 해당 없음 의미

사업에 대한 개선을 완료한 광역자치단체를 살펴보면, 30개 과제 이상을 완료한 기관이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는 76개의 추진과제 중 75개 사업에 대한 개선을 계획하였으며 그 중 53개 사업에서 개선을 이행하였다.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 교육자료·전시 및 공연 콘텐츠·홍보물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사업담당자 및 강사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가 개선의 주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도시환경디자인,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등 시설과 관련한 사업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관리도 포함하였다. “문화콘텐츠 육성지원-특수영상 콘텐츠 페스티벌(특수영상에관한 시상식)” 사업에서는 작품 내용에 성별고정관념이나 성차별 요소가 있는 경우 순위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하고, 세미나 강연 및 관객과의 대화 진행 시 발표자가 성차별 및 특정 성별 비하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매뉴얼 공문 실시를 포함하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관리자 대상 성인지교육을 확대하고 남성관리사 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경기도는 120개 사업을 추진하여, 115개 개선계획 수립 사업 중 48개 사업에서 개선을 이행하였다. 사업 관계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성별 균형 참여 보장, 만족도 조사,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등이 주된 개선 내용이었다.

〈표 II-10〉 2022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광역자치단체)

(단위: 개, %)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대 전 광 역 시	76	98.7	70.7	75	0	75	53	-	53
경 기 도	120	95.8	41.7	110	5	115	48	0	48
서 울 특 별 시	73	95.9	67.1	30	40	70	20	27	47
경 상 남 도	78	92.3	62.5	68	4	72	44	1	45
광 주 광 역 시	74	98.6	58.9	69	4	73	41	2	43
강 원 도	47	100.0	66.0	36	11	47	24	7	31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자체개선안 등의 과제+개선의견 수용과제)의 비율(개선계획 산출률(%)) = 개선계획 수립과제/추진과제 수(a) × 100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5 : e)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의 비율(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d)/개선계획 수립과제(b) × 100

주6 : ‘-’는 해당 없음 의미

## 다.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2022년에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총 21,496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하였다. 법령 성별영향평가 15,586개,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95개, 사업 성별영향평가 5,815개이다. 이것은 2021년에 총 24,344개 과제(법령 18,359개, 계획 71개, 사업 5,914개)였던 것보다 2,848개 과제가 감소한 것이다.

2022년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계획을 수립한 법령·계획·사업 과제는 6,510개로 나타났다(법령 1,430개, 계획 69개, 사업 5,011개). 이것은 2021년 6,803개 보다 293개 과제가 감소한 것이다. 다만, 2021년에 비해 개선계획을 수립한 ‘계획’ 과제수는 25개, ‘사업’ 과제수는 79개 증가하였다.

### ①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기초자치단체는 2022년에 15,586개의 법령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고, 기관별로 평균 69.0개를 추진한 셈이다. 이것은 지난 2021년 평균과제 수 81.2개보다 12.2개가 감소한 것이다. 성차별적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된 과제는 8,558개(54.9%),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로 통보되거나 법령이 중단된 ‘기타’ 과제가 5,327개(34.2%)였다. 이와 같이 법령 성별영향평가는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 개선사항이 없거나 제외되는 과제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한편, 소관 법령 담당 공무원이 법령 성별영향평가서에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자체개선안 동의’를 통보한 과제는 495개 (3.2%)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별도로 정책 개선의견을 통보한 ‘개선의견’ 과제는 1,206개(7.7%)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소관부서가 수용한 과제는 935개, 수용률 77.5%로 나타났다.

이로써, 2022년에 기초자치단체가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자체개선안과 개선의견 통보과제 중 수용된 과제를 합해서 1,430개 과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1년에 1,827개 과제였던 것에 비해서 397개가 감소하였다. 이 중에서 1,274개 과제가 개선이 이루어져 이행률은 89.1%이다. 이것은 2021년 85.5%보다 3.6%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과제수는 감소하였으나 이행률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11〉 2022년 기초자치단체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기관명 (기관수)	기관별 평균 과제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개선계획 과제 <sup>g)</sup>	개선 과제 <sup>h)</sup>
기초전체(226)	69.0	15,586 (100.0)	8,558 (54.9)	495 (3.2)	1,206 (7.7)	935 (77.5)	5,327 (34.2)	1,430	1,274
경기기초(31)	86.4	2,677 (100.0)	1,791 (66.9)	68 (2.5)	134 (5.0)	110 (82.1)	684 (25.6)	178	159
전남기초(22)	73.5	1,618 (100.0)	938 (58.0)	55 (3.4)	106 (6.6)	96 (90.6)	519 (32.1)	151	131
서울기초(25)	64.6	1,614 (100.0)	838 (51.9)	32 (2.0)	86 (5.3)	75 (87.2)	658 (40.8)	107	96
경북기초(23)	62.5	1,437 (100.0)	824 (57.3)	2 (0.1)	105 (7.3)	90 (85.7)	506 (35.2)	92	90
경남기초(18)	68.6	1,234 (100.0)	459 (37.2)	124 (10.0)	234 (19.0)	140 (59.8)	417 (33.8)	264	237
충남기초(15)	80.7	1,211 (100.0)	738 (60.9)	12 (1.0)	59 (4.9)	52 (88.1)	402 (33.2)	64	56
강원기초(18)	65.8	1,185 (100.0)	608 (51.3)	5 (0.4)	163 (13.8)	124 (76.1)	409 (34.5)	129	108
전북기초(14)	74.3	1,040 (100.0)	630 (60.6)	70 (6.7)	30 (2.9)	27 (90.0)	310 (29.8)	97	83
충북기초(11)	77.3	850 (100.0)	540 (63.5)	14 (1.6)	33 (3.9)	30 (90.9)	263 (30.9)	44	40
부산기초(16)	52.3	836 (100.0)	326 (39.0)	56 (6.7)	65 (7.8)	51 (78.5)	389 (46.5)	107	93
인천기초(10)	61.1	611 (100.0)	273 (44.7)	33 (5.4)	63 (10.3)	43 (68.3)	242 (39.6)	76	69
대구기초(8)	49.8	398 (100.0)	167 (42.0)	4 (1.0)	20 (5.0)	12 (60.0)	207 (52.0)	16	12
광주기초(5)	63.8	319 (100.0)	205 (64.3)	10 (3.1)	46 (14.4)	37 (80.4)	58 (18.2)	47	46
대전기초(5)	56.6	283 (100.0)	127 (44.9)	6 (2.1)	7 (2.5)	7 (100.0)	143 (50.5)	13	13
울산기초(5)	54.6	273 (100.0)	94 (34.4)	4 (1.5)	55 (20.1)	41 (74.5)	120 (44.0)	45	41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주2 : b)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주3 : c)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원안에 동의한 과제

주4 : d)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주5 : e)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수용' 및 '일부수용' 과제(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개선의견 과제 수×100)

주6 : f)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주7 : g)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8 : h) 개선계획 수립과제(g)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기초자치단체의 법령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20개 이상의 조례에 대해 개선을 이행한 기초자치단체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양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남도 순천시로 나타났다. 그 중 경상남도 창원시는 82개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중 26개 조례에 대해 개선을 계획했으며, 25개 법령을 개선하였다. 경상남도 진주시는 64개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중 22개 조례에 대해 개선을 계획했으며, 그 모두에 대해 개선을 이행해 개선이행률은 100.0%이었다. 경상남도 밀양시도 46개의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중 22개 조례에 대한 개선을 계획했으며, 개선 계획 수립 과제 모두를 이행하여 개선이행률이 100.0%였다.

〈표 II-12〉 2022년 다수의 법령 개선 기관(기초자치단체)

(단위: 개, %)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경상남도	진주시	64	34.4	100.0	16	6	22	16	6	22
	밀양시	46	47.8	100.0	9	13	22	9	13	22
	창원시	82	31.7	96.2	17	9	26	16	9	25
	양산시	52	44.2	91.3	4	19	23	2	19	21
전라북도	김제시	81	30.9	92.0	22	3	25	20	3	23
전라남도	순천시	65	35.4	87.0	5	18	23	5	15	20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자체개선안 등의 과제+개선의견 수용과제)의 비율(개선계획 산출률(%) = 개선계획 수립과제/추진과제 수(a) × 100)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5 : e)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d)/개선계획 수립과제(b) × 100)

## ②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기초자치단체가 2022년에 실시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56개 기관이 95개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이것은 2021년에 45개 기관, 71개 과제였던 것에 비해서 11개 기관, 24개 과제가 증가한 것이다.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성차별적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된 과제는 23개(24.2%), 계획수립 담당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개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된 과제는 20개(21.1%)로 나타났다. 2021년 자체개선안에 동의한 과제가 12개(16.9%)였던 것에 비해, 4.2%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별도로 개선의견을 통보한 과제는 51개(53.7%)였으며, 이 중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는 49개로서 수용률 96.1%를 보였다.

이로써, 2022에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한 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 개선계획이 수립된 과제는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 통보과제 중 수용된 과제를 합해서 6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2021년에 44개 과제였던 것에 비해서 25개 과제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 19개 과제가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II-13〉 2022년 기초자치단체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기관명 (기관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개선계획 과제 <sup>g)</sup>	개선 과제 <sup>h)</sup>
전체 (59)	95 (100.0)	23 (24.2)	20 (21.1)	51 (53.7)	49 (96.1)	1(1.1)	69	19
경 기 기 초(17)	40 (100.0)	10 (25.0)	11 (27.5)	19 (47.5)	18 (94.7)	0(0.0)	29	9
부 산 기 초(9)	12 (100.0)	1 (8.3)	0 (0.0)	11 (91.7)	11 (100.0)	0(0.0)	11	2
인 천 기 초(7)	10 (100.0)	1 (10.0)	3 (30.0)	6 (60.0)	6 (100.0)	0(0.0)	9	1
경 남 기 초(4)	6 (100.0)	2 (33.3)	1 (16.7)	2 (33.3)	2 (100.0)	1(16.7)	3	2
충 북 기 초(4)	5 (100.0)	1 (20.0)	2 (40.0)	2 (40.0)	2 (100.0)	0(0.0)	4	1
대 전 기 초(2)	4 (100.0)	3 (75.0)	0 (0.0)	1 (25.0)	1 (100.0)	0(0.0)	1	1
강 원 기 초(3)	4 (100.0)	0 (0.0)	1 (25.0)	3 (75.0)	3 (100.0)	0(0.0)	4	1
울 산 기 초(2)	3 (100.0)	1 (33.3)	0 (0.0)	2 (66.7)	2 (100.0)	0(0.0)	2	1
충 남 기 초(3)	3 (100.0)	0 (0.0)	0 (0.0)	3 (100.0)	2 (66.7)	0(0.0)	2	0
전 남 기 초(3)	3 (100.0)	1 (33.3)	1 (33.3)	1 (33.3)	1 (100.0)	0(0.0)	2	0
경 북 기 초(3)	3 (100.0)	1 (33.3)	1 (33.3)	1 (33.3)	1 (100.0)	0(0.0)	2	1
대 구 기 초(2)	2 (100.0)	2 (100.0)	0 (0.0)	0 (0.0)	0 -	0(0.0)	0	-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주2 : b)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주3 : c)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원안에 동의한 과제  
 주4 : d)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주5 : e)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수용' 및 '일부수용' 과제(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개선의견 과제 수 × 100)  
 주6 : f)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주7 : g)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8 : h) 개선계획 수립과제(g)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9 : '-'는 해당 없음 의미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계획을 수립한 57개 기초자치단체 중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선을 이행하였다. 그 중 경기도 남양주시는 4개 계획에서 개선을 이행하였고, 경기도 안양시는 2개 계획에 대해 개선을 이행하였다. 그 외 부산광역시 동구와 사하구, 인천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울산광역시 북구, 경기도 화성시, 군포시, 오산시, 강원도 태백시, 충청북도 제천시,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와 밀양시에서 각 1개의 계획에서 개선을 이행하였다.

〈표 II-14〉 2022년 계획 개선 기관(기초자치단체)

(단위: 개(%))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자체 개선안	개선 의견 수용	소계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부산광역시	동구	1	100.0	100.0	0	1	1	0	1	1
	사하구	2	100.0	50.0	0	2	2	0	1	1
인천광역시	중구	1	100.0	100.0	0	1	1	0	1	1
대전광역시	서구	3	33.3	100.0	0	1	1	0	1	1
울산광역시	북구	2	100.0	50.0	0	2	2	0	1	1
경기도	남양주시	4	100.0	100.0	0	4	4	0	4	4
	안양시	3	66.7	100.0	2	0	2	2	0	2
	화성시	3	100.0	33.3	1	2	3	0	1	1
	군포시	3	100.0	33.3	1	2	3	1	0	1
	오산시	1	100.0	100.0	1	0	1	1	0	1
강원도	태백시	2	100.0	50.0	0	2	2	0	1	1
충청북도	제천시	1	100.0	100.0	0	1	1	0	1	1
경상북도	칠곡군	1	100.0	100.0	0	1	1	0	1	1
경상남도	창원시	2	100.0	50.0	1	1	2	1	0	1
	밀양시	1	100.0	100.0	0	1	1	0	1	1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자체개선안 등의 과제+개선의견 수용과제)의 비율(개선계획 산출률(%)) = 개선계획 수립과제/추진과제 수(a) × 100)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5 : e)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d)/개선계획 수립과제(b) × 100)

주6 : '-'는 해당 없음 의미

### ③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기초자치단체는 2022년에 226개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 성별영향평가를 5,815개 과제 추진하였다. 이것은 2021년에 5,914개 사업 과제를 추진했던 것에 99개 과제가 감소한 것이다. 기관별 평균 추진과제수는 25.7개로, 지난해 26.2개와 거의 유사하다. 기관 간에 추진과제 수의 편차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볼 때, 최소 1개 과제를 추진한 기관이 있는가 하면 최대 102개를 추진한 기관도 있었다.

그 결과, 성차별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된 과제가 772개(13.3%)였고, 자체적으로 제시한 정책개선안에 동의한 과제는 4,255개(73.2%)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별도로 정책 개선의견을 통보한 과제는 788개(13.6%)였으며, 이 중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는 756개로 수용률 95.9%로 나타났다. 2021년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가 827개, 수용률 90.8%인 것에 비해 수용률이 5.1%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로써, 2022년에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한 사업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 개선계획이 수립된 과제는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 통보과제 중 수용된 과제를 합해서 5,0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1년에 4,932개였던 것에 비해 79개 과제수가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1,983개 과제가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II-15〉 2022년 기초자치단체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기관명 (기관수)	기관별 과제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개선계획 과제 <sup>f)</sup>	개선 과제 <sup>h)</sup>
	평균	최소	최대							
전체기초(226)	25.7	1	102	5,815(100.0)	772(13.3)	4,255(73.2)	788(13.6)	756(95.9)	5,011	1,983
경기기초(31)	40.5	19	102	1,256(100.0)	82(6.5)	1,073(85.4)	101(8.0)	95(94.1)	1,168	513
경남기초(18)	32.3	20	83	581(100.0)	9(1.5)	554(95.4)	18(3.1)	18(100.0)	572	269
서울기초(25)	19.4	13	34	485(100.0)	43(8.9)	323(66.6)	119(24.5)	115(96.6)	438	207
경북기초(23)	21.0	15	26	483(100.0)	154(31.9)	309(64.0)	20(4.1)	19(95.0)	328	140
전남기초(22)	19.5	1	37	430(100.0)	71(16.5)	244(56.7)	115(26.7)	112(97.4)	356	103
충남기초(15)	24.9	15	48	373(100.0)	81(21.7)	256(68.6)	36(9.7)	36(100.0)	292	55
강원기초(18)	19.7	11	32	355(100.0)	24(6.8)	283(79.7)	48(13.5)	46(95.8)	329	131
부산기초(16)	21.9	15	33	350(100.0)	40(11.4)	121(34.6)	189(54.0)	181(95.8)	302	83

기관명 (기관수)	기관별 과제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개선계획 과제 <sup>f)</sup>	개선 과제 <sup>h)</sup>
	평균	최소	최대							
충북기초 (11)	29.0	19	66	319(100.0)	27(8.5)	289(90.6)	3(0.9)	3(100.0)	292	125
전북기초 (14)	21.9	14	28	307(100.0)	135(44.0)	151(49.2)	21(6.8)	21(100.0)	172	44
인천기초 (10)	27.5	11	45	275(100.0)	24(8.7)	182(66.2)	69(25.1)	64(92.8)	246	121
대구기초 (8)	23.8	21	30	190(100.0)	54(28.4)	115(60.5)	21(11.1)	20(95.2)	135	56
광주기초 (5)	32.6	24	48	163(100.0)	0(0.0)	146(89.6)	17(10.4)	16(94.1)	162	45
대전기초 (5)	25.4	20	33	127(100.0)	13(10.2)	113(89.0)	1(0.8)	1(100.0)	114	57
울산기초 (5)	24.2	20	27	121(100.0)	15(12.4)	96(79.3)	10(8.3)	9(90.0)	105	34

-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주2 : b)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주3 : c)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원안에 동의한 과제  
 주4 : d)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주5 : e)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수용' 및 '일부수용' 과제(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개선의견 과제 수×100)  
 주6 : f)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7 : g)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8 : h) 개선계획 수립과제(g)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개선계획 수립 이후에 25개 이상의 개선을 달성한 기초자치단체는 11개 시·군·구이다.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개선을 추진한 기관은 경상남도 창원시로, 창원시는 83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그 중 82개의 사업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했으며 48개의 사업을 개선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업의 개선이행이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파주시와 양주시로, 각각 35개 사업을 개선했고, 개선이행률도 각각 66.0%이다. 개선이행률이 가장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하남시로 개선이행률이 93.8%이고, 다음으로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여주시 92.9%이다.

〈표 II-16〉 2022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기초자치단체)

(단위: 개, %)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경 기 도	파주시	55	96.4	66.0	49	4	53	33	2	35
	양주시	53	100.0	66.0	53	0	53	35	-	35
	남양주시	41	100.0	78.0	41	0	41	32	-	32
	화성시	51	98.0	64.0	29	21	50	23	9	32
	시흥시	41	95.1	79.5	24	15	39	17	14	31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하남시	32	100.0	93.8	31	1	32	29	1	30
	광명시	33	100.0	81.8	33	0	33	27	-	27
	여주시	28	100.0	92.9	28	0	28	26	-	26
경 상 남 도	창원시	83	98.8	58.5	76	6	82	44	4	48
	양산시	41	100.0	75.6	36	5	41	26	5	31
	김해시	50	96.0	56.3	48	0	48	27	-	27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자체개선안 등의 과제+개선의견 수용과제)의 비율(개선계획 산출률(%)) = 개선계획 수립과제/추진과제 수(a) × 100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5 : e)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의 비율(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d)/개선계획 수립과제(b) × 100

주6 : '-'는 해당 없음 의미

## 라. 시·도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은 2022년에 총 754개의 법령·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다. 법령 성별영향평가 539개 과제, 사업 성별영향평가 214개 과제이다. 2021년에 비해서 총 과제수는 47개 감소하였다.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1개 실시하였으나, '개선사항없음'(원안동의)로 처리되었다.

### ①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은 2022년에 539개의 제·개정 법령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성차별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된 과제는 208개(38.6%)였고,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로 통보되거나 법령이 중단된 '기타' 과제는 314개(58.3%)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의 법령 성별영향평가도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 개선사항이 없거나 제외되는 과제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한편, 소관 법령 담당 공무원이 법령 성별영향평가서에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한 과제는 8개(1.5%)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별도로 정책 개선의견을 통보한 '개선의견' 과제는 9개(1.7%)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수용된 과제는 7개, 수용률 77.8%로 나타났다.

이로써, 2022년에 17개 시·도 교육청이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 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자체개선안과 개선의견 통보과제 중 수용된 과제를 합해서 15개 과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2021년에 28개 과제였던 것에 비해서는 13개가 감소한 것이다. 이 중에서 14개 과제가 개선되었고, 이행률은 93.3%이다. 2021년 개선계획 수립 과제가 28개, 개선 과제가 22개로 이행률이 78.6%였던 것에 비해 14.7%포인트 증가하였다. 과제수는 2021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이행률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17〉 2023년 시·도 교육청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기관명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기타 <sup>f)</sup>	개선계획 과제 <sup>g)</sup>	개선 과제 <sup>h)</sup>
					수용률 <sup>e)</sup>			
전 체(17)	539(100.0)	208(38.6)	8(1.5)	9(1.7)	7(77.8)	314(58.3)	15	14
충청남도교육청	73(100.0)	57(78.1)	2(2.7)	0(0.0)	-	14(19.2)	2	2
경상남도교육청	43(100.0)	28(65.1)	0(0.0)	0(0.0)	-	15(34.9)	0	-
경상북도교육청	42(100.0)	25(59.5)	0(0.0)	2(4.8)	2(100.0)	15(35.7)	2	1
전라북도교육청	34(100.0)	0(0.0)	0(0.0)	0(0.0)	-	34(100.0)	0	-
강원도교육청	33(100.0)	13(39.4)	0(0.0)	0(0.0)	-	20(60.6)	0	-
인천광역시교육청	33(100.0)	18(54.5)	0(0.0)	1(3.0)	0(0.0)	14(42.4)	0	-
충청북도교육청	32(100.0)	0(0.0)	0(0.0)	0(0.0)	-	32(100.0)	0	-
광주광역시교육청	30(100.0)	4(13.3)	0(0.0)	0(0.0)	-	26(86.7)	0	-
부산광역시교육청	29(100.0)	7(24.1)	1(3.4)	2(6.9)	2(100.0)	19(65.5)	3	3
울산광역시교육청	29(100.0)	9(31.0)	0(0.0)	0(0.0)	-	20(69.0)	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9(100.0)	10(34.5)	0(0.0)	0(0.0)	-	19(65.5)	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8(100.0)	11(39.3)	1(3.6)	0(0.0)	-	16(57.1)	1	1
대구광역시교육청	27(100.0)	2(7.4)	0(0.0)	0(0.0)	-	25(92.6)	0	-

기관명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개선계획 과제 <sup>g)</sup>	개선 과제 <sup>h)</sup>
대전광역시교육청	27(100.0)	5(18.5)	1(3.7)	0(0.0)	-	21(77.8)	1	1
경기도교육청	24(100.0)	8(33.3)	2(8.3)	2(8.3)	1(50.0)	12(50.0)	3	3
서울특별시교육청	21(100.0)	10(47.6)	0(0.0)	2(9.5)	2(100.0)	9(42.9)	2	2
전라남도교육청	5(100.0)	1(20.0)	1(20.0)	0(0.0)	-	3(60.0)	1	1

-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주2 : b)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주3 : c)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원안에 동의한 과제  
 주4 : d)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주5 : e)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의 '수용' 및 '일부수용' 과제(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개선의견 과제 수 × 100)  
 주6 : f)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주7 : g)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8 : h) 개선계획 수립과제(g)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9 : '-'는 해당 없음 의미

8개의 시·도 교육청이 수립한 조례에 대한 15개의 개선계획 중에서 총 14개의 조례가 개선되었다. 조례의 개선 이행이 많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각각 3개 조례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모두를 개선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도 각각 2개 조례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모두 개선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은 각각 1개의 조례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모두 개선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개선계획을 수립한 2개 조례 중 1개 조례를 개선하였다.

〈표 II-18〉 2022년 법령 개선 기관(시·도 교육청)

(단위: 개, %)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경기도교육청	12	25.0	100.0	2	1	3	2	1	3
부산광역시교육청	10	30.0	100.0	1	2	3	1	2	3
서울특별시교육청	12	16.7	100.0	0	2	2	-	2	2
충청남도교육청	59	3.4	100.0	2	0	2	2	-	2
경상북도교육청	27	7.4	50.0	0	2	2	0	1	1
대전광역시교육청	6	16.7	100.0	1	0	1	1	-	1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2	8.3	100.0	1	0	1	1	-	1
전라남도교육청	2	50.0	100.0	1	0	1	1	-	1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자체개선안 등의 과제+개선의견 수용과제)의 비율(개선계획 산출률(%) = 개선계획 수립과제/추진과제 수(a) × 100)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5 : e)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의 비율(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d)/개선계획 수립과제(b) × 100)

주6 : '-'는 해당 없음 의미

## ②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중 2022년에 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한 기관은 16개였으며, 총 214개 과제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비해서 추진기관 수는 1개가 증가한 것이며, 과제수는 227개에서 13개 과제가 감소하였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1개도 추진하지 않은 1개 기관은 전라북도교육청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20년, 2021년에도 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경상북도교육청은 2020년, 2021년에 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가 2022년에는 28개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시·도교육청의 경우,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기관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추진하지 않는 기관이 1개가 있고, 과제 수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개 모든 교육청이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성차별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된 과제가 66개(30.8%)였고, 자체적으로 제시한 정책개선안에 동의하여 통보된 과제는 120개(56.1%)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별도로 정책 개선의견을 통보한 과제는 28개(13.1%)였으며, 이 중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는 28개로 수용률 100.0%로 나타났다.

이로써, 2022년에는 16개 시·도교육청이 추진한 사업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 개선계획이 수립된 과제는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개선의견 통보과제 중 수용된

과제를 합해서 14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60개 과제가 개선이 이루어졌다. 개선이행률은 40.5%로, 2021년 40.3%와 유사하다.

〈표 II-19〉 2022년 시·도 교육청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기관명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개선계획 과제 <sup>f)</sup>	개선 과제 <sup>g)</sup>
전 체(16)	214 (100.0)	66 (30.8)	120 (56.1)	28 (13.1)	28 (100.0)	148	60
경 상 북 도 교 육 청	28 (100.0)	28 (100.0)	0 (0.0)	0 (0.0)	-	0	-
충 청 남 도 교 육 청	27 (100.0)	0 (0.0)	27 (100.0)	0 (0.0)	-	27	15
광 주 광 역 시 교 육 청	23 (100.0)	0 (0.0)	13 (56.5)	10 (43.5)	10 (100.0)	23	12
대 전 광 역 시 교 육 청	20 (100.0)	1 (5.0)	19 (95.0)	0 (0.0)	-	19	10
대 구 광 역 시 교 육 청	16 (100.0)	16 (100.0)	0 (0.0)	0 (0.0)	-	0	-
울 산 광 역 시 교 육 청	14 (100.0)	14 (100.0)	0 (0.0)	0 (0.0)	-	0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교 육 청	12 (100.0)	0 (0.0)	0 (0.0)	12 (100.0)	12 (100.0)	12	0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10 (100.0)	1 (10.0)	9 (90.0)	0 (0.0)	-	9	-
세 종 특 별 자 치 시 교 육 청	10 (100.0)	1 (10.0)	9 (90.0)	0 (0.0)	-	9	-
경 상 남 도 교 육 청	10 (100.0)	0 (0.0)	10 (100.0)	0 (0.0)	-	10	6
경 기 도 교 육 청	9 (100.0)	5 (55.6)	4 (44.4)	0 (0.0)	-	4	3
서 울 특 별 시 교 육 청	8 (100.0)	0 (0.0)	8 (100.0)	0 (0.0)	-	8	4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7 (100.0)	0 (0.0)	5 (71.4)	2 (28.6)	2 (100.0)	7	5
강 원 도 교 육 청	7 (100.0)	0 (0.0)	3 (42.9)	4 (57.1)	4 (100.0)	7	2
전 라 남 도 교 육 청	7 (100.0)	0 (0.0)	7 (100.0)	0 (0.0)	-	7	-
충 청 북 도 교 육 청	6 (100.0)	0 (0.0)	6 (100.0)	0 (0.0)	-	6	3

주1 : a) 성별영향평가 대상인 법령·계획·사업 중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주2 : b)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주3 : c)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원안에 동의한 과제  
 주4 : d)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주5 : e)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수용' 및 '일부수용' 과제(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개선의견 과제 수×100)  
 주6 : f)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7 : g) 개선계획 수립과제(f)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8 : '-'는 해당 없음 의미



시·도교육청의 사업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이행 결과를 살펴보면, 15개 사업에서 개선내용을 반영한 충청남도교육청, 12개 사업에서 개선을 이행한 광주광역시교육청, 10개 사업에서 개선을 이행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순으로 개선완료 과제 수가 많다.

〈표 II-20〉 2022년 다수의 사업 개선 기관(시·도 교육청)

(단위: 개, %)

기관명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산출률 <sup>c)</sup>	개선 이행률 <sup>e)</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d)</sup>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자체 개선안	개선의견 수용	소계
충청남도교육청	27	100.0	55.6	27	0	27	15	-	15
광주광역시교육청	23	100.0	52.2	13	10	23	7	5	12
대전광역시교육청	20	95.0	52.6	19	0	19	10	-	10
경상남도교육청	10	100.0	60.0	10	0	10	6	-	6
인천광역시교육청	7	100.0	71.4	5	2	7	3	2	5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개선계획 수립과제(자체개선안 등의 과제+개선의견 수용과제)의 비율(개선계획 산출률(%) = 개선계획 수립과제/추진과제 수(a) × 100)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5 : e)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의 비율(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d)/개선계획 수립과제(b) × 100)

주6 : '-'는 해당 없음 의미

## 2 기관별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 가.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반영 상황에 대한 점검을 정책개선 이행점검이라고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2022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대상은 법령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가결과 중 기관 자체적으로 제출한 개선안이나, 여성가족부 장관이 개선의견을 통보하여 해당 부처가 이를 수용한 과제 중 개선예정이거나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이다.

2022년 중앙행정기관이 성별영향평가 결과 수립한 개선계획 166개와 2021년에 수립되었으나 2021년 말까지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66개를 대상으로 개선 실적을 점검하였다.

#### 1) 정책개선 현황

2022년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1,333개 법령, 148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서가 작성되었으며, 이중 법령 51개, 사업 115개에 대해 자체적으로 또는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중 133개 과제에서 개선이 이행되어 개선 이행률은 80.1%이다. 법령과 사업을 포함하여 가장 개선과제수가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로 전체 14개 개선계획수립과제(법령 6개, 사업 8개) 중 13개(법령 6개, 사업 7개) 과제에서 개선을 이행하였다.

그 뒤를 잇는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선계획을 수립한 13개 과제(법령 1개, 사업 12개) 중 11개(법령 1개, 사업 10개)과제에 대해 개선이 이행되어 개선이행률은 84.6%이다. 그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9개 과제를 개선하였고, 국방부는 8개 과제를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교육부는 각각 7개 과제를 개선하였다.

〈표 Ⅱ-21〉 2022년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단위: 개, %)

기관명	법령			사업			개선 과제 합계	개선 이행률 <sup>d)</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전 체	1,333	51	38	148	115	95	133	80.1
고 용 노 동 부	39	6	6	10	8	7	13	92.9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57	1	1	17	12	10	11	84.6
농 립 축 산 식 품 부	43	1	0	12	10	9	9	81.8
문 화 체 육 관 광 부	41	3	3	8	7	6	9	90.0
국 방 부	53	2	2	7	7	6	8	88.9
국 토 교 통 부	169	1	1	12	11	6	7	58.3
행 정 안 전 부	93	7	6	2	1	1	7	87.5
보 건 복 지 부	84	6	4	5	4	3	7	70.0
해 양 수 산 부	55	2	1	10	6	6	7	87.5
교 육 부	50	4	4	3	3	3	7	100.0
법 무 부	45	8	2	2	2	2	4	40.0
환 경 부	61	1	1	3	2	2	3	100.0
소 방 청	27	2	2	1	1	1	3	100.0
산 림 청	22	1	1	5	2	2	3	100.0
여 성 가 족 부	16	0	-	6	3	3	3	100.0
문 화 재 청	13	0	-	4	4	3	3	75.0
외 교 부	5	0	-	5	5	3	3	60.0
농 촌 진 흥 청	0	-	-	3	3	3	3	100.0
국 가 보 훈 처	42	0	-	2	2	2	2	100.0
중 소 벤 처 기 업 부	22	1	1	2	1	1	2	100.0
경 찰 청	17	1	1	3	3	1	2	50.0
인 사 혁 신 처	19	1	1	1	1	1	2	100.0
특 허 청	18	0	-	2	2	2	2	100.0
통 일 부	5	0	-	2	2	2	2	100.0

모  
양

개  
영  
Ⅰ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Ⅱ

Ⅲ

Ⅳ

부  
록

기관명	법령			사업			개선 과제 합계	개선 이행률 <sup>d)</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기 획 재 정 부	136	1	1	0	-	-	1	100.0
해 양 경 찰 청	16	0	-	2	2	1	1	50.0
질 병 관 리 청	14	0	-	3	1	1	1	100.0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8	0	-	2	1	1	1	100.0
기 상 청	8	1	0	1	1	1	1	50.0
방 송 통 신 위 원 회	8	1	0	1	1	1	1	50.0
법 제 처	8	0	-	1	1	1	1	100.0
병 무 청	2	0	-	1	1	1	1	100.0
국 세 청	0	-	-	1	1	1	1	100.0
새 만 금 개 발 청	0	-	-	1	1	1	1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	-	1	1	1	1	100.0
산 업 통 상 자 원 부	63	0	0	0	-	-	-	-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33	0	-	2	1	0	0	0.0
조 달 청	0	-	-	1	1	0	0	0.0
금 융 위 원 회	22	0	-	0	-	-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10	0	-	1	0	-	-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5	0	-	1	0	-	-	-
국 무 조 정 실	4	0	-	0	-	-	-	-
관 세 청	0	-	-	1	0	-	-	-
방 위 사 업 청	0	-	-	1	0	-	-	-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의 비율(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c)/개선계획 수립과제(b) × 100

주5 : '-'는 해당 없음 의미

## 2) 개선의견 수용 과제 이행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제출한 법령·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제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통보한 검토의견서를 수용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였다. 2022년 중앙행정기관에서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74개이다. 이 중 59개의 과제(법령 16개, 사업 43개)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졌다. 2021년 수립되었지만 이행되지 않은 개선계획에 대해서도 19개의 과제(법령 7개, 사업 12개)가 개선되었다.

〈표 II-22〉 중앙행정기관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단위: 개, %)

구분	2021년			2022년		
	계	법령	사업	계	법령	사업
이행점검 대상과제	50	15	35	74	21	53
개선완료	19	7	12	59	16	43
개선 이행률 <sup>a)</sup>	(38.0)	(46.7)	(34.3)	(79.7)	(76.2)	(81.1)

주 : a) 개선 이행률(%) = 점검연도 기준으로 개선완료 수/점검대상 과제 수 × 100

중앙행정기관이 2022년 여성가족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된 법령은 16개이다. 그 결과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교육부), 데이터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자문위원회(법무부), 국방혁신위원회(국방부), 지방시대위원회(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공모전 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보건복지부),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환경부), (근로자퇴직급여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고용노동부), 초광역권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해양수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평가위원회(소방청),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조사위원회(산림청) 등의 법령에서 규정한 16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조항을 반영하였다.

위원회 성별 균형참여 개선과 더불어 또 다른 정책개선내용으로는 데이터 산업 기반과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파악 요소로 ‘성별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정책 입안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취약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자 및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자”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인적 현황통계에 ‘성별’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제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화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피난 인원의 성별 현황을 포함하여, 화재 발생 시 성별이 고려된 피난 및 인명 구호 방안 모색의 초석을 이루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표 II-23〉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법령

기관명	법령	개선사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산업 기반과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 및 실태 파악 요소로 ‘성별 인력 현황’ 등을 포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6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데이터산업 종사자의 성별·직무별·부문별 인력 현황과 수요·공급 현황</li> </ol> </li> </ul> </li> </ul> </div>
소방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취약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및 선임”, “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자”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인적 현황통계에 ‘성별’을 포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조(통계의 작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 생략</li> <li>8. 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에 대한 지역별·성별·연령별 지원 현황</li> <li>9.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및 선임 관련 지역별·성별·연령별 현황</li> <li>10. 생략</li> <li>11. 소방시설업자, 소방기술자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의 지역별·성별·연령별 현황</li> </ol> </li> </ul> </li> </ul> </div>

기관명	법령	개선사항
소방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피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피난인원의 성별 현황을 포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4조(피난계획의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li> </ol> </li> </ul> </li> </ul> </div>

사업 분야에서는 43개 사업이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그중 몇 개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창의적인재육성-소부장분야전문인력양성-나노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교육 취소 시 패널티 적용을 제외 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모성권 보호, 태아·영유아 양육권리 보호)하였다. 또한 자연·공학계열 재학생 중 여성 비율 평균 33.3%(전체 3,185명, 여성 1,062명)를 달성하여 자연·공학계열 대학 재학 및 졸업자 평균 여성비율 31.2%를 넘어서는 등 자연·공학계열 인력 양성에서 성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장병복지지원-보건복지지원-’23~’27 국방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작성방향 연구”에서 각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야전부대(28개) 등의 의견(직급, 연령, 성별)을 반영하여 군 양성평등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발전기반조성 및 진흥-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 환경 개선-한국어교육 선진화(내내역: 한국어교육과정 개발 자문 및 한국어교재 자문 감수 운영” 사업에서는 인도 및 터키 중등학교 한국어교재 개발과정에서 자문 및 감수를 통해 양성평등한 한국어교육과정 및 한국어교재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공 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 사업에서 가사근로자 대상 교육과정 개설 시 최소근로시간 보장 관련된 교육을 과정에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원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선원근로 복지 향상-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사업에서 보고서 성별 통계 작성을 통해 해당 사업 분야의 인력의 성별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교육과정에 ‘여성선원과 실습선원의 인권 및 보호의무’, ‘성인지 감수성 향상’ 과정을 개설 및 운영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성별 균형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상청은 “기상산업 진흥-기상정보 콜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의 개정(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구체화를 위한 “상담사의 보호” 조항을 신설)을 통해 성희롱·폭언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석을 닦았다.

〈표 II-24〉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사업

기관명	사업	개선사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창의적인재육성-소부장 분야전문인력양성-나노 분야전문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교육취소 시 페널티 적용을 제외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모성권 보호, 태아영유아 양육권 권리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홈페이지(edu.kontrs.or.kr) 교육신청 내 유의사항 메뉴를 별도로 구성하여 교육생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함</li> </ul> </li> <li>* 교육신청&gt; 유의사항&gt; 공통사항&gt; 2. 교육신청 및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 수술, <b>임신, 출산</b> 등에 따른 미수료일 경우 서류 검토 후 페널티 적용 제외(공식적으로 증명가능한 서류 제출 필요)</li> </ul> </li> <li>○ 자연·공학계열 재학생 중 여성비율 평균 33.3% 달성(전체 3,185명, 여성 1,06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공학계열 대학 재학 및 졸업자 평균 여성비율 31.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2023), 2012-2021년 남녀 과학기술인력 현황)</li> </ul> </li> </ul>						
국방부	장병복지지원-보건복지 지원-'23~'27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작성방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의 의견(직급, 연령, 성별)이 반영된 군 양성평등계획 수립</li> <li>○ 군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완료('22.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야전부대(28개) 등</li> </ul> </li> <li>○ 1차「양성평등 제도개선 소위원회」개최('22.10.27.)</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위원회 결과</th> <th>23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th> </tr> </thead> <tbody> <tr> <td>성폭력 예방 · 대응 분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중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언급 필요</li> <li>▶ 상담관, 전담인력 확충은 올해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판단 필요</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의 예방·대응·지원 시스템 강화</li> <li>* 야전부대 이행 및 피해실태 확인·점검 등 7개 과제</li> </ul> </td> </tr> </tbody> </table>		위원회 결과	23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성폭력 예방 · 대응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중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언급 필요</li> <li>▶ 상담관, 전담인력 확충은 올해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판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의 예방·대응·지원 시스템 강화</li> <li>* 야전부대 이행 및 피해실태 확인·점검 등 7개 과제</li> </ul>
	위원회 결과	23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성폭력 예방 · 대응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중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언급 필요</li> <li>▶ 상담관, 전담인력 확충은 올해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판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의 예방·대응·지원 시스템 강화</li> <li>* 야전부대 이행 및 피해실태 확인·점검 등 7개 과제</li> </ul>						
문화체육 관광부	국어발전기반조성 및 진흥-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 환경 개선-한국어교육 선진화(내내역: 한국어교육과정 개발 자문 및 한국어교재 자문 감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 및 감수를 통해 성평등한 한국어교육과정 및 한국어교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및 터키 중등학교 한국어교재 개발 내용 성별영향평가 실시 (~'2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의견: 전반적으로 문화 다양성 요소에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으나, 삽화에서 일부 성별로 전형화된 묘사(여성의 외양 및 옷차림, 행동 양식)가 나타나므로 개선 필요</li> </ul> </li> </ul> </li> </ul>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근로자 대상 교육과정 개설 시 최소근로시간 보장 관련된 교육을 과정에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근로자 대상 교육과정에 최소근로시간 보장 관련 컨텐츠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컨텐츠 커리큘럼에 포함 완료</li> <li>* 가사근로자 교육 실적 '21년 35회 430명, '22년 24회 407명 (한국 고용노동교육원)</li> </ul> </li> </ul>						



기관명	사업	개선사항
해양수산부	선원근로 복지 향상-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 성별통계 작성을 통해 해당 사업분야의 인력의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성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li> <li>- 실적보고서 내 교육 참여 인원 성별통계 생산</li> <li>▪ 사업명: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선원인권보호 교육사업</li> <li>- 선원인권 교육사업 내 '여성선원 인권'을 포함한 커리큘럼을 적극 활용하여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제고</li> <li>▪ 협회 소식지 '해드림(95호)'을 통해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교육 내 여성 선원의 인권자각을 고려하여 편성된 교육 커리큘럼 소개 및 홍보</li> <li>▪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교육 사업 추진 용역 완료보고회</li> <li>▪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에 반영</li> <li>* 6. 여성선원과 실습선원의 인권 및 보호의무(안전보건 측면), 10. 성인지 감수성 향상</li> </ul>
기상청	기상산업 진흥-기상정보 콜센터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구체화를 위한 '상담사의 보호' 조항을 신설)</li> <li>- 악성민원의 유형 정의, 세부 응대 절차, 상담사 보호 조항 신설(제22조의2, 별표 2, 별표 3)</li> <li>* 악성민원 유형에 따른 차단 기준 및 기간, 법적 조치사항 등 명시</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조의2(상담사의 보호)</li> <li>① 상담사는 별표 2의 악성민원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의 악성민원 세부 응대절차에 따라 처리한다.</li> <li>②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li> <li>1. 상담사를 대상으로 폭언, 성희롱,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를 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요청하는 음성 안내</li> <li>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li> <li>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 업무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li> <li>4.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또는 휴게시간의 연장</li> <li>5.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li> <li>6. 상담사가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을 고소·고발하거나 해당 고객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경우 행정적·절차적 지원</li> <li>7.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현황</li> </ul> </div>

요약

I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의 과제

부록

### 3) 자체개선 과제 이행

중앙행정기관은 2022년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담당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담당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92개의 자체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중 74개의 과제(법령 22개, 사업 52개)를 개선하였다. 2021년 수립되었으나 그해에 수행되지 못했던 16개 과제에 대해서도 8개의 개선(법령 3개, 사업 5개)이 이루어졌다.

〈표 II-25〉 중앙행정기관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단위: 개, %)

구분	2021년			2022년		
	계	법령	사업	계	법령	사업
이행점검 대상과제	16	5	11	92	30	62
개선완료	8	3	5	74	22	52
개선 이행률 <sup>a)</sup>	(50.0)	(60.0)	(45.5)	(80.4)	(73.3)	(83.9)

주 : a) 개선 이행률(%) = 점검연도 기준으로 개선완료 수/점검대상 과제 수 × 100

먼저, 중앙행정기관에서 2022년에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한 법령은 22개이며, 그중 위원회 성별 균형참여 조항 반영, 조사통계 및 행정 통계의 성별 구분 구축 근거(조항) 마련 이외에 다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가사 및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하였다. 교육부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교사를 도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용어를 기존의 ‘보조인력’에서 ‘지원인력’으로 정비하여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조적 업무에서 지원하는 업무로 전환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법무부의 「출국대기실 운영규칙」에서는 신체·의류 및 휴대폰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성별의 담당공무원이 검사하도록 하고, 방배정에서나 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했으며, 임산부 등의 인도적 처우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였다.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추행, 2차 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설정하고, 성희롱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성 관련 범죄의 불법성과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편의 제공의 대상인 민원 취약계층의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 노인, 수급자,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더해 신체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민원취약계층인 임산부를 포함하여 모성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의 구제를 위해 관련 지침의 개발·보급,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예방교육 이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종사자의 이용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분기준을 1차 위반 ‘경고’에서 ‘영업정지 3개월’로, ‘4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서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경고를 상향 조정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 또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중복서비스 수혜 금지 조항 삭제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환경 마련에 기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노무제공자 5개 직종(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확대와 더불어 이들의 생활안정 등에 기여하였고, 이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시화하였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유해인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한 건강손상자녀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신근로자 보호 및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였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온라인 성범죄자를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호응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표 II-26〉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법령

기관명	법령	개선사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가사 및 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제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li> <li>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li> </ul> </div>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를 도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용어를 기존의 '보조인력'에서 '지원인력'으로 정비</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5조(지원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li> </ul> </div>
법무부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국대기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성별 특성을 반영(방 배정, 신체 및 휴대품 검사 인력, 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li> <li>▸ 임신부 등 인도적 처우 등을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제3조 제3항)</li> <li>▸ 신체와 소지품 검사 시 같은 성의 담당공무원이 많도록 하고, 성적 소수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정하도록 함(제4조 제2항)</li> <li>▸ 방 배정에 있어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9조)</li> <li>▸ 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에 위생용품 포함(제9조)</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송환대상외국인의 입실 등)</li> <li>③ 청장등은 입실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적 처우 등 특별한 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li> <li>1. 생략</li> <li>2. 임신부</li> <li>이하 생략</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신체 및 휴대품 검사)</li> <li>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동성의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입실외국인이 성적(性的) 소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장등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li> </ul>

기관명	법령	개선사항																				
		<p>· 제9조(「외국인보호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 대기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32조, 제42조, 제43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은 “입실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보호기간”은 “입실기간”으로, 제9조제5항 중 “법 제56조의3제3항”은 “제3조제3항”으로, 제32조제1항 중 “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와 제57조”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로 본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외국인보호규칙</p> <p>· 제9조(방 배정) ① 보호시설의 방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lt;개정 2015. 6. 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 생략</li> <li>4. 환자·임산부, 성적(性的) 소수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li> </ol> <p>· 제15조(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수건·칫솔·치약·비누·화장지·위생용품, 그 밖에 보호시설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나누어 주거나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div>																				
국방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p>○ 추행, 2차 피해 유발행위의 징계양정기준 설정 및 성희롱 기준을 합리화 - 강제추행에서 추행 분리, 성희롱에 대한 징계 기준을 합리적 조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제2조제1호가목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비행의 정도 및 과실</th> <th style="width: 15%;">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th> <th style="width: 15%;">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th> <th style="width: 15%;">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th> <th style="width: 15%;">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비행의 유형</td> <td>파면</td> <td>파면-해임</td> <td>강등-정직</td> <td>감봉-견책</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1. 성실 의무 위반</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카. 상관 비행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div>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행의 유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 성실 의무 위반					카. 상관 비행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행의 유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 성실 의무 위반																						
카. 상관 비행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요약

개요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기관명	법령	개선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padding: 5px;">10. 품위 유지 의무 위반</td> <td style="width: 15%; padding: 5px;">가. 성 관련 비행</td> <td style="padding: 5px;">별표 1의3과 같음</td> </tr> </table> <p style="margin-top: 10px;">[별표 1의3]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징계사유</th> <th colspan="3">징계기준</th> </tr> <tr> <th>가중</th> <th>기본</th> <th>감경</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성폭력</td> <td>강간</td> <td>파면</td> <td>해임</td> <td>강등-정직</td> </tr> <tr> <td>강제추행</td> <td>파면-해임</td> <td>강등</td> <td>정직-감봉</td> </tr> <tr> <td>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그 밖의 성폭력</td> <td>파면-해임</td> <td>강등-정직</td> <td>감봉</td> </tr> <tr> <td colspan="2">성희롱</td> <td rowspan="2">파면-강등</td> <td>前) 정직</td> <td>前) 감봉</td> </tr> <tr> <td colspan="2">추행</td> <td>現)정직-감봉</td> <td>現)감봉-견책</td> </tr> <tr> <td colspan="2"></td> <td>파면-강등</td> <td>정직-감봉</td> <td>감봉-견책</td> </tr> </tbody> </table>	10.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행	별표 1의3과 같음	징계사유		징계기준			가중	기본	감경	성폭력	강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제추행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그 밖의 성폭력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성희롱		파면-강등	前) 정직	前) 감봉	추행		現)정직-감봉	現)감봉-견책			파면-강등	정직-감봉	감봉-견책
10.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행	별표 1의3과 같음																																						
징계사유		징계기준																																						
		가중	기본	감경																																				
성폭력	강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제추행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그 밖의 성폭력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성희롱		파면-강등	前) 정직	前) 감봉																																				
추행			現)정직-감봉	現)감봉-견책																																				
		파면-강등	정직-감봉	감봉-견책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안전부</p>	<p style="text-align: center;">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 제공의 대상인 민원취약계층의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장애인, 노인, 수급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더해 신체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민원취약계층인 임신부를 포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조의2(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민원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li> <li>6.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신부</li> </ul>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조의2(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민원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li> <li>6.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신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조의2(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민원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li> <li>6.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신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체육관광부</p>	<p style="text-align: center;">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li> <li>1.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 관련 지침의 개발 및 보급</li> <li>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예술 활동 재개(再開)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li> <li>3. 종사자에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한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을 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li> <li>4.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인력 확보 계획의 수립·시행</li> </ul>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li> <li>1.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 관련 지침의 개발 및 보급</li> <li>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예술 활동 재개(再開)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li> <li>3. 종사자에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한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을 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li> <li>4.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인력 확보 계획의 수립·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li> <li>1.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 관련 지침의 개발 및 보급</li> <li>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예술 활동 재개(再開)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li> <li>3. 종사자에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한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을 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li> <li>4.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인력 확보 계획의 수립·시행</li> </ul>																																								

기관명	법령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 종사자의 성평등 의식 증진에 관한 사항</li> <li>2. 예술 활동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사항</li> <li>3.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li> <li>4.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관련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예술인과 예술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li> </ol> </li> <li>· 제9조(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li> <li>· 제10조(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 취소)</li> </ul>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의 이용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 조정</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30%;">위반행위</th> <th rowspan="2" style="width: 10%;">근거 법조문</th> <th colspan="4" style="width: 60%;">행정처분의 기준</th> </tr> <tr> <th style="width: 15%;">1차 위반</th> <th style="width: 15%;">2차 위반</th> <th style="width: 15%;">3차 위반</th> <th style="width: 15%;">4차 이상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           변경 전(前)            사.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td> <td></td> <td>경고</td> <td>영업 정지 1개월</td> <td>영업 정지 3개월</td> <td>등록 취소</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변경 후(後)            사.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td> <td style="text-align: center;">법 제23조 제1항 제6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td> <td></td> <td>영업 정지 3개월</td> <td>영업 정지 6개월</td> <td>등록 취소</td> <td></td> </tr> </tbody> </table> </div>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변경 전(前) 사.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변경 후(後) 사.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6호	↓	↓	↓	↓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변경 전(前) 사.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변경 후(後) 사.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6호	↓	↓	↓	↓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중복서비스 수혜 금지 조항 삭제</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lt;변경 전&gt;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            17조의6 관련)(개정 2021. 4. 6.)</p> <p>2. 운영기준</p> </div>																												

기관명	법령	개선사항
		<p>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p> <p>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 [별표 2의2]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p> <p>2. 운영기준</p> <p>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p> <p>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무제공자 5개 직종(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 포함</li> <li>- 노무제공자 5개 직종(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하여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 11호, 제14호~제17호)</li> <li>- 출산 전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등(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제3항 및 제104조의16제1항·제3항)</li> <li>-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요건 개편(시행규칙 제125조의5, 제125조의11)</li> <li>○ 사업주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시행령 제38조제4항)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지 지 강화</li> </ul>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건강손상자녀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li> <li>-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법 제91조의12)</li> <li>-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신설(시행령 제83조의4)</li> <li>- 화학적 유해인자, 약물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시행령 별표 11의4)</li> <li>* '17년 '산업안전 정책 특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li> </ul>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성범죄자를 국가공무원 임용 결정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제33조, 제69조)</li> </ul>



다음으로 62개 사업에 대해 자체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52개의 개선을 이행하였다. 법무부는 “법무행정개선-양성평등정책 지원” 사업을 통해 2일(14h) 집중교육을 직렬(보호, 출입국, 본부, 교정, 검찰)별로 6회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입문단계’에서 벗어나 1회의 교육 내에서 ‘입문단계’에서 ‘심화단계’로 이어지는 성인지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사업에서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성희롱 행위자에 재발방지 교육 실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체육육성-스포츠윤리센터운영” 사업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예방 교육 대상을 학생선수, 학부모 및 장애인 등으로 대상별 확대 시행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 적합성이 향상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보험-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사업에서는 부부 등 영농종사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가입 시 보험료 할인하는 등 상품 개선을 통해 2021년 36.9%에서 2022년 37.2%로 여성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률 제고에 기여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지원(용자)-행복주택(용자)”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여, 입주자의 성별 특성에 맞는 맞춤 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경찰청은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형사, 교통,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역량강화-여청수사팀 조사환경 개선”을 통해 사무실 출입문에 여성 경찰관 호출이 가능한 인터폰 설치하여 여성 피해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성별이 다른 조사관 등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별 특성이 반영된 수사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사업지원-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에서 영유아동반의 이동이 많은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편의시설(수유실)과 공간 조성(주차장 배치)을 조성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사업-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출동대원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대기실을 성별 분리 설계함으로써 출동대원 휴게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표 II-27〉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사업

기관명	사업	개선사항
법무부	법무행정개선-양성평등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문단계’에서 ‘심화단계’로 이어지는 집중교육으로 성인지 역량 강화</li> <li>- 2022년 양성평등교육(6급 이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 감수성 향상 과정 2일(14h), 6회</li> </ul> </li> <li>- 2022년 양성평등교육(양성평등정책담당자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정책담당자 과정 2일(14h), 3회</li> </ul> </li> </ul>

기관명	사업	개선사항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성희롱 행위자에 재발방지 교육 실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관리훈령) 제251조의3(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희롱·성폭력 성립여부(2차 피해 포함)</li> <li>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li> <li>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li> <li>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실시 등 포함)</li> </ol> </li> </ul> </li> </ul> </div>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체육육성-스포츠윤리센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예방 교육 대상을 학생선수, 학부모 및 장애인 등으로 대상별 확대 시행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 적합성 향상</li> <li>- 맞춤형 스포츠 인권 표준 교육체계도 및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 중·고등학생선수용, 발달장애선수용, 시각·청각·지체장애선수용, 장애인선수지도자용, 학부모용</li> <li>· 양성평등 인식개선교육</li> <li>· 스포츠 인권교육</li> <li>· 센터사업 및 신고상담절차, 교육소개</li> </ul> </li> <li>-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윤리 련’을 통한 온라인 교육(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및 체육지도자 재교육) 61,878명 이수</li> <li>· ‘K스포에듀’을 통한 온라인교육(체육지도자 연수과정) 2,695명 이수</li> <li>·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통한 오프라인 교육 159회/5,792명 이수</li> </ul> </li> <li>- 학습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한 학습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 9시~18시 1:1 문의하기, 콜센터 응대, 회원가입 및 교육승인 진행</li> </ul> </li> </ul>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개선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률 제고</li> <li>- 부부 등 영농종사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가입 시 보험료 할인('22.10.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가입자 : ('21) 900천명 → ('22) 912천명</li> <li>* 여성 가입자(가입비중) : ('21) 332천명(36.9%) → ('22) 339천명(37.2%)</li> </ul> </li> </ul>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지원(용자)-행복주택(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여, 입주자의 성별 특성에 맞는 맞춤 서비스 제공의 발판 마련</li> <li>- 2022 LH 공공주택 거주 후 평가(POE) 및 만족도 조사</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택 선택 시 주거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큼</li> <li>· 여성이 남성보다 주거안전을 더 중시하나, 실제 체감하는 주거 안전 수준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유사함</li> <li>·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통입지를 더 중시함</li> <li>· 남성과 여성의 현재 거주 주택 교통입지 긍정평가 비율은 서로 유사하나, 여성이 남성보다 교통입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li> </ul> </div>

기관명	사업	개선사항
경찰청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형사, 교통,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역량강화-여청수사팀 조사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출입문에 여성 경찰관 호출 인터폰 설치하여 여성피해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성별이 다른 조사관 등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을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작서 인터폰 설치(여성경찰관에게 상담받기를 원하시면 인터폰으로 호출해 주세요. 여성경찰관이 직접 안내 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li> <li>- 충북보은(여경호출벨-여성경찰관에게 상담받기를 원하시면 인터폰으로 호출해 주세요. 여성경찰관이 직접 안내 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li> <li>- 충북청주상당(피해자 전용 출입구_여성경찰관에게 상담 받기를 원하시면 인터폰으로 호출해 주세요. 여성경찰관이 직접 안내 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 공용 휴대폰 번호 제시)</li> </ul> </li> </ul>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사업지원-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동반의 이동이 많은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편의 시설과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전용주차장(임산부 포함) 조성(14대), 수유실 등 공간 조성(2개소)</li> </ul> </li> </ul>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사업-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동대원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대기실을 성별 분리하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난대응시설의 출동대원대기실을 남성대기실 6실, 여성대기실 2실로 실시설계에 반영 진행중</li> </ul> </li> </ul>

## 나. 광역자치단체

2022년 광역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로 수립한 개선계획 1,352개와 2021년 수립된 개선계획 중 2021년 내에 완수되지 못한 개선계획 807개를 대상으로 개선 실적을 점검하였다.

### 1) 정책개선 현황

2022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된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개 법령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과제(추진과제의 17.5%) 중 184개 법령의 개선(개선계획의 91.5%)이 이루어졌다. 26개 계획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과제(추진과제의 83.9%) 중 11개 계획이 이행되었다(개선계획의 42.3%). 1,125개 사업에 대한 개선계획수립과제(추진과제의 92.9%) 중 396개 사업에 대한 개선(개선계획의 35.2%)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591개의 법령 및 계획, 사업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50개 이상 개선을 완료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84개), 서울특별시(67개), 경상남도(57개), 광주광역시(54개), 경기도(54개)이다. 개선이행률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79.2%), 서울특별시(72.0%), 강원도(70.9%), 전라북도(7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8〉 2022년 광역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단위: 개, %)

기관명	법령			계획			사업			개선 과제 합계	개선 이행률 <sup>d)</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전 체(17)	1,148	201	184	31	26	11	1,211	1,125	396	591	43.7
대 전 광 역 시	75	29	29	2	2	2	76	75	53	84	79.2
서 울 특 별 시	107	22	19	1	1	1	73	70	47	67	72.0
경 상 남 도	118	12	12	1	0	-	78	72	45	57	67.9
광 주 광 역 시	92	11	11	1	1	0	74	73	43	54	63.5
경 기 도	41	8	5	1	1	1	120	115	48	54	43.5
제주특별자치도	111	41	36	4	4	0	187	187	6	42	18.1
강 원 도	50	8	8	0	0	-	47	47	31	39	70.9
부 산 광 역 시	76	20	18	2	2	0	69	67	18	36	40.4
울 산 광 역 시	29	5	5	2	2	2	46	46	22	29	54.7
전 라 북 도	130	16	15	2	2	1	36	22	12	28	70.0
인 천 광 역 시	60	2	2	3	3	0	77	73	23	25	32.1
대 구 광 역 시	70	7	6	1	0	-	59	34	14	20	48.8
전 라 남 도	17	4	4	0	-	-	54	49	15	19	35.8
경 상 북 도	12	2	1	0	-	-	55	43	13	14	31.1
세종특별자치시	59	4	3	7	6	3	61	54	6	12	18.8
충 청 남 도	41	7	7	0	-	-	53	53	0	7	11.7
충 청 북 도	60	3	3	4	2	1	46	45	0	4	8.0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의 비율(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c)/개선계획 수립과제(b) × 100

주5 : '-'는 해당 없음 의미

## 2) 개선의견 수용 과제 이행

2022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 274개의 과제 중 171개의 과제(법령 111개, 계획 7개, 사업 53개)와 2021년 내에 완료되지 못한 98개 개선계획 중 43개의 과제(법령 7개, 계획 2개, 사업 34개)에 대한 개선을 이행하였다.

〈표 II-29〉 광역자치단체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단위: 개, %)

구분	2021년				2022년			
	계	법령	계획	사업	계	법령	계획	사업
이행점검 대상과제	98	14	11	73	274	123	19	132
개선완료	43	7	2	34	171	111	7	53
개선 이행률 <sup>a)</sup>	(43.9)	(50.0)	(18.2)	(46.6)	(62.4)	(90.2)	(36.8)	(40.2)

주 : a) 개선 이행률(%) = 점검연도 기준으로 개선완료 수/점검대상 과제 수 × 100

2022년에 개선이 이루어진 광역자치단체 법령의 경우 다수가 위원회 규정에 성별 균형 조항을 포함하거나, 성별 서식 규정 개정 혹은 성별분리통계를 산출하는 조항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그 밖에도 서울특별시는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자문하는 약자동행위원회에 성별균형 구성을 명시하였다(「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광주광역시는 노동권익보호위원회가 가사노동자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관련 요건을 추가하였다(「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충청남도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여자 종목을 추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장에게 모성보호 및 성희롱·성폭력·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의 책임을 부여하였다(「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경상북도는 ‘유모차(乳母車)’를 ‘유아차(乳兒車)’로 용어 변경함으로써 성별고정관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성장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위원회에 성별균형 구성을 명시함으로써 민자유치 사업 추진의 정책 결정에 있어 성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표 II-30〉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법령

기관명	조례	개선사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자동행위원회에 성별균형 구성을 명시</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조(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약자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li> <li>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 복지, 여성, 교통, 교육, 건강, 주택, 재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li> </ul> </div>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권익보호위원회'가 여성이 다수 비율을 차지하는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가사노동자 관련 요건 추가</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li> <li>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li> <li>5.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li> </ul> <p>[참고]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li> <li>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노동권익보호위원회가 대신한다.</li> </ul> </div>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노동권익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데 있어 '노동권익보호위원회'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감정노동자 관련 요건 추가</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조(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li> <li>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노동권익보호위원회가 대신한다.</li> <li>▸ 제14조(위원회의 기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선계획 수립</li> <li>2. 권고, 가이드라인, 안내서, 실천 규칙</li> <li>3. 감정 노동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li> <li>4. 감정 노동자 보호 지원 센터 운영</li> <li>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li> </ol> </li> </ul> </div>

기관명	조례	개선사항
		<p>[참고]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li> <li>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li> <li>4. 「광주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14조 각 호의 사항</li> </ul>
충청남도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운동경기부의 여자 종목으로 테니스를 추가하여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을 개조함.</li> <li>○ 인사위원회에 성별균형 구성을 명시</li> <li>○ 단장에게 모성보호 및 성희롱·성폭력·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의 책임 부여</li> </ul> <p>· 제2조(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p> <p>② 충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성별 공통 종목(육상, 근대5종, 마라톤) 남성 종목(핸드볼), 여성 종목(태권도, 테니스)로 한다.</p> <p>· 제4조(인사위원회 설치)</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성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p>· 제5조(인권보호 조치 등)</p> <p>①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지도자 및 선수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1. 성희롱·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p> <p>2, 3. (생략)</p> <p>4.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 및 부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p> <p>②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지도자 및 선수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및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p>
경상북도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과 육아의 제공자(어머니)에 기반한 용어인 '유모차(乳母車)'를 돌봄대상을 주체로 한 용어 '유아차(乳兒車)'로 변경</li> </ul> <p>· 제7조(금지행위)</p> <p>8.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p> <p>가. 유아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p>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민자유치위원회에 성별균형 구성을 명시</li> </ul> <p>· 제4조(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법 제143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b>성별을 고려하여</b> 구성한다.</p>

요약

개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의 과제

부록

계획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개선 주요 이행사례는 다음의 5개 사례이다. 서울특별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민 인식 조사에서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계획을 명시하였으며, 문화예술 체계 및 보건의료체계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명시함으로써 양성평등한 도시 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울산광역시의 『제4차 울산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장애물 없는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계획에 명시하여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기본계획』에서는 세종시 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에 있어 성별·연령·장애유무 등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상담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이 성별 균형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보화 시스템 설계 계획을 명시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또 다른 계획인 『시정4기 일자리 종합 계획』에서는 일자리 창출 대상을 청년에서 여성, 청년, 신중년, 노인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성별, 세대별, 직무별 맞춤형 일자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충청북도의 『제3차 충청북도 환경교육종합계획(2023~2025)』은 민관산학 환경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특정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성별 균형적인 의사결정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I-31〉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계획

기관명	계획	개선사항
서울특별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과 연령 등 도시의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시민 인식 조사의 모집단 설정 및 결과 분석 실시로 도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발전 방향 모색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변화, 계획여건 변화 진단</li> </ul> </li> <li>·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민 인식 조사를 수행할 경우, 성별·연령 별로 고르게 의견을 조사하고 인구 특성별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이동이 편리한 보행 중심의 통합형 네트워크 구축</li> </ul> </li> <li>· ‘보행’을 중심으로 근린 모빌리티(자전거, PM 등)를 통합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환경을 보장한다.</li> <li>○ 문화예술체계 및 보건의료체계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지원체제로 접근성 및 지원공간 마련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체계 정착</li> </ul> </li> </ul>



기관명	계획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에서 노령인구까지 생애과정에서 문화적 활동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애주기별 적합한 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li> </ul>
울산광역시	제4차 울산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개별 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성별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계획·설계·시공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중에 관한 규칙, 2021.12.4.』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대한 내용을 추가</li> <li>-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을 참고하여 가로조명 및 보행 안전 개선 등을 위해 밝은 도로 개선사업,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계획</li> <li>- 취약계층 및 여성의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가이드라인(현장설치) 내용에 안심벨 및 CCTV 설치를 명시</li> <li>- 교통안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상에 여성단체 및 여성기관을 포함하도록 명시(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대상에 임신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포함)</li> </ul> </li> </ul>
세종특별자치시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 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에 있어 성별을 포함한 다양성(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지역별, 사회 및 경제적 특성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함.</li> <li>○ 세종형 데이터레이크(Data Lake)*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레이크: 중앙 집중식 리포지토리(repository)에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를 모두 저장하며, 원본 데이터를 원시형태로 저장 및 관리</li> <li>- 데이터의 활용성을 위해 세분화된 형태(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지역별, 사회 및 경제적 특성별 등)의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설계</li> </ul> </li> <li>○ 인공지능 기반 민원 상담 보이스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의 특정 성별 부여로 젠더 편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문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학습하는 내용 추가</li> <li>- 인공지능 사용자(민원인)에게 인공지능 윤리의식에 대해 알리고 안전하고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 제공 내용 추가</li> </ul> </li> <li>○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세종시티앱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고령자 등 모바일 앱 접근에 제약이 많은 시민들을 고려하여 주요 현안 및 해결방안 등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오프라인 회의 개최</li> </ul> </li> </ul>
	시정4기 일자리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중심이었던 일자리 창출 대상을 생애 전주기에 속한 대상(여성, 신중년, 노인)으로 확대하여 미래인적자원 확보 가능성을 확장하고, 생애별, 직무별 맞춤형 일자리 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으로 교육 밀착도를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인적자원 확보에 있어서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신중년, 노인 등 다양한 세대별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 추가</li> <li>- 청년, 여성, 신중년, 노인 등 대상별 적합 직무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하여 수요자 생애전주기적 인력양성 순환 체계 확립</li> </ul> </li> </ul>
충청북도	제3차 충청북도 환경교육종합계획( 2023~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뿐 아니라 사회환경교육기관, 기업체, 지역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산학 환경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특정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성별 균형적인 의사결정의 기반 마련</li> </ul>

광역자치단체가 이행한 사업에 대한 정책개선에서 서울특별시의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육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성평등한 돌봄 환경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광주광역시의 “문화산업콘텐츠육성-인공지능·콘텐츠 융합 창작랩 운영” 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 및 활용하여 사업 참여에 성별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아동복지 증진-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희망복지지원-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 구성 운영(성인지예산)” 사업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에 성별균형 구성을 명시하여 협의체 사업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II-32〉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사업

기관명	사업	개선사항
서울특별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육아 경험을 공유</li> <li>- 2022년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부모 자조모임 사례 모음집 제작 및 배포, 남성 참여자 수기 수록</li> <li>- 아빠 육아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작음'들,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영유아 아동발달 향상 및 아빠육아참여증진 자조모임</li> <li>- '여보 나 친구 좀 만나고 와도 될까'라는 말의 무게, 동대문구 '청센포 꽃잎반' 자조모임</li> </ul>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콘텐츠육성-인공지능·콘텐츠 융합 창작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과정에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 및 활용</li> <li>- 인공지능, 콘텐츠 융합 창작랩 교육생 내 여성 비중을 높이는 방안 마련 위한 지표로 활용</li> <li>- 교육생 선발 면접위원 성별 비율 균형 확보</li> </ul>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 증진-드림스타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교육 실시</li> <li>- 교육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교육</li> <li>- 교육내용: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그루밍 범죄 교육</li> </ul>
제주특별자치도	희망복지지원-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 구성 운영(성인지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회에 성별균형 구성을 명시</li> <li>- 각 읍면동에서 신규 공개모집 방법을 성별을 고려 명시(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함)</li> <li>-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신청서에 성별 기재란이 있음.</li> </ul>

### 3) 자체개선 과제 이행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22년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1,078개이고,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420개이다. 구체적으로는 73개의 법령과 4개의 계획, 343개 사업을 개선하였다. 또한 2021년에 완수되지 못해 이월된 자체개선 과제 709개 중에서 329개의 과제(법령 7개, 계획 0개, 사업 322개)가 개선되었다.

〈표 II-33〉 광역자치단체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단위: 개, %)

구분	2021년				2022년			
	계	법령	계획	사업	계	법령	계획	사업
이행점검 대상과제	709	10	3	696	1,078	78	7	993
개선완료	329	7	0	322	420	73	4	343
개선 이행률 <sup>a)</sup>	(46.4)	(70.0)	(0.0)	(46.3)	(39.0)	(93.6)	(57.1)	(34.5)

주 : a) 개선 이행률(%) = 점검연도 기준으로 개선완료 수/점검대상 과제 수 × 100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자체개선 이행사항 중 다수는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와 성별 통계 생산을 위한 성별란의 서식 변경이었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성별균형 구성을 명시하여 정책 및 계획의 심의 과정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구광역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역시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구성을 명시함으로써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성별로 다양하고 고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조례」에서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야기되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이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의 수립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환경보전위원회의 성별균형 구성을 명시하였다.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는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함으로써 시책 추진 과정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불법 촬영기와 같은 범죄 예방 등에 대한 교육 실시를 명시하였다.

〈표 II-34〉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법령

기관명	조례	개선사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성별균형 구성을 명시</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li> <li>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b>성별을 고려하여</b>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li> <li>2.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li> </ul> </div>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구성을 명시</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b>성별을 고려하여</b> 구성한다.</li> </ul> </div>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야기되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이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 포함</li> <li>○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위원회의 성별균형 구성을 명시</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li> <li>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li> <li>3. <b>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b></li> <li>▸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li> <li>⑤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b>성별을 고려하여</b>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li> </ul> </div>
경상남도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조(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③ &lt;생략&gt;</li> <li>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b>「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li> </ul> </div>

기관명	조례	개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불법 촬영기기와 같은 범죄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조례에 반영</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및 <b>범죄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b>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조3항에 6호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유무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것</li> <li>▪ 제10조(관리인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b>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불법 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신고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b></li> </ul> </li> <li>▪ 제17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b>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b></li> </ul> </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지 제2호서식, 제4호서식에 성별란 추가</li> </ul>

광역자치단체의 계획과 관련하여 기관이 제시한 자체개선 내용을 반영한 4개 계획의 이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의 두 계획에서는 보행 및 교통편의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교통 개선을 도모하고(『제2차 대전광역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대책과 대상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 계획을 마련하였다(『제4차(2022~2026)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5개년 계획』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지원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개발 및 교육 진행에 성별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경기도의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서는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 및 권익 향상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 확보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보육 정책 강화를 위해 추진과제를 확대하였다.

〈표 II-35〉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계획

기관명	계획	개선사항
대전광역시	제2차 대전광역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 및 교통편의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에게 보행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li> <li>- 계획 내용: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보도바닥 정비 사업 등</li> </ul>
	제4차 (2022~2026)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노약자 및 이들과 동반하는 사람 등의 교통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대책과 대상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 계획 마련</li> <li>- 교통사고 감소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 사망자수 2020년 대비 41% 감축, 2026년 16명 목표</li> <li>· 어린이 사망자수 2020년 0명 지속 유지 목표</li> </ul> </li> <li>- 선행보행신호 등 보행자 우선신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나 노약자의 통행이 빈번하거나 횡단보도 보행자가 많은 곳, 보행자 횡단 사고가 많은 곳, 비보호 좌회전 도로의 보행자 사고 다발 지점 등에 도입</li> </ul> </li> <li>-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신호등,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 볼 수 있는 바닥조명 시설 등 설치</li> </ul> </li> <li>-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 (고령자, 보행자, 사고다발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단횡단 방지펜스, 시선유도봉 설치, 횡단보도 등 도로안전시설 확충</li> </ul> </li> <li>- 고령자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시설 개선, 횡단보도 중앙 보행섬 설치, 확대표지판 설치, IT기술을 이용한 보행자 배려 시스템 도입(보행신호자동 연장), 찾아가는 고령자 안전교육</li> </ul> </li> <li>- 어린이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및 표준모델 정비</li> <li>· 스쿨존 모니터링(CCTV) 확대</li> <li>·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차 전면 금지 및 시간제 통행제한</li> <li>· 어린이·청소년·교직원 교통안전교육</li> </ul> </li> </ul>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5개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지원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하여 성별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개발 및 교육 진행에 기여</li> <li>- 사회적 약자: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구 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b>경력단절 여성</b>, 청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교육·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모델 개발</li> <li>· 지역문제 해결에 적합한 모델 개발</li> <li>· 전략 모델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기업대상 다양한 지원연계</li> </ul> </li> <li>-시민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진행</li> <li>·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예, 사회적경제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마련하여 <b>경력단절 여성</b> 및 시니어 등 교육 기회 제공</li> </ul>
경기도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 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보육의 사회적 책임 확보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보육정책을 강화</li> <li>- 신규과제 확대: 보육교직원 건강지원, 보육교직원 회복지원 및 조직문화 컨설팅, 보육교사의 영유아 발달지원 전문역량 강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노후환경 개선, 외국인아동 보육 지원</li> </ul>

다음으로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완료한 사업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의 “예방적건강관리강화-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여성장애인 대상의 교육예산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보건, 건강증진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사업은 여성들의 삶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지역특성화 이야기 발굴 과정에서 성차별적 내용을 삭제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 고려를 명시하였다. “수자원보전관리-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는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로 공동욕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시설관리-시설물설치및 구입-우치공원 보행로 정비” 사업을 통해 보행로 보수 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휠체어, 유아차가 통행할 수 있는 보행도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였다. 강원도의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공공의료기관 직원 대상 교육”에서는 위탁교육 계획 수립 시 교육에서 성별, 종교, 장애, 인종,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강원도의 또 다른 사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마을기업 육성”에서는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심사기준에 성별 균형 참여 내용을 기입하고, 약정 해지 사유에 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조를 명시하였다. 전라북도는 “공공보건사업 추진-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여성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도 홈페이지 게시 등)를 진행하였다. 경상남도는 “건강가정육성 및 가족지원강화-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직접)”을 통해 늘어나는 남성 한부모 가구주가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홍보하였다.

〈표 II-36〉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사업

기관명	사업	개선사항
대구광역시	예방적건강관리강화-지역장애인보건 의료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장애인 대상 교육예산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보건, 건강증진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li> <li>- 여성장애인 교육예산 17,950천원 편성</li> </ul>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들의 삶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지역특성화 이야기 발굴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함으로써 차별적인 내용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함.</li> <li>- 이야기할머니활용 지역이야기소재발굴 계획서 3.이야기보고서 검수 및 심사기준의 2)검수기준 불인정 대상에 “차별적인 내용(성인지 감수성고려)” 포함</li> </ul>
	수자원보전관리-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 (주민참여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로 공동욕아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li> <li>- '22. 4월 :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계획 수립</li> <li>- '22. 5월 : 사업 안내 및 설치 장소 선정</li> <li>- '22. 6월 : 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li> <li>- '22. 7월~10월 : 기저귀교환대 설치(만경관 외 2개소, 8개 설치완료</li> </ul>

기관명	사업	개선사항
광주광역시	시설관리-시설 물설치및구입- 우치공원 보행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로 보수 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유아차 이용자, 고령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차와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보행도로의 유효폭을 확보</li> <li>- 유아차,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보행도로 유효폭 확보를 위해 차단봉 제거 후 보행도로 신설</li> <li>- 보행로 무소음트렌치로 교체</li> <li>- 부식이 심했던 나무관람석 교체</li> </ul>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공공의료기관 직원 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교육 계획 수립 시, “교육에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외모, 인종, 성적 지향, 학력 등에 대한 비하 또는 혐오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명시</li> </ul>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마을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공모·선정 계획 중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심사기준 ‘공동체성’ 항목에 ‘회원이 성별로 고르게 참여한 경우 등 성평등한 지역 공동체 형성’ 추가</li> <li>○ 강원도 예비마을기업 공모·선정 계획 수립 시, 약정 해지 사유에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를 명시</li> </ul>
전라북도	공공보건사업 추진-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여성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관련 홍보글 게시</li> <li>-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부서소식에 ‘장애친화 산부인과(예수병원) 개소 및 운영 안내’(2022.11.04.) 게시</li> </ul>
경상남도	건강가정육성 및 가족지원강화-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직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늘어나는 남성 한부모 가구주가 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부모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육자 및 가족양육분야 전문가 자원이 부족한 양육가정까지 소외받지 않고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li> <li>- 남성한부모 가구주의 수혜율 제고를 위해 2022년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안내 홍보지에 ‘남성 한부모 가구주의 적극적인 신청바랍니다’라는 문구 추가하여 홍보 진행</li> </ul>



## 다.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2022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수립한 개선계획 6,510개와 2021년 수립된 개선계획 중 2021년에 개선이 이행되지 못한 개선계획 3,176개를 대상으로 개선 실적을 점검하였다.

### 1) 정책개선 현황

2022년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된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로 1,430개 법령에 대한 개선계획(추진과제의 13.9%)이 수립되었고, 1,274개 법령 개선(개선계획의 89.1%)이 이루어졌다. 94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그중 69개(추진과제의 73.4%)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개의 개선과제(개선계획의 27.5%)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대해서는 5,011개 개선계획(추진과제의 86.2%) 중 1,983개 사업(개선계획의 39.6%)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3,276개의 법령 및 계획, 사업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었다.

〈표 II-37〉 2022년 기초자치단체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단위: 개, %)

기관명	법령			계획			사업			개선 과제 합계	개선 이행률 <sup>d)</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전 체(226)	10,259	1,430	1,274	94	69	19	5,815	5,011	1,983	3,276	50.3
경기(31)	1,993	178	159	40	29	9	1,256	1,168	513	681	49.5
경남(18)	817	264	237	5	3	2	581	572	269	508	60.5
서울(25)	956	107	96	0	-	-	485	438	207	303	55.6
강원(18)	776	129	108	4	4	1	355	329	131	240	51.9
전남(22)	1,099	151	131	3	2	0	430	356	103	234	46.0
경북(23)	931	92	90	3	2	1	483	328	140	231	54.7
인천(10)	369	76	69	10	9	1	275	246	121	191	57.7
부산(16)	447	107	93	12	11	2	350	302	83	178	42.4
충북(11)	587	44	40	5	4	1	319	292	125	166	48.8

기관명	법령			계획			사업			개선 과제 합계	개선 이행률 <sup>d)</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전북(14)	730	97	83	0	-	-	307	172	44	127	47.2
충남(15)	809	64	56	3	2	0	373	292	55	111	31.0
광주(5)	261	47	46	0	-	-	163	162	45	91	43.5
울산(5)	153	45	41	3	2	1	121	105	34	76	50.0
대전(5)	140	13	13	4	1	1	127	114	57	71	55.5
대구(8)	191	16	12	2	0	-	190	135	56	68	45.0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의 비율(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c)/개선계획 수립과제(b) × 100)

주5 : '-'는 해당 없음 의미

## 2) 개선의견 수용 과제 이행

2022년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검토 의견을 수용하여 개선의견을 수립한 과제는 1,740개이다. 이 중 2022년 한 해 동안 1,119개의 과제(법령 828개, 계획 14개, 사업 277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한편, 2021년에 개선의견이 수용되었으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과제는 639개이고, 이 중 183개의 과제(법령 81개, 계획 9개, 사업 93개)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II-38〉 기초자치단체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단위: 개, %)

구분	2021년				2022년			
	계	법령	계획	사업	계	법령	계획	사업
이행점검 대상과제	639	191	23	425	1,740	935	49	756
개선완료	183	81	9	93	1,119	828	14	277
개선 이행률 <sup>a)</sup>	(28.6)	(42.4)	(39.1)	(21.9)	(64.3)	(88.6)	(28.6)	(36.6)

주 : a) 개선 이행률(%) = 점검연도 기준으로 개선완료 수/점검대상 과제 수 × 100

2022년 개선이 이루어진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경우 상당수가 위원회 성별 균형 조항, 성별분리통계 생산, 별지 서식의 성별 구분 등을 개선한 조례이다.

이외에 정책개선 이행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통해 시민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 반영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조례」에서는 성별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미디어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특히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공무원의 치료·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였다. 강원도 평창군의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자녀(子女)’, ‘부모(父母)’를 다양한 가족형태(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등)를 반영한 표현인 ‘아이’, ‘보호자(保護者)’로 개선하였다. 충청북도 진천군의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입장 제한 대상자에 성추행이나 음란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을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도서관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충청북도 단양군의 「단양군 체육진흥 조례」에서는 체육계의 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충청남도 서천군의 「서천군 인구정책기본 조례」에서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 및 교육에 “양성평등”을 포함하여 “양성평등” 한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 인구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질환 발생자인 ‘여성’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매개 질환의 예방력을 강화하였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하동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교육내용에 재해약자의 동반 여부·성별·연령별·계층별 등에 따라 피해 방식, 규모 등이 달라지는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민방위기동대가 각 상황별 대처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II-39〉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법령

기관명	조례	개선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성민원인으로 인한 피해 공무원의 성별현황, 피해내용 및 지원내용에 대한 성별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응대공무원보호지원신청서에 성별 구분란 마련</li> <li>- [별지 서식]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제7조 및 제12조 관련) 성별구분란 마련</li> </ul>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을 고려할 것을 명시</li> <li>▪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b>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b>하여야 한다.</li> </ul>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해 시민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li> <li>▪ 제16조(구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위원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고, <b>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b>하여야 한다.</li> </ul> </li> </ul>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미디어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li> <li>▪ 제5조(표시금지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3.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b></li> </ul> </li> </ul>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특히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공무원의 치료·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li> <li>▪ 제14조(특별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8.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특히(악성·고질)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그 치료를 위한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b></li> </ul> </li> </ul> </li> </ul>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子女)', '부모(父母)'를 다양한 가족형태(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등)를 반영한 표현인 '아이', '보호자(保護者)'로 개선</li> <li>▪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b>아이</b>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양육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i> </ul>

기관명	조례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육아나눔터”란 만 12세 이하의 <b>아이</b>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b>아이</b>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li> <li>2. “가족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 등을 기부하여 <b>아이</b>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li> </ol> </li> <li>▶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아이 양육을 위한 정보교류와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li> <li>▶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이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li> <li>2.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li> </ol> </li> <li>▶ 제9조(위원회의 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앗이 참여 <b>보호자</b></li> <li>2.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의 <b>보호자</b></li> </ol> </li> </ul>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 제한 대상자에 성추행이나 음란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을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도서관 이용의 근거 마련</li> <li>▶ 제14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b>성추행이나 음란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b></li> </ol> </li> </ul>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체육진흥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계의 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li> <li>▶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b>군수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성폭력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b>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i> </ol> </li> <li>▶ 제15조(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b>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b></li> </ol> </li> </ul>

기관명	조례	개선사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 및 교육에 “양성평등”을 포함하여 “양성평등” 한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 인구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조(인구정책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7.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양성평등한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서천군민을 대상으로 출생·사망 및 인구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등에 있어 양성평등한 가족 친화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인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li> </ul> </div>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질환 발생자인 ‘여성’에서 ‘사람’으로 변경</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b>사람</b>으로 한다.</li> </ul> <p>6. 자궁경부암: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인 사람(단, 과거 자궁경부암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p> </div>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내용에 재해약자의 동반 여부·성별·연령별·계층별 등에 따라 피해 방식, 규모 등이 달라지는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민방위기동대가 각 상황별 대처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조(교육) ①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교육내용에는 <b>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b></li> </ul> </div>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개선한 계획 사례를 보면, 강원도 태백시 『제5기 태백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과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보호·교육·돌봄 지원의 다양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여성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력 강화” 사업의 실시 및 계획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추진방향>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확대 및 기회 제공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더해 기술교육 및 농기계보급 및 교육에도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하였다. 경상북도 칠곡군의 『2040년 칠곡군 도시기본계획』은 임신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부인과(소아과)병원 개설 및 산후조리시설 마련 등 출생에 관련된

성인지적 정책을 계획하였다. 더불어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확대 등의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외곽지대의 범죄예방 및 안전거리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표 II-40〉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계획

기관명	계획	개선사항
강원도 태백시	제5기 태백시 지역사회보장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과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보호·교육·돌봄 지원의 다양화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및 청소년 인구 감소세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원(돌봄체계 강화,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 양질의 교육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li> <li>-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재활중심의 지원체계 확립</li> </ul> </li> <li>○ 거점형 서비스 집합형 공간 조성·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내 유기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주여성·다문화 가족 역량강화에서 온가족형 생활지원으로의 목표 수정 및 사업 확대</li> <li>·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통한 가족의 휴식공간 제공</li> <li>· 가족센터 및 가정폭력상담소 이전을 통한 가족문제 내 문제해결의 신속·적절한 서비스 연계</li> <li>·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연계를 위한 시간적·공간적 장소 확보</li> </ul> </li> <li>○ “여성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력 강화” 사업 실시 및 계획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 지원</li> <li>-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li> <li>-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 지원</li> <li>-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 및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지원</li> </ul> </li> <li>○ 돌봄근로자 처우개선, 여성대표성 강화,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등 성평등 목표에 부합한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밝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li> <li>·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 지원</li> <li>·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li> <li>·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li> </ul> </li> </ul>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추진방향&gt;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추가함으로써 여성 농업인 대표성 확대 및 기회 제공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가공시설 구축 및 경영지원</li> <li>- 농기계 관련 특화보급</li> </ul> </li> <li>○ &lt;생산지도 계획&gt;에 성별 맞춤형 기술교육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농가별 및 성별 맞춤형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GAP(저탄소) 인증 및 영농관리시스템 마련 추진</li> </ul> </li> <li>○ 공동농기계 활용 관련, 여성농업인 대상 농기계 특화교육 및 우선 보급과 체형 고려한 소형농기계 도입 내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 대상 농기계 특화 교육 및 우선 보급</li> <li>- 여성농업인의 체형을 고려한 소형농기계 도입</li> </ul> </li> </ul>

요  
약

I  
개  
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의 과제

부  
록

기관명	계획	개선사항
경상북도 칠곡군	2040년 칠곡군 도시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부인과(소아과)병원 개설 및 산후조리시설 마련 등 출생에 관련된 성인지적 정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요양의료시설 확충 및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효율성 제고</li> <li>- 요양병원 읍면별로 1개소를 계획하여 2040년 8개로 계획</li> <li>- 목표연도인 2040년 의료서비스 수준 증가를 위해 병원 6개소, 의원 60개소 계획하며 병상수 300개 이상의 종합병원 1개소 계획</li> <li>- 산부인과(소아과) 포함</li> </ul> </li> <li>○ 다문화가족 장기정착지원을 포함시킴으로써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통합 교육 활성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관련 상담 및 주거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대응체계 강화, 다문화가족의 정착주기가 장기화되면서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여 가족관계 프로그램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 글로벌 역량과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li> </ul> </li> <li>○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확대 등의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외곽지대의 범죄예방 및 안전거리 조성의 발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확대 및 효율적인 방법용 CCTV 시스템 구축, 유해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설계로 주민에 의한 자연 감시 효과를 높여 범죄유발 요인 제거</li> </ul> </li> </ul>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개선한 사업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여성복지증진-다문화 특성화사업” 사업에서는 제공자 및 대상자 교육을 통해 결혼 이민자의 양성평등한 가족 및 사회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충청남도 부여군은 “청사관리-청사수선관리” 사업에서 영유아를 동반하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이용자를 위해 장애인 화장실과 남녀화장실에 각각 영유아 설비를 구축하였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다문화가족언어발달지원사업-다문화가족언어발달지원사업”을 통해서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를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성인지예산서 상 성과목표인 사업 대상자 이주여성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였다. 경상남도 양산시 “일자리 창출-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노동공간이 사적 공간으로 여겨지는 가사관리의 업무 특성상 직장 내 성희롱의 대응 취약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기업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사업참여자의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표 II-41〉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사업

기관명	사업	개선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복지증진-다문화 특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자 및 대상자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성평등한 가족 및 사회 정착 지원</li> <li>○ 결혼이민자의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대상 소비자 기초상식, 금융사기 대처방법, 한국 물가알기, 은행업무 이용방법 등 소비자교육 실시</li> </ul> </li> <li>○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대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 부부 대상으로 가족 내 성평등 교육 실시</li> </ul> </li> <li>○ 사업 핵심 인력(강사, 상담사 등)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 직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심화워크숍 진행</li> </ul> </li> </ul>
충청남도 부여군	청사관리-청사수선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동반 장애인·비장애인 이용자를 위해 장애인 화장실과 남녀화장실에 각각 영유아 설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 안전의자 설치, 1층 남녀화장실에 아동용 변기커버 설치 및 알림 표시 부착, 남녀화장실에 접이식 기저귀 교환대 설치 완료</li> </ul> </li> </ul>
전라북도 군산시	다문화가족언어발달 지원사업-다문화가 족언어발달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를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성인지예산서 상 성과목표 상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2023년 성과목표 이주여성(사업 대상자 수)을 2022년 추정치 871명보다 많은 1,400명으로 설정함</li> </ul> </li> </ul>
경상남도 양산시	일자리 창출-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공간이 사적 공간으로 여겨지는 가사관리사의 업무 특성상 직장 내 성희롱의 대응 취약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기업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성인지교육 실시로 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대상: 가사관리사 22명</li> <li>- 교육주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방법 등</li> </ul> </li> <li>○ 사업참여자 성희롱 방지 서약서 작성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관련 5가지 내용이 명시된 서약서 작성</li> </ul> </li> </ul>

### 3) 자체개선 과제 이행

2022년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4,770개이고,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2,157개(법령 446개, 계획 5개, 사업 1,706개)이다. 또한 2021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개선하고자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법령·계획·사업은 2,537개였고, 그 중 654개의 과제(법령 41개, 계획 2개, 사업 611개)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II-42〉 기초자치단체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단위: 개, (%))

구분	2021년				2022년			
	계	법령	계획	사업	계	법령	계획	사업
이행점검 대상과제	2,537	74	9	2,454	4,770	495	20	4,255
개선완료	654	41	2	611	2,157	446	5	1,706
개선 이행률 <sup>a)</sup>	(25.8)	(55.4)	(22.2)	(24.9)	(45.2)	(90.1)	(25.0)	(40.1)

주 : a) 개선 이행률(%) = 점검연도 기준으로 개선완료 수/점검대상 과제 수 × 100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이 수립되고 조례 개선이 완료된 446개 과제는 대부분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고,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여 성별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위에 언급한 두가지 개선유형 외에도 지역 및 성별 비례를 고려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으로 구청장의 선거공약 이행 평가에 다양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가 있고, 장기요양요원이 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수립의 근거를 제시한 충청북도 「단양군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도 있다. 경상남도 「하동군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으로 여성리더십 교육,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명시하여 이를 통해 농촌지역사회가 양성평등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상남도 합천군은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통해 이장이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표 II-43〉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법령

기관명	조례	개선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및 성별 비례를 고려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li> <li>▶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선거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li> <li>② 평가단은 18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25명 내외로 구성하되, <b>지역별 인구비례, 성비를 고려해 추천·공모·위촉 등으로 선정한다.</b></li> </ul>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요원이 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수립의 근거 제시</li> <li>▶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li> <li>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b>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b> 노력하여야 한다.</li> </ul>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발전협의회 구성에 성별 균형참여를 명시</li> <li>○ 중간지원조직의 관련 교육을 통해 농촌지역사회가 양성평등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li> <li>▶ 제15조(구성)</li> <li>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장 및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b>「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b> 군수가 위촉한다.</li> <li>▶ 제20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li> <li>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b>여성 리더쉽 교육, 양성 평등의식 함양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포함</b>) 및 <b>마을 컨설팅</b></li> </ul>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장이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li> <li>▶ 제3조(임명 및 해임)</li> <li>② 읍장·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li> <li>5. <b>「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b></li> </ul>

기초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스스로 제안한 개선의견을 반영한 계획 중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 창원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1인가구 안심홈지원 등 여성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창원맘 커뮤니티센터 설치”를 통해 양육기 부모를 위한 정보공유와 힐링 공간의 제공을 계획하였으며, 창원시 여성인재 발굴 및 DB사업을 통해 지역

요약

개요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IV

부록

사회보장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역 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동역량 강화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표 II-44〉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계획

기관명	계획	개선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범죄 예방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불안감과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필요 및 귀갓길 범죄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가구 안심홈지원 (23년 성과목표: 100명 지원)</li> </ul> </li> <li>○ 1인 안심주택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 수요에 대응하여 도심 내 시세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안심주택 공급 (23년 성과목표: 안심주택 5개동 30세대 공급)</li> </ul> </li> <li>○ 창원맘 커뮤니티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와 직장생활에 지친 부모들에게 정보공유와 힐링 공간 제공 (23년 성과목표: 설치 추진율 50%)</li> </ul> </li> <li>○ 창원시 여성인재 발굴 및 DB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사회의 기틀 마련 및 숨은 여성인재 발굴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창원시 여성인재 발굴 및 DB구축 (23년 성과목표: 여성위원 DB 등재 100건)</li> </ul> </li> <li>○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일반적 가족서비스 제공과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공간 마련 (23년 성과목표: 1개소 설치)</li> </ul> </li> </ul>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706개 사업에 대해 자체개선이 이루어졌다. 다수의 개선의견은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교육이었다. 대구광역시 서구는 “수질오염 단속-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을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 공동육아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지원-다문화 경연대회(북&다문화 축제 추진)”사업을 통해서도 행사 안내판 작성 시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작성하여, 다문화가족의 참여에 언어적 불편함이 적도록 유도하였으며, 수유실(붉은색 표기로 주목성 높임) 및 유아용 변기시트 구비로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직장 운동경 기부 및 전문체육 육성-실업태권도팀 육성”사업을 통해 지도자 및 선수단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및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부고발이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 연계를 통한 성희롱, 폭력피해 등 인권침해에 대한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상담창구를 마련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문화예술·산업육성지원-광산무대나누기프로젝트” 사업에서 사업 참여자 성폭력예방, 성인지감수성 교육 의무화로 안전한 예술활동을 보장하고 동시에 문화콘텐츠 생산자로서 양성평등의식 강화에 기여하였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에서는 책자 발간 용역 연구 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등의 내용을 수록하는 등 여성 독립운동사를 포함하였다.

경기도 안산시는 “모자보건사업-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상록 여성 어린이 및 영양)”을 통해 임신 및 출산 관련 행사 및 교육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등 출생과정에서 예비 부모 모두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였다. 경기도 화성시 “고연령화 대비 100세 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서는 치매에 취약한 집단(1인가구 여성 노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치매를 예방·관리함으로써 지역 거주 여성들의 건강권에 기여하였다. 경기도 김포시 “감염병 예방 및 대응관리-검사실운영관리(예비,신혼부부 건강관리)”사업에서는 결혼 전 건강검진 대상을 결혼과 가족계획의 주체인 “예비·신혼부부(夫婦)”로 확대하여 예비·신혼부부가 함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충청북도 제천시 “지역사회 건강관리-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 대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관리-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보조)” 사업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여성 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였다. 더불어 “대중교통관리-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에서 추진한 2년간의 꾸준한 여성 운수종사자 추가채용은 업종 내 근로자의 성별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였다.

전라북도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힐링교육사업-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골드-쿡 과정 등 남성을 위한 특별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교육 공간 내에서 참여자들의 양성평등을 고려한 공간 약속문(인권존중, 양성평등 언어문 등)을 담은 양성평등 약속문을 게시하였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사업지원-부모교육 사업지원” 사업에서 “양성평등의 이해”, “아빠를 위한 자녀성교육” 등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장애인복지-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장애인의 고용률 향상을 위하여 직업 재활시설에 여성장애인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였고, 여성 장애인이 참여가능한 생산품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업 참여 시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가사도우미 지원제도 등에 대한 홍보와 관련 지원 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이들의 직업재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시의 또 다른 사업인 “소방 조직인력 관리-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에서는 소수인 여성 소방공무원 대상의 고충 및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직원 상담 시 성인지감수성 이해 향상 교육을 포함하여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에 노력하였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서는 여성장애인 요구도가 높은 필라테스, 요가, 수영 종목 프로그램 협력기관의 발굴 및 확대를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생활체육 참여 장애인의 성별 요구도를 반영하였다. 경상남도 김해시 “노사협력-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의 성별분리통계 작성과 더불어 쉼터 운영관계자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상남도 밀양시는 “정신건강-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운수업종사자, 기업체, 이장단 등 20~64세 청장년층 중 남성 비율이 높은 직업군을 우선 선정하였는데, 이는 자살예방사업의 요구도는 높으나, 수혜율은 낮은 청장년층 남성 중심의 대상자 발굴을 통한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표 II-45〉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사업

기관명	사업	개선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수질오염 단속-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로 공동욕아를 위한 환경 조성</li> </ul>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다문화 경연대회(북&다문화 축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사 안내판 작성 시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작성하며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수유실 및 유아용 변기시트 구비</li> <li>행사 안내판에 한국어 이외 영어, 베트남, 중국어 등을 표기하여 다문화 가족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함.</li> <li>'수유부스'라는 현판을 빨간색으로 표기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함.</li> <li>화장실 문 앞에 '이 칸에는 유아용 변기시트가 구비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표지판 마련</li> </ul>
대구광역시 수성구	직장 운동경기부 및 전문체육 육성-실업태권도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지 감수성 및 폭력예방 교육 실시, 외부전문가 연계를 통한 성희롱, 폭력피해 등 인권침해 정기 설문조사 실시 및 상담창구 마련</li> <li>태권도선수단 청렴 및 부패방지 등 비위행위 예방교육 실시</li> <li>수성경찰서 연계를 통해 여자선수 대상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실시</li> <li>네이버폼(비대면) 활용한 성폭력 피해 설문조사 등</li> </ul>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예술·산업육성지원- 광산무대나누기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참여자 성폭력예방, 성인지감수성 교육 의무화로 안전한 예술활동을 보장하며 동시에 문화콘텐츠 생산자로서 성평등 의식강화에 기여</li> <li>사업 참여 시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폭력 교육' 사전 이수 의무화</li> <li>※ 하반기(11월~12월)부터 공연 단체 및 출연진 대상 교육 사전이수 의무화</li> </ul>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자 발간 영역 연구 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등의 내용을 수록하는 등 여성 독립운동사를 포함</li> </ul>
경기도 안산시	모자보건사업-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상록 여성어린이및영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 및 출산 관련 행사 및 교육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등 출생과정에서 예비 부모 모두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함</li> <li>2022년 임신부의 날 기념행사 중 임신부 체험 부스 운영, 2023년 출산 준비 교실 대상자('임산부'→'임산부 포함 가정 누구나') 확대</li> <li>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책자에 남녀 함께 있는 이미지 포함, 보건 복지부 발행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 가이드' 책자 배부</li> <li>임신·출산을 직접적으로 겪지 못하는 남성에게 경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임신부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진행</li> <li>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li> </ul>
경기도 화성시	고연령화 대비 100세 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매라는 질병에 취약한 집단(1인가구 여성노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치매를 예방·관리함으로써 지역 거주 여성들의 건강권에 기여</li> <li>독거노인 집중조기검진 사업 활성화</li> <li>화성시 7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여성 83%, 남성 17%로 여성이 높음.</li> </ul>

기관명	사업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의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아파트 홍보물 비치, 경로당 방문, 외부 광고 활용 등 사업 홍보 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노출 빈도를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치매를 예방 및 관리 지원.</li> </ul> </li> </ul>
경기도 김포시	감염병 예방 및 대응관리-검사실운영 관리(예비,신혼부부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과 가족계획의 주체인 예비·신혼부부가 함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전 건강검진 대상을 결혼과 가족계획의 주체인 “예비·신혼부부(夫婦)”로 확대하여 부부 대상의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 홍보 자료 ‘건강관리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의 시작’의 제작 홍보를 통해 가족을 위한 건강관리 중요성 전파함.</li> </ul> </li> <li>· 예비·신혼부부 산전 검사(남:235, 여:279) 실시, 홈페이지 및 지역지 등 홍보</li> </ul>
충청북도 제천시	지역사회 건강관리-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 대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li> </ul>
	지역사회 건강관리-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 특화 프로그램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여성 특화 프로그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가정폭력 피해여성으로 육아나 취업곤란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li> <li>· 내용: 우울증 검사, 지각된 스트레스 검사 진행, 명상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자아존중감/문제해결능력 회복 프로그램</li> </ul> </li> </ul> </li> </ul>
	대중교통관리-특별교통수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운수중사자 추가채용을 통한 업종 내 근로자의 성별 불균형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 총 2명에서 이후 매년 1명씩 추가채용, 2022년도 현재 총 여성운수중사자 4명 근무(전체 16명 中 25%)</li> </ul> </li> </ul>
전라북도 순창군	생애주기별 맞춤형 힐링교육사업-고령화 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을 위한 특별 과정 운영: 골드-쿱 과정, 전국 단위 교육생 모집</li> <li>○ 교육 공간 내 참여자들의 성평등을 고려한 공간 약속문(인권존중, 성평등 언어문 등)을 담은 성평등 약속문 게시</li> <li>○ 교육과 상담 진행 시 노후준비를 위한 진단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li> </ul>
전라북도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사업지원-부모교육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학부모 대상 양성평등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양성평등의 이해, 아빠를 위한 자녀성교육 등</li> </ul> </li> </ul>
경상남도 창원시	장애인복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장애인의 고용률 향상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우선 고용 적극 안내 및 여성장애인 참여 가능 생산물 발굴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생산물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보고 시스템 구축, 여성장애인 고용 현황 관리</li> </ul> </li> <li>○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업 참여 시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가사도우미 지원제도 등에 대한 홍보와 관련기관 등과 연계</li> </ul>



기관명	사업	개선사항
	소방조직인력 관리-소방공무원 사기진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수인 여성 소방공무원 대상의 고충(설문 등) 및 애로사항 수렴 간담회 실시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li> <li>찾아가는 상담실, 마음근육센터 등 전 직원 상담 시 젠더감수성 이해도 향상 교육 실시 : '감성워크숍' 성인지 교육 실시</li> </ul>
경상남도 진주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육성-장애 인스포츠통과 이용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체육 참여 장애인의 성별 요구도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협력기관 발굴·확대 추진 (여성장애인 요구도가 높은 필라테스, 요가, 수영 등)</li> </ul>
경상남도 김해시	노사협력-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 성별분리통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노동자 쉼터별 성별·직종별 이용현황</li> </ul> </li> <li>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관계자 성인지 교육 실시</li> </ul>
경상남도 밀양시	정신건강-자살예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살예방사업의 요구도는 높으나, 수혜율은 낮은 청장년층 남성 중심의 대상자 발굴을 위한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대상: 20~64세 청장년층 중 남성 비율이 높은 직업군 우선 선정 (운수업종사자, 기업체, 이장단 등)</li> </ul> </li> <li>* 청장년층 남성들은 자살 사망률은 높지만,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경우 자존심 때문에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거나 솔로 해결, 침거 등을 선택하여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향이 있음.</li> </ul>

## 라. 시·도교육청

2022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시·도교육청에서 수립한 개선계획 163개와 2021년 수립된 개선계획 중 2021년 당해에 완료되지 않은 개선계획 101개를 대상으로 개선 실적을 점검하였다.

### 1) 정책개선 현황

2022년 시·도교육청에서 추진된 법령·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15개 법령에 대한 개선계획(추진과제의 6.7%)이 수립되어 14개 법령에서 개선(개선계획의 93.3%)이 이루어졌고, 148개 사업에 대한 개선계획(추진과제의 69.2%)이 수립되어 60개의 사업 개선(개선계획의 40.5%)이 이루어졌다.

13개의 시·도교육청에서 개선계획을 이행하였는데, 가장 많이 법령·사업을 개선한

기관은 충청남도교육청으로 17개(법령 2개, 사업 15개)의 개선을 이행하였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2개 사업에서 개선을 이행하였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1개(법령 1개, 사업 10개)의 개선이행이 추진되었다. 경상남도교육청(법령 0개, 사업 6개), 경기도교육청(법령3개, 사업 3개)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법령 2개, 사업 4개)의 경우, 모두 6개의 개선이행이 이루어졌다.

〈표 II-46〉 2022년 시·도 교육청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

(단위: 개, %)

기관명	법령			계획			사업			개선 과제 합계	개선 이행률 <sup>d)</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전 체(16) <sup>e)</sup>	225	15	14	1	0	-	214	148	60	74	45.4
충청남도교육청	59	2	2	0	-	-	27	27	15	17	58.6
광주광역시교육청	4	0	-	0	-	-	23	23	12	12	52.2
대전광역시교육청	6	1	1	0	-	-	20	19	10	11	55.0
경상남도교육청	28	0	-	0	-	-	10	10	6	6	60.0
경기도교육청	12	3	3	0	-	-	9	4	3	6	85.7
서울특별시교육청	12	2	2	1	0	-	8	8	4	6	60.0
인천광역시교육청	19	0	-	0	-	-	7	7	5	5	71.4
부산광역시교육청	10	3	3	0	-	-	10	9	0	3	25.0
충청북도교육청	0	-	-	0	-	-	6	6	3	3	50.0
강원도교육청	13	0	-	0	-	-	7	7	2	2	28.6
경상북도교육청	27	2	1	0	-	-	28	0	-	1	50.0

기관명	법령			계획			사업			개선 과제 합계	개선 이행률 <sup>d)</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 과제 <sup>a)</sup>	개선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2	1	1	0	-	-	10	9	0	1	10.0
전라남도교육청	2	1	1	0	-	-	7	7	0	1	1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0	0	-	0	-	-	12	12	0	0	0.0
울산광역시교육청	9	0	-	0	-	-	14	0	-	-	-
대구광역시교육청	2	0	-	0	-	-	16	0	-	-	-

주1 : a)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 대상인 법령·계획·사업 중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등의 과제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  
 주3 : c)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4 : d)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의 비율(개선 이행률(%) = 개선과제(c)/개선계획 수립과제(b) × 100)  
 주5 : e) 전북교육청의 경우 법령추진실적이 모두 제외 또는 중단으로 '기타'에 해당하여 추진과제수가 "0"이며, 사업추진실적 또한 "0"건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2022년 시·도 교육청의 추진실적의 경우, 총 16개 기관에서 이행한 것으로 집계함.  
 주6 : '-'는 해당 없음 의미

## 2) 개선의견 수용 과제 이행

2022년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시·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35개이다. 이 중 2022년 한 해 동안 법령 6개, 사업 8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한편, 20201에 개선의견이 수용되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제는 12개였고, 이 중 4개(법령 2개, 사업 2개)의 과제가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II-47〉 시·도교육청 개선의견 수용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단위: 개, %)

구분	2021년			2022년		
	계	법령	사업	계	법령	사업
이행점검 대상과제	12	3	9	35	7	28
개선완료	4	2	2	14	6	8
개선 이행률 <sup>a)</sup>	(33.3)	(66.7)	(22.2)	(40.0)	(85.7)	(28.6)

주 : a) 개선 이행률(%) = 점검연도 기준으로 개선완료 수/점검대상 과제 수 × 100

시·도교육청의 법령 정책개선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경기도교육청의 민원조정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의 기숙사선정위원회 등 교육청의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성별대표성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수영장 내 불법촬영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II-48〉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법령

기관명	법령	개선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 구성원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자원봉사자문 과정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근거 마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조(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b>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b>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li> </ul> </li> </ul> </div>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원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공개심의 과정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근거 마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조(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b>성별을 고려하여</b> 집행기관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부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li> </ul> </div>

기관명	법령	개선사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영장 내 불법촬영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조(행위의 제한)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7. 불법촬영 행위</b></p> </div>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구성원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li> <li>④ 내부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법률전문가, 교육계, 시민단체, 지역 인사 및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b>이 경우 외부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b></li> </ul> </div>
경상북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기숙사선정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보장</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조(기숙사선정위원회의 구성)</li> <li>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b>「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b></li> </ul> <p>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조(위원회 구성)</li> <li>②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b>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b></li> </ul> </div>

시·도교육청 사업에 대한 정책개선사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개선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양성평등한 홍보물을 발간하고자 하였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독서문화진흥-도서관운영지원” 사업에서는 보호자 동반 독서프로그램 홍보 시 남성 보호자의 참여를 독려했다.

〈표 II-49〉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사항 - 사업

기관명	사업	개선사항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예산 홍보물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성평등한 홍보물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이미지) 하이힐(구두) 미니스커트, 원피스, 의상으로 표현한 사항은 여성다움을 강조한 것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외모지상주의 등에 해당하는 사항. 따라서 여성 이미지 의상 치마에서 바지로 변경, 여성이 다리를 꼬아 앉아있는 모습 변경</li> <li>- (남성 이미지) 넥타이를 맨 정장 입은 모습으로 표현. 이는 남성의 경제적인 역할 및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사항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에 해당하는 사항. 따라서 남성 이미지 의상 평상복으로 변경</li> <li>- '2022년 연간 일정' 워크숍 개최 및 예산학교 운영 이미지에서 남성의 모습만 표현. 이는 관리자를 남성으로 대표한 것으로 사람 이미지 삭제</li> </ul> </li> </ul>
광주광역시 교육청	독서문화진흥-도서관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 동반 독서프로그램 홍보 시 남성 보호자의 참여를 독려</li> </ul>

### 3) 자체개선 과제 이행

시·도교육청의 경우 2022년 자체개선 과제는 128개이며, 이중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60개(법령 8개, 사업 52개)였다. 2021년 자체개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책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과제는 89개 과제였으며, 그 중 25개(법령 3개, 사업 22개)과제는 2022년 개선이 이행되었다.

〈표 II-50〉 시·도교육청 자체개선 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21, 2022)  
(단위: 개, %)

구분	2021년			2022년		
	계	법령	사업	계	법령	사업
이행점검 대상과제	89	3	86	128	8	120
개선완료	25	3	22	60	8	52
개선 이행률 <sup>a)</sup>	(28.1)	(100.0)	(25.6)	(46.9)	(100.0)	(43.3)

주 : a) 개선 이행률(%) = 점검연도 기준으로 개선완료 수/점검대상 과제 수×100

시·도교육청 법령에서 이행된 대다수의 자체개선 사례는 위원회 규정에 성별 균형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청원심의회와 정보화위원회,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를 비롯해 충청남도

교육청이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의 소송심의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개선사례이다.

그 밖에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수영장의 수강 등록 신청서에 성별 확인란을 추가하여 성별통계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에서 이행된 자체개선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협력 종합예술활동-예술꿈담터(연습장)구축” 사업에서 공간 사용의 성별 격차 및 성별 요인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성인지적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을 통해 영재교육원 교사의 성별균형을 확보함으로써 여학생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여성 교사 비율을 제고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영재교육원의 과정별 영재특강 강사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반영하였고 (“영재교육-영재교육원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의 예산을 확대하였다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돌봄교실운영”).

〈표 II-51〉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 이행사항 - 사업

기관명	사업	개선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협력종합예술활동-예술꿈담터(연습장)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지원금 선정 과정과 예술꿈담터 구축 및 구축 설명회 시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편 및 차별이 없도록 공간 사용의 성별 격차 발생 및 성별 요인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꿈담터 구축 지원금 선정 심사기준에 ‘신청학교의 모든 여건이 동일한 경우 여학교 또는 남학교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 추가</li> <li>- 예술꿈담터 구축 시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장 차이 등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평등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맞춤 설계를 진행하고 기자재 및 물품을 구입하도록 안내</li> <li>- 학교 요청 시 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li> <li>- 예술꿈담터 구축 설명회 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준용하여 구축하고 성별이 두드러지지 않는 픽토그램을 활용하도록 안내</li> </ul> </li> </ul>
광주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재교육원 교사 성별균형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교사는 여학생의 롤모델이 되므로 여성교사 비율 제고</li> <li>※ 영재교육원 교사 선발 (2022. 01. ~ 02.)</li> <li>· 여 67(48%), 남 74(52%)</li> </ul> </li> </ul>

기관명	사업	개선사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영재교육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정별 영재특강 강사 구성 시, 여성과학자를 포함하여 성별균형 반영</li> <li>- 영재특강 1차 (강사 2인; 여 1인, 남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정) 중3 융합과학, 중2·3 발명, 고1 과학연구 / 중1 인문, 중2·3 인문</li> </ul> </li> <li>- 영재특강 2차 (강사 3인, 여 2인, 남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정) 중3 융합과학, 고1 과학연구 / 중2·3 발명 / 중1 인문, 중2·3 인문</li> </ul> </li> </ul>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돌봄교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돌봄교실의 예산 확대</li> <li>- 돌봄교실운영 사업 2023년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 증가</li> </ul>



### 3 주요 정책개선 사례



2022년도 법령과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과제의 정책개선 내용은 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와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 성별 고정 관념 해소 또는 정책 내에 포함된 차별 요인 개선 사례, 일·생활 균형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추진 사례,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한 사례, 성별 및 다양한 시민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개선을 추진한 사례, 공간 및 공공시설 설립 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사례 등이 있다. 구체적인 개선 사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및 사회안전망 확대

2022 개선사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안정 및 모성보호 강화

과 제 명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 법령 내용

-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 법의 시행령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선 내용

-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음.
- 2022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직종(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광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근거규정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시행 2022.7.1][대통령령 제32730호, 2022.6.28., 일부개정]).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신 설>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신 설>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신 설>	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신 설>	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신 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신 설>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신 설>	15.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신 설>	16.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신 설>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 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② ~ ④ (생 략)	② ~ ④ (생 략)

☑ 개선 의의

- 소득감소, 출산 또는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등 고용불안으로 인한 고충이 큰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여,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노무제공자들이 불안정한 고용이나 출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경우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모성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2022 개선사례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과 제 명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법령 내용

-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선 내용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유산·사산 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유산·사산 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명시함([시행 2023.7.1][법률 제19210호, 2022.12.31, 일부개정]).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개선 의의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유산·사산으로 인한 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없었음. 그러나 본 법 개정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유·사산 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유·사산 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안정 노동 환경 및 사업장 내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2022 개선사례

여성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강화

과 제 명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지식재산 창출지원-중소기업 IP 바로지원(특허청)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특허청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으로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①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②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③ IP 협력 기반 강화, ④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 창업 지원, ⑤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위의 사업 중 ‘중소기업 IP(Intellectual property)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겪게 되는 지식재산(IP) 애로사항을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지원하는 사업임.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 당 2건 이내 (자부담인 경우는 지원 건수 제한에서 제외)로 기업 IP현안 진단을 실시, 특허맵, 디자인맵,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허청은 사업을 총괄, 한국발명진흥회가 사업주관 및 관리 감독을 수행 하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직접적인 기업지원 등 사업 수행을 담당함.

☑ 개선 내용

- 수혜자 성별분리통계를 생산, 향후 지속적으로 성별통계를 생산 및 관리할 계획임
- 특히 여성기업에 대하여 현금 자부담 비율을 감액하는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여 여성기업의 IP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임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혜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산 필요</li> <li>○ 여성 기업인의 IP 역량강화 방안 마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혜자(수혜기업 대표자 성별)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향후 지속 관리 수행 예정</li> <li>○ 여성기업의 경우 사업참여에 따른 분담금 중 현금 자부담 비율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 참여 기업의 기업 분담금 : 40% (현금 20% + 현물 20%)</li> <li>*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은 현금 10% + 현물 30% 적용</li> </ul> </li> </ul>

☑ 개선 의의

- 특허청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물적, 인적 자원망이 충분치 않아 지식재산 역량을 키우고 이를 더 높은 소득 창출로 연결짓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 그 중에서도 여성기업인의 해당 사업 참여 기회를 높임으로써 여성기업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022 개선사례

해운분야 여성인력 진출 지원

과 제 명	해운인력양성지원-해사고등학교지원-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지원(해양수산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부산·인천 해사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운영, 실습장비 및 실습실 확충,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개선 내용

- 해양수산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제기된 개선방향을 수용하여 현재 해사고등학교 전체 정원의 10%로 정하고 있던 여학생 모집 정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인천해사고등학교는 2022년도에 발행한 2023년도 입시기본계획에 2023년도 여학생 모집 정원을 기존의 10%에서 11.3%로 확대 명시함.
- 2023년 4월부터 성별 취업현황 등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해양산업 분야 내 여성 전문인력 진출 확대 및 이를 위한 여학생 역량강화를 위해 해양분야 여성인력 진출 사례 소개, 여학생 대상 진로 상담, 해사고등학교 이수 필수 교육에 양성평등 교육을 포함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모집정원 확대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등 개선조치 마련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해기사 등 실질적인 여성 승선인력이 극소수로 여성 승선인력 공급방안 모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사고등학교 여학생 정원을 10%로 제한하고 있음. 여학생들에게 관련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해사고등학교의 여학생 정원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li> </ul> </li> <li>○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관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 어려움. 성별통계 생산 및 분석을 토대로 인력수급 계획 및 정책 수립 필요</li> </ul> </li> <li>○ 해양산업분야 여성 전문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분야의 여성인력을 소개하고 알리는 다각도의 홍보방안 마련 및 이수 필수 교육에 성평등 관련 교육 포함 검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사고등학교 여학생 모집 정원 확대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모집 정원 확대 필요 여부 검토</li> <li>→ 여성 모집 정원 확대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등을 운영 방침에 명시기로 결정</li> </ul> </li> <li>- 인천해사고등학교: 2023학년도 입시기본계획(2022.7)에 여학생 모집 정원 비율 확대(10%→ 11.1%) 명시</li> <li>- 교육부 및 교육청 학생 배치 계획 및 여학생 취업을 등 고려하여 여학생 모집정원 확대 예정임</li> <li>○ 취업현황 등 성별분리통계 생산 예정</li> <li>○ 학교 입시 설명회 자료 등에 해당분야 여성 인력 지속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해사고등학교: 1, 2학년 여학생 대상 직업진로 상담 실시(2022.9. 37기~42기 졸업 여학생의 해운분야 진출 사례 소개 등)</li> <li>- 인천해사고등학교: 2023학년도 입시설명회 자료에 해운분야 여성인력 소개(총 2회)</li> </ul> </li> <li>○ 해사고등학교 필수 교육에 성평등 관련 교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해사고등학교: 전학년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2022.12월)</li> <li>- 인천해사고등학교: 전학년 대상 성평등 교육 5차시 실시, 성평등주간 홍보 캠페인 공모전 3회 개최</li> </ul> </li> </ul>

☑ 개선 의의

- 대표적인 남성 다수 직종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해기사 등 해양산업 직종 분야에 여성의 진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함. 또한 해사고 교과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해양산업의 조직에서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 이는 궁극적으로 성별 직종 분리를 완화하고 여성의 진입이 어려운 산업에 여성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2022 개선사례

신산업분야 여성취업훈련 강화

과 제 명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폴리텍)-전문기술 과정(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다기능기술자 과정(고용노동부)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국가 기간산업·기술 발전에 필요한 중간기술자를 양성·공급하기 위해 2년제 학위 과정 운영 및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산업·신기술 및 국가기간전략산업과 관련한 직업교육 실시, 산업현장 실무 중심의 기술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사업임.

☑ 개선 내용

- 여성 교육훈련생 입학률 감소, 양성비율 감소 및 중도 탈락생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차산업 신산업분야 여성친화학과(반도체분야)를 개편하고, 남초 직종에의 여성 진입 모범사례에 대한 언론홍보를 통한 성별 직종 분리 완화를 위해 노력함. 또한 신기술분야 여성친화직종 확대를 위해 여성 교육훈련생을 위한 학과(AI+x 학과(메타버스 콘텐츠 등 5개), 저탄소 분야(그린반도체 설계 등 5개 학과)를 신설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b>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폴리텍)-전문기술 과정</b> ○ 여성 교육훈련생 양성비율 감소 추세이며, 장기과정인 전문 기술 과정(1년) 보다 단기에 취업이 가능한 여성 재취업훈련(3~6개월)으로 입학생 쏠림현상 발생	○ 여성재취업훈련 증원 노력 - 22년도 4차산업 신산업분야 여성친화 학과(반도체분야) 개편 추진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대상 전문 교육훈련을 위한 여성 친화 캠퍼스를 운영하고 여성재취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 과정의 중도탈락률이 증가</li> <li>○ 전문 기술 과정 및 장기 과정 등 보다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성재취업훈련 참여 인원 증원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운영자 및 강사 등 관계자들이 성별 직종분리의 문제를 이해하고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교과 운영 및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개선 의견을 도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반도체분야 학과 신설 10개과 선정 추진</li> <li>- 여학생 간담회, 소그룹지도, 1:1면담 등을 통한 밀착관리</li> <li>- 여성의 활용도가 높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확대</li> <li>○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활용 홍보</li> <li>- 남초 직종에의 여성 진입 모범사례 언론홍보를 통한 성별 직종분리 완화 노력 강화</li> <li>○ 교육과정 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성별 직종분리 관련 교육 및 성별고정관념 인식개선 교육</li> <li>- 교육훈련관계자 대상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실시</li> <li>- 교육훈련관계자 대상 교육(연 1회, 1시간 이상)</li> <li>- '23년부터 성별 직종분리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운영자 및 교육훈련강사에 대한 교육 강화 추진 예정</li> <li>○ 캠퍼스별 성희롱 성폭력 교육 시 성별 고정관념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li> </ul>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다기능기술자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여성 교육훈련생 양성비율은 8.3%로 전년대비 0.9%p 감소</li> <li>- 여성 양성 비율 : '20년 9.2% → '21년 8.3%</li> <li>○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특성상 여성 선호 학과 부족에 따른 입학률 감소</li> <li>- 여성 참여 비율 : '20년 9.1% → '21년 8.9%로 0.2%p 감소</li> <li>○ 복학 인원의 남녀 성비 불균형 심화</li> <li>- '21년 남자 휴학생 1,464명, 복학생 1,496명 (102.1%), 여자 휴학생 45명, 복학생 21명 (46.6%), 남자 교육생 복학 비율이 여자 교육생 복학 비율보다 높아 교육 수혜 인원에 영향</li> <li>○ 상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친화직종 학과 신설(개편) 및 교과과정 개발 등 교육인프라 개선, 학생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유형별 상담가이드 개발, 여성취업 성공사례 발굴 등 홍보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교육 훈련생을 위한 학과 신설 완료</li> <li>- '22년 신기술분야 여성친화직종 확대를 위해 AI+x 학과(메타버스 콘텐츠 등) 5개, 저탄소분야(그린반도체 설계 등) 5개 학과 신설 완료</li> <li>○ 여학생 밀착관리, 교육훈련관계자 대상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실시 및 SNS 홍보 확대</li> <li>- 교육훈련관계자 대상 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li> <li>-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활용 홍보</li> <li>  : “가족 몰래 자퇴한 20대 근황”(‘22.10.)</li> <li>  : “여자도 할 수 있다, 웅집사”(‘22.12.)</li> </ul>
--	---

**☑ 개선 의의**

-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신산업분야에 보다 여성 진출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개선이 추진됨. 또한 관련 분야 내의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교과과정 운영 안팎에서 지속된다면, 해당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경력 이탈을 방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요약

I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2022 개선사례

여성친화형 농기계 도입 권장

과 제 명	발작물산업육성-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농림축산식품부)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 조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등을 맞춤형 지원함.

☑ 개선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참여 농업인의 구체적인 성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침의 신청 서식 내 성별 기입란을 추가함. 또한 사업의 시행지침에 여성농업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노동부담 완화를 위하여 여성친화형 농기계 도입을 권장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사업 신청자가 지원서 제출 시 지원서 내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활용 계획을 기술하도록 사업 추진 계획서의 서식을 변경하는 개선을 추진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발작물 특성 상 여성참여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참여 농가의 성별분리통계 도입, 참여하는 여성농가를 위한 공동농기계 및 시설, 장비 마련 등 여성친화형 정책 마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신규사업대상자 선정 시 여성농업인 통계자료 생산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도입 권장 등 2023년 사업 시행지침 개정(202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농가의 성별 구분 통계 도입(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내 '성별 농가수 신설')</li> <li>- 참여하는 여성 농가를 위해 공동농기계, 시설 및 장비 등 여성친화형 정책 마련(여성농업인이 다수인 공동경영체는 여성친화 농기계 구입을 권장하고,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 추진계획 내에 농기계 활용 계획 추가 작성토록 서식 변경)</li> </ul> </li> </ul>

☑ 개선 의의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함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나.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차별적 요인 개선

2022 개선사례	청소년의 성별 고정관념 해소 지원
-----------	--------------------

과 제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조례(서울특별시 노원구)
유 형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법령 내용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됨.

☑ 개선 내용

-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 예방”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함([시행 2022.4.28.][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640호, 2022.4.28., 제정]).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요  
요

I  
개  
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② ~ ③ (생략)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 5. (생략) 6.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 7. (생략) ② ~ ③ (생략)

☑ 개선 의의

- 구청장의 책무에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담당자가 정책 내용에 성별 고정관념이나 차별 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정책으로부터 소외 또는 배제되는 청소년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유념하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어 냄. 그리고 청소년 지원 사업에 성평등 의식 향상 사업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인지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임.

2022 개선사례

양성평등한 관점에서의 장난감 구입 및 대여

과 제 명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sb장난감도서관운영(서울특별시 성북구)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안전한 장난감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하여 양육 비용을 절감하고,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모 역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주요 사업 내용은 장난감 대여사업으로 영유아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구입하여 회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14일간 대여하고 있으며, 대여 불가능한 장난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장난감 폐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개선 내용

- 장난감의 성별 구분 및 그에 따른 색상 사용, 기능 등이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색상에 따른 성별 구분을 하지 않은 장난감 또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한 장난감을 구입하고,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장난감 선택 및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의 개선을 추진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상품의 성별구분 및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효과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li> <li>- 영유아 상품의 성별 구분이 단순한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성별에 따라 색상 등을 구분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 자체로 접근하는 성중립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함.</li> <li>○ 이에 2022년 신규 장난감 구입 시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해 색상에 따른 성별구분 또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한 장난감을 우선구입하는 개선 추진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장난감 구입 시 성중립적 장난감 구입을 확대하여 (2022년, 20종 54점 구입), 성별에 따른 성역할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장난감을 선택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함.</li> <li>-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천된 장난감 구입 및 대여 실시</li> <li>- 장난감 진열대에 성평등적 장난감임을 표시하여 진열</li> <li>- 양성평등한 관점을 존중하는 장난감을 대여함을 안내</li> </ul>

☑ 개선 의의

- 영유아시기부터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되는 것을 완화하거나 늦추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선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2022 개선사례 **음주운전 등에 대한 성별고정관념 완화**

과 제 명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인천광역시 부평구)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구민 대상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안심도시 부평을 조성하고자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8개의 체험관 운영, 해상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난 시 안전, 교통안전 및 지하공간탈출, 엘리베이터/완강기 체험 등 생활 상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의 안전 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음.

☑ 개선 내용

- 재난안전대응 경험이 취약한 여성, 초보 부모 등 다양한 시민층의 안전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함. 또한 안전체험관 교관들의 성인지 교육 이수율 의무화하여, 안전체험관 내 체험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참여자 중 다수는 신체적 조건이 약하고 상황에 대한 대처 반응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인해 안전체험 시 효율적인 체험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활용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체험관 교관에 대한 성인지교육 연 1회 실시 의무화 및 필요시 추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교관(2명) 교육 실시(이수 완료)</li> </ul> </li> <li>○ 홍보물(리플렛 등)에 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평안전체험관 리플렛 제작 전 성별영향평가 2차례 실시 후 개선의견 반영하여 제작하고 현재까지 보급 중</li> </ul> </li> <li>○ 신규 프로그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음주운전교육이 남성위주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교통체험관의 체험교육 중 '음주운전체험' 교육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과 청소년이 직접 체험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체감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li> <li>- 어린 자녀를 키우는 초보부모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응급상황 시 대처 행동요령의 교육을 통해 상황대처 행동요령을 습득하도록 하였으며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li> <li>- 사이버 안전체험교실 운영: 가상현실 영상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그레이드된 사이버 안전체험교실을 운영('22.6.)하여 주민에게 입체감 있고 현장감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li> </ul> </li> <li>○ 교육시간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취약계층의 체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횟수 확대(야간교육 등) 지속 추진 중</li> </ul> </li> </ul>

☑ 개선 의의

-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재난안전대응에 취약하다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교육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또한 음주운전체험 교육을 신설하여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과 음주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하고자 했음.

2022 개선사례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환경교육 교구·교재 개발 모니터링

과 제 명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 환경교육 내실화-유아·청소년·성인환경교육(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 형	■ 자체개선 □ 검토의견 통보 □ 개선권고(특정)
	■ 사업 □ 법령 □ 계획 □ 홍보

☑ 사업 내용

-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임. 유아·학교·사회인 대상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기후환경골든벨 개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럼 등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개선 내용

-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참여자 성별 편차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성인 대상 교육의 경우 직장인 및 남성의 관심 및 참여가 저조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토요일 프로그램을 마련함.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및 실천에서도 성별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강의 교구·교재 개발에서부터 성차별적 요소 또는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강사 대상 성인지 교육을 실시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성별분리통계 미생산</li> <li>○ 환경교육 참여자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 의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별 차이를 반영하여 성인지적 환경교육 필요</li> <li>○ 평일 직장 근무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인 남성과 여성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가족 대상 프로그램의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해 남성의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관련 홍보 및 교육 방안 등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참여자 만족도조사 성별 구분 실시</li> <li>○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대상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 1인, 소모임 등 누구나 참여</li> </ul> </li> <li>○ 직장인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해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li> <li>○ 관련기관 협조를 통한 홍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대상 공문 시행 협조 요청</li> </ul> </li> </ul>

요약

개요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구·교재 개발 시 성차별적 요소,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매월 강사 월례회의 시 강사 대상 성인지교육 관련 내용 공유 및 교구·재 제작 관련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인권·언행 등에 대한 환경강사 실천 서약서' 작성, 성인지교육 온라인 교육 수강 안내 등</li> <li>- 진로직업체험, 방학 환경캠프, 에코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홍보물 및 교·구재 제작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의견 수렴</li> </ul> </li> <li>○ 환경강사 성인지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량강화 전문연수 시 양성평등교육 의무 실시 및 사이버교육 수강(8명 전원 수료)</li> </ul> </li> </ul>

☑ 개선 의의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정에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양성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사의 양성평등 서약, 관계자들의 양성평등 교육 이수, 강사들 간의 월례 모니터링을 통한 교재, 교구, 강의안 점검 등 여러 단계의 점검조치를 마련함. 이처럼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점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 과정 내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임

2022 개선사례

성차별적 표현 금지 사항을 포함

과 제 명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광주광역시 남구)
유 형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법령 내용

-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미디어 이미지 형성과 특색있는 거리 조성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임.



☑ 개선 내용

- 조례 제5조(표시금지 사항)에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함([시행 2022.12.28.][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413호, 2022.12 28., 제정]).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제5조(표시금지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1.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하는 내용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신 설> 3. 그 밖에 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제5조(표시금지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1.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하는 내용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b>3.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b> 4. 그 밖에 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 개선 의의

- 미디어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 등 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활용에서 성차별적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저해할 수 있는 미디어 생산물의 생산과 제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됨.

다. 일·생활 균형 확산

2022 개선사례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로부터 근로자 보호 및 건강한 출산 지원**

과 제 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

- 본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선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제 3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인 ‘보건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3편 보건기준’에서 다루고 있음. 이 중 규칙 제420조부터 451조까지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사업주가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목록은 본 규칙의 [별표 12]에 정해두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과 관련해 이전까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생식기능과 생식능력에 영향을 주는 생식독성물질 8종을 추가하는 개선을 추진함.
  -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트로톨루엔,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조피렌,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이수화물), 산화붕소, 와파린, 포름아미드, 시클로헥실아민 총 8종의 물질을 추가함.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 2022년 법개정 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에 규정된 717종의 화학물질 중 생식독성물질인 44종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내에 포함되지 않은 종이 있어 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물질 목록) 정비 필요하였음. 이에 기존에 [별표 12]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생식독성 1A·1B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는 개정안 마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별표 12]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다음의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트로톨루엔,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조피렌,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이수화물), 산화붕소, 와파린, 포름아미드, 시클로헥실아민</li> </ul>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b>[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b> [시행일: 2023.10.19.] (별표 12의 ‘변경 전/후 내용은 생략, 규칙 개정 시 추가된 생식독성물질 8종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트로톨루엔,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조피렌, 붕소산 사 나트륨(무수물, 이수화물), 산화붕소, 와파린, 포름아미드, 시클로헥실아민)

평가분석	개선사항
<p><b>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b></p> <p>제3편 보건기준</p> <p>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p> <p>제1절 통칙</p> <p>제42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li> <li>2. ~ 5. (생 략)</li> <li>6.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li> <li>7. ~ 9. (생 략)</li> </ol> <p>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u>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의 이름</li> <li>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li> <li>3. 취급량</li> <li>4. 작업내용</li> <li>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li> <li>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li> </ol> <p>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u>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u></p> <p>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① <u>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u> 다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lt;개정 2012. 3. 5., 2019. 12. 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li> <li>2. 인체에 미치는 영향</li> <li>3. 취급상 주의사항</li> <li>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li> <li>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li> </ol> <p>② (생 략)</p>	

평가분석	개선사항
	<p>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li> <li>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li> <li>3. 취급상의 주의사항</li> <li>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li> <li>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li> <li>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li> </ol> <p>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 제1호13)·46)·59)·71)·101)·111)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lt;개정 2022. 10. 18.&gt; [시행일: 2023.10.19.]</p>

개선 의의

- 그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생식기능과 생식능력에 영향을 주는 생식독성물질 8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포함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을 다루는 경우 근로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자신들이 다루는 물질이 생식기능 등에 영향을 주는 물질임을 고지받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됨.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 및 출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선임.

2022 개선사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 제 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기획재정부)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법령 내용

- 본 시행령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해 둔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선 내용

- 기획재정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제하는 것의 범위) 2호 사목)([시행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 2022.2.15, 일부개정]) 완료함.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제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 바. (생략) <신 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제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 개선 의의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가사·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구매자의 비용부담을 줄임으로써 일생활균형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가사서비스 이용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

2022 개선사례

국방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보육환경 개선 내용 포함

과 제 명	장병복지지원-보건복지지원-'23~'27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작성방향 연구(국방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국방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군 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2023~2027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임.

☑ 개선 내용

- 국방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하게 될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내에 다음의 사항을 반영함. ‘일·가정 양립’을 해당 기본계획의 중과제 수준인 정책 기조의 하나로 두어, 향후 보육환경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제시하였음. 또한 ‘여군의 전투부대 지휘관 보직 확대’라는 방향을 설정하여 군 내 성역할 고정관념 탈피 및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웠던 보직 영역에서 대표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함. 구체적으로 보육환경이 열악한 ‘면’소재지 이하 지역 군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우선 신규 설치·리모델링·증축을 추진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양성평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필요(직급, 연령, 성별 등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군과의 화상회의, 서면 의견제출, 현장확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 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성평등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였음.</li> <li>○ ‘일·가정 양립’을 정책기조의 하나로 상향하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혼간부(군무원)의 보육환경 및 삶과 일에 대한 균형을 추구하는 가치관 변화를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 분야를 기존 세부추진과제에서 정책기조(중과제)로 상향</li> </ul> </li> <li>○ 대표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여군의 보직 및 운영 직위 확대’로 실시하던 추진과제를 ‘여군의 전투부대 지휘관 보직 확대’로 개선하여 여군의 계급 내 경쟁력 강화</li> </ul> </li> <li>○ 근무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주둔지 단위 여군 필수시설 설치를 성별무관 근무자가 상주하는 모든 건물에 여성화장실 확보 추진</li> <li>- 전투복, 근무복 등 여군 의견수렴을 통한 디자인 개선 소요 반영</li> <li>- 피복구매(전투복, 전투화, 근무화 등) 시 성별의 사이즈 범위 내 구매 가능하던 것을 ‘젠더 프리’ 개념의 피복구매 권한 부여</li> </ul> </li> </ul>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환경이 열악한 '면' 소재지 이하의 지역에 군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 우선 신규 설치·리모델링·증축 추진</li> <li>- 군 어린이집 입소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소예약 시스템' 개발</li> </ul> </li> </ul>

☑ 개선 의의

- 대표성 강화와 관련해 기존 여군 보직 및 운영 지위 확대를 여군의 전투부대 지휘관 보직 확대로 개선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군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근무여건과 관련해 피복구매 시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피복구매 권한 부여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성별뿐만 아니라 신체적 차이에 관계없이 근무복장을 구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또한 군인의 경우 근무지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잦은 이동이 많아, 군인의 일가정양립 실현이 잘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가정양립 실현을 향후 5년 간의 주요 의제로 삼아 보육환경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2022 개선사례 **임신·출산 대학원생을 고려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과 제 명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국토교통부)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공간정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과 융·복합 분야 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육성하여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에 재학중인 석·박사 학생 중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 및 학교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현재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는 총 10개교가 있음).

요약

개요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 개선 내용

-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재학생이 임신·출산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또한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추진 관련, 여학생 지원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진학 관련 홍보를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분야 내 여성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간정보 분야 산업조사 시 성별 현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제3차 공간정보 인재양성계획」 수립 시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장기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량, 토목 등 육체적인 업무강도가 높고 현장 근무 비율이 높은 공간정보 분야 특성 상 남성성이 강한 분야로 인식되어 여학생 입학률이 낮음.</li> <li>○ 장학금 지원 범위를 공간정보 전공 뿐 아니라 항공, 해양, 물류, 컴퓨터 등 관련 전공까지 확대하는 등 여성연구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선을 기 추진한 바 있으나, 여학생 관심 제고를 통한 해당 분야 진입 확대, 중도탈락 예방 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출산 시 휴학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등 개선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임신·출산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각 학교에 휴학기간을 충분히 부여토록 권고</li> </ul> </li> <li>○ 공간정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학금 수혜 혜택, 취업 진로 등에 대한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정보 특성화대학교 및 관련 분야 개설 대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사업 및 취업·진로 홍보(23.4월)</li> </ul> </li> <li>○ 공간정보 특성화대학교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여학생의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장학생과 매칭 추진(계속)</li> </ul> </li> <li>○ 공간정보 분야 산업조사 시 산업계의 여성종사자, 관련 학교 여학생 등의 통계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정책수립 반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정보 분야 여성종사자 현황을 파악한 바를 토대로, 장학생 뿐만 아니라 현행 특성화대학교 입학 및 졸업 여학생 비율을 조사·관리하고 제3차 공간정보 인재 양성계획 수립 시 관련 정책 수립</li> </ul> </li> <li>○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향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23.3월)</li> </ul>



☑ 개선 의의

- 본 사업에서 추진한 개선은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의 장학금 수혜대학원생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학업과정에서 중도탈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라.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2022 개선사례

성희롱·폭언에 대한 콜센터 상담사 보호

과 제 명	기상산업 진흥-기상정보 콜센터 구축 및 운영(기상청)
유 형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365일, 24시간 국민들에게 정확한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상정보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임.

☑ 개선 내용

- 기상청은 기상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콜센터 상담원을 고객의 성희롱과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내 ‘상담사의 보호’와 관련한 조항(제22조의2)을 신설하고, 상담원들을 위한 ‘악성민원의 유형’, ‘악성민원 세부응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음([시행 2022.12.22.][기상청훈령 제1062호, 2022.12.22., 일부개정]).

평가분석	개선사항
○ 성희롱·폭언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상담사 보호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기상콜센터 운영 시 성희롱·폭언 등에 대한 콜센터 상담사 보호 세부 기준을 반영하여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훈령) 일부개정(22.12.22.) - 상담사에 대한 보호조치(규정 제22조의2(상담사의 보호), 악성민원의 유형([별표2]) 및 세부 응대절차 ([별표 3]) 등 신설

평가분석	개선사항
------	------

**[참고]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조의2(상담사의 보호) 신설 조항**(본조신설 2022.12.22.)

제22조의2(상담사의 보호) ① 상담사는 별표 2의 악성민원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의 악성민원 세부 응대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담사를 대상으로 폭언, 성희롱,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를 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요청하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업무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 업무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또는 휴게 시간의 연장
5.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6. 상담사가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을 고소·고발하거나 해당 고객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경우 행정적·절차적 지원
7.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별표 2] 악성민원의 유형(제22조의2제1항 관련) (2022.12.22. 신설)

[별표 3] 악성민원 세부 응대절차(제22조의2제1항 관련) (2022.12.22. 신설)

### ☑ 개선 의의

- 기상콜센터 상담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과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2022 개선사례

####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성별등계 파악 근거 마련

<b>과 제 명</b>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b>유 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 법령 내용

- 본 법령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법률 제18466호, 2021.9.24., 공포·2022.9.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둔 시행규칙임.

☑ 개선 내용

-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중 제19조(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토록 하고 있음. 본 시행규칙은 제3조(실태조사)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시 성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법령을 제정함([시행 2022.9.25.][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1호, 2022.9.23., 제정]).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p>〈제 정〉</p>	<p>제3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b>정기적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성별·나이·활동분야 등 예술인의 일반 현황</b></li> <li>2.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원인, 유형 및 피해 정도</li> <li>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b>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성별·나이 등 피해 예술인의 일반적 특성</b></li> <li>2. 성희롱·성폭력의 발생 원인, 유형 및 피해 정도</li> <li>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실태 및 이수 현황</li> <li>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 및 성희롱·성폭력실태 조사는 현장조사, 우편조사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 및 성희롱·성폭력실태조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 개선 의의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으며, 상기의 동법 시행령을 통해 실태조사 시 성별, 연령 등 예술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사 실시를 명시하여, 향후 예술인의 성별에 따른 예술 작업 수행 환경,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됨. 이는 향후 예술인의 성별 및 활동분야 별 특성을 파악하고 적합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2022 개선사례

양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한국어 교재 자문 및 감수 의무화 추진

과 제 명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 환경 개선-한국어교육 선진화-한국어교육과정 개발 자문 및 한국어 교재 자문 감수 운영(문화체육관광부)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한국어교육 수요의 지속적 창출을 도모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장에 적합한 양질의 한국어 교육 내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적용 활성화, 개별 교육과정 및 교재의 수립·개발 기관 지원,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자문·감수 운영,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정량·정성 지표의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 개선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개발을 위한 자문·감수 등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인 교육부 등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인도 및 터키 중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 시 교재 개발 내용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성차별 요인 등의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등 교재개발 과정에 대한 개선을 추진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개발을 위한 자문·감수 등 운영 시 성평등 관점에서 차별요인 포함 여부 등을 자문 및 감수하는 과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수립 시 교재 주제 및 내용 선정 등에서 성별 특성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반영 노력</li> <li>○ 국어원 주관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과 국가 개발 교재 감수 시 성평등 관점의 자문 및 감수 의무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의* 및 관련 평가** 실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교재개발협의회('22.12. 교육부 등 참여) 운영</li> <li>** 인도 및 터키 중등학교 한국어교재 개발 내용 성별 영향평가 실시(~'22.12.)</li> </ul> </li> </ul>

☑ 개선 의의

-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국가 개발 교재 감수 시 양성평등 관점의 자문 및 감수를 의무화함으로써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게 성차별적 내용 또는 양성평등을 저해할만한 내용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한 한국어 교과과정 및 교재를 제공할 수 있음.

2022 개선사례

성범죄에 대한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호

과 제 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임.

☑ 개선 내용

- 이용자에 대한 종사자의 폭행·상해, 성희롱·성폭력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을 추진함. 기관 소속 종사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요약

개요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성과의 과제

부록

처분하도록 해당 처분기준을 정해두고 있는 규칙의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 관련)’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시행 2022.3.25.][보건복지부령 제874호, 2022.3.24., 일부개정]).

평가 실시 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사.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 설〉  〈신 설〉	법 제23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평가 실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사.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폭행,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법 제23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 개선 의의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범죄 예방 등) 책임 강화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2022 개선사례

성인지 감수성 향상 과정 운영

과 제 명	선원근로 복지 향상-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해양수산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산학협력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과 취업을 연계하여 미취업 국적 청년해기사의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 인력양성·배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 개선 내용

- 해양수산부는 청년 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사업 추진 시 해당분야 내 여성인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여성인력 진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선원의 노동권·인권 보호교육 과정 내 세부 교과로 ‘여성선원과 실습선원의 인권 및 보호의무’, ‘성인지 감수성 향상’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함. 또한 협회 소식지 내에 이와 같은 교과 개편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내용을 수록하여 회원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시도들을 시행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분리통계 생산 필요</li> <li>○ 국적 해기사, 선박관리 전문가의 활동 분야는 경제효과 및 권한이 큰 분야로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진출해 왔던 분야임. 그러나 그만큼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심한 분야로 여성들이 진출하고자 하여도 불리한 근로환경 및 성별 고정관념이 작용하여 전문인력으로 자리매김 하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음. 이에 이러한 원인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사업 실적보고서 내 '성별통계' 산출하여 제출</li> <li>○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교육 과정 세부교과목으로 '여성선원과 실습선원의 인권 및 보호의무', '성인지 감수성 향상' 과정 개설 및 운영</li> <li>○ 협회 소식지 '해드림(95호)' 내에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 내 여성선원의 인권보호를 고려하여 편성된 교육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내용을 수록하여 회원사 및 유관 기관에 전파하는 등 홍보 실시</li> </ul>

☑ 개선 의의

- 해기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교과 내용 중 ‘여성선원과 실습선원의 인권 및 보호의무’, ‘성인지 감수성 향상’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청년 해기인력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2022 개선사례

성평등한 노인문화 조성 항목 추가

과 제 명	정선군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강원도 정선군)
유 형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임.

☑ 개선 내용

- 조례의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내용을 담은 제4조(비용의 보조 등)에 ‘성평등한 노인문화의 조성’ 관련 항목을 신설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시행 2022.5.18.][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조례 제2897호, 2022.5.18., 제정]).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8. ~ 9. (생략)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지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략) <b>8. 성 평등한 노인문화의 조성</b> 9. ~ 10. (생략)



☑ 개선 의의

-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성평등한 노인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관련 사업 운영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이는 군 내 양성평등한 노인 문화 형성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022 개선사례

4차산업 진로체험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 성인지적 내용 포함

과 제 명	학교교육여건 개선-진로체험지원사업(인천광역시 부평구)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및 실무체험 등을 진행하는 사업임.

☑ 개선 내용

- 부평구는 청소년 진로체험, 직업교육 추진 시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강조하거나 남성 선호 직업, 여성 선호 직업을 강조하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이버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수요 맞춤형 교육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 특히 4차산업 진로체험프로그램 참여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시 성인지적 관점의 내용을 추가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성별에 따라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사가 다를 수 있으나,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교육이 아닌,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진로직업탐색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li> <li>○ 범죄 및 폭력, 성범죄 등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경우 직업세계에 진입하자마자 이러한 피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업윤리교육의 일환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 추진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장애인의 직업영역 확대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학력 장애인 강점 직종 및 환자동행안내원, 스마트 오피스 관리사 등 장년/중증장애인 강점 직종 등 발굴 보급</li> </ul> </li> <li>○ 장애인 성별 및 연령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훈련과정(위탁) 공모 선정 시 여성장애인 전용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유도</li> </ul> </li> <li>○ 4차 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대상 직업윤리 교육 실시</li> </ul>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내용: 사이버 성폭력 예방교육(2022.8. ~ 11.)</li> <li>○ 만족도 조사 시 성인지적 관점의 질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내용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진행되었다. (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li> <li>: 수업중 성별, 외모, 성정체성 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다. (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li> </ul> </li> </ul> </li> <li>○ 장애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편적 진로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내용: 공예디자이너, 특수분장사, 반려동물훈련사 등(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li> </ul> </li> <li>○ 2023년도 부평구진로체험지원센터 홍보 달력 제작 시 성별영향평가 실시(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2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었거나 성별 대표성 면에서 불균형한 삽화 등 개선</li> </ul> </li> </ul>

☑ 개선 의의

-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분야 선정 시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 편향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강의 평가(만족도 조사) 시에도 성차별적 내용 포함여부 등을 질문하여 강의 내용의 성평등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진로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2022 개선사례**      **물놀이 안전관리교원 임무에 성범죄 예방 및 불법촬영 단속 추가**

과 제 명	철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경상북도 철곡군)
유 형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법령 내용

- 본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

☑ 개선 내용

- 칠곡군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를 규정하는 조항(조례 제13조(임무))에서 임무의 세부 내용에 ‘성범죄 예방, 불법촬영 단속 및 미아 찾기’를 추가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함([시행 2022.12.30.][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688호, 2022.12.30., 제정]).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b>5. 성범죄 예방, 불법촬영 단속 및 미아 찾기</b> 6. (현행과 같음)

☑ 개선 의의

- 안전관리요원의 수행임무로서 성범죄 예방과 불법촬영 단속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물놀이장에서 지켜져야 할 ‘안전’의 범위에 물놀이 안전, 응급구조 등 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 ‘불법촬영 단속’을 포함한다는 의미임. 이는 안전의 의미를 확장하여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물속 안전, 신체적 위기 상황에 대한 구조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안심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022 개선사례

청소년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

과제명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파주시)
유형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본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임.

☑ 개선 내용

- 조례의 제3조(지원 등)에서는 파주시에서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음. 파주시는 청소년 대상 성평등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에 ‘성평등한 인재 육성 사업’을 포함하여 개정을 추진함([시행 2022.9.1.][경기도파주시조례 제1832호, 2022.9.1., 전부개정]).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및 예산 지원)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6. ~ 8.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b>성평등한 인재 육성 사업</b> 6. ~ 8. (현행과 같음)

☑ 개선 의의

- 지자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내에 시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성평등한 인재 육성 사업’을 명시하여 양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교육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022 개선사례

다양한 청년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과 제 명	청년참여 활성화-용인 청년정책네트워크(경기도 용인시)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청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임. 청년네트워크는 구체적으로 청년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안 모색, 시행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그 외에도 청년의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함.

☑ 개선 내용

- 용인시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성평등한 추진을 위해 사업담당자 및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한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성평등 다짐”을 하도록 하는 한편, 분과 활동으로도 ‘평등 다양성 분과’를 신설하여 청년 내부의 차이를 고려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청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함. 또한 다양한 청년 집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및 활동 시간대, 참여 방법을 다양화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 문제 상황을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안 마련 필요</li> <li>- 청년층의 경우 성별에 따라 불평등, 차별에 대한 인식 격차가 커 상호 소통과정에서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음.</li> <li>- 경제활동중인 청년의 경우 직장생활로 인해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청년 중에서도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례 또한 참여 접근성이 낮을 위험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통계 생산 및 성별 참여 비율 점검</li> <li>○ 청년 네트워크위원 활동 서약서 내 “성평등 다짐” 추가</li> <li>○ “평등다양성 분과” 신설: 이전까지의 운영 현황을 보면, 업무 중심, 기존 사업 중심으로 분과가 구성 되는 경향을 보임. 이 경우 청년 정책이 비장애, 비혼, 20대, 대졸, 남성 중심으로 다뤄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내에서도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청년 사업을 바라 볼 수 있는 분과 개선을 통해 이슈 전반에 다양한 고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기존 운영 위원회, 일자리분과, 주거생활 분과, 교육문화 분과 -&gt; 평등 다양성 분과 신설</li> <li>○ 네트워크 단원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li> <li>○ 사업 담당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li> <li>○ 출산·육아·경제활동으로 인해 평일 낮 시간대 행사 등 정책 욕구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청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대 행사 운영 및 온라인 창구 확대 저녁시간/온라인 운영을 통한 접근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대상 성인지 교육 19~21시 ZOOM 운영</li> <li>- 네트워크 발대식 19:00 ~ 21:30시 운영</li> <li>- 기타 운영진 간담회 등 저녁 시간/온라인 운영</li> </ul> </li> <li>○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li> </ul>

☑ 개선 의의

- 청년이 직접 지역사회에 필요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서 상호 간에 성평등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활동 영역 면에서도 성평등 분과를 신설하여 청년 내부의 차이를 고려하고 다양한 청년 집단의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함.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운영 과정 양 측면에서 양성평등 및 다양성 존중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업임.

#### 마.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2022 개선사례

원자력 안전연구 전문인력양성사업 성별통계자료 조사 항목 포함

과 제 명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R&D)(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 사업 내용

- 원자력 안전기술, 원전 해체, 사용 후 핵연료 안전관리 등 원자력안전 분야의 첨단·전략기술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원자력 안전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임. 국내 교육훈련 사업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과 융합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원자력안전분야 차세대 R&D 전문인력의 글로벌 경험 배양을 위해 해외 선진 연구기관 파견과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해외연계 프로그램이 있음.

##### ☑ 개선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 사업의 성별수혜율을 지속적으로 파악 및 관리할 수 있도록 2022년 새롭게 선정한 10개 과제의 수행 기관(교육훈련 사업 8개, 해외연계 과제 2개)과 성별통계를 필수로 생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협약을 체결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 본 사업의 수행으로 교육받은 교육생의 성별통계 등을 통해 성별수혜율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신규과제 선정 시, 교육 수혜자 측면의 성별 분리통계 조사를 포함하도록 협약 체결 - 협약서 제27조 제3항에 인력양성 측면의 수혜율 점검을 위한 관련 통계자료(성별 분포 포함)조사 항목 포함

☑ 개선 의의

- 과학기술분야 R&D사업의 경우 성별 격차가 적지 않은 영역으로, 참여자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 수혜율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이를 위해 사업 수행 기관(선정 과제)과의 협약의 내용에 사업 수행 기관은 사업 수혜자 성별통계를 생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분야의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2022 개선사례

데이터산업 종사자의 성별인력 현황 조사 기반 마련

과 제 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법령 내용

- 본 시행령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두고 있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두고자 하는 영임.

☑ 개선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본 시행령(안)에 데이터정책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는 내용 및 「데이터 산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데이터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과 수요·공급 현황을 조사할 때 성별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본 령을 제정함([시행 2022.4.20.][대통령령 제32577호, 2022.4.19., 제정]).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각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b>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b>

요약

개요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성과의 과제

부록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p>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2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및 데이터사업자 매출 실적 등</p> <p>2. 데이터산업 종사자의 <u>인력 현황 및 수요·공급 현황</u></p> <p>3.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 ③ (생략)</p>	<p><b>구성</b>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26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및 데이터사업자 매출실적</p> <p>2. 데이터산업 종사자의 <b>성별·직무별·부문별 인력 현황과 수요·공급 현황</b></p> <p>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 ③ (생략)</p>

☑ 개선 의의

- 법령 내에 데이터산업 실태 조사 시 성별·직무별·부문별 인력 현황과 수요·공급 현황을 포함하여 조사해야 함을 명시하여, 데이터산업 분야의 인적자원의 성별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의 근거가 마련됨.

2022 개선사례 **체육인 성별통계 조사 기반 마련**

과 제 명	체육인복지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법령 내용

- 「체육인복지법」이 제정(2021.8.10. 법률 제18381호, 시행 2022.8.11.)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한 시행령으로,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체육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및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개선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구체화하는 조항에서 체육인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조사 시 성별, 나이, 종목 등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여 시행령을 제정함([시행 2022.8.1.][대통령령 제32863호, 2022.8.9., 제정]).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제 정〉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b>성별</b> , 나이, 종목 등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 개선 의의

-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 성별, 나이, 종목 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시하여 체육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의 기반이 마련됨.

2022 개선사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에서의 성별 분석

과 제 명	원자력안전활동지원-방사선 건강영향 조사(원자력안전위원회)
유 형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방사선 작업종사자 대상의 직무 피폭노출평가, 생체영향평가, 의료정보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직업성 피폭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방사선 피폭과 질병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사업과 피폭선량평가 및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추진 중임.

☑ 개선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시 성별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직업성 방사선 피폭 관련 성별에 따른 암발생 비교·평가를 실시함.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별 안전기준 별도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완료함. 향후에도 피폭선량 연계 질병 위험과 관련하여 성별 비교·평가를 지속 추진할 예정임.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영향조사 수행 과정에서 성별분석 및 교차 분석 결과 검토 필요</li> <li>○ 성별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 검토 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에 따른 '연령 표준화 발생비' 산출을 통한 암발생 비교·평가 완료</li> <li>○ 향후 피폭선량 연계 질병 위험 평가에서도 성별 비교·평가 지속 추진(성별 차이 비교는 조사에 지속 반영)</li> <li>○ 성별에 따른 암 발생 비교·평가를 통한 성별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 검토 완료</li> </ul>

☑ 개선 의의

- 방사선 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시 성별에 따른 영향의 차이 등을 비교분석하고 있음. 이러한 성별 등 특성별 비교분석은 차후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경우 각 집단별 특성에 맞는 조치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2022 개선사례

민원처리과정에서 임신부 등에 대한 편의 제공

과 제 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법령 내용

- 본 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해두고자 하는 시행령으로, 전자적 민원 처리와 관련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의 예외, 행정기관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처리,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룸.

☑ 개선 내용

-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과정 등에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민원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등으로 구체화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함. 또한 동 조항에 휠체어·점자 안내책자 등의 편의용품 비치, 전용창구 운영 등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및 방문 민원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감면받는 수수료를 이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함([시행 2022.7.12][대통령령 제32789호, 2022.7.11., 일부개정]).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p>〈신 설〉</p>	<p>제8조의2(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민원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li> <li>2. 65세 이상인 사람</li> <li>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li> <li>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li> <li>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li> <li>6.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li> </ol> <p>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 외에 신체적·정신적·언어적 능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민원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p> <p>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돋보기 등 편의용품 비치</li> <li>2. 민원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li> <li>3.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li> </ol>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민원 처리 수수료의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처리 수수료의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을 정한 경우 이를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p>

☑ 개선 의의

- 시행령에 민원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원취약계층 대상 편의시설 제공을 명시하여, 행정기관이 취해야 할 취약계층의 민원처리와 관련한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도모함.

2022 개선사례 **영양관리 지원사업에서 성별 고려 및 영양식생활 조사의 성별 분석 명시**

과 제 명	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경상남도 김해시) 통영시 시민영양관리 조례(경상남도 통영시)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법령 내용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시민영양관리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임.
-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는 각 시군구의 장은 매년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음. 이에 각 지자체의 「시민영양관리 조례」는 시민영양관리와 관련한 시군구의 장의 책무 및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두고 있음.

☑ 개선 내용

- 경남 김해시는 「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의 제5조에서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에 각 시민 집단별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 시민의 영양·식생활 조사 시에는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함을 명시함[시행 2022.10.21.]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859호, 2022.10.21., 제정].
- 경남 통영시 또한 「통영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의 제3조에서 시민영양관리시행 계획의 수립 시에는 지역 특성 및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

하고, 제4조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시민 특성별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함([시행 2022.4.18.]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708호, 2022.4.18., 제정]).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p>〈제 정〉</p>	<p><b>「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b></p> <p>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li> <li>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li> <li>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li> <li>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li> <li>5.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7조(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b>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li> <li>2. 식생활 행태 조사</li> <li>3. 영양상태 조사</li> <li>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li> </ol>
<p>〈제 정〉</p>	<p><b>「통영시 시민영양관리 조례」</b></p> <p>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통영시 시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행계획은 <b>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b>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li> <li>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li> <li>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li> <li>4.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p> <p>제4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li> <li>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b>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b></li> </ol>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p><b>관리 및 지원 사업</b></p> <p>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p> <p>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p> <p>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 개선 의의

-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양관리와 관련해, 다양한 주민 집단별로 성별·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관련 조사 또는 계획 수립시에도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성인지적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함.

2022 개선사례

**성별을 고려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조례 명시**

과 제 명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
유 형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법령 내용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70호, 2020.6.9., 시행 2020.12.10.)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8475호, 2021.10.19., 시행 2022.4.20.) 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임.

☑ 개선 내용

- 대전광역시는 성별을 포함한 인구학적 요소 등을 고려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함. 제7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용활성화를 취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포함) 요소를 고려한 특성화된 공동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또한 추가로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음([시행 2022.12.30.][대전광역시조례 제5935호, 2022.12.30., 전부개정]).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제8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대전광역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② (생략)	제7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대전광역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b>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b> 특성화된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4. <b>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b> 5. (생략) ② (생략)

☑ 개선 의의

-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데이터 생산 및 제공을 명시하여 성인지적 공공데이터 제공의 기반을 마련함.

2022 개선사례

성별 수혜율 등을 고려한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과제명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청년정신건강 증진 사업(경기도 양주시)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시에 적절하게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비를 지원하여 악화 방지 및 회복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비급여 검사료, 제증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 유관기관을 통한 연계 등을 도모하는 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음.

☑ 개선 내용

-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에의 남성의 접근성과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 남성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사업 홍보를 강화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남성'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 정신질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문화적 편견으로 남성이 정신질환 진료에 거부감이 크고, 외부 지원을 받기 어려워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존 홍보 전략(지역신문 및 방송매체, 인터넷 등 홍보)은 유지하되, 군부대 중심으로 홍보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부대 정신건강교육 실시 6회</li> <li>- 천보대대 군기교육 실시 2회</li> </ul> </li> <li>○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대민 캠페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정중심상가 '시원한 밤 축제'에 참여하여 청년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li> </ul> </li> </ul>

☑ 개선 의의

- 청년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남성의 인지율을 높이고 심리적 접근성을 강화하며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빈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2022 개선사례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할인**

과 제 명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농림축산식품부)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만 15~87세에 해당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인 피보험자에게 국비로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임. 크제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이 있음.



☑ 개선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할인혜택에는 없던 가족할인을 추가 도입하였음.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가족이 2인 이상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별로 주계약 보험료의 5%를 할인할 수 있도록 개편(타 할인조건과 중복 할인은 불가)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의 가입을 제고를 위한 상품개선이 필요함.</li> <li>○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가족 가입 시 별도의 할인혜택 없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의 경우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료의 5% 할인을 추가로 받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22.10.1. 시행). - 2022년 말까지(3개월 간) 2,915명의 가입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음.</li> </ul>

☑ 개선 의의

- 농업인안전보험 개선 전의 경우, 가입비에 대한 부담으로 영농 종사 가구에서 1인, 주로 남성가구주만 해당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았다면, 영농 종사 가구의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 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가입률 제고에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2022 개선사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출국대기실 운영 법제화

과 제 명	출국대기실 운영규칙(법무부)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법령 내용

-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 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2022.8.18.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외에 출국대기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규칙 제정을 추진함.

☑ 개선 내용

- 법무부는 임신부 등 인도적 처우 등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 (제3조 3항)토록 명시하고, 신체와 소지품 검사 시 같은 성의 담당공무원이 맡도록 (제4조)하는 내용을 담아 규칙을 제정함.

평가 실시 전	평가 실시 후
<p>〈제 정〉</p>	<p>제3조(송환대상외국인의 입실 등) ① 출국대기실에서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송환대상외국인을 출국대기실에 입실시킬 때에는 여권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국 불허가 통지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 불허가 통지서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③ 청장등은 입실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적 처우 등 특별한 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자</li> <li>2. 임신부</li> <li>3. 노약자</li> <li>4. 19세 미만인 사람</li> <li>5. 「출입국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의 진행 등으로 장기 대기 중인 사람</li> <li>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청장등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공무원은 방 배정, 급식, 진료, 안전 등에서 해당 입실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p> <p>제4조(신체 및 휴대품 검사) ① 담당공무원은 입실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입실외국인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 략)</li> <li>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동성의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입실외국인이 성적(性的) 소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장등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li> </ol>

☑ 개선 의의

- 출국대기실 운영 시 환자, 임산부, 노약자, 19세 미만인 사람 등을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하여, 출국자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바. 공공시설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평가 기준 개선

2022 개선사례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한 일상 안전관리체계 구축

과 제 명	안전광산조성-내 삶이 행복한 안전광산프로젝트(광주광역시 광산구)
유 형	■ 자체개선 □ 검토의견 통보 □ 개선권고(특정)
	■ 사업 □ 법령 □ 계획 □ 홍보

☑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시민참여에 기반하여 자발적인 재난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해당 지역 내 현안 사업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계획서들에 대해 심의를 거친 후 예산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지역현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이 안전 광산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시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숙원사업, 담당부서가 부재하거나 다수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담당부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업, 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이 미진한 현안 사업 등이 있으며, 동별 20,000천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통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책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개선 내용

- 광주 광산구는 여성인구비율을 반영한 CCTV 취약지수 도입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 개선사항에 대한 국민 수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함. 또한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을 발굴하고 해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 특히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대상 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한 실적을 우수사업 평가항목으로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예방, 안전문화 활동 등은 정책 수혜대상이 구민 전체이나, 안전정책 추진 시 안전 취약층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젠더기반 폭력 범죄 예방, 여성친화환경조성 등 성평등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li> </ul>	<p><b>①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li> <li>○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조사 실시 및 반영(“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및 이에 근거한 사업시행”을 사업추진계획 자료에 명시)</li> <li>○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실적 여부를 안전광산프로젝트 우수 동(洞) 평가항목에 추가</li> </ul> <p><b>②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진행에 반영한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인구비율 반영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 설치 요청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분석(행안부 해안시스템)</li> <li>- 설치장소 반경 100m의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발생건수 비교분석(광산경찰서 방법진단 결과)</li> <li>- 주민 수해도를 포함한 일상 속 안전현안 해결프로젝트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취약계층 보호(4건), 안전시설 확충(6건), 안전 관리강화(3건), 안전민원해결(2건)</li> </ul> </li> </ul> </li> </ul> <p><b>③ 성별격차 개선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기존 방범용CCTV 등 안전시설물 설치 추진 시 설치 기준은 시민들의 민원성격, 반응에 대한 피드백 성격이 강해 실질적인 안전체감도, 민감도 향상에는 미흡하였음. → (개선 후) CCTV 취약지역 지수 개념을 도입, 설치 요청 지역에 대한 감시취약지수, 범죄취약 지수, 여성인구비율, 단독주택비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체감도 향상 도모 및 지역 간 안전인프라 격차 해소</li> </ul> <p><b>④ 개선사항에 따른 구민 수혜 체감도(만족도 조사 반영 내용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구 안전체감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안전 관련 정책의 개선자료로 활용</li> </ul>

☑ 개선 의의

- 본 사업은 사업계획 공모 시부터 '이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사업평가 시에도 취약층을 고려한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한 사업에 높은 평가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 특히 감시취약지수, 범죄취약지수, 여성인구비율, 단독주택비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 성인지적 분석을 이끌어 내어 정책에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음.

2022 개선사례

국가재난대응시설 출동대원 대기실 성별 분리 시설설계

과 제 명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 형	■ 자체개선 □ 검토의견 통보 □ 개선권고(특정)
	■ 사업 □ 법령 □ 계획 □ 홍보

☑ 사업 내용

- 「소방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지휘 통제하는 재난대응시설 및 훈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임.

☑ 개선 내용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계획 수립 시 근무대원 대기실을 남성 전용, 여성 전용으로 분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지 않았으며 대기실이 주로 남성근무대원 중심의 시설설계로 계획되어 있어 여성대원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근무대원 대기실을 남성대기실과 여성대기실을 분리 조성하여 성별에 따른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단계에서 개선안을 마련, 반영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난대응시설의 주요 업무는 재난발생시 응급 상황관리 및 대응 업무로 평상시 대기업무가 주요 업무로 남성위주의 시설 설계로 계획되어 있어, 여성 대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난대응시설의 여성근무인력의 근무환경에서 차별이 없도록 설계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특성 상 대기업무가 주인 국가재난대응시설에 여성대기실을 설치하도록 설계 시부터 반영</li> <li>- 근무자의 편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여 남성 및 여성 대기실을 분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남성 대기실 6실, 여성대기실 2실 조성</li> </ul> </li> </ul>

☑ 개선 의의

- 재난대응시설 등과 같은 시설 건립 시, 대원들의 대기 공간을 성별에 따라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왔던 것은 이러한 재난대응업무 담당 인력이 주로 남성일 것이라는 고정관념 및 기존의 관행의 영향일 수 있음. 본 사업의 경우 당초의 건립계획안에 담긴 이러한 문제를 포착하여 여성대원이 사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성하도록 설계단계에서 개선을 추진하여 대원들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022 개선사례

모범공동주택 선정 평가항목에 성별 특성 고려 명시

과 제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 형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법령 내용

-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단지를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사항을 정해둔 조례임.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에서는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을 선정·지원하기 위해 선정 시 평가분야 및 항목, 선정절차, 모범주택 선정단지 포상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음.

☑ 개선 내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모범공동주택 평가 세부 항목 내에 성별, 연령, 장애 등 주민다양성을 고려한 행사 개최 현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운영 현황, 관리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권리확보 등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 여부, 관리종사자의 성별을 고려한 분리된 휴게공간 마련 여부 및 관리종사자를 위한 인권 및 권리교육 실시(이수) 여부 등을 추가하는 등 당초 마련한 조례안을 개선하여 조례를 제정함([시행 2022.10.18.]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474호, 2022.10.18., 제정]).

평가분석	개선사항
<p>제3조(평가분야 및 항목)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공동체 활성화 분야</p> <p>가.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개최 횟수</p> <p>나. 여가생활을 위한 편의증진 시설운영 현황</p> <p>〈신설〉</p> <p>다. 기타 공동주택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p> <p>4. 고용안정 모범 분야</p> <p>가.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보장 여부(계약기간 보장 등)</p> <p>나.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여부</p> <p>〈신설〉</p> <p>다. 관리종사자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p> <p>〈신설〉</p> <p>라. 기타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p> <p>제8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p>	<p>제3조(평가분야 및 항목)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p> <p>1. ~ 2. (생략)</p> <p>3. 공동체 활성화 분야</p> <p><b>가. 주민 화합을 위해 성별, 연령, 장애 등 주민다양성을 반영한 행사 개최 횟수</b></p> <p><b>나. 여가생활을 위하여 성별, 연령, 장애 등을 반영한 편의증진 시설운영 현황</b></p> <p><b>다. 관리종사자 인권증진 및 권리확보 등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 여부</b></p> <p>라. 그 밖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p> <p>4.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모범 분야</p> <p>가.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보장 여부(계약기간 보장 등)</p> <p>나. 관리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p> <p><b>다. 관리종사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분리된 휴게공간 확보 여부</b></p> <p>라. 관리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p> <p><b>마. 관리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권리교육 이수 여부</b></p> <p>바. 그 밖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p> <p>제8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모범공동주택 현판을 수여한다.</p>

평가분석	개선사항
<p>대하여 모범공동주택 현판을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사무소장</p> <p>가. 300세대 이하 단지: 30만원 범위 내</p> <p>나. 300세대 초과 단지: 50만원 범위 내</p> <p>③ (생략)</p> <p>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관리종사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비용 등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b>관리사무소</b></p> <p>가. 300세대 이하 단지: 100만원 범위 내</p> <p>나. 300세대 초과 단지: 300만원 범위 내</p> <p>③ (생략)</p> <p>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관리종사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b>하며, 모든 관리종사자가 차별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p>

☑ 개선 의의

- 본 조례에 명시한 모범공동주택 평가의 항목은 공동주택이라는 작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 간의 특성에 대한 상호 이해, 실질적인 화합, 인권 존중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지표임

2022 개선사례

사업 심사 평가항목에 성평등 추가

과 제 명	청년 자립 및 성장-청년창업희망스타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 형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토의견 통보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특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계획 <input type="checkbox"/> 홍보

☑ 사업 내용

- 제운사거리 인근 변종유흥업소를 정비하여 청년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기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소요 비용 일부를 협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임.



☑ 개선 내용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본 사업 지원 대상 및 협약 연장 대상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바, 해당위원회 위원 구성의 성별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 하에 이를 반영함. 또한 지원 사업 심사 시 사업의 성평등성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사업 추진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시 지속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양성평등 저해 요인을 포함하는 홍보물 제작을 예방할 계획임을 제시함.

평가분석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성별통계 작성 필요</li> <li>○ 심사기준에서 성평등성 미포함</li> <li>○ 홍보내용, SNS 등에서 성차별, 성폭력 점검, 시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성별통계 생산 관리 및 위촉직 성별균형 확보</li> <li>○ 사업 심사 평가 항목에 '성평등' 항목 추가(성평등 저해 요인 포함한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등)</li> <li>○ 사업 입주자 모집공고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li> </ul>

☑ 개선 의의

- 위원회 성별 균형 도모뿐만 아니라 심사 평가항목에 '성평등'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이 양성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III

##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 
1.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요
  2. 정책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3.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9년~2021년 평가과제)
  4.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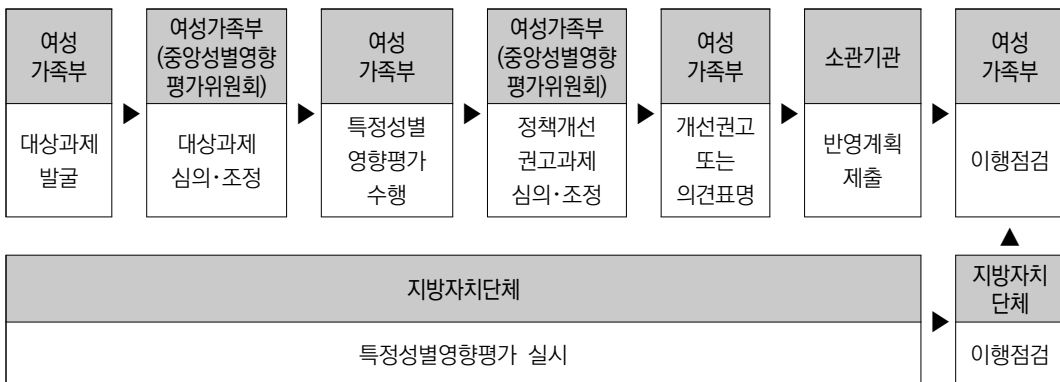


# 1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요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시행 중인 법령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시행 중인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양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성별영향평가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심층성별영향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6월부터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시행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대상정책을 선정하여 성차별 발생요인과 성별 정책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해당기관이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고 있다. ‘개선권고’ 과제에 대해서는 익년도부터 개선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또한 매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과 이행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그림 III-1]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절차

요약

I  
개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먼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과제 발굴을 위해 부처 수요조사, 전문가 과제 제안,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성차별 문제 및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한 제안은 생활체감형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였다.

발굴된 대상과제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9개 정책이 선정되었다. 9개 정책명을 보면 ①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③ 노숙인 지원 정책, ④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⑤ 귀농·귀촌 지원정책, ⑥ 정신건강증진사업, ⑦ 생활체육 지원정책, ⑧ 사회보장기본계획, ⑨ 생활체감형정책이다.

〈표 III-1〉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정책명

분야	정책명
고용·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li> <li>■ 국민취업지원제도</li> </ul>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 지원정책</li> <li>■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li> <li>■ 귀농·귀촌 지원정책</li> <li>■ 정신건강증진사업</li> </ul>
문화·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체육 지원정책</li> </ul>
중장기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기본계획</li> </ul>
생활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체감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우체국 편의시설 개선</li> <li>②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li> </ul> </li> </ul>

2022년 9개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를 토대로, 2023년 6월 기준 2개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개선권고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7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2023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표 III-2〉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명 및 개선권고 과제 수 (단위: 개)

대상정책명	개선권고 과제 수
• 생활체육 지원정책	5
• 노숙인 지원정책	7
•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예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예정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예정
• 귀농·귀촌 지원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예정
• 정신건강증진사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예정
• 사회보장기본계획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예정
• 생활체감형정책 ① 우체국 편의시설 개선 ②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예정

요약

I  
개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 2 정책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 가.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

4차 산업의 발전으로 노동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와 고용주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의 규모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의 규모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며, 온라인상에서 노동의 여부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 업종에 따른 성별 분리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플랫폼노동자 문제는 상대적으로 남성집중 직종(배달·운송 등)의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집중 직종(음식점, 보조·서빙, 가사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관심은 적다. 여성과 남성은 소득, 안전, 건강 등에서 서로 다른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 성별 차이와 노동 특성을 고려한 플랫폼종사자 보호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한 결과, 첫째, 플랫폼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수혜자의 성별 인원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주로 남성 중심 업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플랫폼노동에서 젠더폭력 및 괴롭힘 등의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나 제도화된 피해자 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매개로 한 경우 다른 일자리로 이직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 권익보호 및 복지 확충, 2) 모부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3) 산업안전보건 정책, 4) 직업능력 개발 정책, 5) 집단적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와 관련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

### 나.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부터 시작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일종의 실업부조프로그램이다. 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 등에 따라 지원유형을 구분하여 고용플러스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제도 유형에 따른 심사요건, 선발조건 등 지원 요건 및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상담 등의 지원내용은 성별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히 취약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첫째, 일자리 연계율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고, 지역에 따라 협의체 운영 방식이 상이하였다. 둘째 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이행에서 전통적인 성별 직종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여성 구직자의 절반 정도가 해당되는 비경활선발형의 취업연계율이 30%대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계협업기관의 상담사가 행정처리를 위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 지역 내 구직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적극 연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2) 중앙(시)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운영 내실화 3) 성별직종분리가 완화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강화, 5) 시스템 접근의 어려움 해결과 관련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

#### 다. 노숙인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노숙인 지원정책은 복지지원과 자립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 노숙인 수는 감소하였으나, 여성노숙인은 점차 증가하고, 자녀를 동반한 모자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노숙인 등 규모는 14,404명으로 2016년 대비 약 17.8% 감소, 거리 노숙인 중 여성은 2016년에 비해 증가(6.4%→9.2%)하였다. 즉, 노숙인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설입·퇴소를 반복하는 회전문 현상, 만성화가 빈번하여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높은 실업률, 주거여건 악화 등 불리한 정책환경으로 노숙으로 전락하기 쉬운 주거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숙인 지원정책은 노숙인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는 근로와 생활기술 습득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건강상 장기 입소가 필요한 노숙인은 재활 및 요양시설에 입소해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노숙인은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노숙에 이르는 배경, 노숙 이후의 경로, 노숙의 위험성과 어려움, 일 경험과 경제적 상황, 질병의 유형 등이 성별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성별 차이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노숙인지원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숙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노숙인 분포와 상태에 비해 여성 노숙인시설 분포는 불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노숙인은 폭력 및 착취에 취약하고, 정신질환 유병비율이 높아 신체, 정신, 심리적 지원을 더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노숙인실태조사’, 「노숙인복지법」 등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여성 노숙인 시설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성 입소 노숙인의 고령화 및 가족동반 노숙 등으로 인해 의료 분야·돌봄 분야에서 노숙인의 성별과 노숙인의 고령화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7개 과제를 개선권고 하였다.

〈표 III-3〉 노숙인지원정책 개선권고 과제현황

개선영역	개선권고 과제 내용	소관기관
I. 노숙인 지원 정책의 성별 관점 반영 기반 조성	1. 노숙인 지원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 등에 성별 분리 자료의 생산·관리 및 지자체의 성별 관점 정책 집행 유도 2. 여성·노인·청년·가족동반 노숙인 등의 욕구·대안 발굴을 위한 세분화 된 실태조사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II. 노숙인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강화	3. 여성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령, 성별, 장애 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 등 성별 관점을 반영한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시행 4. 여성노숙인 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위기대응 방안 마련 5.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여성노숙인 특화교육 실시 6. 정신질환 노숙인에 대한 지원 강화 7. 자녀동반 노숙인, 고령화 등을 고려한 돌봄 지원 및 시설환경 개선 등	

## 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하고, 2019년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 사업의 정책대상은 돌봄과 의료의 복합적 수요가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등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경우 공통프로그램의 마련은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높고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다. 또한, 돌봄노동이 주로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돌봄인력 확보 등 구체적 지역사회 통합돌봄운영안의 마련에 있어 성별에 따른 필요 자원과 역할 등 성인지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사업 수혜에 대한 성별 분석을 기초로 대상자별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여성의 돌봄 부담 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여성의 욕구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요양 등 돌봄노동의 직종별 위계를 바탕으로 공급인력을 설계하면서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저임금 노동으로 전환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여성 노인은 자녀, 이웃, 친구 등 다차원적인 정서적,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성 노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고립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1)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욕구 평가 기준 개선, 2) 양질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 3)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성인지성 강화, 4)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

## 마. 귀농·귀촌 지원정책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시민의 농촌 순유입 지속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기대,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 등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1차·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귀농·귀촌 단계별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귀농·귀촌 준비지원, 농촌지역 내 취·창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 지원, 영농정착 지원금, 농지 우선 제공, 거주환경조성, 귀농·귀촌 단계별 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귀농가구소득 증대, 생활만족도 증대 등과 같은 정책 목표가 실현되려면 가족 형태, 가족주기, 가구원의 연령과 성별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농업·농촌의 성별화된 구조는 토지와 주택, 일자리, 사회활동과 관계 등 기회와 자원 접근성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

이에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첫째, 여성의 귀농·귀촌 주도성이 증가하는 현실과는 다른 남성 가구주 가구 중심의 정책·제도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 특히 비혼, 1인가구, 여성 귀촌인의 정책 접근성이 취약하였다. 둘째,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여성 참여율 높으나 정책만족도는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의 정보 획득은 공공기관 의존도가 높은 반면, 실제 공적 정보제공 서비스는 미흡하였다. 넷째, 여성의 귀농·귀촌 교육 참여율은 높지 않았다. 다섯째, 대다수의 여성 귀농·귀촌인이 마을·지역에 소속감을 못 느끼고 있었고, 그중에는 이주 후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방안을 법령, 통계, 지원체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

## 바. 정신건강증진사업

최근 국민의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예방 활동을 통한 국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의 경우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이나 상태에서 성별 차이가 발견되며,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정신건강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 및 생애주기별 활동 특성과 연계한 정신건강 위해요인 등을 분석하여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을 제외한 대다수의 정신건강 문제들이 남성 아동·청소년보다 여성 아동·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측정하는 정신건강 문제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자와 아동·청소년인 내담자의 성별 매칭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와 사업들을 크게 1)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 2)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프라 및 제공 대상 범위 확대, 3) 정신건강 상담 강화, 4)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 역량 강화, 5) 정신건강 저해 약물에 대한 접근성 제한 조치 강화로 구분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

### 사. 생활체육 지원정책

2021년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클럽법」 제정을 통해 스포츠권이 확립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패러다임의 법적 기반을 획득하여 모든 개인의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생활체육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생활체육 지원정책은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체육시설 조성 및 지원, 지도자 양성 및 배치, 스포츠클럽 육성에 중점을 두며, 국민생활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체육 지원정책은 다양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관계와 리더십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활동 참여종목 다양성 및 시설 접근성 등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체육활동에서의 성별 격차와 성별 전형성을 파악하고, 성평등한 생활체육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생활체육 지원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년) 규칙적 체육활동 미참여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형 사업에 대한 여성의 선호도가 남성보다 높다는 점에서 여성 대상 교육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필요가 있었다. 특히 대회 지원 사업의 대회 운영 종목은 양성 적합/선호 종목과 남성 적합/선호 종목 중심이 많은 실정으로 여성 적합/선호 종목은 매우 적고,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종목으로 인식되어 온 종목에 한정된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 성평등한 사업 지원을 위한 성과지표 관리체계 개선, 2) 여성 선호도가 높은 교육형 사업 지원 확대, 3) 교육형 사업의 생활체육 미참여자 비율 확대, 4) 여성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형 씨름지원사업 확대, 5) 대회 연계 교육형 사업 확대, 6) 여성 참여 리그 및 대회 확대, 7) 여성의 대회형 씨름지원사업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개 과제를 개선권고하였다.

〈표 III-4〉 생활체육지원정책 개선권고 과제현황

개선영역	개선권고 과제 내용	소관기관
I. 생활체육 미참여자의 참여 증진 방안 마련	1. 생활체육 미참여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형사업 참여 대상의 자격요건 관리 방안 마련 2. 대회 연계 교육형 사업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II. 대회형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 방안 마련	3. 참여 리그 다양화 및 대회 확대 등 대회형 사업에 대한 성별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III.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	4. 생활권내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참여 여건 개선 5. 생활체육 정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대상(여성, 노인 등)을 위해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생활체육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체육활동 인식 제고	

## 아.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5년 마다 수립하고 있다.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보장 체감도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사각지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주기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특히,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분야별 핵심 분야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노동, 실업, 교육, 일·생활, 은퇴 등 생애주기별 핵심영역별 위험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에 포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하여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과제에서 양성평등 관점이 부족하고, 각 사회보장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여성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둘째, 근로빈곤과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빈곤과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체 공적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는 여성보다 남성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장기요양 등 노인돌봄과 지역사회거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 노인이 가용할 수 있는 돌봄 자원(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 배우자 돌봄을 받지 못함)이 남성 노인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돌봄일자리의 경우, 장기요양 일자리가 성평등한 일자리가 되지 못하는 원인은 최저임금으로 수렴되고 있는 임금수준에 있었다. 이러한 현황 및 문제점을 고려하여 1)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2) 근로빈곤과 근로장려금, 3) 노후빈곤과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 4) 장기요양 등 노인돌봄과 지역사회거주, 5) 돌봄일자리(장기요양 일자리를 중심으로) 분야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

### 자. 생활체감형정책

생활체감형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는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정책 중 사회적·경제적 편견이 반영되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중요하고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개선과제를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2년 생활체감형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우체국 편의시설 개선’,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체국 편의시설에 대해 성별 구분 설치 등 성인지적 고려가 필요하나 현재 우체국 편의시설을 성평등하게 설계·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성평등한 우체국 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휴게실, 탕비실, 샤워 및 탈의실, 화장실 등에 성별 구분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특성,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평등한 우체국 편의시설 구축을 위해 행정규칙 제정 및 「우정건축물 설계 기준」의 편의시설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

하였다.

둘째,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하여 월경 건강 및 권리, 피임, 성매개 감염병, 임신전 검사, 난임 지원, 임신 중단 등에서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1) 월경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해서는 월경건강 관련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내실화 및 일회용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노출독성 평가 등 추가 연구를 실시하며, 생리대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피임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청소년 관련 센터를 통한 청소년 대상 피임 교육 및 피임도구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3) 성매개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소년 성매개감염병 관련 상담, 검사, 치료 등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축적과 남성청소년 HPV 무료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4) 임신전 검사와 관련해서는 임신 전 필수 검사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각 지자체별 임신 전 검사 사업의 격차 해소를 위해 표준안을 제시하여 각 지자체별 임신 전 검사 사업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5) 난임 지원과 관련해서는 난임·우울증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난임·우울증센터의 무료 상담 대상자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배우자, 조부모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 등이 개선안으로 제시되었다. 6) 임신중단과 관련해서는 유산유도제 도입과 국가필수 의약품 지정 관련 TF를 구성하여 약물 임신중단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고, 불법유통 약품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이 개선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7) 전 사회적으로 성·재생산 건강 관련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2019년~2021년 평가과제)



가. 개요

2019~2021년에 수행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기관에 정책 개선권고를 한 258개 과제에 대해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점검방법은 2023년 2월에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 보고' 자료와 2022년 이행점검 실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2019년 개선권고 과제는 79.0%, 2020년 과제는 70.2%가 이행완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개선권고 과제의 경우는 대부분 개선조치 기한이 2023년 6월 이후이지만 24.7%가 2022년 중에 조기 이행완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나 개선기한이 되었음에도 이행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Ⅲ-5〉 2019~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권고 이행점검 결과

(단위: 개, %)

특정평가 수행연도	개선연도	개선권고 과제 수(A)	2020 완료	2021 완료	2022 완료	완료합계(B)	이행중 (기타) <sup>1)</sup> (C=A-B)
2019		81	39	18	7	64(79.0)	17(불수용 7)
2020		104	-	37	36	73(70.2)	31(불수용 3)
2021		73	-	-	18	18(24.7)	55(불수용 0)

주1 : 이행중 과제 수에는 기타(불수용 또는 사업중단으로 인해 이행 불가능한) 과제 수 포함

주2 : '-'는 해당 없음 의미

주3 : 2019년 불수용 과제 7개 중에는 사업종료 과제 1개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각 행정기관이 제출한(2023.2)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 및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활용

## 나. 2019년 권고과제 이행현황

2019년 개선권고 과제 중 2022년에 개선 완료된 과제 수는 총 7개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정책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한 가지 개선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양성평등 의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위원회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여 성폭력·성평등 관련 논의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제안이 가능한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표 III-6〉 아동정책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양성평등 의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li> <li>- 양성평등, 성폭력, 성매매, 성인권교육 등 관련 현안을 조사·연구하고, 양성평등 의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인프라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내 다양한 분야(법학, 복지, 보육, 신체건강, 정신건강 등)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여, 관련 논의(성폭력, 성평등 등)에 대해 전문적 자문 및 제안이 가능한 인력 인프라를 구축함</li> </ul>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한 가지 개선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중점분야의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 권고되었고, 이에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전망 및 여성 인력 양성 방안 연구가 실시되었다.

〈표 III-7〉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중점분야의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li> <li>-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와 훈련수요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소관부처에 정책개선 근거 자료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전망 및 여성 인력양성 방안 연구 실시('22년)</li> </ul>

‘생활체감형정책(I)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2022년에 세 가지 개선권고가 이행되었다. 첫째, 스타트업 창업생태계의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와 여성기업인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벤처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성차별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배포가 권고되었다. 이에 창업투자회사 등 VC(Venture Capital) 대상으로 성차별 인식 개선 관련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둘째, 양성평등 관점의 투자로 성과를 낸 모범사례에 대한 발굴 및 홍보가 권고되었고, 이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의 여성기업 투자 성과의 우수사례가 발굴 및 홍보되었다. 셋째, 투자 전문인력 육성 기관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투자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신규인력 양성과정에 포함하고, 투자심사역 대상 세미나 및 특강 개최가 개선권고되었다. 그리하여 민간단체 자체 시행 투자심사역 전문성 제고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의 교육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었다.

〈표 III-8〉 생활체감형정책(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타트업 창업생태계의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와 여성기업인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개선 방안 마련</li> <li>벤처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성차별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배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투자회사 등 VC(Venture Capital) 대상으로 성차별 인식 개선 관련 콘텐츠 제작·배포</li> </ul>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타트업 창업생태계의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와 여성기업인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개선 방안 마련</li> <li>성평등 관점의 투자로 성과를 낸 모범사례 발굴·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평등 관점의 여성기업 투자 성과 우수사례 발굴·홍보</li> </ul>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타트업 창업생태계의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와 여성기업인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개선 방안 마련</li> <li>투자 전문인력 육성 기관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투자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신규인력 양성과정에 포함하고, 투자심사역 대상 세미나 및 특강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단체 자체 시행 투자심사역 전문성 제고 교육과정에 성평등 관점 교육내용을 추가 교육 시행</li> </ul>

‘외국인 건강관리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두 가지 개선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첫째,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개인 단위와 세대 단위를 구분하여 부담하는 방안 및 지역가입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거주지역 및 연령에 따른 지역보험료 경감 조치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고시가 개정되어 섬·벽지, 농어촌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료 경감이 적용되었다. 둘째,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서류의 종류, 유효기간 등에 있어 유연한 조치를 마련하고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을 피부양자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외국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외국인 건강관리 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을 검토할 것</li> <li>-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개인 단위와 세대 단위 구분하여 보험료 부담하는 방안 및 지역가입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거주지역·연령에 따른 지역보험료 경감조치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방안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고시개정 완료</li> <li>- 섬·벽지, 농어촌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족관계 증명 장애 요인을 완화할 것</li> <li>-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서류의 종류, 유효기간 등에 있어 유연한 조치를 마련하고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을 피부양자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할 시 인정하고 있음</li> <li>- (서류의 종류) 내국인-외국인 간 혼인 시에는 국내 서류, 외국인 간 혼인 관계인 경우 국내서류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서류</li> <li>- (유효기간) 국내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적국의 서류는 발급일 또는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및 공단이 인정한 기관의 확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일 시 인정</li> <li>○ (사실혼 피부양자) 외국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인우보증서 등 첨부)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li> </ul>

## 다. 2020년 권고과제 이행현황

2020년 개선권고 과제 중 2022년에 개선 완료된 과제 수는 총 36개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보건 종합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2022년에 다섯 가지 개선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첫째,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설계, 통계분석 및 결과활용 등 전 단계에 걸쳐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성별 노출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별 성별 분리통계 작성 및 결과 활용을 통한 우선관리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성별로 분리해 국가통계시스템(KOSIS)에 제공하고 있다. 둘째, 환경보건 정책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시 양성의 평등한 참여로 균형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환경보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환경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셋째, 새로운 환경보건 이슈 대응 및 성인지적 정책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환경보건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환경보건센터에서 매월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환경보건 이슈가 제시되었으며, 성별 특성에 따른 환경보건 조사 및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넷째,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과제 개발 등을 위해 양성평등 의제 논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고, 이에 탄소중립 공정전환 포럼 및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취약한 계층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섯째, 환경재난 대응력 강화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난 건강영향 취약지도 구축시, 성별에 따른 차이 및 특성을 고려할 것이 권고되었다. 그리하여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민감·취약계층의 기후변화 등 환경재난 대응력 강화 및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거주가구 및 이용시설 대상 실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였다.

〈표 III-10〉 환경보건 종합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설계, 통계분석 및 결과 활용 등 전 단계에 걸쳐 성별 차이를 고려할 것</li> <li>○ 성별 노출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별 성별 분리통계 작성 및 결과 활용을 통한 우선관리 대상 유해인자 파악</li> <li>- (예시) 생활공간, 가사육아 활동, 생활 화학 제품 사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성별을 분리해 국가통계시스템(KOSIS)에 제공</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건 정책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시 성별 균형을 고려 할 것</li> <li>- 위원회 운영 시 양성의 평등한 참여로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환경보건 관련 규정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권고(안)에 해당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 완료</li> <li>-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환경보건법」 개정('21.1.5. 개정, '21.7.6. 시행)</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건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통해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 역량을 제고할 것</li> <li>- 새로운 환경보건 이슈 대응 및 성인지적 정책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환경보건정책 추진기반 마련</li> <li>- (예시) 환경보건센터 기능 개선 등을 통해 환경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건강 민감성의 성별 차이, 기후변화에 따른 성별 특성 조사·연구 등 역할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건센터에서 매월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환경보건 이슈 및 성별특성에 따른 환경보건 조사·연구</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건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통해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 역량을 제고할 것</li> <li>-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과제 개발 등을 위해 양성평등 의제 논의 활성화 방안 마련</li> <li>- (예시) 환경보건포럼 운영, 젠더 전문가 참여 하는 환경보건 정책 협의체 운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공정전환 포럼('21.6월, '21.8월, '21.10월), 환경보건위원회('21.12.) 운영 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취약한 계층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에 대한 사항 논의</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재난 대응력 강화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것</li> <li>-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난 건강영향 취약지 도구측시, 성별에 따른 차이 및 특성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민감·취약계층의 기후 변화 등 환경재난 대응력 강화 및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거주가구 및 이용시설 대상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함</li> </ul>

‘보건복지 분야 연구개발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2022년에 네 가지 개선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첫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관련 심의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위원회 규정 내 성별 고려를 명시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 제4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평가결과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되었다. 둘째,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에 보건의료 관련 중장기 목표, 기본방향, 전략별 중점 과제 등에 성인지적 추진 전략 및 정책 이슈가 포함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따라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기획 및 계획(안)』 마련을 위한 심층 인터뷰 위원 섭외 시 성별 비율을 고려하였다(여성 위원 50% 구성). 그리고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4-1. 건강 약자와 함께하는 건강형평성 향상 연구’ 부문에서 기존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점 건강형평성 향상 연구개발 추진’이라는 목표를 ‘노인·장애인·소아뿐만 아니라 지역·인구집단 등 고려한 건강 격차 개선 및 보건의료기술 적합성 기술 고도화’라는 목표로 수정하였다. 셋째, 야간 및 주말 연구가 많은 연구기관(민간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연구개발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 밀집 지역 인근의 돌봄시설 설치 및 연계 등의 지원 강화가 권고되었다. 이후, 1)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5개소에 설치비 30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었다. 또한 2) 연구개발인력이 가정내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표 III-11〉 보건복지 분야 연구개발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관련 심의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위원회 규정 내 성별 고려를 명시할 것</li> <li>-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8]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개정(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기부) 제정('21.6.9)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도 적용됨에 따라,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항은 과학기술혁신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름. 평가결과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됨(법 제1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li> <li>-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폐지 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이 새로이 제정하면서 기존 규정 삭제</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기술 관련 성인지적 차원의 전략적 접근 및 정책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 할 것</li> <li>- 보건의료 관련 중장기 목표, 기본방향, 전략별 중점 과제 등에 성인지적 추진 전략 및 정책 이슈 포함</li> <li>- (예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평가 및 젠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차기 계획 수립 시, 비전과 목표, 전략별 중점 과제 등에 성인지적 특성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기획 및 계획(안) 마련에 반영</li> <li>- 성별비율을 고려한 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사전기획 심층인터뷰 위원 섭외</li> <li>* 여성 위원 50% 구성 (4명/8명)</li> <li>○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4-1. 건강약자와 함께하는 건강형평성 향상 연구' 부문의 목표 수정</li> <li>-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점 건강형평성 향상 연구개발 추진 → 노인·장애인·소아뿐만 아니라 지역·인구집단 등 고려한 건강 격차 개선 및 보건의료기술 적합성 기술 고도화</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돌봄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li> <li>- 야간 및 주말 연구가 많은 연구기관(민간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연구개발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 밀집 지역 인근 돌봄시설 설치·연계 등 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li> <li>- 설치비 5개소, 인건비·운영비 30개소지원</li> </ul>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또는 민간어린이집 유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아이돌봄비 연계 지원, 인근 보육시설 등의 돌봄지원 서비스와의 연계 등</li> <li>- (참고) 문화예술인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문화예술 밀집지역인 대학로와 마포지역에 자녀 돌봄시설 마련, 시간제 돌봄 시설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인력이 가정내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홍보 요청</li> </ul>



‘해양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2022년에 세 가지 개선 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첫째, 여성 해양전문인력 확대를 위해 국립교육기관을 통한 외부 승선실습 기회 확대 및 여성인력 참여 제고를 위한 진로·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1) 2022년 마린잡 공동채용박람회 개최(56개 기업 참여)를 통해 여성 해기사 5명의 선사취업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 한국해양대에서는 산학 연계 여성해기사 취업지원 세미나 개최 및 여학생 취업 정보 공유를 위한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목표해양대에서는 대학 내 취업박람회 개최 및 가이드북이 발행되었고, 대학 홈페이지에서 취업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해양전문인력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관리직 승급 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필수 교육 내 양성평등 관련 교육을 포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실습선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예방교육이 실시되었다.

〈표 III-12〉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해양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선박 승선실습 기회 확대 등 취업 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마린잡 공동채용박람회 개최(56개 기업 참여)를 통한 여성 해기사 5명 선사취업 지원</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교육기관을 통한 외부 승선실습 기회 확대 및 여성인력 참여 제고를 위한 진로·취업 관련 정보 제공</li> <li>(예) 오션 폴리텍 과정 여성 참여율 제고를 위해 여성 취업사례 등 홍보 및 진로·취업 관련 정보제공, 해양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 여학생 외부 승선실습 기회 확대 및 경력개발·취업 관련 정보제공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해양전문인력 취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해양대) 산학 연계 여성해기사 취업지원 세미나 개최(65명 참석), 여학생 취업 정보 공유를 위한 멘토링 실시(153명)</li> <li>(목포해양대) 취업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대학 내 취업박람회 개최 및 가이드북 발행(1회) 고려해운(주) 외 35개 해운기업 참여, 전공분야 등 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취업정보 제공 활동 (122회)</li> </ul> </li> </ul>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전문인력의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관리 강화</li> <li>관리직 승급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필수 교육 내 성평등 관련 교육 포함</li> <li>(예) 선박 내 관리직급(선장, 기관장, 1항사, 1기사)에 대한 성평등 인식교육 실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습선 전직원 대상 인권침해예방교육 실시 (한우리/한반도/한미르호 75명)</li> </ul>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2022년에 네 가지 개선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첫째, 인공지능 윤리 준수를 위한 산업·학계 등 주체별 세부 체크리스트 개발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3대 기본 원칙 중 사회 공공선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산업, 학계 등 세부 주체별 구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영상 분야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안)와 챗봇 분야 인공지능 자율점검표(안)이 마련되었다. 둘째, 산업·학계 연구·개발자 등 대상별, 생애단계별(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보급할 것이 권고되었다. 그리하여 초·중등 단계에서 AI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윤리 소양 교육이 시행 중에 있으며, AI 교육 내용 기준(안)과 보조교재가 개발 및 보급되었다. 셋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원) 내 인공지능 기반 학문 분야 윤리과목을 개설하고 인공지능(AI) 윤리교육을 활성화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1) 인공지능 윤리 교육 교재가 마련되었으며, 2)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이 발표되었다.

〈표 III-13〉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정책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윤리 준수를 위한 산업·학계 등 주체별 세부 체크리스트 개발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li> <li>○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3대 기본 원칙 중 사회 공공선 원칙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산업, 학계 등 세부 주체별 구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li> <li>* (예시)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의 경우 산업체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사용자는 스피커 목소리의 성별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 테스트에 참여한 남성과 여성이 성별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등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 분야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안) 마련('22.12)</li> <li>○ 챗봇 분야 인공지능 자율점검표(안) 마련('22.12)</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 개발·보급</li> <li>- 산업·학계 연구·개발자 등 대상별, 생애단계별(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보급</li> <li>-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산업·학계 연구·개발자 등 대상별 인공지능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보급, (교육부) 생애단계별(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 단계에서 AI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윤리 소양 교육 시행 중</li> <li>- AI 교육 내용 기준(안) 및 보조교재(初2중, 中1중, 高2중) 개발·보급('21.2.)</li> </ul>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기관에서 인공지능 기반 학문 분야의 과목 개설 및 윤리교육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지능 윤리 교육 교재 마련('22.12)</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기관인 대학(원) 내 인공지능 기반 학문 분야 윤리과목 개설 및 인공지능(AI) 윤리교육 활성화 추진</li> <li>(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대학원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부) 각 대학(원)에 인공지능(AI) 윤리교육 등 활성화를 위한 안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 발표(1.27.) 하고, 동 윤리원칙(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문 발송(1.28.), 공청회(2.12.) 등 개최</li> </ul>

‘전문체육분야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2022년에 여섯 가지 개선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첫째, 전문체육 인력(코치, 심판, 트레이너, 임원) 및 관련 데이터의 성별 분리 통계 작성 및 결과 활용을 통한 성불평등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체육활동 참여율, 체육활동 참여 시간, 체육활동 참여기간, 체육활동 참여 강도, 체육활동 참여 장소, 체육활동 참여 경비, 체육활동 참여 영향 주체 등에 대해서 성별분리통계를 추가하였다. 둘째, 전문체육 분야의 성평등에 관한 인식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체육 분야 양성평등 지표 개발 및 결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따라 체육단체 혁신평가 평가지표(스포츠 인권 보호 및 양성평등 노력의 적정성)에 여성 임원 비율(이사회 및 분과위원회의 여성수/전체이사회 및 분과위원회 수)이 평가지표로 활용되었다. 셋째, 전문체육 분야의 현장성 및 실효성 있는 인권 교육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체육 전문가, 현장 경험자 등을 우대하여 교육대상을 선발하고 스포츠인권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전문체육 분야 선수의 성별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여성 의료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선수촌 내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여성 의료 인력이 상주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 전문의(가정 의학과)가 채용되었다. 다섯째,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의 조직 구성에 성인지 감수성 및 스포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보강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체육 분야 전문성을 고려한 심의위원회 3기 및 이사회 2기가 구성되었으며, 스포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체육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인권감시관이 구성되었다.

요약

I 개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의 과제

부록

〈표 III-14〉 전문체육 분야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체육 분야 관련 데이터의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li> <li>- 전문체육 인력(코치, 심판, 트레이너, 임원) 및 관련 데이터의 성별분리통계 작성 및 결과 활용을 통한 성불평등 완화 방안 마련</li> <li>- (예시) 체육백서 내 코치 현황, 국외전지훈련 결과 등 데이터의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 등 성별통계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활동 참여율, 체육활동 참여 시간, 체육활동 참여기간, 체육활동 참여 강도, 체육활동 참여 장소, 체육활동 참여 경비, 체육활동 참여 영향 주체 등에 대해서 성별 분리통계 추가</li> </ul>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체육 분야 기관용 성평등 지표 조사 및 공표</li> <li>- 전문체육 분야의 성평등에 관한 인식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체육 분야 성평등 지표 개발 및 결과 활용 방안 마련</li> <li>- (예시) 전문체육 기관용 성평등 지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단체 혁신평가 평가지표(스포츠 인권 보호 및 양성평등 노력의 적정성)에 여성 임원 비율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의 여성수/전체이사회 및 분과위원회 수) 평가지표로 활용</li> </ul>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체육인을 활용한 스포츠인권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li> <li>- 전문체육 분야의 현장성·실효성 있는 인권 교육 운영 방안 마련</li> <li>- (예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인재 아카데미에 스포츠인권전문가 양성 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은퇴한 선수들의 스포츠인권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권 교육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 전문가, 현장 경험자 등 우대하여 교육대상 선발(지원자격강화) 및 스포츠인권 강사 양성과정 운영('21년, 50명)</li> </ul>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체육 분야 인력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대응 역량 제고</li> <li>- 전문체육 분야 선수의 성별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여성 의료전문인력 확충 방안 마련</li> <li>- (예시) 선수촌과 접근성이 좋은 산부인과와 MOU 등을 통해 선수촌 내 정기 출장 진료 제도 마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촌 내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여성의료 인력 상주 운영</li> <li>○ 여성 전문의(가정의학과) 채용('22.8.16.)</li> </ul>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체육 분야의 성평등 문화 조성 과 여성 선수의 권익 보장 및 의사 결정 참여도 향상을 위한 성별 대표성 제고 방안 마련</li> <li>- 전문체육 관련 스포츠단체 임원 및 지도자 성별균형 참여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li> <li>- (예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체육회 정관(제26조), 회원종목단체 규정(제22조), 회원시도체육회 규정(제27조)에 임원 등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 내용 포함하여 시행중</li> </ul>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계 인권 회복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에 전문성 함양 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분야 전문성을 고려한 심의위원회 3기('22.12월), 이사회 2기('21.6월) 구성</li> </ul>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의 조직 구성에 성인지 감수성 및 스포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보강</li> <li>- (예시) 스포츠 윤리센터에 스포츠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영입을 통해 스포츠 윤리 및 상담·스포츠 행정·스포츠 인권 활동 등에 전문 역량 강화, 성인지적 감수성·성평등 의식·성불평등성에 대한 문제 인식 및 진단 등이 가능한 전문가 등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체육 분야 전문가 중심 인권감시관 구성('21~.)</li> </ul>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2022년에 두 가지 개선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첫째,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시 온라인 게임, 인스턴트 메시지, SNS 이용시의 디지털 성범죄 연계 발생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추진되었다. 둘째, 사이버 성폭력 발생시 대응방법(실제 만남거절, 피해 사실에 대해 도움 받는 구체적 절차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그리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초·중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업 자료집을 개발 및 배포하였고, 디지털 환경 내 성범죄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및 디지털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양성평등교육 교원 연수가 이루어졌다.

〈표 III-1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li> <li>-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시 온라인 게임, 인스턴트 메시지, SNS 이용시 디지털 성범죄 연계 발생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추진('20.~'22. 누적 500여 개교)</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li> <li>- 사이버 성폭력 발생시 대응방법(실제 만남거절, 피해 사실에 대해 도움 받는 구체적 절차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초·중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업 자료집 개발·배포('22년)</li> <li>○ 디지털 환경 내 성범죄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안전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및 디지털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양성평등교육 교원 연수 진행('22.7.)</li> </ul>

‘자살예방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2022년에 세 가지 개선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첫째, 성별 내 연령별 및 직종 등 집단 특징과 자살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관리자 대상 교육자료 및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지자체(강원도)와 ‘자살 사망자의 성별 특성분석을 통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체계 구축방안 모색’이라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고, 교육자료를 보완하였다. 그리고 응급실 사례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총 2회 실시하였다. 둘째, 생명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 홍보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자살 고위험 시기 홍보물 제작 및 영상 콘텐츠 내 성인지 관점에서의 모니터링,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보건복지서비스 소책자 내 여성 지원 상담 내용 제시, 청년 대상 인식개선 방안으로 SNS를 활용한 자살예방 콘텐츠 마련이 이루어졌다. 셋째, 성별 내 연령대별, 직종별 등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자조모임 활용 등을 통한 정서적 지원 제공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자살예방상담전화 신규 채용 및 응대율 등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생명존중민관협의회 운영,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추진, 청년 등 위기 대상에 대한 지지체계 마련이 이루어졌다.

〈표 III-16〉 자살예방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연령별 특성에 따른 자살행동 특징 및 대응방안 마련</li> <li>- 성별 내 연령별 및 직종 등 집단 특징과 자살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관리자 대상 교육자료·매뉴얼 마련</li> <li>- (예시) 성별 내 연령별 및 직종 등의 자살행동 특징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자 및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자살 고위험군 관리자 대상 교육자료 및 매뉴얼 등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 사망자의 성별 특성분석을 통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체계 구축방안 모색’ 지자체 공동연구진행(강원도) 및 교육자료 보완</li> <li>○ 응급실 사례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총 131명 참석, 총 2회)</li> <li>- 응급실 사례관리자 사례 슈퍼비전(총 94명 참석, 총 5회)</li> <li>- 응급실 사례관리자 ASIST 교육(총 144명 참석, 총 3회)</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인식개선 방안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li> <li>- 생명 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홍보시 성인지 관점 반영</li> <li>- (예시) 생명 존중 및 정신건강 캠페인 홍보 콘텐츠 ‘괜찮나’ 홍보물 전체 및 생명존중 교육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모니터링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 고위험시기 홍보물 제작 및 영상 콘텐츠 내 성인지 관점에서 모니터링(포스터 1건, 현수막 1건, 영상 1건)</li> <li>○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보건복지서비스 소책자 내 여성 지원 상담(여성세로일하기센터와 여성 긴급전화) 내용 제시</li> <li>○ 포스트코로나 대비 자살예방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여성 자살사망자 및 자살시도자 증가</li> </ul>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추세 및 20, 30대 비율 증가에 따라 청년 대상 인식개선을 위한 SNS를 활용한 자살예방 콘텐츠 마련 (웹툰 작가와 협업하여 여성 독자층 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 SNS 콘텐츠 마련, 카드 뉴스 제작 등)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국민 대상 성별 내 연령별, 직종별 등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내 연령대별, 직종별 등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자조모임 활용 등을 통한 정서적 지원 제공 및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방안 마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신규 채용('22.), 응대율 등 모니터링 추진</li> <li>○ 생명존중민관협의회 운영,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추진(계속)</li> <li>○ 생명존중민관협의회 운영 등으로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 등 위기 대상에 대한 지지체계 마련(청년희망 인문학 콘서트 개최, 유튜브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채널 업로드)</li> </ul>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2022년에 두 가지 개선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첫째, 자격 제도개선을 위해 산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산업계, 노동계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는 등 해당 권고 내용이 이미 기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훈련기관(여성인력개발기관 등)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 관련 고수준 교육훈련의 종목을 선정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와 연관되는 고부가가치·전문기술 훈련과정, 자격증 취득 관련 과정을 포함하여 2021년 738개 과정의 운영이 완료되었다.

〈표 III-17〉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취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현장의견 수렴 강화</li> <li>- 자격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 창구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산업계, 노동계 등 다양한 전문가 위촉(기시행)</li> </ul>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교육·훈련 및 고용 연계 지원 강화</li> <li>- 교육훈련기관(여성인력개발기관 등)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 관련 고수준 교육훈련 종목 선정 및 교육과정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와 연관되는 고부가가치·전문기술 훈련과정, 자격증 취득 관련 과정 포함하여 '21년 738개 과정 운영 완료</li> <li>- 예) 제약바이오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S/W 전문개발자 양성과정, 캐드(2D, 3D) 마스터 과정 등</li> <li>- 예) 직업상담사(국가기술 자격증) 과정,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전산세무 자격증(민간 관련) 등</li> </ul>

‘노사관계 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2022년에 네 가지 개선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첫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내 ‘남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연구·홍보사업’을 추가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에 ‘고용평등 실현 및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연구 및 홍보 사업’이 추가되었다. 둘째, 양성평등 지원 사업 발굴·확산을 위해 노사관계 지원 사업 공모 시 양성평등 관련 사업 예시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2022년 사업 공모 시 양성평등 관련 사업 예시가 포함되었다. 셋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운영 지침」내 양성평등 노동 실현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따라 ‘성평등 노동 실현’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우대 기준에 추가하였다. 넷째,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대상 지원사업을 강화할 것이 권고되었다. 그리하여 2022년 사업 공모시 미조직 근로자 지원을 우대하였다.



〈표 III-18〉 노사관계 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및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내 성평등 사업 지원 강화</li> <li>-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내 '남녀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연구·홍보사업'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 규정 개정</li> <li>-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3호 개정</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제3조(지원대상 사업) ①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 (현행과 같음)</li> <li>8. 고용평등 실현 및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연구 및 홍보 사업</li> <li>9.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협력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 등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div>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및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내 성평등 사업 지원 강화</li> <li>- 성평등 지원 사업 발굴·확산을 위해 노사관계 지원 사업 공모시 성평등 관련 사업 예시 등 포함하여 안내</li> <li>- (예시) 여성조합원 역량 강화, 여성노동자 대상 교육·홍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과 연구사업,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교육, 미조직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대상 교육·홍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사업 공모시 성평등 관련 사업 예시 포함</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및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내 성평등 사업 지원 강화</li> <li>-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운영 지침」 내 성평등 노동 실현 관련 내용 추가</li> <li>- (참고) 지원우대 기준('21년 기준) : 의제 중심 운영, 광역-기초 간 연계 강화, 협력-공동 사업추진, 미조직 취약노동자 이해대변·권익 보호 강화, 지역 단위 일터혁신 확산 기반 구축, 협의회 활동 사례 등 성과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내 '성평등 노동 실현'을 지원 우대 기준에 추가(~'22년)</li> <li>- ('22년 지원우대 사업 예시) 의제 중심 운영, 광역-기초 간 연계 강화, 협력-공동 사업추진, 미조직 취약노동자 이해대변·권익보호 강화, 지역 단위 일터혁신 확산 기반 구축, 협의회 활동 사례 등 성과 홍보, 성평등 노동 실현</li> <li>- (추진 일정) '22년부터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에 반영</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대상 지원사업 강화</li> <li>- 미조직 무노조 상태인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상담 및 지원사업 발굴 (홍보) 및 단계적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사업 공모시 미조직 근로자 지원 우대</li> </ul>

요약

개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의 과제

부록

‘코로나19 대응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2022년에 세 가지 개선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첫째,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일자리 위기의 주요 집단인 임시·일용직, 영세사업장(숙박음식점업 등) 고용보험 미가입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였다. 둘째, 감염병 위기 등에 따른 성차별적 고용 조정(여성·임산부, 육아휴직 대상자 등 대상) 발생 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고, 하위 법령 개정과 함께 노동위원회 세부 프로세스 등의 마련되었다. 셋째, 코로나 시기 직장의 휴·폐업이나 해고, 권고사직 및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잃고 재취업이 지연 되는 여성 구직자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그리하여 위기 사업장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 특수고용직 등의 직무역량 향상 또는 이·전직 준비를 위한 무급휴직자 특화과정 등 7개 과정이 운영되었다.

〈표 III-19〉 코로나19 대응 정책 특정성별 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취약 노동자에 대한 소득 지원 강화</li> <li>-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일자리 위기의 주요 집단인 임시·일용직, 영세사업장(숙박 음식점업 등) 고용보험 미가입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고용보험 사각 지대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li> <li>- '20년부터 '22.8월까지 총 6차례 사업을 시행하여 478.8만명, 5.2조원 지원</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차별적 고용조정 방지 등을 위한 대책 강화</li> <li>- 감염병 위기 등에 따른 성차별적 고용 조정 (여성·임산부, 육아휴직 대상자 등 대상) 발생 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등 마련</li> <li>- (예시)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구제절차 신설 및 판정 사례 안내, 상담창구 운영 및 위기 상황 시 특히 위반이 많은 성차별적 고용 조정에 대한 상담 강화, 성차별 상담 운영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고용평등상담기관 배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1.5.18, '22.5.19. 시행)</li> <li>- 하위 법령 개정 및 노동위원회 세부 프로세스 등 마련</li> </ul>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노동자 재취업·전직 지원 강화</li> <li>- 코로나 시기 직장의 휴·폐업이나 해고, 권고 사직 및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잃고 재취업이 지연되는 여성 구직자 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li> <li>- (예시) 새일센터 등을 통해 대면 여성집중 업종 여성노동자 전직 지원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소득감소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위기 사업장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 특수고용직 등의 직무역량 향상 또는 이·전직 준비를 위한 무급휴직자 특화과정 7개 과정 운영('21년)</li> <li>-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 실무, 디지털 정보화 교육 강사 양성과정 등</li> </ul>

## 라. 2021년 권고과제 이행현황

2021년 개선권고 과제의 경우 2023년 6월 이후 개선기한이 도래한다. 하지만 개선권고 과제 수 18개가 2022년 중에 조기에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2022년에 여섯 가지 개선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장애친화산부인과 지정 확대, 신규 선정을 위한 공모 실시, 보조금 교부,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 인력 채용 등 지원이 이루어졌다. 둘째, 장애인 건강

관리사업 관련 종사자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화산부인과 매뉴얼 발간 및 배포, 장애인화산부인과 종사자 및 코디네이터 교육이 이루어졌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기초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그리하여 「제1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여성장애인의 특성 및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의 지원을 강화하였고, 「제2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 넷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자(평생학습사 등)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에서 기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여성장애인 체육활동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여성장애인 대상 생활체육교실 및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시, 장애유형·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강화시킬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라인댄스, 스트레칭(전신, 상·하체 등), 요가 등 여성장애인 종목이 운영되었고 ‘홈트레이닝’이 보급 및 제작되었으며,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시 장애유형별 운동처방 교육이 실시되었다.

〈표 III-20〉 장애인 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li> <li>- 여성장애인들의 산부인과 진료 접근성 확대 방안 마련</li> <li>- (예시) 장애인화산부인과 지정 확대 및 홍보 강화, 장애인 주치의 제도 확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산부인과 지정 확대 : '21 8개소 → '22 10개소 → '27 15개소</li> <li>○ 신규 선정을 위한 공모 실시('22년 총3회)</li> <li>○ 보조금 교부,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 인력 채용 등 지원('22년 선정된 기관에 대해 '23년 교부 등 예정)</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li> <li>-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관련 종사자 교육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li> <li>- (예시) 장애인화산부인과 등) 의료 시설 종사자 대상 의료장비 매뉴얼 보완 및 장애인 성별 특성 이해 교육 및 상황별 대처교육 제공 등 실효성 있는 교육 과정 개발 및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산부인과 매뉴얼 발간 및 배포('21.12월, '23.3월)</li> <li>○ 2022년 장애인화산부인과 종사자 온라인 교육 운영</li> <li>- 운영기간 : '22. 10. 12. ~ 12. 16.</li> <li>- 운영실적 : 159명(이수율 64.6%)</li> <li>○ 2023년 장애인화산부인과 종사자 온라인 교육 운영</li> <li>- 운영기간 : '23. 2. 6.~12. 8.</li> <li>○ 2023년 장애인화산부인과 코디네이터 교육 운영 (상반기)</li> </ul>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장애인 교육 참여 확대 방안 마련</li> <li>- 여성장애인의 기초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 방안 마련</li> <li>- (예시) 평생교육 과정에 대한 통합적 정보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규모·시간·장소·편의시설 등 여건 마련, 평생교육 과정 등에 대한 안내 책자 발간 및 앱 개발, 접근성 높은 사이트 오픈 등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을 수립(’19.12.16.)하여 여성장애인의 특성 및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li> <li>○ 「제2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3~’25)」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진행(’22.9월)</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장애인 교육 참여 확대 방안 마련</li> <li>-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자(평생학습사 등)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에서 기 실시 중</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 관점 반영</li> <li>-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여성장애인 체육활동 제고 방안 마련</li> <li>- (예시) 여성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체육 및 동호회 등 특화사업 개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대상 생활체육교실 및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18년~)</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 관점 반영</li> <li>-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시, 장애유형·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강화</li> <li>- (예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이론 과목 구성 및 운영에 장애인 성별 특성 관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인댄스, 스트레칭(전신, 상·하체 등), 요가 등 여성장애인 종목 운영 및 ‘홈트레이닝’ 보급 제작(’20년~)</li> <li>○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시 장애유형별 운동처방 교육(’20년~)</li> </ul>

‘청년정책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2022년에 여덟 가지 개선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첫째, 창업 정책에 대한 소개나 이론 중심 프로그램이 아닌 실전형 프로젝트 사업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 창업 과정 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창업 정책의 성별 수혜율을 제고시킬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년들이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준비부터 창업실행 및 사업화까지 단계별(예비·초기·도약) 맞춤형 지원이 기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비 과부담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주거비 과부담을 완화시키고 주거 점유 안정성을 강화시킬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하였다. 셋째, 성별 전공 분리 현상의 완화를 위해 통합적 진로교육 및 직업 관련 다양한 활동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학교관리자, 담임교사,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 대상 진로교육 연수 시 양성평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넷째, 전 생애적인 진로발달의 성별 격차를 고려하여 아동기와 청소년기, 청년기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진로발달을 지원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진로정보망(커리어넷)을 활용한 온라인 진로상담 시 양성 평등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담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운영하였다. 다섯째,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성별 수혜현황 관리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수에 대한 성별 현황 관리,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등 청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대상자 적극 발굴, 청년층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 등이 이루어졌다. 여섯째, 청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통해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유발 요인 및 정신건강 위협요인별 심리지원을 강화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운영 중이며, 사례관리 과정에서 개인별 특성(성별 포함)을 고려한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안내서를 배포하였다. 일곱 번째, 청년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월경장애 등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중이며, 인공임신 상담도 2021년 8월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권센터 운영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인권센터가 대학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시범대학 및 인권센터 운영 우수대학을 선정 및 지원하고 있다.

〈표 III-21〉 청년정책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중소벤처 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장 성별 분리 완화 및 생애주기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 지원 강화</li> <li>- 청년 창업 정책의 성별 수혜율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li> <li>- 창업 정책에 대한 소개나 이론 중심 프로그램이 아닌 실천형 프로젝트 사업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 창업 과정 경험 기회 확대</li> <li>- (예시) 예비창업자 패키지 지원 사업의 청년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20대 후반기 청년여성 대상 실천형 창업준비 과정 운영, 창업 분야별 청년여성 대상 창업경진대회 추진, 청년 여성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 창업교육 시 활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이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준비부터 창업실행 및 사업화까지 단계별(예비·초기·도약) 맞춤형 지원을 시행 중</li> <li>○ 또한 여성 예비창업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하고 있음</li> <li>○ 청년전용창업자금, 혁신창업펀드 조성 등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음</li> </ul>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의 성별 주거여건 개선 및 주거권 보장 강화</li> <li>- 주거비 과부담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주거비 과부담 완화 및 주거 점유 안정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신혼부부 주거 관련 금융지원 강화</li> <li>-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 지원('22.10월)</li> <li>- 신혼부부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청년 (0.7억원 → 2억원)</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분야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과정 및 진로 발달과정 지원 강화</li> <li>- 성별 전공 분리 현상 완화를 위해 통합적 진로 교육 및 직업 관련 다양한 활동·정보 제공</li> <li>- 대학 이전 교육단계부터 대학 내 전공 이수 과정에 대한 진로탐색과 대학 입학 후 진로 선택 과정에서 전공 및 직업 관련 다양한 활동과 정보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관리자, 담임교사,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 대상 진로교육 연수 시 양성평등 관련 내용을 포함 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안내</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분야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과정 및 진로 발달과정 지원 강화</li> <li>- 전 생애적인 진로발달의 성별 격차를 고려하여 아동기와 청소년기, 청년기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진로발달 지원</li> <li>-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정보 제공</li> <li>-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과정에 진로 발달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학과 진로 설계의 통합적 접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정보망(커리어넷)을 활용한 온라인 진로상담 시 양성평등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담위원 대상 연수 운영</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문화 분야 청년 지원 정책 추진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추진</li> <li>-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성별 수혜현황 관리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수를 남녀 구분하여 현황 관리('23.1월~)</li> <li>○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등 청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대상자 적극 발굴 추진('23.5월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li> <li>○ 청년층 가입연령을 고려(15세~39세),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휴직중인 가입자는 적립금지 신청(2년)시 가입기간 5년간 연장 등 청년층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23년 지침 반영)</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문화 분야 청년 지원 정책 추진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추진</li> <li>- 청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복지 센터를 통해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유발 요인·정신건강 위협요인별 심리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중이며, 사례관리 과정에서 개인별 특성(성별 포함)을 고려한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안내서 배포</li> </ul>

요약

I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문화 분야 청년 지원 정책 추진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추진</li> <li>- 청년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li> <li>- (예시) 임신중지 상담 및 월경장애 등 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 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경장애 등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중이며, 인공임신 상담도 '21.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권리 분야 청년 참여 활성화 및 권리보호 강화</li> <li>- 사회 전반에서 인권과 안전에 대한 관심 및 대응역량 제고</li> <li>- 인권센터 운영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 마련</li> <li>- (예시) 인권의 범주, 처리 절차, 학생 참여의 방향,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무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 등 세부 운영지침 마련·배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3.24.부터 대학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고등교육법」개정, '21.3.23) 됨에 따라 인권센터가 대학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모델 개발하여 시범대학 및 인권센터 운영 우수대학을 선정·지원</li> </ul>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2022년에 세 가지 개선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첫째, 간호 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태움) 방지 등 수평적·민주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병원에 배포하고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도모하였다. 둘째, 2교대, 시간제 근무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다양한 시간·형태의 교대근무제도를 마련하고, 획일화된 교대근무형태가 아닌 간호사 개인의 특성 및 상황에 맞는 근무제도를 운영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대 근무제 정착 및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셋째,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의료기관별 자체 안전보건교육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고, 간호 업무와 실질적으로 연계 및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2023년도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환자안전관리 교육(온라인 4시간) 및 심화과정 교육(온라인 4시간), 간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온라인 8시간, 신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표 III-22〉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li> <li>- 간호 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태움) 방지 등 수평적·민주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li> <li>- (예시) SBAR(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를 이용한 업무 인수인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수인계 방식 표준화 지침 마련 및 이용 활성화,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등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영상을 제작, 전국 병원에 배포하고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도모</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하고 유연한 교대 근무제도 도입을 통한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일·가정 양립 환경 마련</li> <li>- 2교대, 시간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가능한 다양한 시간·형태의 교대근무제도 마련, 확실화된 교대근무형태가 아닌 간호사 개인의 특성 및 상황에 맞는 근무제도 운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대근무제 정착 및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22.4월~, 3년간), 총 51개소 219병동 지원 중</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인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유해 물질 위험 최소화</li> <li>-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의료기관별 자체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제작·지원, 간호 업무와 실질적으로 연계 및 적용 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다양화(간호사 경력(연차)별 교육 콘텐츠 구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도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환자 안전관리 교육(온라인 4시간) 및 심화과정 교육(온라인 4시간, 간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온라인 8시간, 신규) 교육과정을 운영 예정</li> </ul>

‘정부 인력양성·직업교육 훈련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2022년에 한 가지 개선권고 과제가 이행되었다. 새로운 분야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분야 직무분석 과정 등에 대한 새일센터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신설·운영 등 직업훈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에 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역량교육에 주요 산업분야 동향 파악 및 이해 제고, 알선 전략 등 종사자 취·창업서비스 전문성 제고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요약

I 개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표 III-23〉 정부 인력양성·직업교육 훈련 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부처	개선권고	개선 이행사항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처 간 협업 강화</li> <li>- 새로운 분야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분야 직무분석 과정 등에 대한 새일센터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신설·운영 등 직업 훈련 수요에 적극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교육에 반영</li> <li>- 주요 산업분야 동향 파악 및 이해 제고, 알선 전략 등 종사자 취·창업서비스 전문성 제고</li> </ul>

## 4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 가. 기관별 과제 추진현황

2016년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법은 2017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에 총 23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역자치단체 12개, 기초자치단체 6개, 시·도교육청 5개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기관 중에서 12개 기관(70.6%)이 실시하였고,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6개 기관 중에서 6개(2.7%) 기관, 시·도 교육청은 전체 17개 중에서 5개 기관(29.4%)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첫째,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제주가 각각 1개 과제를 실시하였다. 광역자치단체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주제는 없었으며, 장애인정책, 일자리 사업, 청년정책, 창업정책, 시설정책, 청소년정책, 전통시장지원사업, 관광콘텐츠 사업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

〈표 Ⅲ-24〉 광역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2년)

기관명	정책명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대구광역시	대구시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창업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문화시설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전광역시	시설설치사업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울산광역시	울산시 청소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세종특별자치시	-

기관명	정책명
경기도	경기도 전통시장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강원도	강원도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전남 관광콘텐츠 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경상북도	-
경상남도	경상남도 문화전시 공공시설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둘째,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인천광역시의 연수구,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 강화군과 경기도의 용인시가 각 1개 과제씩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청년창업 인프라조성사업, 서구는 정서진 아래뱃길 청년창업 공간 운영사업, 남동구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미추홀구는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강화군은 창업한 청년 사업강화 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용인시는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III-25〉 기초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2년)

기관명	정책명	
인천	연수구	청년창업 인프라조성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남동구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미추홀구	미추홀구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서구	정서진 아래뱃길 청년창업 공간 운영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강화군	창업한 청년 사업강화 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경기	용인시	문화도시 조성 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셋째,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인천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은 남성육아휴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실시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교가·교훈, 경상남도교육청은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지역 초·중·고 교가 및 교훈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III-26〉 시·도 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현황(2022년)

기관명	정책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남성육아휴직 실태 및 개선방안
경상북도교육청	교가·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특정성별영향평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역 초·중·고 교가 및 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

## 나.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2020년에서 2022년 시행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이행현황을 파악한 결과 2020년의 권고내용은 상당한 부분에서 이행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21년과 2022년 실시한 평가는 개선이 이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3년간 ‘서울시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2020),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2021), ‘장애인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2022)를 시행하였다. 특히 2022년에 실시한 ‘장애인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설문, 면접조사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할 것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성별에 따른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 권고되었으며, 해당 사항은 이행중에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022년에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일자리 정책 성별 목표 제시, 생활균형 및 수평적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여성청년 취업 멘토·멘티 프로그램 개발·강화 등의 개선안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제안된 권고내용을 이행중에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3년간 ‘신축공공 시설물 특정성별영향평가’(2020), ‘관광콘텐츠 특정성별영향평가’(2021), ‘창업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2022)를 시행하였다. 2020년, 2021년의 개선권고 사항은 모두 이행 완료하였다. 2022년 ‘창업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여성 특화 창업보육사업 확대, 창업 관련 의사결정 여성 참여,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법인 창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안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제안된 권고내용을 이행중에 있다.

대구광역시는 2021년에 실시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단기적으로는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 가족휴게실(수유실) 활용성 제고 및 탈의실 환경개선, 공공체육시설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권고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옥상을 활용하여 성별,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 여성 및 어르신 웨이트존 구비 등을 권고하였다. 그 결과 공공체육시설 노후 배수로 정비, 방풍막 설치가 이루어지고, 어린이 및 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편성 및 운영하는 등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2022년에는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2022년에 ‘시설설치사업의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화장실, 주차장, 수유실 등의 시설에 대해 성인지 관점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과 대전시 주요 시설 설치사업에서 편의성 및 안전성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권고 내용에 대해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광주광역시는 2022년에 ‘광주광역시 문화시설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시설 조성 시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구비할 것과 관람객의 신장, 시력, 보행능력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관람 지원을 확대할 것 등의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2023년 2월 현재 시설별(문화시설 10개소)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계획서가 수립 및 제출되었으며, 현재 권고내용에 대해 이행중에 있다.

울산광역시는 2022년에 ‘울산시 청소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청소년참여 위원회를 중심으로)’를 실시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환경과 청소년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할 것을 개선안으로 권고하였다. 이에 정책개선과제 8개가 도출되었으며,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경기도 평화협력 사업 : 평화누리길 및 캠프 그리브스 사업을 중심으로’(2020), ‘경기도 다문화가족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2021),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2022)를 시행하였으며, 모두 제안된 권고안을 이행중에 있다. 특히 2022년에 ‘경기도 전통시장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상인회 회원 정보에 대표자 성별을 추가하여 관리 등의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강원도는 2022년에 ‘강원도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산림휴양시설 관련한 조례개정, 산림휴양시설 내부 지킴 마련, 장애인 화장실과 수유실 설치 등의 자연휴양시설 개선과제를 권고하였다. 이에 현재 제안된 권고안을 이행중에 있다.

충청북도는 2020년에 ‘충북지역 소상공인 육성자금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2020)를 통해 사업계획서나 결과보고서 작성시 소상공인에 대한 성별분리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 ‘소상공인육성자금 평가표’ 평가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세부 구간 조정 등의 개선안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이행중에 있다.

전라남도는 2022년에 ‘전남관광 콘텐츠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관광지 11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관광콘텐츠 72건 대상 104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다. 또한 남도여행길잡이 블로그 게시물 34건과 전남관광재단 홈페이지 게시물 13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관광콘텐츠 15건 대상 2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다.

경상남도는 2021년에 ‘스마트 공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신규인력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교육 실시, 여성강사 확보,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이행중에 있다. 2022년에는 ‘문화전시 공공시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문화예술회관, 독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제21조 준수, 성별 균형참여 확대, 성인지적 공간개선, 공간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개선안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이행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와 홍보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202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2021),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2022)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제안된 권고내용이 이행중에 있다.

〈표 III-27〉 광역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지역명	평가연도	과제명	권고내용	개선 이행사항
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기반화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재정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달성 추가)</li> <li>-서울형 강소기업 실태조사 시행</li> </ul> </li> <li>○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기준 강화 : '일자리의 질 측정'에 성평등제도 운영 항목 추가 등</li> <li>-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기준 수립 및 재인증 기준(안) 제시</li> <li>-현장실사단 구성 시 특정 성비가 40% 넘지 않도록 하고, 실사단 사전교육 시 성인지 교육 실시</li> </ul> </li> <li>○일·생활균형 및 수평적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최고경영자의 조직문화 인식개선 포럼 개최</li> <li>○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내실화 강화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고용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동환경 심사기준 보완('일·생활균형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형성 의지' 등 심사기준 포함)</li> <li>-사업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시행</li> </ul> </li> <li>○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에 참여한 기업·법인·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 마련</li> <li>-다양한 청년 창업 성공사례 발굴 및 제시</li> </ul> </li> </ul>	<p>【이행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를 검토하여 사업 개선계획 수립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개선계획 수립(일자리정책과-6369호, 2021.3.29.)</li> <li>○개선과제를 '21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년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 선발계획</li> </ul> </li> <li>○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재정의 : 조례 개정은 중장기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강화가 성평등한 조직문화보다 우선 과제로 판단</li> </ul> </li> <li>○서울형 강소기업 선정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우수성 항목 배점 축소 (30→15점)</li> <li>-고용안전성 배점 확대(15→20점)</li> <li>-적정임금/복지수준 항목분리 배점확대(15→20점, 각 10점)</li> <li>-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배점 확대 (20→25점)</li> </ul> </li> <li>○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기준 수립 및 재인증 기준(안) 제시 : 별도의 평가절차 마련 및 70점을 재인증 기준으로 설정</li> </ul> <p>※ 이 외 이행중</p>
	2021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대상 : 자치법규 1,017개</li> <li>○평가방법 : 26개 영역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구분,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성별통계, 기타 등 5개 항목평가</li> </ul> </li> <li>○평가결과 : 총 580개 조항 개정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구분 : 34개 자치법규</li> <li>-성별특성 : 82개 자치법규</li> <li>-성별균형참여 : 351개 자치법규</li> <li>-성별통계 : 68개 자치법규</li> <li>-기타 : 45개 자치법규</li> </ul> </li> </ul>	<p>【이행중】</p>



지역명	평가연도	과제명	권고내용	개선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의조정 (양성평등정책담당관)</li> <li>-개선권고안 확정 및 통보</li> <li>-반영계획 제출(해당부서)</li> </ul> </li> </ul>	
	2022	장애인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 등</li> </ul> </li> <li>○설문, 면접조사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교육 참여경험, 접근성 정도, 정책 수요 차이 여부 등 설문조사</li> <li>-장애인 및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면접 조사를 통해 정책개선안 도출</li> </ul> </li> <li>○장애인 평생교육의 성별에 따른 격차 원인 분석 및 개선안 제시</li> </ul>	【이행중】
부산광역시	2022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 정책 성별 목표 제시 : 부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성별 목표 제시 필요</li> <li>-각종 서식 성별 분리 작성</li> <li>-기업 선정 기준 개정</li> </ul> </li> <li>○사업운영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생활균형 및 수평적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li> <li>-참여 기업과 청년 대상 만족도 조사 진행</li> <li>-참여 기업과 청년 간 중재 매뉴얼 개발</li> <li>-여성청년 취업 멘토·멘티 프로그램 개발·강화</li> </ul> </li> </ul>	【이행중】
인천광역시	2020	신축공공 시설물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육아복합센터 전반적인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 제시. 아이사랑누리센터 내 화장실, 수유실 설치 시 점검사항 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전반 및 휴게공간에 대한 개선사항 제시</li> </ul>	<p>【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공무원 및 설계용역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 설계에 반영 완료하였음</li> <li>-경사로의 폭과 기울기 반영</li> <li>-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표지판과 안내 시스템</li> <li>-보행공간을 차도와 분리</li> <li>-조도 확보</li> <li>-cctv 설치로 안전성 확보</li> </ul>

요약

I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지역명	평가연도	과제명	권고내용	개선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유실 등 비상벨 설치</li> <li>-가족형 화장실 설치</li> <li>-다목적 화장실 설치</li> <li>-성별에 따른 화장실 출입구 분리</li> <li>-남녀화장실 모두에 영유아 거치대 설치</li> <li>-유아 세면대 설치</li> <li>-수유실 커튼 설치</li> <li>-직원휴게실 설치</li> </ul>
	2021	관광콘텐츠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콘텐츠 관련 사업담당자, 홍보물 제작업체, 문화해설사 등)에게 성평등 교육 제공</li> <li>○축제, 행사 추진시 대행기관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시</li> <li>○여성문화자원과 성평등 관광 콘텐츠 발굴 사업 시행</li> <li>○축제 평가지표에 성평등 관련 조항 지표 추가</li> <li>○공모전 심사기준에 성인지감수성 항목 추가</li> </ul>	<p><b>【완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관광공사 인천투어 웹페이지 133건 단어 관련 변경 및 개선 (77건 사진, 56건 내용)</li> <li>*‘여심을 저격하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생두를 매장에서 직접 로스팅해 커피 맛도 뛰어나다’ 문장을 삭제</li> <li>*‘비타민C가 풍부하여 여성의 피부미용과 피로회복, 노화방지, 정력 증강에 좋다고 알려진~’에서 ‘여성의’ 단어 삭제</li> <li>○정력 증강을 활력 증강으로 변경 등</li> <li>-인천관광 VR영상 나레이션 수정</li> <li>-사업담당자 사전 교육 실시</li> </ul>
	2022	창업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 특화 창업보육사업 확대</li> <li>○창업관련 의사결정 여성참여</li> <li>○성인지통계 작성</li> <li>○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법인 창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li> </ul>	<p><b>【이행중】</b></p>
대구광역시	2021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p>&lt;단기 개선(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 가족휴게실 (수유실) 활용성 제고 및 탈의실 환경 개선 등</li> <li>○어린이, 어르신 등을 위해 안내표지판 크게, 바닥 등에 부착</li> </ul>	<p><b>【완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체육시설 노후 배수로 정비, 방풍막 설치</li> <li>○노후화된 야외운동기구 표찰개선</li> <li>○야외운동기구 민원접수처 마련</li> <li>○노후 그물망 교체</li> </ul>

지역명	평가연도	과제명	권고내용	개선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체격조건에 맞는 기구 구비</li> <li>○ 공공체육시설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필요</li> </ul> <p>&lt;장기 개선(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을 활용하여 성별,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li> <li>○ 여성 및 어르신 웨이트존 구비</li> <li>○ 워킹(걷기전용)풀 조성</li> <li>○ 수영장 경사로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어린이집 7개소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꿈나무 축구교실 운영(서구)</li> <li>○ 유소년 축구교실 안전쿠션 매트 설치(달성군)</li> <li>○ 체육시설 관리 근로자 휴게 공간 확보</li> <li>○ 어린이 및 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편성·운영(남구)</li> </ul>
	2022	대구시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예정】	
대전광역시	2022	시설설치사업의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부서 성인지적 시설설치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화장실, ② 주차장, ③ 수유실, ④ 시설 진입부, ⑤ 시설 내부시설, ⑥ 돌봄시설·놀이공간, ⑦ 도서관, ⑧ 의사결정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성인지 관점 시설 가이드 적용 권고</li> </ul> </li> <li>○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베이스볼 드림파크,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등 대전의 주요 시설사업 추진 및 설계계획을 점검하고, 성인지적 시설 배치(남녀 이용인원에 근거한 화장실 남녀변기수 설치 고려, 수유실설치, 아이놀이방 설치, 배려주차장 설치, 대중교통과의 연계 등), 안전성(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 비상벨 설치, 주차장 CCTV 설치)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 권고</li> </ul>	【이행중】
광주광역시	2022	광주광역시 문화시설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조성 시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편의시설 구비</li> <li>○ 돌봄시설 확대 및 실제 수요를 반영한 시설 개선</li> <li>○ 관람객의 신장, 시력, 보행능력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관람 지원 확대</li> <li>○ 이용자의 만족도 및 공간 조성 관련 의견 수렴 필요</li> </ul>	【이행중】

지역명	평가연도	과제명	권고내용	개선 이행사항
울산광역시	2022	울산시 청소년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참여기구는 성인지적관점에서 정책의 환경과 청소년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li> </ul>	<p>【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개선과제(8개) 도출</li> </ul>
경기도	2020	경기도 평화협력 사업 : 평화누리길 및 캠프 그리브스 사업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누리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성, 편의성 개선 및 콘텐츠 성인지성 개선</li> </ul> </li> <li>○ 울곡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화장실 성별 구분</li> <li>- 장애인화장실 자동문으로 개선</li> <li>- 전시문구 “여류 화가”의 “여류” 삭제</li> </ul> </li> <li>○ 화석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사무소와 매점 분리</li> <li>- 그늘이 있는 쉼터 설치</li> </ul> </li> <li>○ 반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구정 계단 옆 경사로 설치</li> </ul> </li> <li>○ 애기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애기봉’ 명칭 변경 고려</li> </ul> </li> <li>○ 재인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차별적 안내판 삭제</li> </ul> </li> <li>○ 평화누리길 도보해설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교육 추가</li> <li>- 성인지적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및 교육</li> <li>- 평화콘텐츠 발굴 및 평화교육</li> <li>- 강사의 성인지교육 및 성비 고려</li> </ul> </li> <li>○ 캠프 그리브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분리통계 산출</li> <li>- 강사 성인지교육</li> <li>- 성평등한 프로그램 운영</li> <li>- 프로그램의 성인지성 자문</li> <li>- 경사로 설치</li> </ul> </li> <li>○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 과정 젠더전문가 자문</li> <li>- 홍보물 제작자 성인지교육</li> <li>-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적 제작 가이드 참조</li> </ul> </li> </ul>	<p>【이행중】</p>

지역명	평가 연도	과제명	권고내용	개선 이행사항
	2021	경기도 다문화가족 정책 특정성별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7조(구성)</li> <li>-제20조(지원사업)</li> </ul> </li> <li>○행정보고 서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센터 추진실적 양식 개선(성별, 문화다양성 정보 포함)</li> </ul> </li> <li>○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 구성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센터 인력 현황 서식(성별, 문화다양성 정보 포함)</li> </ul> </li> <li>○시군센터 종사자, 활동전문가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li> <li>○다문화가족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li> <li>○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의 다양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문화배경의 이중언어 코치 양성</li> </ul> </li> <li>○남성결혼이민자 및 남성배우자 등 남성가족구성원 대상 사업 확대</li> <li>○생애주기에 따른 사업 확대</li> <li>○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성별통계 작성 및 분석</li> </ul>	【이행중】
	2022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특정성별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8조(사업 대상)</li> <li>-제12조(위원회 구성)</li> <li>-제23조(위원회 구성)</li> </ul> </li> <li>○사업계획서 양식 점검 및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 현황 관련 성별통계 추가</li> </ul> </li> <li>○상인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인회 회원 정보에 대표자 성별을 추가 하여 관리</li> </ul> </li> <li>○전통시장지원사업 관계자, 시장 매니저, 사업단 인력 대상 성평등 교육 진행</li> <li>○시장 상인 대상 성평등교육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관련 자료 배포</li> </ul> </li> <li>○세부사업 기획 및 추진 시 성별특성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프로그램 계획 시 대상의 성별, 연령별 특성 고려</li> </ul> </li> <li>○사업 홍보물 제작 시 성평등 관점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 및 사업단에 성평등 홍보물 가이드 라인 배포</li> </ul> </li> <li>○사업결과 보고 시 세부사업별 성별통계 생산</li> </ul>	【이행중】

요약

Ⅰ 개요

Ⅱ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Ⅲ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Ⅳ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지역명	평가 연도	과제명	권고내용	개선 이행사항
강원도	2022	강원도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휴양시설 관련 조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2 조항을 신설</li> <li>-강원도 산림휴양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할 것을 제안</li> </ul> </li> <li>○산림휴양시설 내부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약자 우선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li> <li>-화장실 안전과 관련된 지침 마련</li> </ul> </li> <li>○자연휴양시설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 과제로는 남녀 화장실의 기저귀교환대 설치, 계단코 미끄럼 방지재 마감 및 보수, 기존 경사로 보수 및 점검,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필요함.</li> <li>-장기과제로는 수유실 설치, 유아차, 휠체어 대여 및 보관함 설치, 화장실 안전벨 설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숙박 시설 설치가 필요함.</li> </ul> </li> </ul>	<p>【이행중】</p>
충청북도	2020	충북지역 소상공인 육성자금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서나 결과보고서 작성시 소상공인에 대한 성별분리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li> <li>○지침 별표 2의 '소상공인육성자금 평가표' 평가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세부 구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업력(사업장 운영기관), 신용 등급, 신청금액 기준의 구간 및 점수 조정</li> </ul> </li> <li>○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조례 제정 및 도 소상공인육성자금사업의 특례보증 지원 계획 수립</li> </ul>	<p>【이행중】</p> <p>○2022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정산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자료 작성, 제출하도록 공문 발송</p> <p>※ 이 외 이행중</p>
전라남도	2022	전남관광 콘텐츠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콘텐츠에도 과거와 현재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 성차별적 표현, (여성)폭력에 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과 같은 성차별적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관광콘텐츠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된 배경임</li> </ul>	<p>【완료】</p> <p>○성평등 관점의 관광콘텐츠 제작·보급 방안 제안</p> <p>* 관광지 11곳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관광콘텐츠 72건 대상 104건의 지적사항 확인 후 개선의견 제시</p>

지역명	평가연도	과제명	권고내용	개선 이행사항
				* 남도여행길잡이 블로그 5월, 8월 게시물 34건과 전남관광재단 홈페이지 1~8월 게시물 13건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관광콘텐츠 15건 대상 26건의 지적사항 확인 후 개선의견 제시 ○ 관광콘텐츠 성평등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제공을 통해 관광콘텐츠 자체 제작하는 경우 또는 외부 제작업체에 의뢰 시 체크리스트 사전 제공 및 자체 점검 권고
경상남도	2021	스마트 공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사업관리 및 교육의 효율체계적 운영을 위해 사업 주관 경남테크노파크의 전담 관리자 배정 및 고용안정성 제공 ○신규인력 및 재직자 성인지 교육 실시 필요 ○양성사업 중 교육수행기관에 여성강사가 없어 여성강사 확보 필요 ○전문인력 양성사업 홍보를 해당학과 학교내뿐 아니라 교외에도 다양한 홍보 경로 구축 ○비전공자의 경우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식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필요	【이행중】
	2022	2022년 문화전시 공공시설 특정성별영향평가	○문화예술회관 -「성별영향평가법」 제21조 준수 -성별 균형참여 확대(성별 분류통계, 도민의견환류체계) -성인지적 공간개선 -공간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도립미술관 -「성별영향평가법」 제21조 준수 -성별 균형참여 확대(성별 분류통계, 도민의견환류체계) -성인지적 공간개선 -공간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경남대표도서관 -「성별영향평가법」 제21조 준수 -성별 균형참여 확대(성별 분류통계, 도민의견환류체계)	【이행중】 ○문화예술회관 -여성위원 위촉 비율 43.8%로 위촉 완료되어 있으며 관람객 수는 공연예매시스템을 통해 성별통계 실시 중 -단기실시 가능사항인 배려 주차장 설치, 장애인 주차장 안내판 보수 등 이행 완료(4개), 조치중(4개) ○도립미술관 -법 준수 완료되어 있으며 관람객수는 여성응답자 83%로 성별통계 실시

요약

I 개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지역명	평가 연도	과제명	권고내용	개선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지적 공간개선</li> <li>-공간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li> <li>○도로과</li> <li>-경남문화예술회관 시설 진입로 보도블럭 및 도립미술관 시설 진입로 보도블럭 점검</li> <li>-경남대표도서관 버스 정류장-도서관 보행로 보차분리</li> <li>○교통정책과</li> <li>-경남대표도서관 버스 노선 조정</li> </ul>	※ 이 외 이행중
제주 특별 자치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와 홍보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별표 5 ] 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포함' 명시</li> <li>○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물 발행 등에 대한 조례」 제정시 홍보물의 성평등 관련성에 관한 사항 반영</li> </ul>	<b>【이행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4조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종사자 교육계획 수립·공고 시, 교육의 종류별 내용을 명시함에 따라 성인지감수성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추진</li> </ul>
	202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 자치법규 : 1,039건</li> <li>○ 개선필요 자치법규 : 389건</li> <li>○ 성인지적 개선 요구건수 : 495건</li> </ul>	<b>【이행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및 조정 : 464개 과제 개선권고</li> <li>○ 개선완료 자치법규 : 31건</li> </ul>
	2022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건수 : 13개</li> </ul>	<b>【이행중】</b>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정책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2022년에 '청년창업 인프라조성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참여자 선정 심사위원 및 평가위원단의 성별 구성 고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권고안이 이행중에 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2022년에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홍보물이 성별고정관념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특정성별영향평가 점검지표에 따라 자체 점검 및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권고 내용이 이행중에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2022년에 ‘미추홀구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청년창업 지역의 안전사항에 대해 점검할 것과 성별 요구도를 분석할 것, 그리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점검지표에 따라 자체 점검 및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권고내용이 이행중에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2021년에 ‘부평구 해설사와 함께하는 「걷다보니 부평(위킹역사투어)」’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참여자 범위 확대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권고내용이 이행중에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2022년에 ‘정서진 아라뱃길 청년창업 공간 운영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개선안으로 권고하였고, 현재 권고내용이 이행중에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2022년에 ‘창업한 청년 사업강화 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의사결정단위의 성평등한 참여, 성중립적 홍보물, 사후평가 및 환류 등을 개선안으로 권고하였고 해당 권고안은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3년간 ‘용인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2020), ‘용인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특정성별영향평가’(2021), ‘문화도시 조성 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2022)를 실시하였으며, 권고된 개선안이 모두 이행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기초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기초지자체명	연도	과제명	권고내용	개선 이행사항
인천시 연수구	2022	청년창업 인프라조성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선정 심사위원 및 평가 위원단 구성 시 성별 구성을 고려한다는 규정 필요</li> <li>○ 사업 추진 계획 시 여성친화사전 점검표 활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검토되지 않음</li> </ul>	<p>【이행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사업계획 수립 시 여성친화 사전컨설팅 완료</li> </ul> <p>※ 이 외 이행중</p>

기초 지자체명	연도	과제명	권고내용	개선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결과 보고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나 참여자 성별통계를 생성하지 않음</li> </ul>	
인천시 남동구	2022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물의 경우 캐릭터가 성중립적이어야 하며, 추후 제작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별 고정관념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li> <li>○ 연구과제에 제안된 창업정책 특정 성별영향평가 점검지표에 따라 자체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함</li> </ul>	<p>【이행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위원 구성 성비 균형, 사업수혜자의 성별 균형, 교육 프로그램 성별균형, 공간·시설 및 안전 관련 성인지 관점 반영 실시하고 있음</li> <li>○ 홍보물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자 노력 예정이며, 만족도 조사 시 성별분리 실시 예정</li> </ul>
인천시 미추홀구	2022	미추홀구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종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재조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정책 수혜자의 성별 요구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li> <li>○ 연구과제에 제안된 창업정책 특정 성별영향평가 점검지표에 따라 자체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함</li> </ul>	<p>【이행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창업인을 위한 별도의 배려공간 마련은 어렵지만, 안전을 위하여 고보조명 등 설치했으며, 간담회 추진을 통해 지원자의 정책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 시 성별 분석 예정</li> </ul>
인천시 부평구	2021	부평구 해설사와 함께하는 「걷다보니 부평 (워킹역사투어)」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범위 확대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li> </ul>	<p>【이행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킹투어 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투어코스별 미비점 및 개선점 반영(투어코스 및 시간 유동적 조정 등)</li> <li>○ 정기회의 실시(6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커뮤니케이션, 성인지교육, 해설기법 특강 실시</li> <li>- 해설시나리오에 대한 해설사 간 내용 공유를 통해 상호검토 및 수정실시</li> </ul> </li> <li>○ 문화관광해설사 평가전문기관(경인교대교육원)교수 섭외 통한 블라인드평가 실시(총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진행 시 성고착화용어 및 성차별적 발언 유무 등 해설역량 점검실시</li> </ul> </li> </ul> <p>※ 이 외 이행중</p>

기초 지자체명	연도	과제명	권고내용	개선 이행사항
인천시 서구	2022	정서진 아라뱃길 청년창업 공간 운영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 및 보안장치가 운영되고 있지만 외진 곳에 위치, 불특정다수 관광객의 방문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li> </ul>	<p><b>【이행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지사에서 안전관리(cctv 등 설치) 운영 중이며, 별도로 창업공간의 안전을 위한 창업 공간 주출입구에 보안장치부착(출퇴근 확인겸용)하여 운영 주기적인 점검 ※ 이 외 이행중</li> </ul>
인천시 강화군	2022	창업한 청년 사업강화 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결정단위의 성평등한 참여</li> <li>○ 성중립적 홍보물</li> <li>○ 사후평가 및 환류</li> </ul>	<p><b>【완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창업 진흥을 위한 우대조치</li> <li>○ 사업대상의 성비 균형</li> </ul>
경기도 용인시	2020	용인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협의체 여성 대표성, 소수자 대표성 제고 및 성인지 교육 실시</li> <li>○ 여성친화도시 사업 연계</li> <li>○ 김량장동(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량장 여성 상인 이야기 발굴 및 아카이빙</li> <li>- 다양한 집단이 포함된 시장 브랜딩 기획단(여성, 청년, 청소년 등)</li> <li>- 상생협약 파트너 교육 (대형마트, 근로 기준, 청년 상인을 위한 세무 행정 등)</li> <li>- 여성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li> <li>- 보행환경 개선(여성친화 모니터링)</li> <li>- 다양한 이용자 기반 디자인(외국인, 고령자 등)</li> <li>- 여성/노인 소액 일자리 개발</li> <li>- 시장 내 여성 친화 공간 조성</li> </ul> </li> <li>○ 신갈오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독서 동아리 운영(돌봄센터)</li> <li>- 다문화 여성 및 고령 여성 공유 반찬, 도시락 등 영리사업 운영, 협동조합 및 유튜브 운영</li> <li>- 지역청년 팝업 스토어 운영</li> </ul> </li> </ul>	<p><b>【완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친화도시 연계 및 여성친화적 공간 운영을 위한 행정 협의</li> <li>-여성 안심 택배 설치</li> <li>-다문화 사랑방 설치</li> <li>-모니터링 실시</li> <li>○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협동 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 워크숍실시 (2020.11.)</li> <li>○ 조례 개정을 통한 관련 위원회 내 성별 비율 구성 명시</li> <li>○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행정 협업 TF회의 운영 정례화</li> <li>○ 성별통계 생산 관리 시작 (성별 대표성 제고 노력)</li> <li>○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수정</li> </ul>
	2021	용인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특정성별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한 조례 규칙 규정의 개선(위원회 성비 명시 및 난임 휴가 및 보건 휴가에서의 성별 형평)</li> </ul>	<p><b>【완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대응 매뉴얼 개정</li> <li>○ 난임 휴가 및 보건 휴가의 근로</li> </ul>

요약

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기초 지자체명	연도	과제명	권고내용	개선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위원회)</li> <li>- 용인시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li> <li>- 용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li> <li>○ 조직문화 개선 방안</li> <li>- 산하기관 포함 성평등 협의회를 통한 조직 문화 개선</li> <li>- 부서 단위 성역할 고정관념 깨기 캠페인/실천약속</li> <li>○ 민원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보호</li> <li>- 민원 응대 매뉴얼 개선</li> <li>○ 인사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li> <li>- 성과 중심의 승진</li> <li>- 출산육아휴직에서의 차별 경감</li> <li>○ 성희롱 성폭력 대응 체계 실효성 제고</li> <li>- 외부 전문기관 연계 MOU</li> <li>- 외부화(인권담당관)</li> <li>- 성평등 옴부즈만 설치</li> <li>- 성평등 대응 매뉴얼 활용도 제고</li> <li>○ 성평등 조직 문화 조성 워크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에 따른 차별 제거 및 남성 근로자 활용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li> <li>○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실태조사 실시</li> <li>○ 민원응대 매뉴얼 개선(직원보호 조례 제정)</li> <li>○ 부부공무원 승진 가점 형평성 확보</li> <li>○ 관련 부서 TF 회의 운영을 통한 개선안 지속 발굴</li> <li>○ 용인시 성폭력 성희롱 예방 규정 개정</li> <li>○ 직장 내 성인지 교육 강화(2022 BSC 포함)</li> <li>○ 외부 전문기관 MOU체결</li> <li>○ 고충 전문관 채용</li> </ul>
	2022	문화도시 조성 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의 성별 대표성 확보</li> <li>○ 시민 의견 수렴의 성별 대표성 확보</li> <li>- 포럼 성별 특성 반영한 세션 구성</li> <li>- 성인지 관점을 가진 모니터링 활용</li> <li>○ 프로그램 참여 시 자녀 돌봄 서비스 확대</li> <li>○ 기록사업 여성 일상사, 문화사 포함</li> <li>○ 여성 역사문화 공간 조성</li> <li>- 여성인물 발굴, 일상사, 여성 주제의 전시 교육, 여성 탐방로 조성 등</li> <li>○ 다양한 인구집단 접근성 증진을 위한 야간 주말,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li> <li>○ 성별통계 생산 관리</li> <li>○ 성인지 문화사업 체크리스트 적용</li> </ul>	<p><b>【완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 문화사업 체크리스트 적용</li> <li>○ 성인지적 사업 운영 적용을 위한 TF 운영</li> </ul>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21년에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권고내용인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 마련’에 대한 개선권고안이 이행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학생생활규정(중학교)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2020), ‘학생생활규정(고등학교)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2021)를 시행하여 성차별적 규정이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규정에 대한 점검을 권고하였으며, 해당 권고내용은 모두 이행되었다. 2022년에는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인식 및 실태 조사’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표본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장애요인을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관내 전체교 대상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제언 결과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을 요청함으로써 권고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은 2022년에 각각 ‘교가·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 ‘공공도서관 운영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권고내용이 이행중에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2년에 ‘학생생활규정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체 점검목록을 통한 자율적 제·개정을 유도함으로써 권고사항을 이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년에 ‘제주지역 초·중·고 교가 및 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실시하여 양성평등 친화적 교가·교훈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해당 권고내용이 이행중에 있다.

〈표 III-29〉 시·도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과제 이행현황

시도 교육청명	연도	과제명	권고내용	개선 이행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 마련	【완료】  ○ 2022년 신규사업 신청하여 예산 배정(18,056천원)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0	학생생활규정 (중학교)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 성차별적 규정 및 성별 고정관념 강화 규정 점검 후 42개교에 수정 권고	【완료】  ○ 42개교 수정 완료
	2021	학생생활규정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 성차별적 규정 및 성별 고정관념 강화 규정 점검 후 30개교에 수정 권고	【완료】  ○ 27개교 수정완료
	2022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	○ 표본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장애요인 분석 및 정책제안	【완료】  ○ 관내 전체교 대상 양성평등 조직 문화 진단 및 컨설팅 시행 ○ 제언 결과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정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요청
경상북도 교육청	2022	교가·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	○ 일부 개선 권고	【이행중】
경상남도 교육청	2022	공공도서관 운영 특정성별영향평가	【권고 또는 의견표명 예정】	-
전라남도 교육청	2022	학생생활규정 특정성별영향평가	○ 중·고 411교 전수조사로 실시 하여 자체점검목록, 삭제·수정 권고안, 우수사례 제시	【완료】  ○ 자체점검목록을 통한 자율적 제·개정 유도(목록리스트 제출)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2022	제주지역 초·중·고 교가 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	○ 제주지역 초·중·고 교가 및 교훈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친화적 교가 교훈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이행중】  ○ 2023년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학교 교가·교훈 성차별 요소 기준 마련 및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IV

##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 
1. 2022년 성별영향평가 운영 성과
  2.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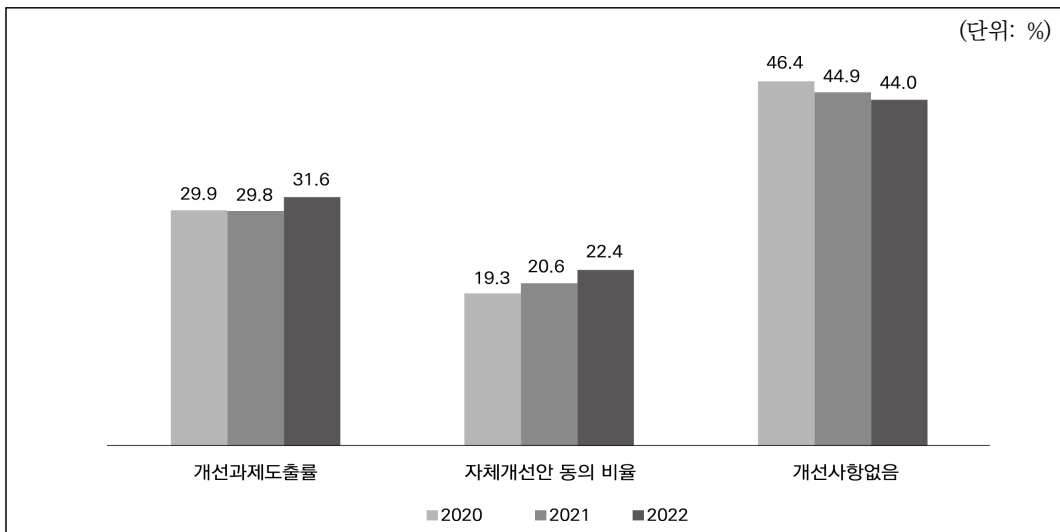




# 1 2022년 성별영향평가 운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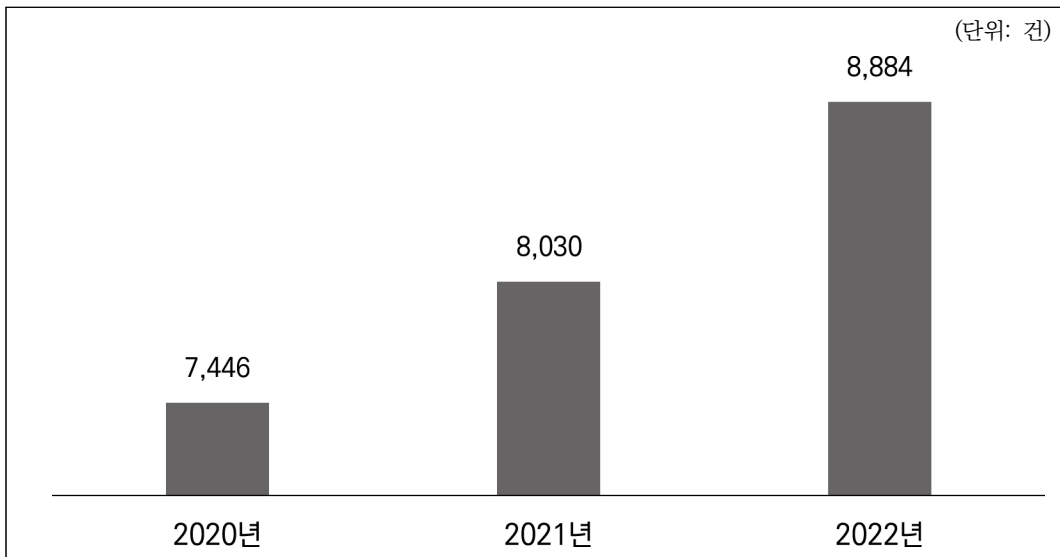
## 가.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2022년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은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있어 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도출률이 2021년 29.8%에서 2022년 31.6%로 1.8%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리고 대상과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자체개선안에 대한 동의율도 높아졌다.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자체개선안의 내용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컨설팅을 통해 자체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어 담당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성별영향평가 원래의 취지가 정책 담당자가 양성평등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 운영의 중요한 성과이다.



[그림 IV-1] 개선과제 도출률, 자체개선안 동의 및 개선사항없음 비율(2020-2022)

또한 성별영향평가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 과제 선정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였다. 대상과제 선정에 대한 컨설팅이 중요한 이유는 성별영향평가 취지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개선안의 이행률을 제고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과제선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실적을 살펴 보면, 2020년 7,446건, 2021년 8,030건, 2022년 8,884건이었다. 그 결과, 적절한 법령·계획·사업을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함으로써 ‘개선사항없음’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2022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없음’이 전체 대상과제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0%로, 2021년 44.9%, 2020년 46.4%에 비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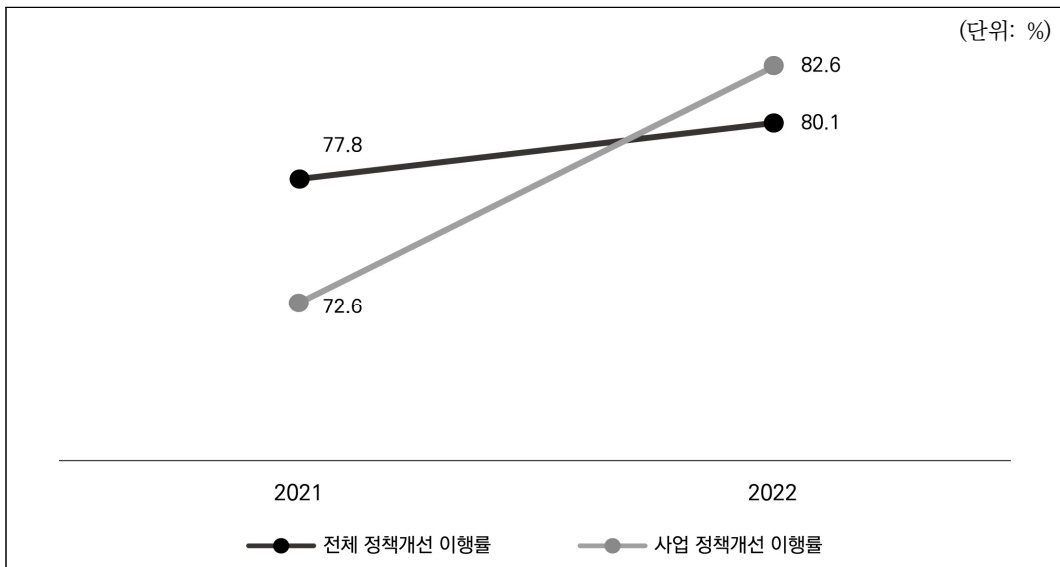
[그림 IV-2]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컨설팅 지원 실적(2020-2022)

## 나.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이행률 제고

2022년 이행점검 대상은 법령 성별영향평가(2012년~2022년 미이행 과제), 계획·사업 성별영향평가(2021~2022년 미이행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2013~2021년 미이행 과제)였다. 점검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이행률이 2021년에 비해 높아졌고, 정책 개선이행률이 100.0%인 기관도 늘어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이행률 제고가 중요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이 갖는 파급 효과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이 지방자치단체 정책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중앙행정

기관의 정책 개선이행률은 각각 80.1%로, 2021년 77.8%에 비해 2.3%포인트 증가하였다. 특히 사업에 대한 개선이행률은 2021년 72.6%이던 것이 2022년 82.6%로 10.0%포인트 증가하였다. 2022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이행률이 100.0%인 기관은 각각 13개, 23개로, 2021년에 비해 법령 개선 이행률이 100.0%인 기관의 수는 동일하고, 사업 개선 이행률 100.0%인 기관이 4개 증가하였다.

개선이행률이 증가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의 성과가 특정 기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IV-3]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이행률(2021~2022)

#### 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상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별영향평가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여 개선한 정책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 요소들을 찾아내고 정책이 양성평등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남녀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에 이루어진 법령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성과를 살펴보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한 법령을 개선하거나 정책 수혜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하는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를 노무제공자 5개 직종(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정책 수혜에서 소외되었던 직종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고용형태의 변화라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동법을 개정하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유산·사산 휴가 종료일까지 유산·사산 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용상의 지위가 불안정한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였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화재 예방과 관련해 소방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통계 마련과 피난계획 수립 시 성별 현황을 파악하여 성별 특성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가사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가계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가사·육아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한 집단을 고려하여 법령을 개선함으로써 정책의 수혜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업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사업에서 경제적 이유로 보험가입을 가구주만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족할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혜의 대상의 폭을 넓혔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수혜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평한 정책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안전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 이행이 이루어졌다. 2022년에 추진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다수의 법령, 사업들이 정책 추진에서 성별 특성뿐만 아니라 연령, 장애, 임신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거나, 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2022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통해서 제시한 공통주제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2022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청년지원 사업, 안전 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가 공통주제를 선정한 과제는 563개(공통주제1 61개, 공통주제2 502개)로, 전체 대상 사업과제수 1,211개의 46.5%였고, 기초자치단체는 2,486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전체 대상 사업 과제수 5,815개의 42.8%였다. 교육청은 전체 대상 사업과제 수 214개 중 34.1%가 공통주제 대상 과제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공통주제로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의 약 34%~46% 정도 추진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V-1〉 2022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공통주제 대상 과제 수 (단위: 개(%))

	대상과제수 <sup>a)</sup>	공통주제1	공통주제2			
		공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청년지원 사업	안전 사업
지방자치단체 전체	7,026	509 (7.2)	1,022 (14.5)	183 (2.6)	551 (7.8)	784 (11.2)
광역자치단체	1,211	61 (5.0)	212 (17.5)	41 (3.4)	109 (9.0)	140 (11.6)
기초자치단체	5,815	448 (7.7)	810 (13.9)	142 (2.4)	442 (7.6)	644 (11.1)
시·도 교육청	214	28 (13.1)	45 (21.0)	-	-	-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서 관리번호로 등록된 사업성별영향평가 과제(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해당하는 대상과제 수

## 라. 특정성별영향평가 확대

2022년에도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양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전문연구자로 하여금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개선권고하고 그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2022년도에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기관과 과제 수가 증가하였다.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기관 수를 살펴보면, 중앙은 9개 과제, 지방자치단체는 23개의 과제를 수행하여 2021년에 비해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수가 증가하였다. 중앙에서 추진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2021년 8개, 2022년 9개로 1개 과제가 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11개, 2021년 15개, 2022년 23개 과제가 수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12개, 기초자치단체 6개, 시·도교육청 5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2022년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수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특정성별영향평가 수행 시 가점을 부여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한 광역자치단체 중 5개 기관(서울, 대구, 인천, 경기, 제주)은 2020년부터 매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용인시가 2020년~2022년 동안 매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교육청도 마찬가지다.

〈표 IV-2〉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및 추진기관 현황(2020~2022)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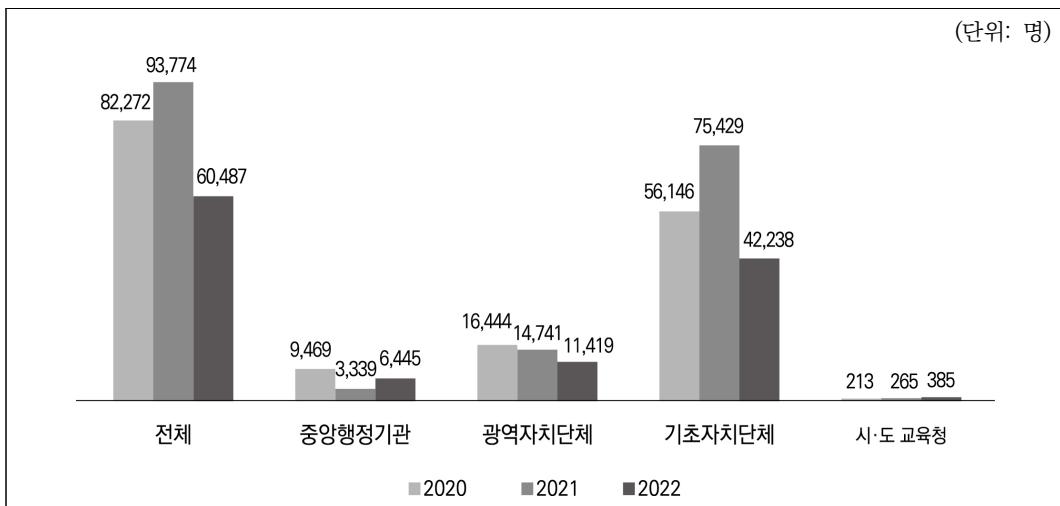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과제 수	기관명	과제 수	기관명	과제 수	기관명
광역	8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1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제주	1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남
기초	2	(경기) 수원시, 용인시	3	(인천) 부평구, (경기) 수원시, 용인시	6	(인천) 연수구,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 강화군 (경기) 용인시
교육청	1	인천광역시교육청	2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5	인천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2 개선과제

### □ 성별영향평가 자체교육 참여 확대

2022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에서 교육 참가 인원이 2021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교육 참가 인원이 2021년에 비해 31,794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자체교육 참여자수가 2021년 93,774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 60,487명으로 33,287명이 줄어든 것에서 기인한다. 내실있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체교육은 기관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자체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2022년 성별영향평가 교육에서 실무담당자의 교육 참여율이 2021년에 비해 119명이 감소하였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2021년에 비해 5명 증가하였다.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담당자의 교육 이수율을 제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IV-4] 성별영향평가 자체교육 참여 실적(2020~2022)

〈표 IV-3〉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 실적(2020~2022)

(단위: 명)

연도	직급별 교육 참가 인원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실무담당
	합계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기타)		
2022	66,679	6,100	60,579	136	376
2021	98,473	66,483	91,990	131	495
2020	87,001	6,121	80,880	131	351

### □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확대

2022년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기관의 비율은 광역은 100.0%, 기초자치단체는 98.7%, 교육청은 94.1%이다. 기초자치단체는 2022년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기관은 없다. 반면 교육청은 1개 기관이 설치 근거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총 17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기관이 모두 구성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는 226개 기관 중 194개 기관이 구성하였고, 교육청은 17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2022년에 각각 3개 기관, 2개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기관 수에 비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 수는 적다. 내실있는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기관들은 위원회 구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부 록

- 
1. 주요 용어 설명
  2. 「성별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3. 2022년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작성 서식
  4. 2022년 부처별 성평등목표
  5.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6. 2022년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적
  7. 2022년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8. 2022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제도 발전 포럼 실적
  9. 2022년 정책개선 사례 찾아보기



## 부록 1

## 주요 용어 설명

용어	의미
과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크리스트 또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단계]</li> <li>• 성별영향평가 대상인 '법령의 제·개정안, 3년 이상 주기의 법정 계획, 중앙 및 지방의 주요 사업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해 제작하는 홍보물' 중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관리번호로 등록된 모든 과제 수</li> <li>•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관리번호로 등록되었으나 체크리스트만 작성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종료하는 과제도 포함</li> </ul>
추진과제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작적으로 산출한 변수]</li> <li>• 대상과제 수(법령, 계획, 사업 과제의 합)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법령이나 정책의 추진이 중단된 과제) 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li> </ul>
개선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의견통보 단계]</li> <li>• 검토의견 통보 단계에서 나타나는 검토의견 세 가지 유형 중의 하나</li> <li>• 법령·계획·사업·홍보물 성별영향평가서를 지표별로 충실하게 작성하였으나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에 대해 동의, 정책개선 불필요</li> </ul>
자체개선안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의견통보 단계]</li> <li>• 검토의견 통보 단계에서 나타나는 검토의견 세 가지 유형 중의 하나</li> <li>•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정책개선안이 충실하게 제시되어 원안에 동의, 이후 제시된 정책개선안 대로 자체적으로 정책개선 추진이 필요할 과제</li> </ul>
개선의견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의견 통보 단계]</li> <li>• 검토의견 통보 단계에서 나타나는 검토의견 세 가지 유형 중의 하나</li> <li>•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검토의견 통보 시, 여성가족부(중앙)나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정책개선 의견을 추가로 제시한 과제</li> </ul>
개선사항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의견 통보 단계]</li> <li>• 정부홍보물의 검토의견 통보 단계에서 나타나는 검토의견 두 가지 유형 중의 하나</li> <li>• 검토의견 통보 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담당자가 정책개선 의견을 추가로 제시한 과제</li> </ul>
개선의견 수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결과제출 단계]</li> <li>• 검토의견으로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기관은 '개선의견'에 대해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반영 여부를 여성가족부(중앙) 또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홍보물은 각 기관의 실무담당자에게 '수용' 여부만 제출</li> </ul> </li> <li>•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반영계획서 제출 시 '수용', '일부수용'을 통보한 과제를 수용률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식 : 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 / 개선의견 과제 수 × 100</li> </ul> </li> </ul>

용 어	의 미
개선계획 수립과제	-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작적으로 산출한 변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여성가족부(중앙) 또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의 개선의견을 수용(또는 일부수용)한 과제
개선계획 산출률	-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작적으로 산출한 변수] • 개선계획 산출률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중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의 비율 * 산식 :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 중 의견이 (일부)수용된 과제의 합 / (법령, 계획, 사업 추진과제의 합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 100
개선 이행률	-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작적으로 산출한 변수] • 개선 이행률은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 중에서 개선 완료한 과제의 비율 * 산식 : 개선과제/개선계획 수립과제 × 100
기타	- [성별영향평가 전 과정] 지침에서 법령·계획·사업 대상과제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체크리스트만 작성·제출하고 성별영향평가 종료 - 또는 관련 법령이 서로 통합되거나 행정조직개편, 업무조정, 예산조정 등에 따라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물 대상과제 자체가 중단되어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없었던 과제

## 부록 2 「성별영향평가법」(2018. 3. 27., 일부개정) 및 시행령(2021. 12. 16., 타법개정)

법 률	시 행 령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li> <li>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li> <li>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li> </ol> <p><b>제3조(국가 등의 책무)</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3. 27.〉</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p>

법 률	시 행 령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 2. 3., 2018. 3. 27.&gt;</p> <p><b>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b>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lt;개정 2018. 3. 27.&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b> &lt;개정 2018. 3. 27.&gt;</p> <p><b>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lt;개정 2018. 3. 27.&gt;</p> <p>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3. 27.]</p>	<p><b>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lt;개정 2017. 9. 19., 2018. 8. 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li> <li>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li> <li>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li> <li>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li> </ol>

법 률	시 행 령
<p><b>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b>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li> <li>2. 성별 수혜분석</li> <li>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li> <li>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제목개정 2018. 3. 27.]</p> <p><b>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b>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p>	<p>사업</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lt;개정 2018. 8. 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li> <li>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li> <li>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li> <li>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제목개정 2018. 8. 14.]</p> <p><b>제3조(성별영향평가 지침의 통보)</b>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의 방법 등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8. 14.&gt;</p> <p>[제목개정 2018. 8. 14.]</p> <p><b>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b>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p>

요약

개요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법 률	시 행 령
<p>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7.&gt; [제목개정 2018. 3. 27.]</p>	<p>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7. 9. 19., 2018. 8. 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li> <li>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li> <li>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li> <li>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 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li> </ol> <p>[제목개정 2018. 8. 14.]</p>
<p><b>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7.&gt;</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lt;신설 2016. 12. 20., 2018. 3. 27.&gt;</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p>	<p><b>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b>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8. 8. 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li> <li>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li> <li>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li> </ol> <p>[제목개정 2018. 8. 14.]</p>



법 률	시 행 령
<p>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lt;개정 2016. 12. 20., 2018. 3. 27.&gt; [제목개정 2018. 3. 27.]</p>	
<p><b>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b> ①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7.&gt;</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 2. 3., 2018. 3. 27.&gt; [제목개정 2018. 3. 27.]</p>	<p><b>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b>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및 그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 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8. 14.&gt; [제목개정 2018. 8. 14.]</p>
<p><b>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b>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4. 3. 24., 2018. 3.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행 중인 법률</li> <li>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li> <li>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li> </ol>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 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p>	<p><b>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b> 여성 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 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2015. 8. 3., 2018. 8. 14.&gt; [제목개정 2018. 8. 14.]</p>

요 약

개 요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법 률	시 행 령
<p>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2018. 3. 27.&gt;</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lt;신설 2015. 2. 3., 2018. 3. 27.&gt;</p> <p>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5. 2. 3., 2017. 3. 21., 2018. 3. 27.&gt;</p> <p>[제목개정 2018. 3. 27.]</p> <p><b>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b></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8. 3.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행 중인 조례·규칙</li> <li>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li> <li>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li> <li>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li> </ol>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7.&gt;</p> <p>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p>	

법 률	시 행 령
<p>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lt;개정 2018. 3. 27.&gt;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18. 3. 27.]</p>	
<p><b>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b>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0., 2017. 3. 21., 2018. 3. 27.&gt;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12. 20., 2017. 3. 21.&gt;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7. 3. 21.&g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6. 12. 20., 2017. 3. 21.&gt;                      [제목개정 2016. 12. 20., 2017. 3. 21.]</p>	<p><b>제8조(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b>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 법령·정책·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li> <li>2.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내용</li> <li>3.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li> </ol>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한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사항의 난이도, 법령 제·개정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9. 19.]</p>

요약

개요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법 률	시 행 령
<p><b>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b></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8. 3. 27.〉</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p>	<p><b>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b>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8.〉</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18.〉</p> <p>[제목개정 2014. 9. 18.]</p>
<p><b>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b> 〈개정 2018. 3. 27.〉</p>	
<p><b>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b>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2. 3., 2018. 3. 27.〉</p> <p>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li> <li>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li> <li>3의2.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li> <li>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li> </ol>	<p><b>제10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b> ①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8. 3., 2018. 8. 14.〉</p> <p>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3., 2017. 7. 26., 2017. 9. 19., 2018. 8.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li> <li>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8명 이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li> </ol> <p>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p>

법 률	시 행 령
<p>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개정 2015. 2. 3.〉 [제목개정 2015. 2. 3., 2018. 3. 27.]</p>	<p>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p> <p>[제목개정 2015. 8. 3., 2018. 8. 14.]</p>
<p><b>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b>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p> <p>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8. 3. 27.]</p>	<p><b>제11조(중앙위원회의 운영)</b>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8. 3.〉</p> <p>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8. 3.〉</p> <p>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8. 3.〉</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8. 3.〉</p> <p>[제목개정 2015. 8. 3.]</p>
<p><b>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7.〉</p> <p>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2. 3.,</p>	<p><b>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5급</p>

요 약

I 개 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법 률	시 행 령
<p>2017. 3. 21., 2018.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li> <li>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li> <li>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li> <li>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li> <li>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li> <li>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5. 2. 3., 2016. 12. 20., 2018. 3. 27.&gt;          [제목개정 2016. 12. 20., 2018. 3. 27.]</p>	<p>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8. 14.&gt;</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말한다)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8. 14.&gt;</p>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또는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8. 14.&gt;</p> <p>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8. 8. 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li> <li>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지원</li> <li>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 반영 지원</li> <li>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지원</li> <li>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 지원</li> <li>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li> </ol> <p>[전문개정 2017. 9. 19.]          [제목개정 2018. 8. 14.]</p>

법 률	시 행 령
<p><b>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7.&gt;</p> <p>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5. 2. 3., 2018. 3. 27.&gt; [제목개정 2018. 3. 27.]</p>	<p><b>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 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8. 14.&gt;</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 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 8. 3., 2018. 8. 14.&gt;</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5. 8. 3.&gt; [제목개정 2018. 8. 14.]</p>
<p><b>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b>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lt;개정 2018. 3. 27.&gt;</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3. 27.]</p>	
<p><b>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b>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6. 12. 20., 2018. 3. 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공립 연구기관</li> <li>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li> </ol>	<p><b>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b> ① 삭제 &lt;2017. 9. 19.&gt;</p> <p>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lt;개정 2018. 8. 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상담·자문</li> <li>2. 대상 정책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li> <li>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li> </ol>

요 약

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IV

부 록

법 률	시 행 령
<p>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p> <p>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출연 연구원</p> <p>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p> <p>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3. 27.]</p>	<p>업무</p> <p>③ 삭제 &lt;2014. 9. 18.&gt;</p> <p>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4. 9. 18., 2018. 8. 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 경력</li> <li>2.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 수준</li> <li>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li> <li>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 9. 18.&gt;</li> </ol> <p>[제목개정 2018. 8. 14.]</p>
<p><b>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b>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 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7.&gt;</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 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lt;개정 2018. 3. 27.&gt;</p> <p>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3. 27.]</p>	



**부록 3 2022년 법령·계획·사업·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작성 서식**

가. 법령 성별영향평가 작성 서식(체크리스트, 성별영향평가서)  
**(기관명)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구 분	제정( )		개정( )		
형 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				
소관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 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화번호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	( 일간)
	입법예고			~	( 일간)
	법제처 심사*			~	( 일간)
붙임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제·개정 법령안 전체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구 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 법령	<input type="checkbox"/>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기록물, 물품, 수당, 보수,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성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조항, 효력 발생 기간 및 기한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일몰조항 관련 기준년도의 변경, 삭제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법제처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 일정 기재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년 월 일

<p>■ 제·개정 목적</p> <p>○ 해당 법령의 제·개정 목적을 간략하게 기술</p> <p>■ 제·개정 주요 내용</p> <p>○ 해당 법령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기술</p>							
성별영향 평가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조항 유무	점검결과				
①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				
	1-2.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근로, 생계, 출산, 부양 등과 관련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제·개정안</td> <td style="width: 50%;">수정안</td> </tr> <tr> <td> </td> <td> </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제·개정안	수정안		
	제·개정안	수정안					
1-3.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제·개정안</td> <td style="width: 50%;">수정안</td> </tr> <tr> <td> </td> <td> </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제·개정안	수정안			
제·개정안	수정안						
성별영향 평가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조항 유무	점검결과				
② 성별특성	2.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 하고, 수정안 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제·개정안</td> <td style="width: 50%;">수정안</td> </tr> <tr> <td> </td> <td> </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제·개정안	수정안		
제·개정안	수정안						

<p>③ 성별 균형 참여</p>	<p>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50%;">제·개정안</th> <th style="width: 50%;">수정안</th>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 style="height: 20px;"></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제·개정안	수정안		
	제·개정안	수정안					
<p>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50%;">제·개정안</th> <th style="width: 50%;">수정안</th>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 style="height: 20px;"></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제·개정안	수정안			
제·개정안	수정안						
<p>④ 성별통계</p>	<p>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p>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또는 이유 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50%;">제·개정안</th> <th style="width: 50%;">수정안</th>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 style="height: 20px;"></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제·개정안	수정안		
	제·개정안	수정안					
<p>제출일 :    년    월    일</p>							

공  
공

개  
요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나. 계획 성별영향평가 작성 서식(체크리스트, 성별영향평가서)

(기관명)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계획)

계획명					
구분	신규 수립( )		재수립( )차 ( 년 ~ 년)		
근거 법령					
소관 부서	주관부서	기관명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관계부서	기관명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기관명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기관명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계획 수립 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의	~ ( 일간)			
	계획안 마련	~ ( 일간)			
	위원회 상정 및 의결	~ ( 일간)			
붙임 자료	계획(안) 및 요약본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 계획	<input type="checkbox"/>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 - 예)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년 월 일

## (기관명) 성별영향평가서(계획)

### 계 획 명

### I. 개 요

#### 1. 비전과 목표

- 해당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기술

#### 2. 전략 및 중점과제

- 해당 계획의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기술

### II.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계획 수립 시 비전과 목표가 ①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② 성별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점검한 다음 '비전과 목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수립계획에 반영

성별영향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 해당 계획은 인적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 시설설치·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 기타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Ⅲ.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 계획에 포함된 전략 및 중점과제들 중에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 및 중점과제가 있으며, 따라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해당 계획이 의도적으로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님)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1) 현 황 : 통계명 기입

※ '22년 통계 미산출 시, '20~'21년으로 작성 가능(최근 2개년 통계 작성)

※ 해당 계획과 관련한 통계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

	2021년		2022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명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명(%)

\* 통계출처 : 1. 사업대상자(A) :

2. 사업수혜자(B) :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 (2)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

-

※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대상자와 비교 시 형평성이 있는지, 수혜발생(재원 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분석

1)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2)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3) 개선완료 사항

○

-

※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 차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 반영 또는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한 내용 등을 기재

#### IV.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이 없다고 분석하였거나, 이미 성별 특성을 반영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며, 추후 개선 계획인 경우만 작성

(과제명)

○ 주요 개선 내용

※ II. 비전과 목표, III. 전략 및 중점과제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계획의 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한 신규 과제 추가, 수정 등 개선계획 기재

(과제명)

○ 주요 개선 내용

(과제명)

○ 주요 개선 내용

년 월 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 / 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이메일			



다. 사업 성별영향평가 작성 서식(체크리스트, 성별영향평가서)

(기관명) 성별영향평가서(사업)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비예산사업																																	
	<input type="checkbox"/> 단위사업 *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단위사업인 경우 단위사업명만 작성																																	
	<input type="checkbox"/> 세부사업 *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세부사업인 경우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모두 작성																																	
	<input type="checkbox"/> 내역사업 *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내역사업인 경우 단위, 세부, 내역사업명 모두 작성 * 내역사업으로 대상 선정은 중앙행정기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세부사업만 선택 가능)																																	
구분1	신규사업 ( )                      계속사업 ( )																																	
구분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신규 과제 ( )                      기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과제 ( ) * 2012년 이후 1회라도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기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과제'에 해당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여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신규작성</th> <th colspan="10" style="text-align: center;">재작성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연도에 체크)</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13</td>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 style="text-align: center;">'17</td> <td style="text-align: center;">'18</td> <td style="text-align: center;">'19</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1</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신규작성	재작성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연도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규작성	재작성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연도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사무 구분 * 지방자치 단체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국가위임사무 <input type="checkbox"/> 시·도 고유사무 <input type="checkbox"/> 시·도 위임사무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고유사무																																	
정책 분야	<input type="checkbox"/> 공공질서 및 안전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교통 및 물류 <input type="checkbox"/> 농림 <input type="checkbox"/> 문화체육관광 <input type="checkbox"/> 보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산업·통상·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일반공공행정 <input type="checkbox"/> 지역개발 <input type="checkbox"/> 통일·외교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 <input type="checkbox"/> 환경 * 중복선택 불가. 선택분야에 따라 GIA시스템 상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시 맞춤형 점검포인트 제시																																	
공통주제 * 지방자치 단체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신규) '22년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공약)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사업 * 신규사업이면서 공약사업인 경우 두 가지 모두 선택 가능(해당 없는 경우 공란 처리)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관련 사업 <input type="checkbox"/>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input type="checkbox"/> 청년지원 사업 <input type="checkbox"/> 안전 사업 * 중복선택 불가(해당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성인지 예산 작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작성 <input type="checkbox"/> 미작성 * 전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여부를 체크																																	
추진근거	*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등 기재																																	

요  
요

I  
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 I.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 2. 주요 사업 내용

-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등 기재

###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21년(A)	2022년(B)	증감(B-A)
	<input type="checkbox"/> 회계* (국비 __%, 지방비 __%)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 4.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 현황

※ 해당 사업이 전년도 성인지 예산('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일 경우 예산서 상 성과지표 기입

성과지표	산출식	'20년		'21년		'21년 목표치
		목표	실적	목표	실적	

## II.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 1.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사회문화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경제적 차이	◇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신체적 차이	◇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거나,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수립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을 선택한 경우 내용 기술 ○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 '22년 통계 미산출 시, '20~'21년으로 작성 가능(최근 2개년 통계 작성)

### (1) 사업 대상 :

구분	2021년				2022년			
	사업 대상자 (A)	사업 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사업 대상자 (A)	사업 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예산
전체	명	명	%	백만원	명	명	%	백만원
여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남성 (비율)	명(%)	명(%)	%	백만원 (%)	명(%)	명(%)	%	백만원 (%)

\* 통계출처 : 1. 사업대상자(A) :  
2. 사업수혜자(B) :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 (2)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대상자와 비교 시 형평성이 있는지, 수혜발생(재원 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분석

1.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원 배분을 의미
2.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3) 개선완료 사항

○

※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 차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 반영 또는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한 내용 등을 기재

##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2. 예산 반영 계획
3.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년 월 일

라.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작성 서식(성별영향평가서)

(기관명)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서

홍보 사업명							
유형	<input type="checkbox"/> 포스터(리플렛) <input type="checkbox"/> 온라인홍보물(웹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input type="checkbox"/> 동영상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_)						
홍보 목적 (취지)							
홍보 주제							
홍보 대상자 (수혜자)							
홍보 계획	※ 홍보물의 활용처 등 홍보물 활용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 기입						
소관 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 번호				
평가 항목	점검포인트		점검 결과				
▶ 등장인물 기획 시 남녀비율, 연령구성이 적절한지 먼저 살펴보고 점검을 시작합니다.							
①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①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역할) 여성은 보조자, 질문자, 생계보조자, 소비자 등 / 남성은 의사결정자, (질문의)답변자, 생계 부양자, 생산자 등으로 표현 ▶ (직업) 여성은 교사, 간호사, 상담사, 서비스직, 전업주부 등 / 남성은 의사, 과학자, 법률가, 건축가, 생산기술직 등으로 표현 ▶ (취미) 여성은 쇼핑, 음악, 문학 /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 (지위) 여성은 하위직이나 보조적인 위치 / 남성은 회사 대표, 관리자 등 지도층으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름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50%;">원안</th> <th style="width: 50%;">수정안</th>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 style="height: 20px;"></td> </tr> </table> ※ 수정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구분하여 작성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원안	수정안		
	원안	수정안					
②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잘못된 예시] ▶ 여성은 유약하고 소극적이고 수줍은 모습으로 / 남성은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씩씩한 모습으로 표현 ▶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란색으로 표현 ▶ 여성은 다리를 오므리고 남성은 벌리고 있는 표현 ▶ 여성은 무용, 요가 등 개인활동 / 남성은 축구 등 단체활동(운동)							

<p style="text-align: center;">② 성 차별적 표현/ 비하/ 외모 지상 주의</p>	<p>①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거나 미망인, 출가외인, 여자답지 못하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li> <li>▶ 여직원(→직원), 처녀작(→첫작품), 남성적/여성적 등</li> <li>▶ ‘○○녀’, 내조, 집사람, 주부, ○○씨(여) 등 성별에 따라 구분하거나 차별적으로 설명하는 표현</li> <li>▶ 남성에 대해 남성은 울지 않는다, 남자가 그것도 못해?</li> <li>▶ 여성(아내)은 존댓말 / 남성(남편)은 반말의 동등하지 못한 대화</li> </ul>	<p><input type="checkbox"/>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모름</p>	<p><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p> <p><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p> <p>*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원안</td> <td style="width: 50%;">수정안</td>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 style="height: 20px;"></td> </tr> </table> <p>※ 수정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구분하여 작성</p> <p><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p>	원안	수정안		
	원안			수정안			
<p>②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은 외모·쇼핑에 관심을 집중하는 허영심 많은 이미지, 남성은 과음·흡연 등의 이미지로 표현</li> <li>▶ 여성은 보호받는 사람, 듣는 사람, 따르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 남성은 보호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주도하는 사람, 질문에 답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으로 표현</li> <li>▶ 육아휴직 중인 남성, 전업주부 남성, 돌봄노동하는 남성을 무능력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남성으로 희화화하며 표현</li> <li>▶ 김치녀, 된장녀, 한남충과 같은 혐오 표현</li> <li>▶ 여성 이미지는 작게, 남성 이미지는 크게 묘사</li> </ul>							
<p>③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희화화 혹은 신체를 부각해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이 있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장인물의 외모를 성별로 이분화시켜 여성성 또는 남성성을 과장되게 표현</li> <li>▶ 여성은 짙은 화장, 긴 머리, 날씬한 외모, 가슴을 강조하거나 잘록한 허리, 몸에 꼭 끼는 상의와 치마, 하이힐 차림, 수줍은 표정 등으로 / 남성은 짧은 머리, 키가 크고 건장한 외모, 근육질의 몸매, 벡타이와 양복차림 등으로 표현</li> <li>▶ 키가 작거나, 머리가 크거나, 왜소한·뚱뚱한 체격을 희화화하는 표현</li> <li>▶ 젊고 키가 크고 날씬하고 잘생긴 외모의 등장인물만 제시</li> <li>▶ 등장인물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나 평가</li> <li>▶ 노화나 나이 들, 장애 및 이주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표현</li> </ul>							

<p>③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p>	<p>①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을 특정 성별로 구분하여 표현하는가?</p> <p>.....[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성을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표현(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 등)</li> <li>▶ 가해자는 거구의 체격, 커다란 주먹으로 특정하거나, 야수·괴물·악마 등 비현실적인 존재로 표현 / 피해자는 작은 체구, 울고 있거나 움츠린 모습,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으로 표현</li> </ul> <p>②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 혹은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p> <p>.....[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연인간의 폭행, 폭언을 사랑싸움이라고 표현</li> <li>▶ 억지로 잡아끌거나 벽에 밀치는 행동 등 강제적 행동을 애정의 표현</li> <li>▶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음담패설을 장난이나 사소한 문제로 표현</li> </ul> <p>③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p> <p>.....[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자가 밤늦게 집밖에 다니거나 야한 옷을 입어서, 남자가 허약해서 폭력을 당했다는 표현</li> <li>▶ 성범죄를 희화화하여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재현</li> <li>▶ 범죄 피해자에게 유약함, 무결함 등의 특정 이미지를 부여하는 표현</li> </ul>	<p><input type="checkbox"/>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모름</p>	<p><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p> <p><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p> <p>*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p> <table border="1" data-bbox="892 662 1215 736"> <tr> <th>원안</th> <th>수정안</th> </tr> <tr> <td> </td> <td> </td> </tr> </table> <p>※ 수정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구분하여 작성</p> <p><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p>	원안	수정안		
원안	수정안						
<p>④ 가족에 대한 고정 관념/편견</p>	<p>① 가족 이미지를 특정유형으로만 한정하고 있는가?</p> <p>.....[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을 표현할 때 부모+아들+딸 또는 부모+아들이나 딸로 구성된 이미지로 한정하여 표현</li> <li>▶ 가족 구성원 표현할 때, 특정 피부색이나 연령에 한정하여 표현</li> </ul> <p>②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고 있는가?</p> <p>.....[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 여성은 가사(식사 준비, 청소 등)와 가족 돌봄(육아 및 훈육, 병간호 등), 생계 보조자, 혼수 마련 등의 역할 / 성인 남성은 가장, 생계 부양자, 주택 마련 등의 역할</li> <li>▶ 미성년 여성(딸, 손녀 등)은 애교 많고 귀엽거나 암전한 모습 / 미성년 남성(아들, 손자 등)은 호기심, 장난기, 둔직한 모습으로 묘사</li> <li>▶ 아동과 함께 놀아주고, 보호하는 성인역할은 여성으로 표현</li> <li>▶ 아버지는 가족의 중심에 위치 (식탁 상석에 앉은 모습, 가족 구성원을 모두 안고 있는 모습 등 힘을 강조하는 표현)</li> <li>▶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 아버지, '맘머느리감'이다 등의 표현</li> </ul>	<p><input type="checkbox"/>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모름</p>	<p><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p> <p><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p> <p>*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p> <table border="1" data-bbox="892 1413 1215 1487"> <tr> <th>원안</th> <th>수정안</th> </tr> <tr> <td> </td> <td> </td> </tr> </table> <p>※ 수정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구분하여 작성</p> <p><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p>	원안	수정안		
원안	수정안						

<p>⑤ 성별 대표성 불균형</p>	<p>①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쳐 있거나 배제하고 있는가?</p> <p>[잘못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대상자가 남녀노소임에도 젊은 남녀만 표현</li> <li>▶ 사회 다양한 영역에 대해 특정 성만으로 표현(여성은 문화, 상담, 판매, 미용, 돌봄, 가정생활 등 / 남성은 과학·기술, 스포츠, 게임, 일자리 등)</li> <li>▶ 주요 분야의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특정 성별로 표현(국방, 안보, 외교, 통일, 정치 분야는 남성 / 교육, 문화, 보건 등은 여성)</li> <li>▶ 남성이 사람 또는 직군을 대표(픽토그램·아이콘 - 넥타이, 양복소매 표현)</li> <li>▶ 다양한 시민 활동을 표현할 때, 특정 성별이나 연령, 피부색에 한정하여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 장구를 활용하여 신체 활동을 하는 시민이 배제된 상태로 표현</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모름</p>	<p><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p> <p><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p> <p>*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p> <table border="1" data-bbox="892 433 1215 511"> <tr> <th style="width: 50%;">원안</th> <th style="width: 50%;">수정안</th>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 style="height: 20px;"></td> </tr> </table> <p>※ 수정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구분하여 작성</p> <p><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p>	원안	수정안		
	원안	수정안					
<p>시안첨부</p>	<p>제출</p>						

부록 4

2022년 부처별 성평등목표

목표 부처명	성평등목표					
	남녀평등인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 양성 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전략을 수립하고 성인지 예산 내실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여성 경력 개발과 여성 관리자 확대에 대한 책임성 강화</li> <li>▶ 협동조합의 여성 참여 기반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및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및 교육 행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및 대응 강화</li> </ul>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R&amp;D 사업 참여의 성별 격차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분야 여성 경력개발과 여성 대표성 제고</li> </ul>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인력의 국제 기구 진출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 공관의 성폭력 예방 및 교육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 증진 관련 국제 협력 확대와 성인지적 관점의 ODA 사업 추진</li> </ul>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및 정착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기반 조성에 여성 참여 확대 및 대표성 제고</li> </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 여성 사법 제도 접근권 강화 및 활용 확대</li> <li>▶ 성폭력 처벌 강화</li> <li>▶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li> </ul>	



목표 부처명	성평등목표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국방부	▶ 성 차별 근절과 인권 존중의 정훈 문화 정착으로 군대 내 양성 평등 의식 증진	▶ 군 인적자원 개발의 성별 형평성(군장학생 및 전직 지원 포함)	▶ 군 간부 여성 비율 확대와 직무 분리 완화	▶ 군 복무 여건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 정착 ▶ 군부대 육아 지원 시설 확대	▶ 군 조직의 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 군인의 모·부 성권 보장
행정 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직 확대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포함) 가족 친화 경영 정착		▶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예술, 언론, 미디어, 광고에서 양성평등 콘텐츠 확산	▶ 문화·예술, 전문 체육 분야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진	▶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여성 대표성 증진		▶ 문화예술·전문 체육·관광산업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농림축산 식품부	▶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에서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 소득 기반 확대 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강화 ▶ 여성농업인의 직업 역량 강화	▶ 여성 농업인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산업통상 자원부		▶ 부품 소재, 에너지 자원, 바이오 의료 등 R&D 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증대	▶ 산업·통상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보건 복지부		▶ 돌봄 근로자 처우개선	▶ 복지 및 건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 아동 양육비용 지원 확대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 ▶ 여성 건강 취약 계층의 공공의료 접근권 개선	
환경부		▶ 환경 분야 여성 인적 자원 개발 확대 ▶ 환경분야 일자리 성별격차 완화	▶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증진			▶ 국제 환경 협력에서 여성 참여 강화

요약

I

II  
성별영향평가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가 성과와 과제

부록

목표 부처명	성평등목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고용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진입과 경력 유지 과정에서 성차별 해소</li> <li>▶ 성별 직업 분리 근절을 위한 추진 기반 강화</li> <li>▶ 여성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유리천장 근절을 통한 여성 대표성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확대를 통한 모성 보호 사각지대 해소</li> <li>▶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li> </ul>	
여성 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성차별 의식 해소 기반 마련</li> <li>▶ 생활 속(교육 환경, 가족문화, 온라인 상 등)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취·창업 지원 강화</li> <li>▶ 고용에서의 성 차별(성별임금 격차, 성별직업 분리 등) 개선 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분야, 민간 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li> <li>▶ 여성 관리자 양성 등 여성 인력 개발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li> <li>▶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 및 일·생활 균형 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li> <li>▶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li> <li>▶ 건강증진 정책에서의 성인지 관점 제고</li> <li>▶ 여성장애인 및 청소년의 양성 평등한 건강권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li> <li>▶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li> </ul>
국토 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 분야 여성 인력 진출 확대 및 성별 분리 완화</li> <li>▶ 한부모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 분야 의사결정과정 여성 대표성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 약자 지원 교통서비스 인프라와 돌봄 인프라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 교통 서비스에서 성폭력 예방 체계 강화</li> </ul>	
해양 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육성과 취업 영역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분야 의사결정과정 여성 대표성 제고</li> </ul>			

목표 부처명	성평등목표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중소벤처 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금융, 벤처 및 엔젤 투자 등 금융 접근성에서 성별 형평성 강화</li> <li>▶ 여성기업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 확대</li> <li>▶ 창업지원 사업 등의 성별 격차 완화</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자 보호활동 지원 내실화</li> <li>▶ 강력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강화</li> <li>▶ 성폭력에 대한 단속·수사 실효성 제고 및 다양한 성폭력(사이버 상,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li> </ul>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여성의 농업경영주체로서의 전문성 함양</li> <li>▶ 여성 농업인 창업 사업장 경영개선 등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농업인의 안전 및 건강 관리 교육 강화</li> </ul>	

요약

I  
개요

II  
성별영향평가기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기 결과

IV  
성별영향평가기 성과와 과제

부  
록

부록 5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부록 표 5-1〉 2022년 기관별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전체	19,594 (100.0)	10,956 (55.9)	611 (3.1)	1,398 (7.1)	1,086 (77.7)	6,629 (33.8)
중앙행정기관(46)	1,595 (100.0)	1,269 (79.6)	30 (1.9)	34 (2.1)	21 (61.8)	262 (16.4)
국토교통부	194 (100.0)	168 (86.6)	0 (0.0)	1 (0.5)	1 (100.0)	25 (12.9)
기획재정부	143 (100.0)	134 (93.7)	1 (0.7)	1 (0.7)	0 (0.0)	7 (4.9)
행정안전부	125 (100.0)	85 (68.0)	4 (3.2)	4 (3.2)	3 (75.0)	32 (25.6)
보건복지부	98 (100.0)	78 (79.6)	5 (5.1)	1 (1.0)	1 (100.0)	14 (14.3)
해양수산부	82 (100.0)	53 (64.6)	0 (0.0)	2 (2.4)	2 (100.0)	27 (32.9)
국방부	72 (100.0)	51 (70.8)	1 (1.4)	1 (1.4)	1 (100.0)	19 (26.4)
산업통상자원부	70 (100.0)	60 (85.7)	0 (0.0)	3 (4.3)	0 (0.0)	7 (10.0)
환경부	68 (100.0)	60 (88.2)	0 (0.0)	1 (1.5)	1 (100.0)	7 (10.3)
교육부	62 (100.0)	45 (72.6)	2 (3.2)	3 (4.8)	2 (66.7)	12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 (100.0)	55 (90.2)	0 (0.0)	2 (3.3)	1 (50.0)	4 (6.6)
법무부	57 (100.0)	37 (64.9)	7 (12.3)	1 (1.8)	1 (100.0)	12 (21.1)
문화체육관광부	49 (100.0)	37 (75.5)	3 (6.1)	1 (2.0)	0 (0.0)	8 (16.3)
고용노동부	47 (100.0)	32 (68.1)	5 (10.6)	2 (4.3)	1 (50.0)	8 (17.0)
국가보훈처	47 (100.0)	42 (89.4)	0 (0.0)	0 (0.0)	-	5 (10.6)
농림축산식품부	44 (100.0)	42 (95.5)	0 (0.0)	1 (2.3)	1 (100.0)	1 (2.3)
소방청	39 (100.0)	25 (64.1)	0 (0.0)	2 (5.1)	2 (100.0)	12 (30.8)
식품의약품안전처	37 (100.0)	31 (83.8)	0 (0.0)	2 (5.4)	0 (0.0)	4 (10.8)
경찰청	29 (100.0)	16 (55.2)	1 (3.4)	0 (0.0)	-	12 (41.4)
인사혁신처	26 (100.0)	18 (69.2)	1 (3.8)	0 (0.0)	-	7 (26.9)
산림청	26 (100.0)	21 (80.8)	0 (0.0)	1 (3.8)	1 (100.0)	4 (15.4)
여성가족부	23 (100.0)	15 (65.2)	0 (0.0)	1 (4.3)	0 (0.0)	7 (30.4)
중소벤처기업부	23 (100.0)	21 (91.3)	0 (0.0)	1 (4.3)	1 (100.0)	1 (4.3)
금융위원회	23 (100.0)	22 (95.7)	0 (0.0)	0 (0.0)	-	1 (4.3)
특허청	20 (100.0)	18 (90.0)	0 (0.0)	0 (0.0)	-	2 (10.0)
해양경찰청	18 (100.0)	16 (88.9)	0 (0.0)	0 (0.0)	-	2 (11.1)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질병관리청	17(100.0)	14 (82.4)	0(0.0)	0(0.0)	-	3(17.6)
공정거래위원회	16(100.0)	10 (62.5)	0(0.0)	0(0.0)	-	6(37.5)
문화재청	15(100.0)	13 (86.7)	0(0.0)	0(0.0)	-	2(13.3)
법제처	10(100.0)	8 (80.0)	0(0.0)	0(0.0)	-	2(20.0)
기상청	9(100.0)	7 (77.8)	0(0.0)	1(11.1)	1(100.0)	1(11.1)
방송통신위원회	8(100.0)	7 (87.5)	0(0.0)	1(12.5)	1(100.0)	0(0.0)
원자력안전위원회	8(100.0)	7 (87.5)	0(0.0)	1(12.5)	0(0.0)	0(0.0)
외교부	7(100.0)	5 (71.4)	0(0.0)	0(0.0)	-	2(28.6)
국민권익위원회	7(100.0)	5 (71.4)	0(0.0)	0(0.0)	-	2(28.6)
통일부	6(100.0)	5 (83.3)	0(0.0)	0(0.0)	-	1(16.7)
국무조정실	5(100.0)	4 (80.0)	0(0.0)	0(0.0)	-	1(20.0)
병무청	3(100.0)	2 (66.7)	0(0.0)	0(0.0)	-	1(33.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00.0)	0 (0.0)	0(0.0)	0(0.0)	-	1(100.0)
국세청	0(0.0)	0 (0.0)	0(0.0)	0(0.0)	-	0(0.0)
관세청	0(0.0)	0 (0.0)	0(0.0)	0(0.0)	-	0(0.0)
조달청	0(0.0)	0 (0.0)	0(0.0)	0(0.0)	-	0(0.0)
통계청	0(0.0)	0 (0.0)	0(0.0)	0(0.0)	-	0(0.0)
대검찰청	0(0.0)	0 (0.0)	0(0.0)	0(0.0)	-	0(0.0)
방위사업청	0(0.0)	0 (0.0)	0(0.0)	0(0.0)	-	0(0.0)
농촌진흥청	0(0.0)	0 (0.0)	0(0.0)	0(0.0)	-	0(0.0)
새만금개발청	0(0.0)	0 (0.0)	0(0.0)	0(0.0)	-	0(0.0)
<b>지방자치단체</b>	<b>17,460 (100.0)</b>	<b>9,479 (54.3)</b>	<b>573 (3.3)</b>	<b>1,355 (7.8)</b>	<b>1,058 (78.1)</b>	<b>6,053 (34.7)</b>
<b>서울(광역+기초25)</b>	<b>1,771 (100.0)</b>	<b>921 (52.0)</b>	<b>33 (1.9)</b>	<b>109 (6.2)</b>	<b>96 (88.1)</b>	<b>708 (40.0)</b>
서울특별시	157 (100.0)	83 (52.9)	1 (0.6)	23 (14.6)	21 (91.3)	50 (31.8)
서울특별시 강동구	141 (100.0)	33 (23.4)	0 (0.0)	2 (1.4)	2 (100.0)	106 (75.2)
서울특별시 강남구	88 (100.0)	63 (71.6)	0 (0.0)	0 (0.0)	-	25 (28.4)
서울특별시 성동구	78 (100.0)	33 (42.3)	8 (10.3)	0 (0.0)	-	37 (47.4)
서울특별시 용산구	68 (100.0)	42 (61.8)	1 (1.5)	1 (1.5)	1 (100.0)	24 (35.3)
서울특별시 도봉구	68 (100.0)	42 (61.8)	1 (1.5)	4 (5.9)	4 (100.0)	21 (30.9)
서울특별시 은평구	68 (100.0)	35 (51.5)	0 (0.0)	0 (0.0)	-	33 (48.5)
서울특별시 서초구	67 (100.0)	50 (74.6)	0 (0.0)	0 (0.0)	-	17 (25.4)
서울특별시 구로구	66 (100.0)	39 (59.1)	0 (0.0)	0 (0.0)	-	27 (40.9)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5 (100.0)	18 (27.7)	4 (6.2)	1 (1.5)	1 (100.0)	42 (64.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62 (100.0)	40 (64.5)	0 (0.0)	3 (4.8)	3 (100.0)	19 (30.6)
서울특별시 양천구	61 (100.0)	49 (80.3)	0 (0.0)	0 (0.0)	-	12 (19.7)
서울특별시 관악구	61 (100.0)	45 (73.8)	13 (21.3)	3 (4.9)	3 (100.0)	0 (0.0)
서울특별시 중구	60 (100.0)	40 (66.7)	0 (0.0)	3 (5.0)	3 (100.0)	17 (28.3)
서울특별시 강북구	59 (100.0)	43 (72.9)	0 (0.0)	0 (0.0)	-	16 (27.1)
서울특별시 동작구	59 (100.0)	28 (47.5)	0 (0.0)	10 (16.9)	6 (60.0)	21 (35.6)
서울특별시 마포구	58 (100.0)	35 (60.3)	3 (5.2)	2 (3.4)	2 (100.0)	18 (3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6 (100.0)	22 (39.3)	0 (0.0)	0 (0.0)	-	34 (60.7)
서울특별시 성북구	56 (100.0)	11 (19.6)	1 (1.8)	1 (1.8)	1 (100.0)	43 (76.8)
서울특별시 노원구	56 (100.0)	32 (57.1)	0 (0.0)	7 (12.5)	7 (100.0)	17 (30.4)
서울특별시 종로구	54 (100.0)	18 (33.3)	1 (1.9)	11 (20.4)	10 (90.9)	24 (44.4)
서울특별시 중랑구	54 (100.0)	31 (57.4)	0 (0.0)	1 (1.9)	1 (100.0)	22 (40.7)
서울특별시 강서구	54 (100.0)	24 (44.4)	0 (0.0)	14 (25.9)	13 (92.9)	16 (29.6)
서울특별시 금천구	54 (100.0)	16 (29.6)	0 (0.0)	8 (14.8)	6 (75.0)	30 (55.6)
서울특별시 송파구	53 (100.0)	20 (37.7)	0 (0.0)	10 (18.9)	7 (70.0)	23 (43.4)
서울특별시 광진구	48 (100.0)	29 (60.4)	0 (0.0)	5 (10.4)	5 (100.0)	14 (29.2)
<b>부산(광역시+기초16)</b>	<b>954 (100.0)</b>	<b>377 (39.5)</b>	<b>68 (7.1)</b>	<b>78 (8.2)</b>	<b>59 (6.2)</b>	<b>431 (45.2)</b>
부산광역시	118 (100.0)	51 (43.2)	12 (10.2)	13 (11.0)	8 (61.5)	42 (35.6)
부산광역시 사하구	82 (100.0)	31 (37.8)	6 (7.3)	8 (9.8)	6 (75.0)	37 (45.1)
부산광역시 수영구	77 (100.0)	31 (40.3)	7 (9.1)	6 (7.8)	5 (83.3)	33 (42.9)
부산광역시 기장군	67 (100.0)	39 (58.2)	2 (3.0)	4 (6.0)	2 (50.0)	22 (32.8)
부산광역시 연제구	58 (100.0)	28 (48.3)	2 (3.4)	7 (12.1)	7 (100.0)	21 (36.2)
부산광역시 남구	54 (100.0)	24 (44.4)	0 (0.0)	1 (1.9)	1 (100.0)	29 (53.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2 (100.0)	28 (53.8)	5 (9.6)	6 (11.5)	3 (50.0)	13 (25.0)
부산광역시 동래구	51 (100.0)	19 (37.3)	3 (5.9)	3 (5.9)	3 (100.0)	26 (51.0)
부산광역시 중구	48 (100.0)	9 (18.8)	4 (8.3)	5 (10.4)	3 (60.0)	30 (6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8 (100.0)	24 (50.0)	4 (8.3)	9 (18.8)	8 (88.9)	11 (22.9)
부산광역시 금정구	48 (100.0)	15 (31.3)	0 (0.0)	0 (0.0)	-	33 (68.8)
부산광역시 영도구	47 (100.0)	19 (40.4)	6 (12.8)	3 (6.4)	2 (66.7)	19 (40.4)
부산광역시 북구	46 (100.0)	5 (10.9)	3 (6.5)	3 (6.5)	2 (66.7)	35 (76.1)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부산광역시 서구	43 (100.0)	22 (51.2)	6 (14.0)	4 (9.3)	3 (75.0)	11 (25.6)
부산광역시 동구	40 (100.0)	8 (20.0)	5 (12.5)	4 (10.0)	4 (100.0)	23 (57.5)
부산광역시 강서구	38 (100.0)	17 (44.7)	0 (0.0)	0 (0.0)	-	21 (55.3)
부산광역시 사상구	37 (100.0)	7 (18.9)	3 (8.1)	2 (5.4)	2 (100.0)	25 (67.6)
<b>대구(광역+기초8)</b>	<b>514 (100.0)</b>	<b>230 (44.7)</b>	<b>8 (1.6)</b>	<b>23 (4.5)</b>	<b>15 (2.9)</b>	<b>253 (49.2)</b>
대구광역시	116 (100.0)	63 (54.3)	4 (3.4)	3 (2.6)	3 (100.0)	46 (39.7)
대구광역시 달성군	80 (100.0)	40 (50.0)	1 (1.3)	2 (2.5)	1 (50.0)	37 (46.3)
대구광역시 북구	63 (100.0)	39 (61.9)	1 (1.6)	4 (6.3)	2 (50.0)	19 (30.2)
대구광역시 서구	59 (100.0)	15 (25.4)	0 (0.0)	2 (3.4)	2 (100.0)	42 (71.2)
대구광역시 달서구	48 (100.0)	15 (31.3)	0 (0.0)	1 (2.1)	0 (0.0)	32 (66.7)
대구광역시 동구	42 (100.0)	4 (9.5)	0 (0.0)	1 (2.4)	0 (0.0)	37 (88.1)
대구광역시 중구	37 (100.0)	19 (51.4)	1 (2.7)	3 (8.1)	3 (100.0)	14 (37.8)
대구광역시 수성구	36 (100.0)	20 (55.6)	0 (0.0)	3 (8.3)	3 (100.0)	13 (36.1)
대구광역시 남구	33 (100.0)	15 (45.5)	1 (3.0)	4 (12.1)	1 (25.0)	13 (39.4)
<b>인천(광역+기초10)</b>	<b>733 (100.0)</b>	<b>330 (45.0)</b>	<b>33 (4.5)</b>	<b>66 (9.0)</b>	<b>45 (6.1)</b>	<b>304 (41.5)</b>
인천광역시	122 (100.0)	57 (46.7)	0 (0.0)	3 (2.5)	2 (66.7)	62 (50.8)
인천광역시 남동구	70 (100.0)	30 (42.9)	3 (4.3)	8 (11.4)	1 (12.5)	29 (41.4)
인천광역시 강화군	69 (100.0)	32 (46.4)	7 (10.1)	9 (13.0)	8 (88.9)	21 (30.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66 (100.0)	29 (43.9)	1 (1.5)	8 (12.1)	8 (100.0)	28 (42.4)
인천광역시 계양구	66 (100.0)	22 (33.3)	2 (3.0)	8 (12.1)	8 (100.0)	34 (51.5)
인천광역시 중구	65 (100.0)	28 (43.1)	8 (12.3)	5 (7.7)	2 (40.0)	24 (36.9)
인천광역시 서구	64 (100.0)	26 (40.6)	5 (7.8)	7 (10.9)	6 (85.7)	26 (40.6)
인천광역시 부평구	60 (100.0)	25 (41.7)	0 (0.0)	8 (13.3)	5 (62.5)	27 (45.0)
인천광역시 옹진군	55 (100.0)	28 (50.9)	2 (3.6)	6 (10.9)	2 (33.3)	19 (34.5)
인천광역시 연수구	50 (100.0)	20 (40.0)	5 (10.0)	4 (8.0)	3 (75.0)	21 (42.0)
인천광역시 동구	46 (100.0)	33 (71.7)	0 (0.0)	0 (0.0)	-	13 (28.3)
<b>광주(광역+기초5)</b>	<b>455 (100.0)</b>	<b>284 (62.4)</b>	<b>10 (2.2)</b>	<b>59 (13.0)</b>	<b>48 (81.4)</b>	<b>102 (22.4)</b>
광주광역시	136 (100.0)	79 (58.1)	0 (0.0)	13 (9.6)	11 (84.6)	44 (32.4)
광주광역시 서구	69 (100.0)	42 (60.9)	0 (0.0)	8 (11.6)	5 (62.5)	19 (27.5)
광주광역시 동구	66 (100.0)	46 (69.7)	2 (3.0)	9 (13.6)	6 (66.7)	9 (13.6)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광주광역시 남구	63 (100.0)	34 (54.0)	5 (7.9)	11 (17.5)	10 (90.9)	13 (20.6)
광주광역시 광산구	63 (100.0)	40 (63.5)	0 (0.0)	10 (15.9)	8 (80.0)	13 (20.6)
광주광역시 북구	58 (100.0)	43 (74.1)	3 (5.2)	8 (13.8)	8 (100.0)	4 (6.9)
<b>대전(광역+기초5)</b>	<b>424 (100.0)</b>	<b>172 (40.6)</b>	<b>20 (4.7)</b>	<b>23 (5.4)</b>	<b>22 (5.2)</b>	<b>209 (49.3)</b>
대전광역시	141 (100.0)	45 (31.9)	14 (9.9)	16 (11.3)	15 (93.8)	66 (46.8)
대전광역시 중구	72 (100.0)	17 (23.6)	0 (0.0)	0 (0.0)	-	55 (76.4)
대전광역시 서구	72 (100.0)	40 (55.6)	0 (0.0)	3 (4.2)	3 (100.0)	29 (40.3)
대전광역시 대덕구	57 (100.0)	33 (57.9)	4 (7.0)	3 (5.3)	3 (100.0)	17 (29.8)
대전광역시 동구	50 (100.0)	21 (42.0)	0 (0.0)	1 (2.0)	1 (100.0)	28 (56.0)
대전광역시 유성구	32 (100.0)	16 (50.0)	2 (6.3)	0 (0.0)	-	14 (43.8)
<b>울산(광역+기초5)</b>	<b>373 (100.0)</b>	<b>116 (31.1)</b>	<b>4 (1.1)</b>	<b>62 (16.6)</b>	<b>46 (74.2)</b>	<b>191 (51.2)</b>
울산광역시	100 (100.0)	22 (22.0)	0 (0.0)	7 (7.0)	5 (71.4)	71 (71.0)
울산광역시 남구	64 (100.0)	22 (34.4)	2 (3.1)	15 (23.4)	11 (73.3)	25 (39.1)
울산광역시 울주군	57 (100.0)	20 (35.1)	0 (0.0)	14 (24.6)	8 (57.1)	23 (40.4)
울산광역시 북구	56 (100.0)	22 (39.3)	0 (0.0)	17 (30.4)	14 (82.4)	17 (30.4)
울산광역시 중구	56 (100.0)	23 (41.1)	2 (3.6)	6 (10.7)	5 (83.3)	25 (44.6)
울산광역시 동구	40 (100.0)	7 (17.5)	0 (0.0)	3 (7.5)	3 (100.0)	30 (75.0)
세종특별자치시	95 (100.0)	55 (57.9)	0 (0.0)	4 (4.2)	4 (100.0)	36 (37.9)
<b>경기(광역+기초31)</b>	<b>2,748 (100.0)</b>	<b>1,824 (66.4)</b>	<b>70 (2.5)</b>	<b>140 (5.1)</b>	<b>116 (82.9)</b>	<b>714 (26.0)</b>
경기도	71 (100.0)	33 (46.5)	2 (2.8)	6 (8.5)	6 (100.0)	30 (42.3)
경기도 부천시	130 (100.0)	95 (73.1)	0 (0.0)	2 (1.5)	2 (100.0)	33 (25.4)
경기도 안성시	122 (100.0)	80 (65.6)	2 (1.6)	0 (0.0)	-	40 (32.8)
경기도 용인시	116 (100.0)	42 (36.2)	8 (6.9)	9 (7.8)	4 (44.4)	57 (49.1)
경기도 화성시	114 (100.0)	76 (66.7)	2 (1.8)	9 (7.9)	8 (88.9)	27 (23.7)
경기도 의정부시	111 (100.0)	75 (67.6)	1 (0.9)	3 (2.7)	3 (100.0)	32 (28.8)
경기도 하남시	106 (100.0)	72 (67.9)	1 (0.9)	6 (5.7)	5 (83.3)	27 (25.5)
경기도 수원시	105 (100.0)	63 (60.0)	13 (12.4)	15 (14.3)	11 (73.3)	14 (13.3)
경기도 고양시	95 (100.0)	70 (73.7)	2 (2.1)	0 (0.0)	-	23 (24.2)
경기도 평택시	94 (100.0)	56 (59.6)	4 (4.3)	4 (4.3)	4 (100.0)	30 (31.9)
경기도 여주시	91 (100.0)	66 (72.5)	0 (0.0)	1 (1.1)	0 (0.0)	24 (26.4)
경기도 이천시	91 (100.0)	65 (71.4)	1 (1.1)	1 (1.1)	1 (100.0)	24 (26.4)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경기도 김포시	90 (100.0)	70 (77.8)	0 (0.0)	0 (0.0)	-	20 (22.2)
경기도 성남시	89 (100.0)	57 (64.0)	7 (7.9)	5 (5.6)	0 (0.0)	20 (22.5)
경기도 가평군	89 (100.0)	61 (68.5)	1 (1.1)	1 (1.1)	1 (100.0)	26 (29.2)
경기도 포천시	88 (100.0)	68 (77.3)	1 (1.1)	2 (2.3)	2 (100.0)	17 (19.3)
경기도 안산시	86 (100.0)	46 (53.5)	0 (0.0)	2 (2.3)	2 (100.0)	38 (44.2)
경기도 과천시	86 (100.0)	58 (67.4)	11 (12.8)	0 (0.0)	-	17 (19.8)
경기도 시흥시	84 (100.0)	70 (83.3)	0 (0.0)	4 (4.8)	3 (75.0)	10 (11.9)
경기도 광명시	79 (100.0)	44 (55.7)	0 (0.0)	12 (15.2)	11 (91.7)	23 (29.1)
경기도 파주시	76 (100.0)	51 (67.1)	0 (0.0)	18 (23.7)	15 (83.3)	7 (9.2)
경기도 양주시	74 (100.0)	53 (71.6)	2 (2.7)	3 (4.1)	3 (100.0)	16 (21.6)
경기도 의왕시	74 (100.0)	55 (74.3)	1 (1.4)	2 (2.7)	2 (100.0)	16 (21.6)
경기도 광주시	73 (100.0)	54 (74.0)	0 (0.0)	6 (8.2)	6 (100.0)	13 (17.8)
경기도 양평군	73 (100.0)	61 (83.6)	0 (0.0)	0 (0.0)	-	12 (16.4)
경기도 남양주시	72 (100.0)	41 (56.9)	0 (0.0)	5 (6.9)	3 (60.0)	26 (36.1)
경기도 연천군	68 (100.0)	43 (63.2)	0 (0.0)	2 (2.9)	2 (100.0)	23 (33.8)
경기도 안양시	65 (100.0)	41 (63.1)	2 (3.1)	7 (10.8)	7 (100.0)	15 (23.1)
경기도 군포시	63 (100.0)	33 (52.4)	2 (3.2)	3 (4.8)	3 (100.0)	25 (39.7)
경기도 오산시	63 (100.0)	50 (79.4)	1 (1.6)	5 (7.9)	5 (100.0)	7 (11.1)
경기도 동두천시	56 (100.0)	45 (80.4)	2 (3.6)	0 (0.0)	-	9 (16.1)
경기도 구리시	54 (100.0)	30 (55.6)	4 (7.4)	7 (13.0)	7 (100.0)	13 (24.1)
<b>강원(광역+기초18)</b>	<b>1,247 (100.0)</b>	<b>649 (52.0)</b>	<b>6 (0.5)</b>	<b>171 (13.7)</b>	<b>131 (76.6)</b>	<b>421 (33.8)</b>
강원도	62 (100.0)	41 (66.1)	1 (1.6)	8 (12.9)	7 (87.5)	12 (19.4)
강원도 홍천군	81 (100.0)	36 (44.4)	1 (1.2)	22 (27.2)	20 (90.9)	22 (27.2)
강원도 평창군	78 (100.0)	31 (39.7)	0 (0.0)	15 (19.2)	14 (93.3)	32 (41.0)
강원도 원주시	77 (100.0)	28 (36.4)	0 (0.0)	7 (9.1)	4 (57.1)	42 (54.5)
강원도 정선군	75 (100.0)	42 (56.0)	1 (1.3)	14 (18.7)	13 (92.9)	18 (24.0)
강원도 속초시	74 (100.0)	38 (51.4)	0 (0.0)	10 (13.5)	9 (90.0)	26 (35.1)
강원도 철원군	73 (100.0)	36 (49.3)	0 (0.0)	12 (16.4)	7 (58.3)	25 (34.2)
강원도 강릉시	72 (100.0)	37 (51.4)	0 (0.0)	3 (4.2)	2 (66.7)	32 (44.4)
강원도 삼척시	70 (100.0)	45 (64.3)	2 (2.9)	1 (1.4)	1 (100.0)	22 (31.4)
강원도 태백시	69 (100.0)	37 (53.6)	0 (0.0)	3 (4.3)	2 (66.7)	29 (42.0)
강원도 횡성군	69 (100.0)	32 (46.4)	1 (1.4)	19 (27.5)	9 (47.4)	17 (24.6)
강원도 고성군	65 (100.0)	22 (33.8)	0 (0.0)	12 (18.5)	7 (58.3)	31 (47.7)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강원도 춘천시	61 (100.0)	33 (54.1)	0 (0.0)	5 (8.2)	3 (60.0)	23 (37.7)
강원도 양구군	61 (100.0)	43 (70.5)	0 (0.0)	0 (0.0)	-	18 (29.5)
강원도 영월군	56 (100.0)	31 (55.4)	0 (0.0)	14 (25.0)	11 (78.6)	11 (19.6)
강원도 인제군	56 (100.0)	36 (64.3)	0 (0.0)	5 (8.9)	5 (100.0)	15 (26.8)
강원도 양양군	51 (100.0)	24 (47.1)	0 (0.0)	12 (23.5)	10 (83.3)	15 (29.4)
강원도 동해시	50 (100.0)	19 (38.0)	0 (0.0)	7 (14.0)	5 (71.4)	24 (48.0)
강원도 화천군	47 (100.0)	38 (80.9)	0 (0.0)	2 (4.3)	2 (100.0)	7 (14.9)
<b>총북(광역+기초11)</b>	<b>937 (100.0)</b>	<b>597 (63.7)</b>	<b>17 (1.8)</b>	<b>33 (3.5)</b>	<b>30 (90.9)</b>	<b>290 (30.9)</b>
충청북도	87 (100.0)	57 (65.5)	3 (3.4)	0 (0.0)	-	27 (31.0)
충청북도 청주시	111 (100.0)	75 (67.6)	0 (0.0)	4 (3.6)	4 (100.0)	32 (28.8)
충청북도 충주시	96 (100.0)	61 (63.5)	0 (0.0)	0 (0.0)	-	35 (36.5)
충청북도 제천시	94 (100.0)	63 (67.0)	0 (0.0)	1 (1.1)	1 (100.0)	30 (31.9)
충청북도 진천군	82 (100.0)	55 (67.1)	6 (7.3)	7 (8.5)	7 (100.0)	14 (17.1)
충청북도 괴산군	75 (100.0)	51 (68.0)	0 (0.0)	0 (0.0)	-	24 (32.0)
충청북도 단양군	71 (100.0)	34 (47.9)	3 (4.2)	14 (19.7)	13 (92.9)	20 (28.2)
충청북도 보은군	69 (100.0)	42 (60.9)	0 (0.0)	0 (0.0)	-	27 (39.1)
충청북도 영동군	68 (100.0)	55 (80.9)	0 (0.0)	0 (0.0)	-	13 (19.1)
충청북도 옥천군	66 (100.0)	29 (43.9)	0 (0.0)	3 (4.5)	1 (33.3)	34 (51.5)
충청북도 음성군	66 (100.0)	40 (60.6)	2 (3.0)	4 (6.1)	4 (100.0)	20 (30.3)
충청북도 증평군	52 (100.0)	35 (67.3)	3 (5.8)	0 (0.0)	-	14 (26.9)
<b>총남(광역+기초15)</b>	<b>1,297 (100.0)</b>	<b>772 (59.5)</b>	<b>13 (1.0)</b>	<b>65 (5.0)</b>	<b>58 (4.5)</b>	<b>447 (34.5)</b>
충청남도	86 (100.0)	34 (39.5)	1 (1.2)	6 (7.0)	6 (100.0)	45 (52.3)
충청남도 당진시	115 (100.0)	89 (77.4)	1 (0.9)	3 (2.6)	3 (100.0)	22 (19.1)
충청남도 청양군	115 (100.0)	96 (83.5)	0 (0.0)	2 (1.7)	2 (100.0)	17 (14.8)
충청남도 보령시	104 (100.0)	61 (58.7)	1 (1.0)	4 (3.8)	4 (100.0)	38 (36.5)
충청남도 아산시	104 (100.0)	58 (55.8)	5 (4.8)	0 (0.0)	-	41 (39.4)
충청남도 논산시	93 (100.0)	61 (65.6)	2 (2.2)	4 (4.3)	4 (100.0)	26 (28.0)
충청남도 천안시	92 (100.0)	39 (42.4)	0 (0.0)	18 (19.6)	11 (61.1)	35 (38.0)
충청남도 예산군	79 (100.0)	61 (77.2)	0 (0.0)	3 (3.8)	3 (100.0)	15 (19.0)
충청남도 홍성군	78 (100.0)	59 (75.6)	0 (0.0)	2 (2.6)	2 (100.0)	17 (21.8)
충청남도 부여군	75 (100.0)	28 (37.3)	0 (0.0)	1 (1.3)	1 (100.0)	46 (61.3)
충청남도 계룡시	69 (100.0)	43 (62.3)	0 (0.0)	5 (7.2)	5 (100.0)	21 (30.4)
충청남도 서산시	67 (100.0)	34 (50.7)	1 (1.5)	0 (0.0)	-	32 (47.8)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충청남도 태안군	60 (100.0)	19 (31.7)	0 (0.0)	2 (3.3)	2 (100.0)	39 (65.0)
충청남도 금산군	57 (100.0)	37 (64.9)	0 (0.0)	8 (14.0)	8 (100.0)	12 (21.1)
충청남도 공주시	52 (100.0)	30 (57.7)	0 (0.0)	0 (0.0)	-	22 (42.3)
충청남도 서천군	51 (100.0)	23 (45.1)	2 (3.9)	7 (13.7)	7 (100.0)	19 (37.3)
<b>전북(광역+기초14)</b>	<b>1,212 (100.0)</b>	<b>744 (61.4)</b>	<b>75 (6.2)</b>	<b>41 (3.4)</b>	<b>38 (92.7)</b>	<b>352 (29.0)</b>
전라북도	172 (100.0)	114 (66.3)	5 (2.9)	11 (6.4)	11 (100.0)	42 (24.4)
전라북도 남원시	99 (100.0)	58 (58.6)	13 (13.1)	5 (5.1)	5 (100.0)	23 (23.2)
전라북도 김제시	98 (100.0)	56 (57.1)	22 (22.4)	3 (3.1)	3 (100.0)	17 (17.3)
전라북도 전주시	96 (100.0)	69 (71.9)	0 (0.0)	0 (0.0)	-	27 (28.1)
전라북도 고창군	85 (100.0)	47 (55.3)	1 (1.2)	1 (1.2)	1 (100.0)	36 (42.4)
전라북도 순창군	83 (100.0)	49 (59.0)	6 (7.2)	5 (6.0)	4 (80.0)	23 (27.7)
전라북도 진안군	71 (100.0)	40 (56.3)	5 (7.0)	1 (1.4)	1 (100.0)	25 (35.2)
전라북도 무주군	71 (100.0)	46 (64.8)	0 (0.0)	0 (0.0)	-	25 (35.2)
전라북도 익산시	66 (100.0)	34 (51.5)	3 (4.5)	4 (6.1)	4 (100.0)	25 (37.9)
전라북도 정읍시	65 (100.0)	45 (69.2)	3 (4.6)	3 (4.6)	2 (66.7)	14 (21.5)
전라북도 임실군	65 (100.0)	30 (46.2)	2 (3.1)	1 (1.5)	1 (100.0)	32 (49.2)
전라북도 부안군	65 (100.0)	34 (52.3)	10 (15.4)	4 (6.2)	4 (100.0)	17 (26.2)
전라북도 장수군	63 (100.0)	45 (71.4)	1 (1.6)	2 (3.2)	2 (100.0)	15 (23.8)
전라북도 완주군	59 (100.0)	37 (62.7)	4 (6.8)	0 (0.0)	-	18 (30.5)
전라북도 군산시	54 (100.0)	40 (74.1)	0 (0.0)	1 (1.9)	0 (0.0)	13 (24.1)
<b>전남(광역+기초22)</b>	<b>1,659 (100.0)</b>	<b>951 (57.3)</b>	<b>56 (3.4)</b>	<b>109 (6.6)</b>	<b>99 (90.8)</b>	<b>543 (32.7)</b>
전라남도	41 (100.0)	13 (31.7)	1 (2.4)	3 (7.3)	3 (100.0)	24 (58.5)
전라남도 순천시	120 (100.0)	37 (30.8)	5 (4.2)	23 (19.2)	18 (78.3)	55 (45.8)
전라남도 영암군	111 (100.0)	69 (62.2)	11 (9.9)	12 (10.8)	12 (100.0)	19 (17.1)
전라남도 보성군	100 (100.0)	73 (73.0)	0 (0.0)	0 (0.0)	-	27 (27.0)
전라남도 곡성군	90 (100.0)	71 (78.9)	0 (0.0)	0 (0.0)	-	19 (21.1)
전라남도 담양군	81 (100.0)	50 (61.7)	3 (3.7)	2 (2.5)	2 (100.0)	26 (32.1)
전라남도 해남군	81 (100.0)	42 (51.9)	5 (6.2)	3 (3.7)	3 (100.0)	31 (38.3)
전라남도 신안군	77 (100.0)	40 (51.9)	1 (1.3)	1 (1.3)	1 (100.0)	35 (45.5)
전라남도 목포시	76 (100.0)	60 (78.9)	0 (0.0)	0 (0.0)	-	16 (21.1)
전라남도 장흥군	76 (100.0)	52 (68.4)	0 (0.0)	3 (3.9)	3 (100.0)	21 (27.6)
전라남도 강진군	74 (100.0)	45 (60.8)	4 (5.4)	8 (10.8)	8 (100.0)	17 (23.0)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전라남도 여수시	70 (100.0)	21 (30.0)	3 (4.3)	7 (10.0)	4 (57.1)	39 (55.7)
전라남도 광양시	70 (100.0)	25 (35.7)	4 (5.7)	11 (15.7)	11 (100.0)	30 (42.9)
전라남도 영광군	70 (100.0)	38 (54.3)	4 (5.7)	12 (17.1)	11 (91.7)	16 (22.9)
전라남도 화순군	68 (100.0)	56 (82.4)	6 (8.8)	0 (0.0)	-	6 (8.8)
전라남도 무안군	68 (100.0)	45 (66.2)	2 (2.9)	3 (4.4)	2 (66.7)	18 (26.5)
전라남도 함평군	67 (100.0)	43 (64.2)	0 (0.0)	1 (1.5)	1 (100.0)	23 (34.3)
전라남도 나주시	60 (100.0)	27 (45.0)	0 (0.0)	0 (0.0)	-	33 (55.0)
전라남도 진도군	59 (100.0)	27 (45.8)	2 (3.4)	12 (20.3)	12 (100.0)	18 (30.5)
전라남도 완도군	56 (100.0)	31 (55.4)	0 (0.0)	0 (0.0)	-	25 (44.6)
전라남도 장성군	53 (100.0)	39 (73.6)	0 (0.0)	3 (5.7)	3 (100.0)	11 (20.8)
전라남도 고흥군	49 (100.0)	29 (59.2)	0 (0.0)	0 (0.0)	-	20 (40.8)
전라남도 구례군	42 (100.0)	18 (42.9)	5 (11.9)	5 (11.9)	5 (100.0)	14 (33.3)
<b>경북(광역+기초23)</b>	<b>1,493 (100.0)</b>	<b>830 (55.6)</b>	<b>2 (0.1)</b>	<b>111 (7.4)</b>	<b>92 (82.9)</b>	<b>550 (36.8)</b>
경상북도	56 (100.0)	6 (10.7)	0 (0.0)	6 (10.7)	2 (33.3)	44 (78.6)
경상북도 영주시	98 (100.0)	55 (56.1)	0 (0.0)	7 (7.1)	6 (85.7)	36 (36.7)
경상북도 경산시	89 (100.0)	61 (68.5)	0 (0.0)	11 (12.4)	8 (72.7)	17 (19.1)
경상북도 안동시	87 (100.0)	40 (46.0)	0 (0.0)	7 (8.0)	6 (85.7)	40 (46.0)
경상북도 구미시	86 (100.0)	46 (53.5)	0 (0.0)	14 (16.3)	12 (85.7)	26 (30.2)
경상북도 영천시	82 (100.0)	61 (74.4)	0 (0.0)	8 (9.8)	5 (62.5)	13 (15.9)
경상북도 포항시	79 (100.0)	60 (75.9)	0 (0.0)	3 (3.8)	3 (100.0)	16 (20.3)
경상북도 문경시	76 (100.0)	47 (61.8)	0 (0.0)	11 (14.5)	9 (81.8)	18 (23.7)
경상북도 경주시	70 (100.0)	50 (71.4)	1 (1.4)	2 (2.9)	2 (100.0)	17 (24.3)
경상북도 청도군	69 (100.0)	39 (56.5)	0 (0.0)	6 (8.7)	6 (100.0)	24 (34.8)
경상북도 상주시	65 (100.0)	40 (61.5)	0 (0.0)	1 (1.5)	1 (100.0)	24 (36.9)
경상북도 예천군	65 (100.0)	31 (47.7)	0 (0.0)	5 (7.7)	5 (100.0)	29 (44.6)
경상북도 김천시	63 (100.0)	35 (55.6)	0 (0.0)	0 (0.0)	-	28 (44.4)
경상북도 울진군	59 (100.0)	23 (39.0)	0 (0.0)	4 (6.8)	4 (100.0)	32 (54.2)
경상북도 칠곡군	56 (100.0)	27 (48.2)	0 (0.0)	6 (10.7)	6 (100.0)	23 (41.1)
경상북도 봉화군	52 (100.0)	27 (51.9)	0 (0.0)	6 (11.5)	6 (100.0)	19 (36.5)
경상북도 영양군	49 (100.0)	36 (73.5)	0 (0.0)	0 (0.0)	-	13 (26.5)
경상북도 고령군	46 (100.0)	23 (50.0)	0 (0.0)	0 (0.0)	-	23 (50.0)
경상북도 영덕군	45 (100.0)	35 (77.8)	0 (0.0)	1 (2.2)	1 (100.0)	9 (20.0)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경상북도 군위군	43 (100.0)	18 (41.9)	0 (0.0)	2 (4.7)	1 (50.0)	23 (53.5)
경상북도 청송군	43 (100.0)	18 (41.9)	0 (0.0)	2 (4.7)	2 (100.0)	23 (53.5)
경상북도 울릉군	43 (100.0)	22 (51.2)	0 (0.0)	7 (16.3)	6 (85.7)	14 (32.6)
경상북도 성주군	38 (100.0)	15 (39.5)	0 (0.0)	0 (0.0)	-	23 (60.5)
경상북도 의성군	34 (100.0)	15 (44.1)	1 (2.9)	2 (5.9)	1 (50.0)	16 (47.1)
<b>경남(광역+기초18)</b>	<b>1,405 (100.0)</b>	<b>561 (39.9)</b>	<b>130 (9.3)</b>	<b>244 (17.4)</b>	<b>146 (59.8)</b>	<b>470 (33.5)</b>
경상남도	171 (100.0)	102 (59.6)	6 (3.5)	10 (5.8)	6 (60.0)	53 (31.0)
경상남도 창원시	116 (100.0)	52 (44.8)	17 (14.7)	13 (11.2)	9 (69.2)	34 (29.3)
경상남도 거제시	97 (100.0)	44 (45.4)	10 (10.3)	19 (19.6)	6 (31.6)	24 (24.7)
경상남도 사천시	89 (100.0)	33 (37.1)	6 (6.7)	21 (23.6)	5 (23.8)	29 (32.6)
경상남도 진주시	87 (100.0)	40 (46.0)	16 (18.4)	8 (9.2)	6 (75.0)	23 (26.4)
경상남도 양산시	87 (100.0)	25 (28.7)	4 (4.6)	23 (26.4)	19 (82.6)	35 (40.2)
경상남도 통영시	77 (100.0)	23 (29.9)	5 (6.5)	19 (24.7)	2 (10.5)	30 (39.0)
경상남도 남해군	76 (100.0)	33 (43.4)	10 (13.2)	13 (17.1)	10 (76.9)	20 (26.3)
경상남도 밀양시	74 (100.0)	21 (28.4)	9 (12.2)	16 (21.6)	13 (81.3)	28 (37.8)
경상남도 고성군	61 (100.0)	16 (26.2)	5 (8.2)	18 (29.5)	5 (27.8)	22 (36.1)
경상남도 함양군	59 (100.0)	30 (50.8)	5 (8.5)	8 (13.6)	6 (75.0)	16 (27.1)
경상남도 합천군	59 (100.0)	16 (27.1)	8 (13.6)	9 (15.3)	8 (88.9)	26 (44.1)
경상남도 거창군	57 (100.0)	28 (49.1)	2 (3.5)	12 (21.1)	5 (41.7)	15 (26.3)
경상남도 김해시	54 (100.0)	26 (48.1)	3 (5.6)	9 (16.7)	6 (66.7)	16 (29.6)
경상남도 산청군	53 (100.0)	17 (32.1)	6 (11.3)	15 (28.3)	14 (93.3)	15 (28.3)
경상남도 함안군	49 (100.0)	16 (32.7)	6 (12.2)	4 (8.2)	3 (75.0)	23 (46.9)
경상남도 창녕군	49 (100.0)	16 (32.7)	3 (6.1)	7 (14.3)	6 (85.7)	23 (46.9)
경상남도 의령군	48 (100.0)	11 (22.9)	4 (8.3)	12 (25.0)	9 (75.0)	21 (43.8)
경상남도 하동군	42 (100.0)	12 (28.6)	5 (11.9)	8 (19.0)	8 (100.0)	17 (40.5)
<b>제주특별자치도</b>	<b>143 (100.0)</b>	<b>66 (46.2)</b>	<b>28 (19.6)</b>	<b>17 (11.9)</b>	<b>13 (76.5)</b>	<b>32 (22.4)</b>
<b>시·도 교육청 (17)</b>	<b>539 (100.0)</b>	<b>208 (38.6)</b>	<b>8 (1.5)</b>	<b>9 (1.7)</b>	<b>7 (77.8)</b>	<b>314 (58.3)</b>
충청남도교육청	73 (100.0)	57 (78.1)	2 (2.7)	0 (0.0)	-	14 (19.2)
경상남도교육청	43 (100.0)	28 (65.1)	0 (0.0)	0 (0.0)	-	15 (34.9)
경상북도교육청	42 (100.0)	25 (59.5)	0 (0.0)	2 (4.8)	2 (100.0)	15 (35.7)
전라북도교육청	34 (100.0)	0 (0.0)	0 (0.0)	0 (0.0)	-	34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33 (100.0)	18 (54.5)	0 (0.0)	1 (3.0)	0 (0.0)	14 (42.4)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강원도교육청	33 (100.0)	13 (39.4)	0 (0.0)	0 (0.0)	-	20 (60.6)
충청북도교육청	32 (100.0)	0 (0.0)	0 (0.0)	0 (0.0)	-	32 (100.0)
광주광역시교육청	30 (100.0)	4 (13.3)	0 (0.0)	0 (0.0)	-	26 (86.7)
부산광역시교육청	29 (100.0)	7 (24.1)	1 (3.4)	2 (6.9)	2 (100.0)	19 (65.5)
울산광역시교육청	29 (100.0)	9 (31.0)	0 (0.0)	0 (0.0)	-	20 (69.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9 (100.0)	10 (34.5)	0 (0.0)	0 (0.0)	-	19 (6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8 (100.0)	11 (39.3)	1 (3.6)	0 (0.0)	-	16 (57.1)
대구광역시교육청	27 (100.0)	2 (7.4)	0 (0.0)	0 (0.0)	-	25 (92.6)
대전광역시교육청	27 (100.0)	5 (18.5)	1 (3.7)	0 (0.0)	-	21 (77.8)
경기도교육청	24 (100.0)	8 (33.3)	2 (8.3)	2 (8.3)	1 (50.0)	12 (50.0)
서울특별시교육청	21 (100.0)	10 (47.6)	0 (0.0)	2 (9.5)	2 (100.0)	9 (42.9)
전라남도교육청	5 (100.0)	1 (20.0)	1 (20.0)	0 (0.0)	-	3 (60.0)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관리번호로 등록된 계획 성별영향평가 과제

주2 : b) 개선사항 없음은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선없음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과제

주3 : c) 자체개선안 동의는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에 정책개선안을 자체적으로 충실하게 제시한 과제

주4 : d) 개선의견은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평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여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주5 : e) 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개선의견 과제 수 × 100

주6 : f) 기타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중단된 과제

주7 : '-'는 해당 없음 의미

〈부록 표 5-2〉 2022년 기관별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전 체	127 (100.0)	29 (22.8)	27 (21.3)	70 (55.1)	68 (97.1)	1 (0.8)
지방자치단체	127 (100.0)	29 (22.8)	27 (21.3)	70 (55.1)	68 (97.1)	1 (0.8)
서울(광역+기초25)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서울특별시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서울특별시 종로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중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용산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성동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광진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중랑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성북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강북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도봉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노원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은평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마포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양천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강서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구로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금천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동작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관악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서초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강남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송파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서울특별시 강동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모  
양개  
요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III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부  
록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b>부산(광역+기초16)</b>	<b>14 (100.0)</b>	<b>1 (7.1)</b>	<b>0 (0.0)</b>	<b>13 (92.9)</b>	<b>13 (100.0)</b>	<b>0 (0.0)</b>
부산광역시	2 (100.0)	0 (0.0)	0 (0.0)	2 (100.0)	2 (100.0)	0 (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 (100.0)	0 (0.0)	0 (0.0)	2 (100.0)	2 (100.0)	0 (0.0)
부산광역시 사하구	2 (100.0)	0 (0.0)	0 (0.0)	2 (100.0)	2 (100.0)	0 (0.0)
부산광역시 금정구	2 (100.0)	1 (50.0)	0 (0.0)	1 (50.0)	1 (100.0)	0 (0.0)
부산광역시 서구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부산광역시 동구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부산광역시 동래구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부산광역시 남구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부산광역시 북구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부산광역시 사상구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부산광역시 중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부산광역시 기장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부산광역시 영도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부산광역시 강서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부산광역시 연제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부산광역시 수영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b>대구(광역+기초8)</b>	<b>3 (100.0)</b>	<b>3 (100.0)</b>	<b>0 (0.0)</b>	<b>0 (0.0)</b>	<b>-</b>	<b>0 (0.0)</b>
대구광역시	1 (100.0)	1 (100.0)	0 (0.0)	0 (0.0)	-	0 (0.0)
대구광역시 수성구	1 (100.0)	1 (100.0)	0 (0.0)	0 (0.0)	-	0 (0.0)
대구광역시 중구	1 (100.0)	1 (100.0)	0 (0.0)	0 (0.0)	-	0 (0.0)
대구광역시 동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대구광역시 서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대구광역시 남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대구광역시 북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대구광역시 달서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대구광역시 달성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개선 수용률	기타	
<b>인천(광역+기초10)</b>	<b>13 (100.0)</b>	<b>1 (7.7)</b>	<b>4 (30.8)</b>	<b>8 (61.5)</b>	<b>8 (100.0)</b>	<b>0 (0.0)</b>	
인천광역시	3 (100.0)	0 (0.0)	1 (33.3)	2 (66.7)	2 (100.0)	0 (0.0)	
인천광역시 남동구	3 (100.0)	0 (0.0)	0 (0.0)	3 (100.0)	3 (100.0)	0 (0.0)	
인천광역시 서구	2 (100.0)	0 (0.0)	2 (100.0)	0 (0.0)	-	0 (0.0)	
인천광역시 중구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인천광역시 동구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 (100.0)	1 (100.0)	0 (0.0)	0 (0.0)	-	0 (0.0)	
인천광역시 부평구	1 (100.0)	0 (0.0)	1 (100.0)	0 (0.0)	-	0 (0.0)	
인천광역시 계양구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인천광역시 연수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인천광역시 강화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인천광역시 옹진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b>광주(광역+기초5)</b>	<b>1 (100.0)</b>	<b>0 (0.0)</b>	<b>0 (0.0)</b>	<b>1 (100.0)</b>	<b>1 (100.0)</b>	<b>0 (0.0)</b>	
광주광역시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광주광역시 동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광주광역시 서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광주광역시 남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광주광역시 북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광주광역시 광산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b>대전(광역+기초5)</b>	<b>6 (100.0)</b>	<b>3 (50.0)</b>	<b>2 (33.3)</b>	<b>1 (16.7)</b>	<b>1 (100.0)</b>	<b>0 (0.0)</b>	
대전광역시	2 (100.0)	0 (0.0)	2 (100.0)	0 (0.0)	-	0 (0.0)	
대전광역시 서구	3 (100.0)	2 (66.7)	0 (0.0)	1 (33.3)	1 (100.0)	0 (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 (100.0)	1 (100.0)	0 (0.0)	0 (0.0)	-	0 (0.0)	
대전광역시 동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대전광역시 중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대전광역시 대덕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b>울산(광역+기초5)</b>	<b>5 (100.0)</b>	<b>1 (20.0)</b>	<b>0 (0.0)</b>	<b>4 (80.0)</b>	<b>4 (100.0)</b>	<b>0 (0.0)</b>	
울산광역시	2 (100.0)	0 (0.0)	0 (0.0)	2 (100.0)	2 (100.0)	0 (0.0)	
울산광역시 북구	2 (100.0)	0 (0.0)	0 (0.0)	2 (100.0)	2 (100.0)	0 (0.0)	
울산광역시 울주군	1 (100.0)	1 (100.0)	0 (0.0)	0 (0.0)	-	0 (0.0)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울산광역시 중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울산광역시 남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울산광역시 동구	0 (0.0)	0 (0.0)	0 (0.0)	0 (0.0)	-	0 (0.0)
세종특별자치시	7 (100.0)	1 (14.3)	2 (28.6)	4 (57.1)	4 (100.0)	0 (0.0)
경기(광역+기초31)	41 (100.0)	10 (24.4)	12 (29.3)	19 (46.3)	18 (94.7)	0 (0.0)
경기도	1 (100.0)	0 (0.0)	1 (100.0)	0 (0.0)	-	0 (0.0)
경기도 안산시	5 (100.0)	3 (60.0)	0 (0.0)	2 (40.0)	2 (100.0)	0 (0.0)
경기도 용인시	5 (100.0)	0 (0.0)	0 (0.0)	5 (100.0)	5 (100.0)	0 (0.0)
경기도 수원시	4 (100.0)	0 (0.0)	2 (50.0)	2 (50.0)	2 (100.0)	0 (0.0)
경기도 남양주시	4 (100.0)	0 (0.0)	0 (0.0)	4 (100.0)	4 (100.0)	0 (0.0)
경기도 안양시	3 (100.0)	1 (33.3)	2 (66.7)	0 (0.0)	-	0 (0.0)
경기도 의정부시	3 (100.0)	0 (0.0)	3 (100.0)	0 (0.0)	-	0 (0.0)
경기도 화성시	3 (100.0)	0 (0.0)	1 (33.3)	2 (66.7)	2 (100.0)	0 (0.0)
경기도 군포시	3 (100.0)	0 (0.0)	1 (33.3)	2 (66.7)	2 (100.0)	0 (0.0)
경기도 과천시	2 (100.0)	2 (100.0)	0 (0.0)	0 (0.0)	-	0 (0.0)
경기도 고양시	1 (100.0)	0 (0.0)	1 (100.0)	0 (0.0)	-	0 (0.0)
경기도 시흥시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경기도 파주시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경기도 광주시	1 (100.0)	1 (100.0)	0 (0.0)	0 (0.0)	-	0 (0.0)
경기도 김포시	1 (100.0)	1 (100.0)	0 (0.0)	0 (0.0)	-	0 (0.0)
경기도 안성시	1 (100.0)	1 (100.0)	0 (0.0)	0 (0.0)	-	0 (0.0)
경기도 오산시	1 (100.0)	0 (0.0)	1 (100.0)	0 (0.0)	-	0 (0.0)
경기도 연천군	1 (100.0)	1 (100.0)	0 (0.0)	0 (0.0)	-	0 (0.0)
경기도 부천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기도 하남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기도 평택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기도 여주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기도 이천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기도 가평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기도 성남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경기도 포천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기도 광명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기도 양주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기도 의왕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기도 양평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기도 동두천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기도 구리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b>강원(광역+기초18)</b>	<b>4 (100.0)</b>	<b>0 (0.0)</b>	<b>1 (25.0)</b>	<b>3 (75.0)</b>	<b>3 (100.0)</b>	<b>0 (0.0)</b>
강원도	0 (0.0)	0 (0.0)	0 (0.0)	0 (0.0)	-	0 (0.0)
강원도 태백시	2 (100.0)	0 (0.0)	0 (0.0)	2 (100.0)	2 (100.0)	0 (0.0)
강원도 강릉시	1 (100.0)	0 (0.0)	1 (100.0)	0 (0.0)	-	0 (0.0)
강원도 철원군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강원도 고성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강원도 양양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강원도 춘천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강원도 원주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강원도 동해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강원도 속초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강원도 삼척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강원도 홍천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강원도 횡성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강원도 영월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강원도 평창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강원도 정선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강원도 화천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강원도 양구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강원도 인제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b>충북(광역+기초11)</b>	<b>9 (100.0)</b>	<b>3 (33.3)</b>	<b>2 (22.2)</b>	<b>4 (44.4)</b>	<b>4 (100.0)</b>	<b>0 (0.0)</b>
충청북도	4 (100.0)	2 (50.0)	0 (0.0)	2 (50.0)	2 (100.0)	0 (0.0)
충청북도 청주시	2 (100.0)	0 (0.0)	1 (50.0)	1 (50.0)	1 (100.0)	0 (0.0)

요약

I  
개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충청북도 제천시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충청북도 영동군	1 (100.0)	1 (100.0)	0 (0.0)	0 (0.0)	-	0 (0.0)
충청북도 진천군	1 (100.0)	0 (0.0)	1 (100.0)	0 (0.0)	-	0 (0.0)
충청북도 음성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북도 충주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북도 보은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북도 옥천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북도 증평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북도 괴산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북도 단양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b>충남(광역+기초15)</b>	<b>3 (100.0)</b>	<b>0 (0.0)</b>	<b>0 (0.0)</b>	<b>3 (100.0)</b>	<b>2 (66.7)</b>	<b>0 (0.0)</b>
충청남도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남도 아산시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충청남도 부여군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충청남도 서천군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충청남도 천안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남도 보령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남도 논산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남도 예산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남도 공주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남도 서산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남도 계룡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남도 당진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남도 금산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남도 청양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남도 홍성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남도 태안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b>전북(광역+기초14)</b>	<b>2 (100.0)</b>	<b>0 (0.0)</b>	<b>0 (0.0)</b>	<b>2 (100.0)</b>	<b>2 (100.0)</b>	<b>0 (0.0)</b>
전라북도	2 (100.0)	0 (0.0)	0 (0.0)	2 (100.0)	2 (100.0)	0 (0.0)
전라북도 익산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전라북도 부안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북도 전주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북도 군산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북도 정읍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북도 남원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북도 김제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북도 완주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북도 진안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북도 무주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북도 장수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북도 임실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북도 순창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북도 고창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b>전남(광역+기초22)</b>	<b>3 (100.0)</b>	<b>1 (33.3)</b>	<b>1 (33.3)</b>	<b>1 (33.3)</b>	<b>1 (100.0)</b>	<b>0 (0.0)</b>
전라남도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목포시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전라남도 영암군	1 (100.0)	0 (0.0)	1 (100.0)	0 (0.0)	-	0 (0.0)
전라남도 신안군	1 (100.0)	1 (10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화순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영광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여수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순천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나주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광양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담양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곡성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구례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고흥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보성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장흥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전라남도 강진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해남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무안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함평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장성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완도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 진도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b>경북(광역+기초23)</b>	<b>3 (100.0)</b>	<b>1 (33.3)</b>	<b>1 (33.3)</b>	<b>1 (33.3)</b>	<b>1 (100.0)</b>	<b>0 (0.0)</b>
경상북도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김천시	1 (100.0)	1 (10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청도군	1 (100.0)	0 (0.0)	1 (100.0)	0 (0.0)	-	0 (0.0)
경상북도 칠곡군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경상북도 영주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봉화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포항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경주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안동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구미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영천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상주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문경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경산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군위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의성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청송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영양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영덕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고령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성주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예천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경상북도 울진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 울릉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b>경남(광역+기초18)</b>	<b>7 (100.0)</b>	<b>3 (42.9)</b>	<b>1 (14.3)</b>	<b>2 (28.6)</b>	<b>2 (100.0)</b>	<b>1 (14.3)</b>
경상남도	1 (100.0)	1 (100.0)	0 (0.0)	0 (0.0)	-	
경상남도 창원시	2 (100.0)	0 (0.0)	1 (50.0)	1 (50.0)	1 (100.0)	0 (0.0)
경상남도 사천시	2 (100.0)	1 (50.0)	0 (0.0)	0 (0.0)	-	1 (50.0)
경상남도 밀양시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경상남도 거창군	1 (100.0)	1 (100.0)	0 (0.0)	0 (0.0)	-	0 (0.0)
경상남도 진주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남도 의령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남도 합천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남도 통영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남도 김해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남도 거제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남도 양산시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남도 함안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남도 창녕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남도 고성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남도 남해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남도 하동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남도 산청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남도 함양군	0 (0.0)	0 (0.0)	0 (0.0)	0 (0.0)	-	0 (0.0)
<b>제주특별자치도</b>	<b>4 (100.0)</b>	<b>0 (0.0)</b>	<b>1 (25.0)</b>	<b>3 (75.0)</b>	<b>3 (100.0)</b>	<b>0 (0.0)</b>
<b>시·도 교육청(17)</b>	<b>1 (100.0)</b>	<b>1 (100.0)</b>	<b>0 (0.0)</b>	<b>0 (0.0)</b>	<b>-</b>	<b>0 (0.0)</b>
서울특별시교육청	1 (100.0)	1 (100.0)	0 (0.0)	0 (0.0)	-	0 (0.0)
부산광역시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0 (0.0)
대구광역시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0 (0.0)
인천광역시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0 (0.0)
광주광역시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0 (0.0)
대전광역시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0 (0.0)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기타 <sup>f)</sup>
울산광역시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0 (0.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기도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0 (0.0)
강원도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북도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0 (0.0)
충청남도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북도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0 (0.0)
전라남도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북도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0 (0.0)
경상남도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0 (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0 (0.0)

-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관리번호로 등록된 계획 성별영향평가 과제  
 주2 : b) 개선사항 없음은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선없음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과제  
 주3 : c) 자체개선안 동의는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에 정책개선안을 자체적으로 충실하게 제시한 과제  
 주4 : d) 개선의견은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평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여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주5 : e) 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개선의견 과제 수 × 100  
 주6 : f) 기타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중단된 과제  
 주7 : '-'는 해당 없음 의미



〈부록 표 5-3〉 2022년 기관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전체	7,388 (100.0)	941 (12.7)	5,430 (73.5)	1,017 (13.8)	969 (95.3)
중앙행정기관(46)	148 (100.0)	27 (18.2)	62 (41.9)	59 (39.9)	53 (8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100.0)	2 (11.8)	5 (29.4)	10 (58.8)	7 (70.0)
농림축산식품부	12 (100.0)	2 (16.7)	4 (33.3)	6 (50.0)	6 (100.0)
고용노동부	10 (100.0)	0 (0.0)	4 (40.0)	6 (60.0)	4 (66.7)
국토교통부	12 (100.0)	1 (8.3)	6 (50.0)	5 (41.7)	5 (100.0)
해양수산부	10 (100.0)	4 (40.0)	3 (30.0)	3 (30.0)	3 (100.0)
문화체육관광부	8 (100.0)	1 (12.5)	4 (50.0)	3 (37.5)	3 (100.0)
국방부	7 (100.0)	0 (0.0)	4 (57.1)	3 (42.9)	3 (100.0)
여성가족부	6 (100.0)	3 (50.0)	1 (16.7)	2 (33.3)	2 (100.0)
외교부	5 (100.0)	0 (0.0)	1 (20.0)	4 (80.0)	4 (100.0)
보건복지부	5 (100.0)	1 (20.0)	1 (20.0)	3 (60.0)	3 (100.0)
산림청	5 (100.0)	3 (60.0)	1 (20.0)	1 (20.0)	1 (100.0)
문화재청	4 (100.0)	0 (0.0)	4 (100.0)	0 (0.0)	-
교육부	3 (100.0)	0 (0.0)	2 (66.7)	1 (33.3)	1 (100.0)
환경부	3 (100.0)	1 (33.3)	1 (33.3)	1 (33.3)	1 (100.0)
경찰청	3 (100.0)	0 (0.0)	3 (100.0)	0 (0.0)	-
농촌진흥청	3 (100.0)	0 (0.0)	3 (100.0)	0 (0.0)	-
질병관리청	3 (100.0)	2 (66.7)	0 (0.0)	1 (33.3)	1 (100.0)
통일부	2 (100.0)	0 (0.0)	2 (100.0)	0 (0.0)	-
법무부	2 (100.0)	0 (0.0)	1 (50.0)	1 (50.0)	1 (100.0)
행정안전부	2 (100.0)	1 (50.0)	0 (0.0)	1 (50.0)	1 (100.0)
중소벤처기업부	2 (100.0)	1 (50.0)	0 (0.0)	1 (50.0)	1 (100.0)
국가보훈처	2 (100.0)	0 (0.0)	1 (50.0)	1 (50.0)	1 (100.0)
원자력안전위원회	2 (100.0)	1 (50.0)	0 (0.0)	1 (50.0)	1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2 (100.0)	1 (50.0)	0 (0.0)	1 (50.0)	1 (100.0)
특허청	2 (100.0)	0 (0.0)	2 (100.0)	0 (0.0)	-
해양경찰청	2 (100.0)	0 (0.0)	1 (50.0)	1 (50.0)	1 (100.0)
방송통신위원회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공정거래위원회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국민권익위원회	1 (100.0)	1 (100.0)	0 (0.0)	0 (0.0)	-

부  
록I  
개  
요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부  
록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인사혁신처	1 (100.0)	0 (0.0)	1 (100.0)	0 (0.0)	-
법제처	1 (100.0)	0 (0.0)	1 (100.0)	0 (0.0)	-
국세청	1 (100.0)	0 (0.0)	1 (100.0)	0 (0.0)	-
관세청	1 (100.0)	1 (100.0)	0 (0.0)	0 (0.0)	-
조달청	1 (100.0)	0 (0.0)	1 (100.0)	0 (0.0)	-
병무청	1 (100.0)	0 (0.0)	1 (100.0)	0 (0.0)	-
방위사업청	1 (100.0)	1 (100.0)	0 (0.0)	0 (0.0)	-
소방청	1 (100.0)	0 (0.0)	1 (100.0)	0 (0.0)	-
기상청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새만금개발청	1 (100.0)	0 (0.0)	1 (100.0)	0 (0.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00.0)	0 (0.0)	1 (100.0)	0 (0.0)	-
기획재정부	0 (0.0)	0 (0.0)	0 (0.0)	0 (0.0)	-
산업통상자원부	0 (0.0)	0 (0.0)	0 (0.0)	0 (0.0)	-
금융위원회	0 (0.0)	0 (0.0)	0 (0.0)	0 (0.0)	-
국무조정실	0 (0.0)	0 (0.0)	0 (0.0)	0 (0.0)	-
통계청	0 (0.0)	0 (0.0)	0 (0.0)	0 (0.0)	-
대검찰청	0 (0.0)	0 (0.0)	0 (0.0)	0 (0.0)	-
<b>지방자치단체</b>	<b>7,026 (100.0)</b>	<b>848 (12.1)</b>	<b>5,248 (74.7)</b>	<b>930 (13.2)</b>	<b>888 (95.5)</b>
<b>서울(광역+기초25)</b>	<b>558 (100.0)</b>	<b>43 (7.7)</b>	<b>353 (63.3)</b>	<b>162 (29.0)</b>	<b>155 (95.7)</b>
서울특별시	73 (100.0)	0 (0.0)	30 (41.1)	43 (58.9)	40 (93.0)
서울특별시 도봉구	34 (100.0)	4 (11.8)	13 (38.2)	17 (50.0)	14 (82.4)
서울특별시 은평구	25 (100.0)	2 (8.0)	12 (48.0)	11 (44.0)	11 (1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23 (100.0)	0 (0.0)	23 (100.0)	0 (0.0)	-
서울특별시 금천구	23 (100.0)	0 (0.0)	20 (87.0)	3 (13.0)	3 (1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22 (100.0)	2 (9.1)	13 (59.1)	7 (31.8)	7 (1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21 (100.0)	0 (0.0)	7 (33.3)	14 (66.7)	14 (1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21 (100.0)	1 (4.8)	20 (95.2)	0 (0.0)	-
서울특별시 강서구	20 (100.0)	0 (0.0)	14 (70.0)	6 (30.0)	6 (1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 (100.0)	10 (50.0)	3 (15.0)	7 (35.0)	7 (1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20 (100.0)	0 (0.0)	15 (75.0)	5 (25.0)	5 (1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20 (100.0)	3 (15.0)	17 (85.0)	0 (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19 (100.0)	0 (0.0)	19 (100.0)	0 (0.0)	-
서울특별시 노원구	19 (100.0)	0 (0.0)	15 (78.9)	4 (21.1)	4 (100.0)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서울특별시 송파구	19 (100.0)	0 (0.0)	9 (47.4)	10 (52.6)	10 (1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18 (100.0)	2 (11.1)	11 (61.1)	5 (27.8)	4 (80.0)
서울특별시 구로구	18 (100.0)	0 (0.0)	18 (100.0)	0 (0.0)	-
서울특별시 동작구	18 (100.0)	0 (0.0)	15 (83.3)	3 (16.7)	3 (1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17 (100.0)	0 (0.0)	17 (100.0)	0 (0.0)	-
서울특별시 서초구	17 (100.0)	12 (70.6)	5 (29.4)	0 (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17 (100.0)	0 (0.0)	17 (100.0)	0 (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16 (100.0)	0 (0.0)	4 (25.0)	12 (75.0)	12 (1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16 (100.0)	0 (0.0)	11 (68.8)	5 (31.3)	5 (1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5 (100.0)	1 (6.7)	14 (93.3)	0 (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4 (100.0)	0 (0.0)	10 (71.4)	4 (28.6)	4 (100.0)
서울특별시 중구	13 (100.0)	6 (46.2)	1 (7.7)	6 (46.2)	6 (100.0)
<b>부산(광역시+기초16)</b>	<b>419 (100.0)</b>	<b>42 (10.0)</b>	<b>181 (43.2)</b>	<b>196 (46.8)</b>	<b>188 (95.9)</b>
부산광역시	69 (100.0)	2 (2.9)	60 (87.0)	7 (10.1)	7 (1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33 (100.0)	2 (6.1)	13 (39.4)	18 (54.5)	16 (88.9)
부산광역시 강서구	33 (100.0)	18 (54.5)	7 (21.2)	8 (24.2)	6 (7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8 (100.0)	0 (0.0)	21 (75.0)	7 (25.0)	7 (100.0)
부산광역시 영도구	26 (100.0)	2 (7.7)	3 (11.5)	21 (80.8)	21 (1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24 (100.0)	5 (20.8)	11 (45.8)	8 (33.3)	7 (87.5)
부산광역시 연제구	21 (100.0)	0 (0.0)	0 (0.0)	21 (100.0)	20 (95.2)
부산광역시 중구	20 (100.0)	0 (0.0)	3 (15.0)	17 (85.0)	16 (94.1)
부산광역시 서구	20 (100.0)	0 (0.0)	10 (50.0)	10 (50.0)	10 (100.0)
부산광역시 동구	20 (100.0)	8 (40.0)	1 (5.0)	11 (55.0)	11 (1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20 (100.0)	2 (10.0)	3 (15.0)	15 (75.0)	15 (1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19 (100.0)	1 (5.3)	5 (26.3)	13 (68.4)	13 (1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19 (100.0)	0 (0.0)	13 (68.4)	6 (31.6)	6 (100.0)
부산광역시 북구	18 (100.0)	2 (11.1)	10 (55.6)	6 (33.3)	6 (1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8 (100.0)	0 (0.0)	7 (38.9)	11 (61.1)	10 (90.9)
부산광역시 남구	16 (100.0)	0 (0.0)	4 (25.0)	12 (75.0)	12 (100.0)
부산광역시 금정구	15 (100.0)	0 (0.0)	10 (66.7)	5 (33.3)	5 (100.0)
<b>대구(광역시+기초8)</b>	<b>249 (100.0)</b>	<b>79 (31.7)</b>	<b>149 (59.8)</b>	<b>21 (8.4)</b>	<b>20 (95.2)</b>
대구광역시	59 (100.0)	25 (42.4)	34 (57.6)	0 (0.0)	-
대구광역시 달성군	30 (100.0)	7 (23.3)	23 (76.7)	0 (0.0)	-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대구광역시 달서구	25 (100.0)	11 (44.0)	14 (56.0)	0 (0.0)	-
대구광역시 북구	25 (100.0)	16 (64.0)	9 (36.0)	0 (0.0)	-
대구광역시 동구	24 (100.0)	0 (0.0)	10 (41.7)	14 (58.3)	14 (100.0)
대구광역시 서구	22 (100.0)	2 (9.1)	20 (90.9)	0 (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22 (100.0)	3 (13.6)	18 (81.8)	1 (4.5)	1 (100.0)
대구광역시 중구	21 (100.0)	8 (38.1)	8 (38.1)	5 (23.8)	5 (100.0)
대구광역시 남구	21 (100.0)	7 (33.3)	13 (61.9)	1 (4.8)	0 (0.0)
<b>인천(광역시+기초10)</b>	<b>352 (100.0)</b>	<b>28 (8.0)</b>	<b>250 (71.0)</b>	<b>74 (21.0)</b>	<b>69 (93.2)</b>
인천광역시	77 (100.0)	4 (5.2)	68 (88.3)	5 (6.5)	5 (1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45 (100.0)	3 (6.7)	30 (66.7)	12 (26.7)	11 (91.7)
인천광역시 중구	39 (100.0)	13 (33.3)	26 (66.7)	0 (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33 (100.0)	2 (6.1)	30 (90.9)	1 (3.0)	1 (1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31 (100.0)	1 (3.2)	23 (74.2)	7 (22.6)	7 (1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30 (100.0)	0 (0.0)	9 (30.0)	21 (70.0)	19 (90.5)
인천광역시 서구	30 (100.0)	2 (6.7)	23 (76.7)	5 (16.7)	5 (1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28 (100.0)	0 (0.0)	25 (89.3)	3 (10.7)	3 (100.0)
인천광역시 동구	17 (100.0)	0 (0.0)	9 (52.9)	8 (47.1)	8 (100.0)
인천광역시 강화군	11 (100.0)	2 (18.2)	2 (18.2)	7 (63.6)	6 (85.7)
인천광역시 옹진군	11 (100.0)	1 (9.1)	5 (45.5)	5 (45.5)	4 (80.0)
<b>광주(광역시+기초5)</b>	<b>237 (100.0)</b>	<b>0 (0.0)</b>	<b>215 (90.7)</b>	<b>22 (9.3)</b>	<b>20 (90.9)</b>
광주광역시	74 (100.0)	0 (0.0)	69 (93.2)	5 (6.8)	4 (80.0)
광주광역시 북구	48 (100.0)	0 (0.0)	43 (89.6)	5 (10.4)	4 (80.0)
광주광역시 서구	38 (100.0)	0 (0.0)	29 (76.3)	9 (23.7)	9 (1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27 (100.0)	0 (0.0)	25 (92.6)	2 (7.4)	2 (100.0)
광주광역시 남구	26 (100.0)	0 (0.0)	25 (96.2)	1 (3.8)	1 (100.0)
광주광역시 동구	24 (100.0)	0 (0.0)	24 (100.0)	0 (0.0)	-
<b>대전(광역시+기초5)</b>	<b>203 (100.0)</b>	<b>14 (6.9)</b>	<b>188 (92.6)</b>	<b>1 (0.5)</b>	<b>1 (100.0)</b>
대전광역시	76 (100.0)	1 (1.3)	75 (98.7)	0 (0.0)	-
대전광역시 서구	33 (100.0)	1 (3.0)	31 (93.9)	1 (3.0)	1 (1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27 (100.0)	0 (0.0)	27 (100.0)	0 (0.0)	-
대전광역시 중구	25 (100.0)	3 (12.0)	22 (88.0)	0 (0.0)	-
대전광역시 동구	22 (100.0)	0 (0.0)	22 (100.0)	0 (0.0)	-
대전광역시 유성구	20 (100.0)	9 (45.0)	11 (55.0)	0 (0.0)	-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b>울산(광역+기초5)</b>	<b>167 (100.0)</b>	<b>15 (9.0)</b>	<b>139 (83.2)</b>	<b>13 (7.8)</b>	<b>12 (92.3)</b>
울산광역시	46 (100.0)	0 (0.0)	43 (93.5)	3 (6.5)	3 (1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27 (100.0)	0 (0.0)	23 (85.2)	4 (14.8)	3 (75.0)
울산광역시 중구	26 (100.0)	1 (3.8)	23 (88.5)	2 (7.7)	2 (100.0)
울산광역시 북구	26 (100.0)	0 (0.0)	25 (96.2)	1 (3.8)	1 (100.0)
울산광역시 동구	22 (100.0)	13 (59.1)	8 (36.4)	1 (4.5)	1 (100.0)
울산광역시 남구	20 (100.0)	1 (5.0)	17 (85.0)	2 (10.0)	2 (100.0)
<b>세종특별자치시</b>	<b>61 (100.0)</b>	<b>6 (9.8)</b>	<b>31 (50.8)</b>	<b>24 (39.3)</b>	<b>23 (95.8)</b>
<b>경기(광역+기초31)</b>	<b>1,376 (100.0)</b>	<b>85 (6.2)</b>	<b>1183 (86.0)</b>	<b>108 (7.8)</b>	<b>100 (92.6)</b>
경기도	120 (100.0)	3 (2.5)	110 (91.7)	7 (5.8)	5 (71.4)
경기도 성남시	102 (100.0)	3 (2.9)	97 (95.1)	2 (2.0)	2 (100.0)
경기도 의정부시	66 (100.0)	0 (0.0)	62 (93.9)	4 (6.1)	4 (100.0)
경기도 수원시	63 (100.0)	0 (0.0)	62 (98.4)	1 (1.6)	1 (100.0)
경기도 안산시	62 (100.0)	17 (27.4)	45 (72.6)	0 (0.0)	-
경기도 고양시	56 (100.0)	0 (0.0)	56 (100.0)	0 (0.0)	-
경기도 파주시	55 (100.0)	0 (0.0)	49 (89.1)	6 (10.9)	4 (66.7)
경기도 양주시	53 (100.0)	0 (0.0)	53 (100.0)	0 (0.0)	-
경기도 용인시	53 (100.0)	1 (1.9)	52 (98.1)	0 (0.0)	-
경기도 화성시	51 (100.0)	1 (2.0)	29 (56.9)	21 (41.2)	21 (100.0)
경기도 김포시	51 (100.0)	25 (49.0)	26 (51.0)	0 (0.0)	-
경기도 부천시	48 (100.0)	1 (2.1)	47 (97.9)	0 (0.0)	-
경기도 평택시	48 (100.0)	1 (2.1)	37 (77.1)	10 (20.8)	9 (90.0)
경기도 남양주시	41 (100.0)	0 (0.0)	41 (100.0)	0 (0.0)	-
경기도 시흥시	41 (100.0)	2 (4.9)	24 (58.5)	15 (36.6)	15 (100.0)
경기도 안양시	39 (100.0)	2 (5.1)	35 (89.7)	2 (5.1)	2 (100.0)
경기도 이천시	35 (100.0)	0 (0.0)	34 (97.1)	1 (2.9)	1 (100.0)
경기도 광명시	33 (100.0)	0 (0.0)	33 (100.0)	0 (0.0)	-
경기도 의왕시	33 (100.0)	0 (0.0)	24 (72.7)	9 (27.3)	8 (88.9)
경기도 하남시	32 (100.0)	0 (0.0)	31 (96.9)	1 (3.1)	1 (100.0)
경기도 포천시	31 (100.0)	0 (0.0)	29 (93.5)	2 (6.5)	2 (100.0)
경기도 여주시	28 (100.0)	0 (0.0)	28 (100.0)	0 (0.0)	-
경기도 광주시	26 (100.0)	2 (7.7)	23 (88.5)	1 (3.8)	1 (100.0)
경기도 연천군	26 (100.0)	4 (15.4)	22 (84.6)	0 (0.0)	-

요약

I  
개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경기도 안성시	25 (100.0)	0 (0.0)	10 (40.0)	15 (60.0)	13 (86.7)
경기도 가평군	25 (100.0)	4 (16.0)	21 (84.0)	0 (0.0)	-
경기도 군포시	24 (100.0)	0 (0.0)	18 (75.0)	6 (25.0)	6 (100.0)
경기도 구리시	24 (100.0)	0 (0.0)	22 (91.7)	2 (8.3)	2 (100.0)
경기도 양평군	24 (100.0)	0 (0.0)	24 (100.0)	0 (0.0)	-
경기도 오산시	22 (100.0)	0 (0.0)	19 (86.4)	3 (13.6)	3 (100.0)
경기도 동두천시	20 (100.0)	4 (20.0)	16 (80.0)	0 (0.0)	-
경기도 과천시	19 (100.0)	15 (78.9)	4 (21.1)	0 (0.0)	-
<b>강원(광역+기초18)</b>	<b>402 (100.0)</b>	<b>24 (6.0)</b>	<b>319 (79.4)</b>	<b>59 (14.7)</b>	<b>57 (96.6)</b>
강원도	47 (100.0)	0 (0.0)	36 (76.6)	11 (23.4)	11 (100.0)
강원도 원주시	32 (100.0)	1 (3.1)	28 (87.5)	3 (9.4)	3 (100.0)
강원도 강릉시	28 (100.0)	0 (0.0)	28 (100.0)	0 (0.0)	-
강원도 춘천시	26 (100.0)	0 (0.0)	26 (100.0)	0 (0.0)	-
강원도 태백시	25 (100.0)	10 (40.0)	15 (60.0)	0 (0.0)	-
강원도 횡성군	21 (100.0)	6 (28.6)	14 (66.7)	1 (4.8)	1 (100.0)
강원도 영월군	21 (100.0)	0 (0.0)	17 (81.0)	4 (19.0)	3 (75.0)
강원도 홍천군	20 (100.0)	0 (0.0)	15 (75.0)	5 (25.0)	5 (100.0)
강원도 평창군	20 (100.0)	0 (0.0)	17 (85.0)	3 (15.0)	3 (100.0)
강원도 철원군	20 (100.0)	0 (0.0)	13 (65.0)	7 (35.0)	7 (100.0)
강원도 동해시	18 (100.0)	2 (11.1)	11 (61.1)	5 (27.8)	5 (100.0)
강원도 정선군	18 (100.0)	0 (0.0)	17 (94.4)	1 (5.6)	1 (100.0)
강원도 고성군	18 (100.0)	0 (0.0)	12 (66.7)	6 (33.3)	5 (83.3)
강원도 삼척시	17 (100.0)	1 (5.9)	16 (94.1)	0 (0.0)	-
강원도 화천군	16 (100.0)	3 (18.8)	11 (68.8)	2 (12.5)	2 (100.0)
강원도 속초시	15 (100.0)	0 (0.0)	9 (60.0)	6 (40.0)	6 (100.0)
강원도 인제군	15 (100.0)	1 (6.7)	13 (86.7)	1 (6.7)	1 (100.0)
강원도 양양군	14 (100.0)	0 (0.0)	14 (100.0)	0 (0.0)	-
강원도 양구군	11 (100.0)	0 (0.0)	7 (63.6)	4 (36.4)	4 (100.0)
<b>충북(광역+기초11)</b>	<b>365 (100.0)</b>	<b>28 (7.7)</b>	<b>334 (91.5)</b>	<b>3 (0.8)</b>	<b>3 (100.0)</b>
충청북도	46 (100.0)	1 (2.2)	45 (97.8)	0 (0.0)	-
충청북도 청주시	66 (100.0)	9 (13.6)	57 (86.4)	0 (0.0)	-
충청북도 충주시	35 (100.0)	0 (0.0)	35 (100.0)	0 (0.0)	-
충청북도 옥천군	32 (100.0)	0 (0.0)	32 (100.0)	0 (0.0)	-
충청북도 제천시	29 (100.0)	0 (0.0)	29 (100.0)	0 (0.0)	-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충청북도 괴산군	27 (100.0)	13 (48.1)	14 (51.9)	0 (0.0)	-
충청북도 영동군	25 (100.0)	4 (16.0)	21 (84.0)	0 (0.0)	-
충청북도 진천군	23 (100.0)	0 (0.0)	23 (100.0)	0 (0.0)	-
충청북도 음성군	23 (100.0)	1 (4.3)	19 (82.6)	3 (13.0)	3 (100.0)
충청북도 보은군	20 (100.0)	0 (0.0)	20 (100.0)	0 (0.0)	-
충청북도 단양군	20 (100.0)	0 (0.0)	20 (100.0)	0 (0.0)	-
충청북도 증평군	19 (100.0)	0 (0.0)	19 (100.0)	0 (0.0)	-
<b>충남(광역+기초15)</b>	<b>426 (100.0)</b>	<b>81 (19.0)</b>	<b>308 (72.3)</b>	<b>37 (8.7)</b>	<b>37 (100.0)</b>
충청남도	53 (100.0)	0 (0.0)	52 (98.1)	1 (1.9)	1 (100.0)
충청남도 천안시	48 (100.0)	0 (0.0)	48 (100.0)	0 (0.0)	-
충청남도 아산시	34 (100.0)	1 (2.9)	33 (97.1)	0 (0.0)	-
충청남도 서산시	28 (100.0)	15 (53.6)	13 (46.4)	0 (0.0)	-
충청남도 당진시	28 (100.0)	7 (25.0)	6 (21.4)	15 (53.6)	15 (100.0)
충청남도 홍성군	28 (100.0)	5 (17.9)	23 (82.1)	0 (0.0)	-
충청남도 금산군	24 (100.0)	0 (0.0)	21 (87.5)	3 (12.5)	3 (100.0)
충청남도 청양군	24 (100.0)	0 (0.0)	24 (100.0)	0 (0.0)	-
충청남도 예산군	23 (100.0)	13 (56.5)	10 (43.5)	0 (0.0)	-
충청남도 공주시	21 (100.0)	5 (23.8)	16 (76.2)	0 (0.0)	-
충청남도 보령시	21 (100.0)	16 (76.2)	4 (19.0)	1 (4.8)	1 (100.0)
충청남도 논산시	20 (100.0)	0 (0.0)	18 (90.0)	2 (10.0)	2 (100.0)
충청남도 서천군	20 (100.0)	5 (25.0)	15 (75.0)	0 (0.0)	-
충청남도 태안군	20 (100.0)	2 (10.0)	12 (60.0)	6 (30.0)	6 (100.0)
충청남도 부여군	19 (100.0)	8 (42.1)	2 (10.5)	9 (47.4)	9 (100.0)
충청남도 계룡시	15 (100.0)	4 (26.7)	11 (73.3)	0 (0.0)	-
<b>전북(광역+기초14)</b>	<b>343 (100.0)</b>	<b>146 (42.6)</b>	<b>164 (47.8)</b>	<b>33 (9.6)</b>	<b>30 (90.9)</b>
전라북도	36 (100.0)	11 (30.6)	13 (36.1)	12 (33.3)	9 (75.0)
전라북도 전주시	28 (100.0)	21 (75.0)	7 (25.0)	0 (0.0)	-
전라북도 익산시	26 (100.0)	1 (3.8)	25 (96.2)	0 (0.0)	-
전라북도 정읍시	26 (100.0)	1 (3.8)	23 (88.5)	2 (7.7)	2 (100.0)
전라북도 군산시	25 (100.0)	21 (84.0)	0 (0.0)	4 (16.0)	4 (100.0)
전라북도 진안군	25 (100.0)	18 (72.0)	3 (12.0)	4 (16.0)	4 (100.0)
전라북도 완주군	23 (100.0)	0 (0.0)	23 (100.0)	0 (0.0)	-
전라북도 남원시	22 (100.0)	14 (63.6)	6 (27.3)	2 (9.1)	2 (100.0)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전라북도 순창군	22 (100.0)	8 (36.4)	12 (54.5)	2 (9.1)	2 (100.0)
전라북도 장수군	20 (100.0)	16 (80.0)	4 (20.0)	0 (0.0)	-
전라북도 고창군	20 (100.0)	17 (85.0)	3 (15.0)	0 (0.0)	-
전라북도 부안군	20 (100.0)	9 (45.0)	11 (55.0)	0 (0.0)	-
전라북도 김제시	19 (100.0)	8 (42.1)	7 (36.8)	4 (21.1)	4 (100.0)
전라북도 무주군	17 (100.0)	0 (0.0)	14 (82.4)	3 (17.6)	3 (100.0)
전라북도 임실군	14 (100.0)	1 (7.1)	13 (92.9)	0 (0.0)	-
<b>전남(광역+기초22)</b>	<b>484 (100.0)</b>	<b>76 (15.7)</b>	<b>292 (60.3)</b>	<b>116 (24.0)</b>	<b>113 (97.4)</b>
전라남도	54 (100.0)	5 (9.3)	48 (88.9)	1 (1.9)	1 (100.0)
전라남도 해남군	37 (100.0)	3 (8.1)	12 (32.4)	22 (59.5)	21 (95.5)
전라남도 여수시	30 (100.0)	0 (0.0)	18 (60.0)	12 (40.0)	11 (91.7)
전라남도 광양시	30 (100.0)	10 (33.3)	4 (13.3)	16 (53.3)	15 (93.8)
전라남도 장성군	26 (100.0)	0 (0.0)	24 (92.3)	2 (7.7)	2 (100.0)
전라남도 순천시	25 (100.0)	0 (0.0)	19 (76.0)	6 (24.0)	6 (100.0)
전라남도 영암군	25 (100.0)	0 (0.0)	25 (100.0)	0 (0.0)	-
전라남도 화순군	22 (100.0)	0 (0.0)	22 (100.0)	0 (0.0)	-
전라남도 장흥군	22 (100.0)	7 (31.8)	14 (63.6)	1 (4.5)	1 (100.0)
전라남도 함평군	22 (100.0)	15 (68.2)	5 (22.7)	2 (9.1)	2 (100.0)
전라남도 나주시	19 (100.0)	0 (0.0)	19 (100.0)	0 (0.0)	-
전라남도 담양군	19 (100.0)	0 (0.0)	18 (94.7)	1 (5.3)	1 (100.0)
전라남도 무안군	18 (100.0)	0 (0.0)	6 (33.3)	12 (66.7)	12 (100.0)
전라남도 완도군	18 (100.0)	11 (61.1)	7 (38.9)	0 (0.0)	-
전라남도 보성군	16 (100.0)	0 (0.0)	16 (100.0)	0 (0.0)	-
전라남도 진도군	16 (100.0)	0 (0.0)	2 (12.5)	14 (87.5)	14 (100.0)
전라남도 목포시	15 (100.0)	4 (26.7)	3 (20.0)	8 (53.3)	8 (100.0)
전라남도 영광군	15 (100.0)	1 (6.7)	1 (6.7)	13 (86.7)	13 (100.0)
전라남도 신안군	15 (100.0)	9 (60.0)	0 (0.0)	6 (40.0)	6 (100.0)
전라남도 구례군	14 (100.0)	0 (0.0)	14 (100.0)	0 (0.0)	-
전라남도 곡성군	13 (100.0)	10 (76.9)	3 (23.1)	0 (0.0)	-
전라남도 강진군	12 (100.0)	0 (0.0)	12 (100.0)	0 (0.0)	-
전라남도 고흥군	1 (100.0)	1 (100.0)	0 (0.0)	0 (0.0)	-
<b>경북(광역+기초23)</b>	<b>538 (100.0)</b>	<b>166 (30.9)</b>	<b>352 (65.4)</b>	<b>20 (3.7)</b>	<b>19 (95.0)</b>
경상북도	55 (100.0)	12 (21.8)	43 (78.2)	0 (0.0)	-
경상북도 구미시	26 (100.0)	0 (0.0)	24 (92.3)	2 (7.7)	2 (100.0)
경상북도 영천시	26 (100.0)	5 (19.2)	20 (76.9)	1 (3.8)	1 (100.0)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경상북도 포항시	25 (100.0)	8 (32.0)	17 (68.0)	0 (0.0)	-
경상북도 경주시	25 (100.0)	0 (0.0)	25 (100.0)	0 (0.0)	-
경상북도 김천시	25 (100.0)	0 (0.0)	25 (100.0)	0 (0.0)	-
경상북도 울진군	25 (100.0)	7 (28.0)	14 (56.0)	4 (16.0)	4 (100.0)
경상북도 영주시	24 (100.0)	12 (50.0)	12 (50.0)	0 (0.0)	-
경상북도 경산시	24 (100.0)	9 (37.5)	15 (62.5)	0 (0.0)	-
경상북도 문경시	23 (100.0)	13 (56.5)	10 (43.5)	0 (0.0)	-
경상북도 안동시	22 (100.0)	15 (68.2)	7 (31.8)	0 (0.0)	-
경상북도 상주시	22 (100.0)	0 (0.0)	22 (100.0)	0 (0.0)	-
경상북도 의성군	21 (100.0)	13 (61.9)	8 (38.1)	0 (0.0)	-
경상북도 예천군	21 (100.0)	1 (4.8)	19 (90.5)	1 (4.8)	0 (0.0)
경상북도 군위군	20 (100.0)	4 (20.0)	16 (80.0)	0 (0.0)	-
경상북도 고령군	19 (100.0)	8 (42.1)	11 (57.9)	0 (0.0)	-
경상북도 칠곡군	19 (100.0)	13 (68.4)	6 (31.6)	0 (0.0)	-
경상북도 봉화군	19 (100.0)	3 (15.8)	16 (84.2)	0 (0.0)	-
경상북도 영덕군	18 (100.0)	13 (72.2)	5 (27.8)	0 (0.0)	-
경상북도 성주군	17 (100.0)	12 (70.6)	5 (29.4)	0 (0.0)	-
경상북도 영양군	16 (100.0)	11 (68.8)	5 (31.3)	0 (0.0)	-
경상북도 청도군	16 (100.0)	1 (6.3)	11 (68.8)	4 (25.0)	4 (100.0)
경상북도 청송군	15 (100.0)	6 (40.0)	9 (60.0)	0 (0.0)	-
경상북도 울릉군	15 (100.0)	0 (0.0)	7 (46.7)	8 (53.3)	8 (100.0)
<b>경남(광역+기초18)</b>	<b>659 (100.0)</b>	<b>15 (2.3)</b>	<b>622 (94.4)</b>	<b>22 (3.3)</b>	<b>22 (100.0)</b>
경상남도	78 (100.0)	6 (7.7)	68 (87.2)	4 (5.1)	4 (100.0)
경상남도 창원시	83 (100.0)	1 (1.2)	76 (91.6)	6 (7.2)	6 (100.0)
경상남도 김해시	50 (100.0)	2 (4.0)	48 (96.0)	0 (0.0)	-
경상남도 양산시	41 (100.0)	0 (0.0)	36 (87.8)	5 (12.2)	5 (100.0)
경상남도 거제시	35 (100.0)	0 (0.0)	33 (94.3)	2 (5.7)	2 (100.0)
경상남도 하동군	35 (100.0)	2 (5.7)	33 (94.3)	0 (0.0)	-
경상남도 고성군	31 (100.0)	0 (0.0)	31 (100.0)	0 (0.0)	-
경상남도 남해군	30 (100.0)	0 (0.0)	29 (96.7)	1 (3.3)	1 (100.0)
경상남도 의령군	29 (100.0)	1 (3.4)	28 (96.6)	0 (0.0)	-
경상남도 함양군	28 (100.0)	0 (0.0)	28 (100.0)	0 (0.0)	-
경상남도 합천군	28 (100.0)	0 (0.0)	28 (100.0)	0 (0.0)	-
경상남도 통영시	27 (100.0)	0 (0.0)	27 (100.0)	0 (0.0)	-

기관명(기관 수)	과제 수 <sup>a)</sup>	개선사항 없음 <sup>b)</sup>	자체개선안 동의 <sup>c)</sup>	개선의견 <sup>d)</sup>	개선의견 수용률 <sup>e)</sup>
경상남도 함안군	27 (100.0)	0 (0.0)	25 (92.6)	2 (7.4)	2 (100.0)
경상남도 산청군	26 (100.0)	0 (0.0)	26 (100.0)	0 (0.0)	-
경상남도 진주시	24 (100.0)	0 (0.0)	24 (100.0)	0 (0.0)	-
경상남도 거창군	24 (100.0)	0 (0.0)	24 (100.0)	0 (0.0)	-
경상남도 사천시	22 (100.0)	1 (4.5)	21 (95.5)	0 (0.0)	-
경상남도 밀양시	21 (100.0)	0 (0.0)	19 (90.5)	2 (9.5)	2 (100.0)
경상남도 창녕군	20 (100.0)	2 (10.0)	18 (90.0)	0 (0.0)	-
<b>제주특별자치도</b>	<b>187 (100.0)</b>	<b>0 (0.0)</b>	<b>168 (89.8)</b>	<b>19 (10.2)</b>	<b>19 (100.0)</b>
<b>시·도 교육청(17)</b>	<b>214 (100.0)</b>	<b>66 (30.8)</b>	<b>120 (56.1)</b>	<b>28 (13.1)</b>	<b>28 (100.0)</b>
경상북도교육청	28 (100.0)	28 (100.0)	0 (0.0)	0 (0.0)	-
충청남도교육청	27 (100.0)	0 (0.0)	27 (100.0)	0 (0.0)	-
광주광역시교육청	23 (100.0)	0 (0.0)	13 (56.5)	10 (43.5)	10 (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20 (100.0)	1 (5.0)	19 (95.0)	0 (0.0)	-
대구광역시교육청	16 (100.0)	16 (100.0)	0 (0.0)	0 (0.0)	-
울산광역시교육청	14 (100.0)	14 (100.0)	0 (0.0)	0 (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2 (100.0)	0 (0.0)	0 (0.0)	12 (100.0)	12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10 (100.0)	1 (10.0)	9 (90.0)	0 (0.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0 (100.0)	1 (10.0)	9 (90.0)	0 (0.0)	-
경상남도교육청	10 (100.0)	0 (0.0)	10 (100.0)	0 (0.0)	-
경기도교육청	9 (100.0)	5 (55.6)	4 (44.4)	0 (0.0)	-
서울특별시교육청	8 (100.0)	0 (0.0)	8 (100.0)	0 (0.0)	-
인천광역시교육청	7 (100.0)	0 (0.0)	5 (71.4)	2 (28.6)	2 (100.0)
강원도교육청	7 (100.0)	0 (0.0)	3 (42.9)	4 (57.1)	4 (100.0)
전라남도교육청	7 (100.0)	0 (0.0)	7 (100.0)	0 (0.0)	-
충청북도교육청	6 (100.0)	0 (0.0)	6 (100.0)	0 (0.0)	-
전라북도교육청	0 (0.0)	0 (0.0)	0 (0.0)	0 (0.0)	-

주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관리번호로 등록된 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제

주2 : b) 개선사항 없음은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선없음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과제

주3 : c) 자체개선안 동의는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에 정책개선안을 자체적으로 충실하게 제시한 과제

주4 : d) 개선의견은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평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여 별도로 정책개선 의견을 제시한 과제

주5 : e) 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 / 개선의견 과제 수 × 100

주6 : f) 기타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중단된 과제

주7 : '-'는 해당 없음 의미

〈부록 표 5-4〉 2022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기관명(기관 수)	추진 과제 <sup>(a)</sup>	개선 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c)</sup>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전 체	20,479	8,191	4,074	12,965	126	7,388	1,697	95	6,399	1,510	30	2,534
중앙행정기관	1,481	166	133	1,333	-	148	51	-	115	38	-	95
국도교통부	181	12	7	169	-	12	1	-	11	1	-	6
기획재정부	136	1	1	136	-	0	1	-	0	1	-	-
행정안전부	95	8	7	93	-	2	7	-	1	6	-	1
보건복지부	89	10	7	84	-	5	6	-	4	4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4	13	11	57	-	17	1	-	12	1	-	10
해양수산부	65	8	7	55	-	10	2	-	6	1	-	6
환경부	64	3	3	61	-	3	1	-	2	1	-	2
산업통상자원부	63	0	-	63	-	0	0	-	-	-	-	-
국방부	60	9	8	53	-	7	2	-	7	2	-	6
농림축산식품부	55	11	9	43	-	12	1	-	10	0	-	9
교육부	53	7	7	50	-	3	4	-	3	4	-	3
문화체육관광부	49	10	9	41	-	8	3	-	7	3	-	6
고용노동부	49	14	13	39	-	10	6	-	8	6	-	7
법무부	47	10	4	45	-	2	8	-	2	2	-	2
국가보훈처	44	2	2	42	-	2	0	-	2	-	-	2
식품의약품안전처	35	1	0	33	-	2	0	-	1	-	-	0
소방청	28	3	3	27	-	1	2	-	1	2	-	1
산림청	27	3	3	22	-	5	1	-	2	1	-	2
중소벤처기업부	24	2	2	22	-	2	1	-	1	1	-	1
여성가족부	22	3	3	16	-	6	0	-	3	-	-	3
금융위원회	22	0	-	22	-	0	0	-	-	-	-	-
인사혁신처	20	2	2	19	-	1	1	-	1	1	-	1
경찰청	20	4	2	17	-	3	1	-	3	1	-	1
특허청	20	2	2	18	-	2	0	-	2	-	-	2
해양경찰청	18	2	1	16	-	2	0	-	2	-	-	1

영  
향개  
영  
I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II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IV부  
록

기관명(기관 수)	추진 과제 <sup>a)</sup>	개선 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c)</sup>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문화재청	17	4	3	13	-	4	0	-	4	-	-	3
질병관리청	17	1	1	14	-	3	0	-	1	-	-	1
공정거래위원회	11	0	-	10	-	1	0	-	0	-	-	-
외교부	10	5	3	5	-	5	0	-	5	-	-	3
원자력안전위원회	10	1	1	8	-	2	0	-	1	-	-	1
방송통신위원회	9	2	1	8	-	1	1	-	1	-	-	1
법제처	9	1	1	8	-	1	0	-	1	-	-	1
기상청	9	2	1	8	-	1	1	-	1	-	-	1
통일부	7	2	2	5	-	2	0	-	2	-	-	2
국민권익위원회	6	0	-	5	-	1	0	-	0	-	-	-
국무조정실	4	0	-	4	-	0	0	-	0	-	-	-
병무청	3	1	1	2	-	1	0	-	1	-	-	1
농촌진흥청	3	3	3	0	-	3	-	-	3	-	-	3
국세청	1	1	1	0	-	1	-	-	1	-	-	1
관세청	1	0	0	0	-	1	-	-	0	-	-	-
조달청	1	1	0	0	-	1	-	-	1	-	-	0
방위사업청	1	0	0	0	-	1	-	-	0	-	-	-
새만금개발청	1	1	1	0	-	1	-	-	1	-	-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1	0	-	1	-	-	1	-	-	1
통계청	0	0	0	0	0	0	-	-	-	-	-	-
대검찰청	0	0	0	0	0	0	-	-	-	-	-	-
<b>지방자치단체</b>	<b>18,558</b>	<b>7,862</b>	<b>3,867</b>	<b>11,407</b>	<b>125</b>	<b>7,026</b>	<b>1,631</b>	<b>95</b>	<b>6,136</b>	<b>1,458</b>	<b>30</b>	<b>2,379</b>
<b>서울(광역+기초25)</b>	<b>1,622</b>	<b>638</b>	<b>370</b>	<b>1,063</b>	<b>1</b>	<b>558</b>	<b>129</b>	<b>1</b>	<b>508</b>	<b>115</b>	<b>1</b>	<b>254</b>
서울특별시	181	93	67	107	1	73	22	1	70	19	1	47
서울특별시 도봉구	81	32	12	47	0	34	5	-	27	5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81	36	31	61	0	20	16	-	20	16	-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80	17	8	63	0	17	0	-	17	0	-	8
서울특별시 양천구	70	20	4	49	0	21	0	-	20	-	-	4
서울특별시 서초구	67	5	3	50	0	17	0	-	5	-	-	3

기관명(기관 수)	추진 과제 <sup>a)</sup>	개선 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c)</sup>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66	23	11	43	0	23	0	-	23	-	-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62	25	21	40	0	22	5	-	20	5	-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61	19	11	44	0	17	2	-	17	2	-	9
서울특별시 은평구	60	23	13	35	0	25	0	-	23	-	-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58	26	21	39	0	19	7	-	19	7	-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8	17	15	43	0	15	3	-	14	3	-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58	33	23	38	0	20	13	-	20	13	-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57	24	15	41	0	16	8	-	16	8	-	7
서울특별시 구로구	57	18	0	39	0	18	0	-	18	-	-	0
서울특별시 중구	56	10	5	43	0	13	3	-	7	3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56	24	20	38	0	18	6	-	18	6	-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55	19	5	35	0	20	2	-	17	2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53	22	4	32	0	21	1	-	21	0	-	4
서울특별시 광진구	52	20	11	34	0	18	5	-	15	4	-	7
서울특별시 송파구	49	26	12	30	0	19	7	-	19	5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47	29	16	24	0	23	6	-	23	5	-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46	27	8	30	0	16	11	-	16	5	-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3	15	11	23	0	20	5	-	10	5	-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6	14	7	22	0	14	0	-	14	-	-	7
서울특별시 성북구	32	21	16	13	0	19	2	-	19	2	-	14
<b>부산(광역+기초16)</b>	<b>956</b>	<b>509</b>	<b>214</b>	<b>523</b>	<b>14</b>	<b>419</b>	<b>127</b>	<b>13</b>	<b>369</b>	<b>111</b>	<b>2</b>	<b>101</b>
부산광역시	147	89	36	76	2	69	20	2	67	18	0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80	43	23	45	2	33	12	2	29	12	1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69	22	9	45	0	24	4	-	18	3	-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5	40	20	37	0	28	12	-	28	12	-	8
부산광역시 수영구	63	31	15	44	0	19	12	-	19	11	-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9	27	11	39	2	18	8	2	17	7	0	4
부산광역시 연제구	58	29	13	37	0	21	9	-	20	6	-	7
부산광역시 영도구	54	32	5	28	0	26	8	-	24	4	-	1

요  
요

I  
개  
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기관명(기관 수)	추진 과제 <sup>a)</sup>	개선 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c)</sup>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부산광역시 서구	53	30	17	32	1	20	9	1	20	7	0	10
부산광역시 강서구	50	13	0	17	0	33	0	-	13	-	-	0
부산광역시 동래구	45	25	16	25	1	19	6	1	18	5	0	11
부산광역시 남구	42	18	5	25	1	16	1	1	16	1	0	4
부산광역시 중구	38	26	8	18	0	20	7	-	19	7	-	1
부산광역시 동구	38	22	14	17	1	20	9	1	12	8	1	5
부산광역시 사상구	33	24	14	12	1	20	5	1	18	5	0	9
부산광역시 금정구	32	16	3	15	2	15	0	1	15	-	0	3
부산광역시 북구	30	22	5	11	1	18	5	1	16	5	0	0
<b>대구(광역+기초8)</b>	<b>513</b>	<b>192</b>	<b>88</b>	<b>261</b>	<b>3</b>	<b>249</b>	<b>23</b>	<b>0</b>	<b>169</b>	<b>18</b>	<b>0</b>	<b>70</b>
대구광역시	130	41	20	70	1	59	7	0	34	6	-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73	25	13	43	0	30	2	-	23	2	-	11
대구광역시 북구	69	12	9	44	0	25	3	-	9	1	-	8
대구광역시 수성구	46	22	15	23	1	22	3	0	19	3	-	12
대구광역시 중구	45	17	10	23	1	21	4	0	13	3	-	7
대구광역시 남구	41	15	7	20	0	21	2	-	13	1	-	6
대구광역시 달서구	41	14	3	16	0	25	0	-	14	0	-	3
대구광역시 서구	39	22	6	17	0	22	2	-	20	2	-	4
대구광역시 동구	29	24	5	5	0	24	0	-	24	0	-	5
<b>인천(광역+기초10)</b>	<b>794</b>	<b>409</b>	<b>216</b>	<b>429</b>	<b>13</b>	<b>352</b>	<b>78</b>	<b>12</b>	<b>319</b>	<b>71</b>	<b>1</b>	<b>144</b>
인천광역시	140	78	25	60	3	77	2	3	73	2	0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89	48	21	41	3	45	4	3	41	3	0	18
인천광역시 중구	81	37	30	41	1	39	10	1	26	9	1	20
인천광역시 서구	70	41	35	38	2	30	11	2	28	11	0	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69	37	26	38	1	30	9	0	28	9	-	17
인천광역시 부평구	67	37	18	33	1	33	5	1	31	5	0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61	39	24	32	1	28	10	1	28	10	0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60	38	16	29	0	31	8	-	30	7	-	9
인천광역시 강화군	59	23	14	48	0	11	15	-	8	13	-	1

기관명(기관 수)	추진 과제 <sup>a)</sup>	개선 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c)</sup>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인천광역시 동구	51	18	4	33	1	17	0	1	17	0	0	4
인천광역시 옹진군	47	13	3	36	0	11	4	-	9	2	-	1
<b>광주(광역+기초5)</b>	<b>591</b>	<b>294</b>	<b>145</b>	<b>353</b>	<b>1</b>	<b>237</b>	<b>58</b>	<b>1</b>	<b>235</b>	<b>57</b>	<b>0</b>	<b>88</b>
광주광역시	167	85	54	92	1	74	11	1	73	11	0	43
광주광역시 북구	102	58	20	54	0	48	11	-	47	11	-	9
광주광역시 서구	88	43	15	50	0	38	5	-	38	4	-	11
광주광역시 동구	81	32	15	57	0	24	8	-	24	8	-	7
광주광역시 광산구	77	35	21	50	0	27	8	-	27	8	-	13
광주광역시 남구	76	41	20	50	0	26	15	-	26	15	-	5
<b>대전(광역+기초5)</b>	<b>424</b>	<b>234</b>	<b>155</b>	<b>215</b>	<b>6</b>	<b>203</b>	<b>42</b>	<b>3</b>	<b>189</b>	<b>42</b>	<b>3</b>	<b>110</b>
대전광역시	153	106	84	75	2	76	29	2	75	29	2	53
대전광역시 서구	79	36	19	43	3	33	3	1	32	3	1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67	34	19	40	0	27	7	-	27	7	-	12
대전광역시 동구	44	23	15	22	0	22	1	-	22	1	-	14
대전광역시 중구	42	22	14	17	0	25	0	-	22	0	-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39	13	4	18	1	20	2	0	11	2	-	2
<b>울산(광역+기초5)</b>	<b>354</b>	<b>205</b>	<b>105</b>	<b>182</b>	<b>5</b>	<b>167</b>	<b>50</b>	<b>4</b>	<b>151</b>	<b>46</b>	<b>3</b>	<b>56</b>
울산광역시	77	53	29	29	2	46	5	2	46	5	2	22
울산광역시 북구	67	42	25	39	2	26	14	2	26	14	1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62	34	13	34	1	27	8	0	26	7	-	6
울산광역시 남구	59	32	19	39	0	20	13	-	19	12	-	7
울산광역시 중구	57	32	12	31	0	26	7	-	25	5	-	7
울산광역시 동구	32	12	7	10	0	22	3	-	9	3	-	4
<b>세종특별자치시</b>	<b>127</b>	<b>64</b>	<b>12</b>	<b>59</b>	<b>7</b>	<b>61</b>	<b>4</b>	<b>6</b>	<b>54</b>	<b>3</b>	<b>3</b>	<b>6</b>
<b>경기(광역+기초31)</b>	<b>3,451</b>	<b>1,499</b>	<b>735</b>	<b>2,034</b>	<b>41</b>	<b>1,376</b>	<b>186</b>	<b>30</b>	<b>1,283</b>	<b>164</b>	<b>10</b>	<b>561</b>
경기도	162	124	54	41	1	120	8	1	115	5	1	48
경기도 성남시	171	106	7	69	0	102	7	-	99	7	-	0
경기도 수원시	158	91	17	91	4	63	24	4	63	17	0	0

요  
요

개  
요  
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II

성별영향평가 성과의 과제  
IV

부  
록

기관명(기관 수)	추진 과제 <sup>a)</sup>	개선 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c)</sup>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경기도 의정부시	148	73	7	79	3	66	4	3	66	3	0	4
경기도 부천시	145	49	15	97	0	48	2	-	47	2	-	13
경기도 화성시	141	63	41	87	3	51	10	3	50	8	1	32
경기도 고양시	129	59	12	72	1	56	2	1	56	2	0	10
경기도 파주시	125	68	50	69	1	55	15	0	53	15	-	35
경기도 김포시	122	26	16	70	1	51	0	0	26	-	-	16
경기도 용인시	117	69	20	59	5	53	12	5	52	12	0	8
경기도 시흥시	116	43	33	74	1	41	3	1	39	2	0	31
경기도 안산시	115	49	24	48	5	62	2	2	45	0	0	24
경기도 평택시	112	54	18	64	0	48	8	-	46	8	-	10
경기도 양주시	111	58	40	58	0	53	5	-	53	5	-	35
경기도 하남시	111	38	35	79	0	32	6	-	32	5	-	30
경기도 안성시	108	25	16	82	1	25	2	0	23	2	-	14
경기도 이천시	102	37	19	67	0	35	2	-	35	2	-	17
경기도 포천시	102	34	17	71	0	31	3	-	31	3	-	14
경기도 여주시	95	28	26	67	0	28	0	-	28	-	-	26
경기도 안양시	92	48	29	50	3	39	9	2	37	9	2	18
경기도 남양주시	91	48	39	46	4	41	3	4	41	3	4	32
경기도 의왕시	91	35	23	58	0	33	3	-	32	2	-	21
경기도 과천시	90	15	12	69	2	19	11	0	4	8	-	4
경기도 광명시	89	44	38	56	0	33	11	-	33	11	-	27
경기도 가평군	88	23	9	63	0	25	2	-	21	2	-	7
경기도 광주시	87	30	22	60	1	26	6	0	24	6	-	16
경기도 양평군	85	24	2	61	0	24	0	-	24	0	-	2
경기도 오산시	79	29	19	56	1	22	6	1	22	6	1	12
경기도 연천군	72	24	11	45	1	26	2	0	22	2	-	9
경기도 동두천시	67	18	11	47	0	20	2	-	16	2	-	9
경기도 군포시	65	32	22	38	3	24	5	3	24	5	1	16
경기도 구리시	65	35	31	41	0	24	11	-	24	10	-	21



기관명(기관 수)	추진 과제 <sup>a)</sup>	개선 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c)</sup>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b>강원(광역+기초18)</b>	<b>1,232</b>	<b>517</b>	<b>279</b>	<b>826</b>	<b>4</b>	<b>402</b>	<b>137</b>	<b>4</b>	<b>376</b>	<b>116</b>	<b>1</b>	<b>162</b>
강원도	97	55	39	50	0	47	8	-	47	8	-	31
강원도 홍천군	79	41	27	59	0	20	21	-	20	18	-	9
강원도 정선군	75	32	17	57	0	18	14	-	18	13	-	4
강원도 횡성군	73	25	20	52	0	21	10	-	15	10	-	10
강원도 강릉시	69	31	18	40	1	28	2	1	28	1	0	17
강원도 철원군	69	28	11	48	1	20	7	1	20	3	0	8
강원도 원주시	67	35	24	35	0	32	4	-	31	4	-	20
강원도 태백시	67	19	11	40	2	25	2	2	15	2	1	8
강원도 영월군	66	31	13	45	0	21	11	-	20	10	-	3
강원도 평창군	66	34	19	46	0	20	14	-	20	11	-	8
강원도 삼척시	65	19	7	48	0	17	3	-	16	1	-	6
강원도 춘천시	64	29	14	38	0	26	3	-	26	2	-	12
강원도 속초시	63	24	12	48	0	15	9	-	15	6	-	6
강원도 인제군	56	19	7	41	0	15	5	-	14	5	-	2
강원도 화천군	56	15	4	40	0	16	2	-	13	2	-	2
강원도 양구군	54	11	2	43	0	11	0	-	11	0	-	2
강원도 고성군	52	24	12	34	0	18	7	-	17	7	-	5
강원도 양양군	50	24	11	36	0	14	10	-	14	9	-	2
강원도 동해시	44	21	11	26	0	18	5	-	16	4	-	7
<b>충북(광역+기초11)</b>	<b>1,021</b>	<b>390</b>	<b>170</b>	<b>647</b>	<b>9</b>	<b>365</b>	<b>47</b>	<b>6</b>	<b>337</b>	<b>43</b>	<b>2</b>	<b>125</b>
충청북도	110	50	4	60	4	46	3	2	45	3	1	0
충청북도 청주시	147	63	20	79	2	66	4	2	57	4	0	16
충청북도 충주시	96	35	5	61	0	35	0	-	35	-	-	5
충청북도 제천시	94	31	20	64	1	29	1	1	29	1	1	18
충청북도 진천군	92	37	28	68	1	23	13	1	23	13	0	15
충청북도 영동군	81	21	13	55	1	25	0	0	21	-	-	13
충청북도 괴산군	78	14	7	51	0	27	0	-	14	-	-	7
충청북도 단양군	71	36	26	51	0	20	16	-	20	15	-	11

요  
요

I  
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기관명(기관 수)	추진 과제 <sup>a)</sup>	개선 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c)</sup>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충청북도 음성군	69	28	12	46	0	23	6	-	22	3	-	9
충청북도 옥천군	64	33	5	32	0	32	1	-	32	1	-	4
충청북도 보은군	62	20	10	42	0	20	0	-	20	-	-	10
충청북도 증평군	57	22	20	38	0	19	3	-	19	3	-	17
<b>충남(광역+기초15)</b>	<b>1,279</b>	<b>418</b>	<b>118</b>	<b>850</b>	<b>3</b>	<b>426</b>	<b>71</b>	<b>2</b>	<b>345</b>	<b>63</b>	<b>0</b>	<b>55</b>
충청남도	94	60	7	41	0	53	7	-	53	7	-	0
충청남도 청양군	122	26	2	98	0	24	2	-	24	2	-	0
충청남도 당진시	121	25	6	93	0	28	4	-	21	4	-	2
충청남도 천안시	105	59	10	57	0	48	11	-	48	9	-	1
충청남도 아산시	98	39	21	63	1	34	5	1	33	5	0	16
충청남도 홍성군	89	25	7	61	0	28	2	-	23	2	-	5
충청남도 보령시	87	10	6	66	0	21	5	-	5	2	-	4
충청남도 논산시	87	26	7	67	0	20	6	-	20	6	-	1
충청남도 예산군	87	13	11	64	0	23	3	-	10	3	-	8
충청남도 금산군	69	32	6	45	0	24	8	-	24	6	-	0
충청남도 서산시	63	14	6	35	0	28	1	-	13	1	-	5
충청남도 계룡시	63	16	9	48	0	15	5	-	11	5	-	4
충청남도 서천군	53	25	9	32	1	20	9	1	15	9	0	0
충청남도 공주시	51	16	2	30	0	21	0	-	16	0	-	2
충청남도 부여군	49	12	6	29	1	19	1	0	11	1	-	5
충청남도 태안군	41	20	3	21	0	20	2	-	18	1	-	2
<b>전북(광역+기초14)</b>	<b>1,205</b>	<b>309</b>	<b>155</b>	<b>860</b>	<b>2</b>	<b>343</b>	<b>113</b>	<b>2</b>	<b>194</b>	<b>98</b>	<b>1</b>	<b>56</b>
전라북도	168	40	28	130	2	36	16	2	22	15	1	12
전라북도 김제시	100	36	25	81	0	19	25	-	11	23	-	2
전라북도 남원시	98	26	19	76	0	22	18	-	8	14	-	5
전라북도 전주시	97	7	3	69	0	28	0	-	7	-	-	3
전라북도 순창군	82	24	10	60	0	22	10	-	14	9	-	1
전라북도 정읍시	77	30	7	51	0	26	5	-	25	3	-	4

기관명(기관 수)	추진 과제 <sup>a)</sup>	개선 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c)</sup>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전라북도 진안군	71	13	9	46	0	25	6	-	7	5	-	4
전라북도 고창군	69	5	4	49	0	20	2	-	3	1	-	3
전라북도 장수군	68	7	6	48	0	20	3	-	4	3	-	3
전라북도 부안군	68	25	16	48	0	20	14	-	11	13	-	3
전라북도 익산시	67	32	7	41	0	26	7	-	25	6	-	1
전라북도 군산시	66	4	4	41	0	25	0	-	4	-	-	4
전라북도 완주군	64	27	6	41	0	23	4	-	23	4	-	2
전라북도 무주군	63	17	3	46	0	17	0	-	17	-	-	3
전라북도 임실군	47	16	8	33	0	14	3	-	13	2	-	6
<b>전남(광역+기초22)</b>	<b>1,603</b>	<b>562</b>	<b>253</b>	<b>1,116</b>	<b>3</b>	<b>484</b>	<b>155</b>	<b>2</b>	<b>405</b>	<b>135</b>	<b>0</b>	<b>118</b>
전라남도	71	53	19	17	0	54	4	-	49	4	-	15
전라남도 영암군	118	49	20	92	1	25	23	1	25	18	0	2
전라남도 순천시	90	48	30	65	0	25	23	-	25	20	-	10
전라남도 보성군	89	16	4	73	0	16	0	-	16	0	-	4
전라남도 해남군	87	41	9	50	0	37	8	-	33	8	-	1
전라남도 곡성군	84	3	2	71	0	13	0	-	3	0	-	2
전라남도 화순군	84	28	7	62	0	22	6	-	22	6	-	1
전라남도 장흥군	77	18	4	55	0	22	3	-	15	2	-	2
전라남도 목포시	76	12	5	60	1	15	0	1	11	-	0	5
전라남도 담양군	74	24	17	55	0	19	5	-	19	4	-	13
전라남도 광양시	70	34	23	40	0	30	15	-	19	14	-	9
전라남도 강진군	69	24	13	57	0	12	12	-	12	10	-	3
전라남도 영광군	69	29	14	54	0	15	15	-	14	14	-	0
전라남도 무안군	68	22	9	50	0	18	4	-	18	3	-	6
전라남도 장성군	68	29	3	42	0	26	3	-	26	3	-	0
전라남도 함평군	66	8	5	44	0	22	1	-	7	1	-	4
전라남도 여수시	61	36	18	31	0	30	7	-	29	6	-	12
전라남도 신안군	58	8	7	42	1	15	2	0	6	1	-	6
전라남도 진도군	57	30	15	41	0	16	14	-	16	11	-	4

기관명(기관 수)	추진 과제 <sup>a)</sup>	개선 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c)</sup>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전라남도 완도군	49	7	5	31	0	18	0	-	7	-	-	5
전라남도 나주시	46	19	5	27	0	19	0	-	19	-	-	5
전라남도 구례군	42	24	19	28	0	14	10	-	14	10	-	9
전라남도 고흥군	30	0	0	29	0	1	0	-	0	-	-	-
<b>경북(광역+기초23)</b>	<b>1,484</b>	<b>467</b>	<b>245</b>	<b>943</b>	<b>3</b>	<b>538</b>	<b>94</b>	<b>2</b>	<b>371</b>	<b>91</b>	<b>1</b>	<b>153</b>
경상북도	67	45	14	12	0	55	2	-	43	1	-	13
경상북도 경산시	96	23	15	72	0	24	8	-	15	8	-	7
경상북도 영천시	95	26	9	69	0	26	5	-	21	5	-	4
경상북도 포항시	88	20	14	63	0	25	3	-	17	3	-	11
경상북도 구미시	86	38	24	60	0	26	12	-	26	12	-	12
경상북도 영주시	86	18	11	62	0	24	6	-	12	6	-	5
경상북도 문경시	81	19	16	58	0	23	9	-	10	7	-	9
경상북도 경주시	78	28	17	53	0	25	3	-	25	3	-	14
경상북도 안동시	69	13	10	47	0	22	6	-	7	6	-	4
경상북도 상주시	63	23	9	41	0	22	1	-	22	1	-	8
경상북도 청도군	62	22	10	45	1	16	6	1	15	6	0	4
경상북도 김천시	61	25	10	35	1	25	0	0	25	-	-	10
경상북도 예천군	57	24	10	36	0	21	5	-	19	5	-	5
경상북도 영덕군	54	6	6	36	0	18	1	-	5	1	-	5
경상북도 칠곡군	53	13	13	33	1	19	6	1	6	6	1	6
경상북도 영양군	52	5	3	36	0	16	0	-	5	0	-	3
경상북도 봉화군	52	22	9	33	0	19	6	-	16	6	-	3
경상북도 울진군	52	22	11	27	0	25	4	-	18	4	-	7
경상북도 울릉군	44	21	11	29	0	15	6	-	15	6	-	5
경상북도 고령군	42	11	4	23	0	19	0	-	11	0	-	4
경상북도 군위군	40	17	5	20	0	20	1	-	16	1	-	4
경상북도 의성군	39	10	7	18	0	21	2	-	8	2	-	5
경상북도 청송군	35	11	3	20	0	15	2	-	9	2	-	1
경상북도 성주군	32	5	4	15	0	17	0	-	5	0	-	4

기관명(기관 수)	추진 과제 <sup>a)</sup>	개선 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c)</sup>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경남(광역+기초18)	1,600	923	565	935	6	659	276	3	644	249	2	314
경상남도	197	84	57	118	1	78	12	0	72	12	-	45
경상남도 창원시	167	110	74	82	2	83	26	2	82	25	1	48
경상남도 거제시	108	51	21	73	0	35	16	-	35	10	-	11
경상남도 양산시	93	64	52	52	0	41	23	-	41	21	-	31
경상남도 진주시	88	46	32	64	0	24	22	-	24	22	-	10
경상남도 김해시	88	57	36	38	0	50	9	-	48	9	-	27
경상남도 남해군	86	50	27	56	0	30	20	-	30	18	-	9
경상남도 사천시	83	32	21	60	1	22	11	0	21	11	-	10
경상남도 통영시	74	34	21	47	0	27	7	-	27	6	-	15
경상남도 함양군	71	39	22	43	0	28	11	-	28	8	-	14
경상남도 고성군	70	41	20	39	0	31	10	-	31	9	-	11
경상남도 밀양시	68	44	28	46	1	21	22	1	21	22	1	5
경상남도 거창군	67	31	17	42	1	24	7	0	24	4	-	13
경상남도 산청군	64	46	20	38	0	26	20	-	26	18	-	2
경상남도 합천군	61	44	35	33	0	28	16	-	28	15	-	20
경상남도 하동군	60	46	26	25	0	35	13	-	33	12	-	14
경상남도 의령군	56	41	25	27	0	29	13	-	28	12	-	13
경상남도 함안군	53	36	13	26	0	27	9	-	27	6	-	7
경상남도 창녕군	46	27	18	26	0	20	9	-	18	9	-	9
제주특별자치도	302	232	42	111	4	187	41	4	187	36	0	6
시·도 교육청	440	163	74	225	1	214	15	0	148	14	-	60
충청남도교육청	86	29	17	59	0	27	2	-	27	2	-	15
경상북도교육청	55	2	1	27	0	28	2	-	0	1	-	0
경상남도교육청	38	10	6	28	0	10	0	-	10	-	-	6
광주광역시교육청	27	23	12	4	0	23	0	-	23	-	-	12
인천광역시교육청	26	7	5	19	0	7	0	-	7	-	-	5
대전광역시교육청	26	20	11	6	0	20	1	-	19	1	-	10
울산광역시교육청	23	0	0	9	0	14	0	-	0	-	-	-

요  
요

I  
개  
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기관명(기관 수)	추진 과제 <sup>a)</sup>	개선 계획 수립 과제 <sup>b)</sup>	개선 과제 <sup>c)</sup>	추진과제 <sup>a)</sup>			개선계획수립과제 <sup>b)</sup>			개선과제 <sup>c)</sup>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법령	계획	사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2	10	1	12	0	10	1	-	9	1	-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2	12	0	10	0	12	0	-	12	-	-	0
서울특별시교육청	21	10	6	12	1	8	2	0	8	2	-	4
경기도교육청	21	7	6	12	0	9	3	-	4	3	-	3
부산광역시교육청	20	12	3	10	0	10	3	-	9	3	-	0
강원도교육청	20	7	2	13	0	7	0	-	7	-	-	2
대구광역시교육청	18	0	0	2	0	16	0	-	0	-	-	-
전라남도교육청	9	8	1	2	0	7	1	-	7	1	-	0
충청북도교육청	6	6	3	0	0	6	-	-	6	-	-	3
전라북도교육청	0	0	0	0	0	0	-	-	-	-	-	0

주1 : a) 추진과제는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관리번호로 등록된 법령, 계획, 사업 과제에서 기타(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중단된 과제)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

주2 : b) 개선계획 수립과제는 자체개선안 과제 수 + 개선의견 중 수용한 과제 수

주3 : c) 개선과제는 개선계획 수립과제(b)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

주4 : '-'는 해당 없음 의미

## 부록 6

## 2022년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적

(단위: 기관, 명)

기관명(기관 수)	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 평가 책임관	실무 담당
		정책 교육 <sup>a)</sup>	자체 교육 <sup>b)</sup>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기타) <sup>c)</sup>		
전 체	66,679	6,192	60,487	6,100	60,579	136	376
중앙행정기관	6,690	245	6,445	2,212	4,478	16	31
행정안전부	3,380	8	3,372	1,798	1,582	1	1
고용노동부	2,287	17	2,270	134	2,153	0	3
농림축산식품부	425	27	398	160	265	1	3
경찰청	292	40	252	18	274	2	4
국방부	79	17	62	40	39	0	2
보건복지부	65	17	48	19	46	2	2
환경부	30	0	30	10	20	0	1
여성가족부	29	29	0	2	27	0	0
산림청	18	6	12	3	15	2	3
법무부	11	11	0	2	9	0	1
대검찰청	7	7	0	2	5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5	0	0	5	0	0
교육부	5	5	0	3	2	1	0
농촌진흥청	5	5	0	1	4	0	1
문화체육관광부	5	5	0	1	4	0	0
외교부	5	5	0	5	0	1	1
특허청	5	5	0	2	3	0	0
문화재청	4	4	0	1	3	2	1
방송통신위원회	4	3	1	3	1	1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4	0	1	3	0	0
기상청	3	3	0	0	3	0	1
법제처	3	3	0	2	1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3	3	0	2	1	0	1
통일부	3	3	0	0	3	0	0

기관명(기관 수)	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 평가 책임관	실무 담당
		정책 교육 <sup>a)</sup>	자체 교육 <sup>b)</sup>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기타) <sup>c)</sup>		
해양경찰청	3	3	0	1	2	1	0
조달청	2	2	0	1	1	1	0
질병관리청	2	2	0	0	2	0	0
해양수산부	2	2	0	1	1	0	1
기획재정부	1	1	0	0	1	0	0
방위사업청	1	1	0	0	1	0	0
인사혁신처	1	1	0	0	1	0	0
중소벤처기업부	1	1	0	0	1	0	0
공정거래위원회	0	0	0	0	0	0	0
관세청	0	0	0	0	0	0	3
국가보훈처	0	0	0	0	0	0	0
국무조정실	0	0	0	0	0	0	0
국민권익위원회	0	0	0	0	0	0	0
국세청	0	0	0	0	0	0	0
국토교통부	0	0	0	0	0	0	0
금융위원회	0	0	0	0	0	0	0
병무청	0	0	0	0	0	0	0
산업통상자원부	0	0	0	0	0	0	0
새만금개발청	0	0	0	0	0	0	0
소방청	0	0	0	0	0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0	0	0	0	0	0	0
통계청	0	0	0	0	0	0	0
<b>지방자치단체</b>	<b>58,479</b>	<b>4,822</b>	<b>53,657</b>	<b>3,674</b>	<b>54,805</b>	<b>112</b>	<b>306</b>
<b>서울(광역 + 기초 25)</b>	<b>5,237</b>	<b>69</b>	<b>5,168</b>	<b>203</b>	<b>5,034</b>	<b>6</b>	<b>30</b>
서울특별시	185	7	178	3	182	0	1
서울특별시 송파구	1,264	0	1,264	67	1,197	1	2
서울특별시 도봉구	1,060	2	1,058	45	1,015	1	2
서울특별시 성북구	944	4	940	27	917	0	2
서울특별시 노원구	756	1	755	24	732	0	2
서울특별시 양천구	439	3	436	29	410	1	3



기관명(기관 수)	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 평가 책임관	실무 담당
		정책 교육 <sup>a)</sup>	자체 교육 <sup>b)</sup>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기타) <sup>c)</sup>		
서울특별시 동작구	303	0	303	6	297	1	1
서울특별시 강서구	105	0	105	0	105	0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9	12	17	0	29	0	3
서울특별시 마포구	26	2	24	0	26	0	2
서울특별시 은평구	24	2	22	0	24	0	1
서울특별시 강동구	21	21	0	0	21	0	2
서울특별시 구로구	18	0	18	0	18	0	1
서울특별시 강북구	17	6	11	0	17	0	1
서울특별시 성동구	15	1	14	0	15	0	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3	0	13	0	13	0	1
서울특별시 용산구	12	2	10	0	12	0	2
서울특별시 강남구	2	2	0	0	2	0	1
서울특별시 중랑구	2	2	0	2	0	2	0
서울특별시 광진구	1	1	0	0	1	0	1
서울특별시 중구	1	1	0	0	1	0	1
서울특별시 관악구	0	0	0	0	0	0	0
서울특별시 금천구	0	0	0	0	0	0	0
서울특별시 서초구	0	0	0	0	0	0	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	0	0	0	0	0	0
서울특별시 종로구	0	0	0	0	0	0	0
<b>부산(광역시 + 기초 16)</b>	<b>1,313</b>	<b>368</b>	<b>945</b>	<b>40</b>	<b>1,273</b>	<b>4</b>	<b>23</b>
부산광역시	57	12	45	0	57	0	2
부산광역시 동구	642	0	34	34	608	1	1
부산광역시 동래구	368	333	6	6	362	0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9	11	0	0	49	0	3
부산광역시 강서구	25	1	0	0	25	0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1	2	0	0	21	0	2
부산광역시 중구	20	0	0	0	20	1	1
부산광역시 사상구	19	1	0	0	19	0	1
부산광역시 수영구	19	2	0	0	19	0	3
부산광역시 북구	18	0	0	0	18	1	1

영  
양

I  
개  
영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기관명(기관 수)	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 평가 책임관	실무 담당
		정책 교육 <sup>a)</sup>	자체 교육 <sup>b)</sup>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기타) <sup>c)</sup>		
부산광역시 금정구	16	2	0	0	16	0	1
부산광역시 기장군	14	0	0	0	14	0	1
부산광역시 사하구	14	0	0	0	14	0	1
부산광역시 남구	13	0	0	0	13	0	1
부산광역시 연제구	13	0	0	0	13	1	0
부산광역시 영도구	5	4	0	0	5	0	2
부산광역시 서구	0	0	0	0	0	0	0
<b>대구(광역 + 기초 8)</b>	<b>2,037</b>	<b>330</b>	<b>1,707</b>	<b>255</b>	<b>1,782</b>	<b>2</b>	<b>9</b>
대구광역시	164	3	161	8	156	0	2
대구광역시 북구	192	192	2	2	190	1	1
대구광역시 동구	149	44	0	0	149	0	2
대구광역시 수성구	131	91	40	5	126	0	3
대구광역시 서구	96	3	93	2	94	0	2
대구광역시 남구	9	0	9	0	9	0	0
대구광역시 달서구	2	1	0	0	2	0	1
대구광역시 달성군	0	0	0	0	0	0	0
대구광역시 중구	0	0	0	0	0	0	0
<b>인천(광역 + 기초 10)</b>	<b>5,892</b>	<b>122</b>	<b>5,770</b>	<b>741</b>	<b>5,151</b>	<b>5</b>	<b>13</b>
인천광역시	2,373	9	2,364	543	1,830	1	3
인천광역시 부평구	1,263	55	1,208	70	1,193	2	2
인천광역시 남동구	1,187	16	1,171	76	1,111	1	1
인천광역시 중구	394	11	383	26	368	1	1
인천광역시 강화군	214	6	208	12	202	0	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12	9	203	6	206	0	0
인천광역시 연수구	206	1	205	7	199	0	2
인천광역시 계양구	28	0	28	0	28	0	1
인천광역시 동구	14	14	0	1	13	0	2
인천광역시 옹진군	1	1	0	0	1	0	1
인천광역시 서구	0	0	0	0	0	0	0

기관명(기관 수)	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 평가 책임관	실무 담당
		정책 교육 <sup>a)</sup>	자체 교육 <sup>b)</sup>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기타) <sup>c)</sup>		
<b>광주(광역 + 기초 5)</b>	<b>8,456</b>	<b>635</b>	<b>7,821</b>	<b>415</b>	<b>8,041</b>	<b>4</b>	<b>10</b>
광주광역시	3,980	10	3,974	225	3,759	2	2
광주광역시 서구	1,242	293	949	10	1,232	0	3
광주광역시 광산구	1,104	327	777	72	1,032	1	1
광주광역시 북구	881	1	35	35	846	0	1
광주광역시 남구	869	1	49	49	820	0	2
광주광역시 동구	376	3	24	24	352	1	1
<b>대전(광역 + 기초 5)</b>	<b>2,037</b>	<b>330</b>	<b>1,707</b>	<b>255</b>	<b>1,782</b>	<b>2</b>	<b>9</b>
대전광역시	1,728	116	1,612	245	1,483	1	2
대전광역시 대덕구	208	186	9	9	199	1	3
대전광역시 서구	59	23	1	1	58	0	1
대전광역시 중구	25	3	0	0	25	0	2
대전광역시 동구	17	2	0	0	17	0	1
대전광역시 유성구	0	0	0	0	0	0	0
<b>울산(광역 + 기초 5)</b>	<b>1,359</b>	<b>5</b>	<b>1,354</b>	<b>84</b>	<b>1,275</b>	<b>2</b>	<b>5</b>
울산광역시	126	1	125	9	117	0	1
울산광역시 남구	873	0	873	40	833	1	1
울산광역시 북구	311	4	35	35	276	1	1
울산광역시 중구	26	0	26	0	26	0	1
울산광역시 울주군	23	0	0	0	23	0	1
울산광역시 동구	0	0	0	0	0	0	0
<b>세종특별자치시</b>	<b>49</b>	<b>3</b>	<b>46</b>	<b>0</b>	<b>49</b>	<b>0</b>	<b>2</b>
<b>경기(광역 + 기초 31)</b>	<b>11,506</b>	<b>181</b>	<b>11,325</b>	<b>805</b>	<b>10,701</b>	<b>11</b>	<b>52</b>
경기도	1,330	3	1,327	220	1,110	0	3
경기도 안산시	2,268	0	107	107	2,161	0	1
경기도 부천시	1,282	11	1,271	29	1,253	0	1
경기도 시흥시	1,245	12	76	76	1,169	1	1
경기도 군포시	1,118	28	40	40	1,078	1	3
경기도 광주시	860	2	858	41	819	1	2
경기도 수원시	756	19	737	45	711	2	1
경기도 안양시	505	1	101	101	404	1	1

기관명(기관 수)	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 평가 책임관	실무 담당
		정책 교육 <sup>a)</sup>	자체 교육 <sup>b)</sup>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기타) <sup>c)</sup>		
경기도 의정부시	412	12	87	87	325	1	3
경기도 포천시	276	7	20	20	256	0	2
경기도 파주시	251	22	1	1	250	2	1
경기도 의왕시	162	12	0	0	162	0	3
경기도 성남시	143	4	139	4	139	0	1
경기도 고양시	112	0	0	0	112	0	1
경기도 가평군	103	4	99	31	72	0	2
경기도 김포시	85	4	0	0	85	0	2
경기도 과천시	79	1	0	0	79	0	1
경기도 용인시	62	3	1	1	61	1	2
경기도 양주시	58	6	52	0	58	0	2
경기도 화성시	50	5	0	0	50	0	2
경기도 평택시	46	0	46	0	46	0	4
경기도 남양주시	45	2	2	2	43	1	2
경기도 연천군	40	2	0	0	40	0	2
경기도 이천시	36	0	0	0	36	0	0
경기도 광명시	34	0	0	0	34	0	1
경기도 하남시	33	3	0	0	33	0	1
경기도 안성시	32	2	0	0	32	0	2
경기도 오산시	31	9	0	0	31	0	1
경기도 양평군	28	3	25	0	28	0	1
경기도 동두천시	21	1	0	0	21	0	1
경기도 구리시	2	2	0	0	2	0	2
경기도 여주시	1	1	0	0	1	0	0
<b>강원(광역 + 기초 18)</b>	<b>855</b>	<b>269</b>	<b>586</b>	<b>20</b>	<b>835</b>	<b>2</b>	<b>9</b>
강원도	80	8	72	4	76	0	2
강원도 속초시	358	0	358	11	347	1	1
강원도 정선군	258	241	17	2	256	0	2
강원도 고성군	53	3	50	3	50	0	1
강원도 원주시	33	0	33	0	33	0	1
강원도 태백시	28	1	27	0	28	0	1

기관명(기관 수)	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 평가 책임관	실무 담당
		정책 교육 <sup>a)</sup>	자체 교육 <sup>b)</sup>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기타) <sup>c)</sup>		
강원도 삼척시	20	6	14	0	20	1	1
강원도 평창군	16	1	15	0	16	0	0
강원도 양구군	6	6	0	0	6	0	0
강원도 강릉시	3	3	0	0	3	0	0
강원도 동해시	0	0	0	0	0	0	0
강원도 양양군	0	0	0	0	0	0	0
강원도 영월군	0	0	0	0	0	0	0
강원도 인제군	0	0	0	0	0	0	0
강원도 철원군	0	0	0	0	0	0	0
강원도 춘천시	0	0	0	0	0	0	0
강원도 홍천군	0	0	0	0	0	0	0
강원도 화천군	0	0	0	0	0	0	0
강원도 횡성군	0	0	0	0	0	0	0
<b>총북(광역 + 기초 11)</b>	<b>850</b>	<b>400</b>	<b>450</b>	<b>101</b>	<b>749</b>	<b>3</b>	<b>5</b>
충청북도	8	8	0	4	4	1	0
충청북도 청주시	463	13	450	94	369	2	1
충청북도 음성군	189	189	0	0	189	0	1
충청북도 증평군	171	171	0	2	169	0	1
충청북도 진천군	9	9	0	1	8	0	0
충청북도 제천시	5	5	0	0	5	0	2
충청북도 옥천군	3	3	0	0	3	0	0
충청북도 단양군	2	2	0	0	2	0	0
충청북도 괴산군	0	0	0	0	0	0	0
충청북도 보은군	0	0	0	0	0	0	0
충청북도 영동군	0	0	0	0	0	0	0
충청북도 충주시	0	0	0	0	0	0	0
<b>충남(광역 + 기초 15)</b>	<b>1,797</b>	<b>32</b>	<b>1,765</b>	<b>91</b>	<b>1,706</b>	<b>6</b>	<b>12</b>
충청남도	1	1	0	0	1	0	1
충청남도 홍성군	930	1	929	34	896	0	2
충청남도 금산군	564	0	564	26	538	1	1
충청남도 예산군	85	5	80	27	58	0	1

영  
양

I  
개  
영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기관명(기관 수)	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 평가 책임관	실무 담당
		정책 교육 <sup>a)</sup>	자체 교육 <sup>b)</sup>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기타) <sup>c)</sup>		
충청남도 천안시	46	10	36	0	46	1	1
충청남도 보령시	42	0	42	1	41	1	1
충청남도 당진시	30	0	30	2	28	1	1
충청남도 부여군	28	1	27	1	27	1	1
충청남도 논산시	24	5	19	0	24	1	1
충청남도 계룡시	22	0	22	0	22	0	1
충청남도 공주시	16	0	16	0	16	0	1
충청남도 아산시	5	5	0	0	5	0	0
충청남도 청양군	3	3	0	0	3	0	0
충청남도 태안군	1	1	0	0	1	0	0
충청남도 서산시	0	0	0	0	0	0	0
충청남도 서천군	0	0	0	0	0	0	0
<b>전북(광역 + 기초 14)</b>	<b>6,249</b>	<b>735</b>	<b>5,514</b>	<b>418</b>	<b>5,831</b>	<b>10</b>	<b>28</b>
전라북도	1,402	437	965	252	1,150	2	3
전라북도 전주시	1,592	6	1,586	90	1,502	0	2
전라북도 김제시	989	270	719	15	974	2	5
전라북도 장수군	549	3	546	19	530	2	2
전라북도 무주군	496	2	494	17	479	1	1
전라북도 완주군	430	1	429	9	421	0	1
전라북도 임실군	216	2	214	12	204	1	1
전라북도 익산시	155	5	150	1	154	0	2
전라북도 남원시	143	2	141	1	142	0	2
전라북도 군산시	116	2	114	0	116	0	1
전라북도 고창군	47	0	47	1	46	1	2
전라북도 정읍시	46	1	45	0	46	0	2
전라북도 순창군	26	3	23	1	25	1	2
전라북도 부안군	21	1	20	0	21	0	1
전라북도 진안군	21	0	21	0	21	0	1
<b>전남(광역 + 기초 22)</b>	<b>6,075</b>	<b>41</b>	<b>6,038</b>	<b>305</b>	<b>5,774</b>	<b>14</b>	<b>32</b>
전라남도	62	8	54	3	59	1	2
전라남도 광양시	1,496	4	1,492	72	1,424	1	3

기관명(기관 수)	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 평가 책임관	실무 담당
		정책 교육 <sup>a)</sup>	자체 교육 <sup>b)</sup>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기타) <sup>c)</sup>		
전라남도 나주시	1,292	1	1,291	43	1,249	0	3
전라남도 장흥군	968	3	965	36	932	2	3
전라남도 무안군	747	3	744	38	709	1	1
전라남도 신안군	530	2	528	33	497	1	2
전라남도 영광군	456	0	456	23	433	0	1
전라남도 해남군	292	0	292	23	269	1	1
전라남도 구례군	93	0	93	30	63	1	1
전라남도 진도군	50	1	49	1	49	1	2
전라남도 순천시	31	1	30	0	31	0	4
전라남도 장성군	29	0	29	0	29	0	1
전라남도 화순군	20	6	14	2	18	4	2
전라남도 목포시	6	6	0	0	6	0	1
전라남도 강진군	2	2	0	1	1	0	0
전라남도 보성군	2	2	0	0	2	0	1
전라남도 함평군	2	1	1	0	2	0	2
전라남도 여수시	1	1	0	0	1	0	1
전라남도 고흥군	0	0	0	0	0	1	1
전라남도 곡성군	0	0	0	0	0	0	0
전라남도 담양군	0	0	0	0	0	0	0
전라남도 영암군	0	0	0	0	0	0	0
전라남도 완도군	0	0	0	0	0	0	0
<b>경북(광역 + 기초 23)</b>	<b>2,011</b>	<b>397</b>	<b>1,614</b>	<b>88</b>	<b>1,923</b>	<b>33</b>	<b>37</b>
경상북도	100	7	93	16	84	1	1
경상북도 경주시	975	0	975	38	937	0	1
경상북도 울릉군	415	2	413	24	391	1	1
경상북도 안동시	344	344	0	8	336	0	2
경상북도 예천군	43	0	43	0	43	1	1
경상북도 울진군	28	0	28	0	28	29	3
경상북도 영천시	25	1	24	0	25	0	3
경상북도 칠곡군	21	2	19	1	20	1	2
경상북도 봉화군	19	0	19	0	19	0	19

기관명(기관 수)	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 평가 책임관	실무 담당
		정책 교육 <sup>a)</sup>	자체 교육 <sup>b)</sup>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기타) <sup>c)</sup>		
경상북도 영주시	18	18	0	1	17	0	0
경상북도 김천시	4	4	0	0	4	0	0
경상북도 청송군	4	4	0	0	4	0	2
경상북도 구미시	3	3	0	0	3	0	0
경상북도 문경시	3	3	0	0	3	0	0
경상북도 경산시	2	2	0	0	2	0	0
경상북도 영양군	2	2	0	0	2	0	0
경상북도 의성군	2	2	0	0	2	0	0
경상북도 고령군	1	1	0	0	1	0	0
경상북도 상주시	1	1	0	0	1	0	1
경상북도 성주군	1	1	0	0	1	0	1
경상북도 군위군	0	0	0	0	0	0	0
경상북도 영덕군	0	0	0	0	0	0	0
경상북도 청도군	0	0	0	0	0	0	0
경상북도 포항시	0	0	0	0	0	0	0
<b>경남(광역 + 기초 18)</b>	<b>3,886</b>	<b>879</b>	<b>3,007</b>	<b>86</b>	<b>3,800</b>	<b>7</b>	<b>22</b>
경상남도	271	6	265	5	266	0	1
경상남도 진주시	1,295	2	1,293	62	1,233	1	2
경상남도 양산시	1,158	4	1,154	2	1,156	3	3
경상남도 함양군	318	318	0	6	312	0	1
경상남도 김해시	314	282	32	4	310	1	3
경상남도 산청군	211	211	0	3	208	0	1
경상남도 의령군	96	3	93	2	94	0	1
경상남도 창원시	79	7	72	0	79	0	1
경상남도 남해군	34	2	32	0	34	0	1
경상남도 통영시	28	28	0	0	28	0	0
경상남도 창원군	24	2	22	0	24	0	1
경상남도 고성군	23	0	23	0	23	0	1
경상남도 사천시	22	1	21	0	22	0	2
경상남도 거창군	5	5	0	2	3	2	1
경상남도 밀양시	3	3	0	0	3	0	1



기관명(기관 수)	계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 평가 책임관	실무 담당
		정책 교육 <sup>a)</sup>	자체 교육 <sup>b)</sup>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기타) <sup>c)</sup>		
경상남도 하동군	2	2	0	0	2	0	1
경상남도 함안군	2	2	0	0	2	0	1
경상남도 합천군	1	1	0	0	1	0	0
경상남도 거제시	0	0	0	0	0	0	0
<b>제주특별자치시</b>	<b>160</b>	<b>22</b>	<b>138</b>	<b>5</b>	<b>155</b>	<b>2</b>	<b>6</b>
<b>시·도교육청</b>	<b>1,305</b>	<b>1,125</b>	<b>385</b>	<b>214</b>	<b>1,296</b>	<b>8</b>	<b>39</b>
경기도교육청	488	475	25	85	415	2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40	9	234	52	191	2	2
경상남도교육청	217	208	9	5	212	0	16
울산광역시교육청	92	95	14	21	88	1	3
전라북도교육청	53	53	0	7	46	1	1
대전광역시교육청	40	69	20	0	89	0	2
부산광역시교육청	31	37	0	4	33	1	1
경상북도교육청	30	20	23	0	43	0	1
충청남도교육청	28	30	28	0	58	0	1
인천광역시교육청	19	2	0	0	2	0	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7	2	0	1	1	0	1
전라남도교육청	16	70	16	22	64	0	1
서울특별시교육청	13	35	11	15	31	1	5
충청북도교육청	11	0	4	0	4	0	1
강원도교육청	5	7	0	1	6	0	1
광주광역시교육청	4	9	1	0	10	0	1
대구광역시교육청	1	4	0	1	3	0	1

주1 : a) 정책교육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실시한 교육·워크숍으로, 위탁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등이 포함된다.

주2 : b) 자체교육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직장교육과 강사초빙이나 내부강사 활용, 자체 워크숍 등

주3 : c) 특정직에는 군, 경찰, 검찰, 소방, 교육, 연구직 등 포함

부록 7

2022년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단위: 개)

기 관		실 적	기 관		실 적
중앙행정기관 (5)	경찰청	40	대구광역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5
	국방부	6		대구광역시 남구	3
	보건복지부	3		대구광역시 동구	1
	여성가족부	2		대구광역시 서구	1
	농촌진흥청	1	인천광역시 (9)	인천광역시 동구	159
광역자치단체 (14)	서울특별시	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41
	인천광역시	55		인천광역시 부평구	40
	대전광역시	40		인천광역시 서구	32
	충청북도	18		인천광역시 계양구	23
	경상남도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21
	부산광역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
	제주특별자치도	9		인천광역시 중구	7
	세종특별자치시	3		인천광역시 옹진군	6
	광주광역시	2	광주광역시(1)	광산구	5
	울산광역시	2	울산광역시(1)	북구	10
	대구광역시	1	경기도 (16)	경기도 고양시	49
	강원도	1		경기도 하남시	19
	전라북도	1		경기도 오산시	17
	전라남도	1		경기도 용인시	13
서울특별시 (8)	서울특별시 도봉구	39		경기도 안산시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23		경기도 시흥시	9
	서울특별시 강북구	2		경기도 안양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1		경기도 파주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경기도 의정부시	7
	서울특별시 마포구	1		경기도 군포시	6
	서울특별시 구로구	1		경기도 화성시	3
	서울특별시 강남구	1		경기도 양주시	2
부산광역시(1)	금정구	1		경기도 의왕시	2

기 관		실 적	기 관		실 적
	경기도 광명시	1	경상남도 (11)	경상남도 창원시	28
	경기도 광주시	1		경상남도 김해시	7
	경기도 포천시	1		경상남도 진주시	3
강원도(1)	태백시	1		경상남도 고성군	3
충청북도 (4)	충청북도 청주시	44		경상남도 양산시	2
	충청북도 진천군	3		경상남도 산청군	2
	충청북도 증평군	1		경상남도 거창군	2
	충청북도 음성군	1		경상남도 통영시	1
충청남도 (5)	충청남도 서천군	5		경상남도 밀양시	1
	충청남도 당진시	2		경상남도 의령군	1
	충청남도 천안시	1		경상남도 함안군	1
	충청남도 예산군	1	시·도교육청 (6)	광주광역시교육청	17
	충청남도 태안군	1		경상남도교육청	14
전라남도 (2)	광양시	1		서울특별시교육청	13
	장흥군	1		인천광역시교육청	9
경상북도 (4)	포항시	1		부산광역시교육청	1
	경주시	1		대전광역시교육청	1
	영천시	1			
	봉화군	1			

요  
요

I  
개  
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부록 8** 2022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제도 발전 포럼 실적 (결과보고서자료수합)

센터명	시간	주제
중앙	12.14.(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평가 추진방식 다각화 논의</li> <li>- 사업유형별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안</li> <li>- 협업형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안</li> </ul>
서울	11.22.(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 통계로 보는 서울 청년의 일과 삶</li> <li>- 성인지통계로 보는 서울 청년의 일과 삶</li> <li>- 2030 일과 양육에서 뉴노멀을 꿈꾸다</li> </ul>
부산	12.0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향후 방안</li> <li>- 코로나 10 확산에 따른 청년여성 일자리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방안</li> <li>-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공유</li> </ul>
대구	12.06.(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시와 타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사례 및 운영방향 공유</li> <li>- 성별영향평가 제도 성과와 정책개선 우수사례</li> </ul>
인천	4.27.(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위기와 여성</li> <li>- 기후위기와 여성</li> </ul>
광주	11.15.(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위기에 대한 성주류화 방안 모색</li> <li>- 기후위기 대응과 성평등한 정책</li> <li>- 젠더관점에서 본 재난 안전</li> </ul>
대전 세종	11.1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세종지역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도시사업 연계 방안</li> </ul>
울산	11.1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 추진 성과와 방향</li> <li>- 울산 성인지예산 연계 우수사례 의의와 과제</li> <li>- 성인지예산 연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li> </ul>
경기	3.3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성주류화 실현, 여성친화도시와 함께하기</li> <li>- 경기도 성주류화와 여성친화도시 연계방안</li> </ul>

센터명	시간	주제
강원	09.22.(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주류화의 도약, 공무원 성인지교육에서 출발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li> <li>- 대전광역시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과 결심, 그리고 과제</li> </ul> </li> </ul>
충북	12.1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주류화 제도의 핵심도구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주류화 전담체계와 발전과제</li> </ul> </li> </ul>
충남	12.1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 성주류화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 성주류화 정책 실행역량 강화 교육의 중요성</li> <li>- 광역자치단체의 성주류화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현황 및 향후과제: 대전을 중심으로</li> <li>- 기초자치단체의 성주류화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현황 및 향후과제: 파주를 중심으로</li> </ul> </li> </ul>
전북	10.1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li> <li>-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용인시 사례</li> </ul> </li> </ul>
전남	11.1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친화도시 시책 연구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 젠더거버넌스 사업 운영 사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 젠더 거버넌스 사업 운영 사례: 여성친화도시시책 연구모임을 중심으로</li> <li>- 경기도 젠더 거버넌스 운영성과 및 과제</li> </ul> </li> </ul>
경북	9.29.(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평가, 진단 그리고 방향을 묻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li> <li>- 성별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한 향후 방향 모색</li> </ul> </li> </ul>
경남	12.1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에 성평등을 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포용성 차원의 젠더관점을 반영한 도시계획</li> <li>- 인천광역시 공공시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li> </ul> </li> </ul>
제주	11.1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예산 성과향상 방안 모색 및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성인지 예산 성과 향상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li> <li>- 광주지역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젠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li> </ul> </li> </ul>

요약

I  
개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 부록 9

## 2022년 정책개선 사례 찾아보기

## □ 법령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사례

과 제 명	정책분야	페이지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175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17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기본조례(서울특별시 노원구)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차별적 요인 개선	185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광주광역시 남구)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차별적 요인 개선	19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확산	19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기획재정부)	일·생활 균형 확산	19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20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203
정선군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정선군)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206
칠곡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경상북도 칠곡군)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208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213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21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216
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경상남도 김해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218

과 제 명	정책분야	페이지
통영시 시민영양관리 조례(경상남도 통영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218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220
출국대기실 운영규칙(법무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2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조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시설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평가 기준 개선	228

□ 사업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사례

과 제 명	정책분야	페이지
지식재산 창출기반 조성-지식재산 창출지원-중소기업 IP 바로지원(특허청)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179
해운인력양성지원-해사고등학교지원-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지원(해양수산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180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폴리텍)-전문기술 과정(고용노동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182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다기능기술자 과정(고용노동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182
발작물산업육성-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농림축산식품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184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sb장난감도서관운영(서울특별시 성북구)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차별적 요인 개선	186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인천광역시 부평구)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차별적 요인 개선	187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 환경교육 내실화-유아·청소년·성인환경교육(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차별적 요인 개선	189
장병복지지원-보건복지지원-'23~'27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작성방향 연구(국방부)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차별적 요인 개선	195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국토교통부)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차별적 요인 개선	197

요  
약

I  
개  
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과 제 명	정책분야	페이지
기상산업 진흥-기상정보 콜센터 구축 및 운영(기상청)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199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 환경 개선-한국어교육 선진화-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자문 및 한국어교재 자문 감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202
선원근로 복지 향상-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청년해기 인력 공급기반 강화, 선박관리전문가 양성(해양수산부)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205
학교교육여건 개선-진로체험지원사업(인천광역시 부평구)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207
청년참여 활성화-용인 청년정책네트워크(경기도 용인시)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210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212
원자력안전활동지원-방사선 건강영향 조사(원자력안전위원회)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215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청년정신건강 증진 사업(경기도 양주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221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농림축산식품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222
안전광산조성-내 삶이 행복한 안전광산프로젝트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시설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평가 기준 개선	225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평가 기준 개선	227
청년 자립 및 성장-청년창업희망스타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평가 기준 개선	230



## □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사례

구분	과 제 명	페이지
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12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청)	1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기획재정부)	13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교육부)	130
	출국대기실 운영규칙(법무부)	130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국방부)	13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13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13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133
	모자보건법 시행령(보건복지부)	133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고용노동부)	1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고용노동부)	134
	국가공무원법(인사혁신처)	134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서울특별시)	140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광주광역시)	140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광주광역시)	140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충청남도)	141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141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주특별자치도)	14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약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달성군)	15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54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154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조례(광주광역시 남구)	154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154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강원도 평창군)	154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충청북도 진천군)	155

구분	과 제 명	페이지	
법령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충청북도 단양군)	155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충청남도 서천군)	156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전라남도 영광군)	156	
	하동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경상남도 하동군)	15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61	
	단양군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충청북도 단양군)	161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하동군)	161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경상남도 합천군)	16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교육청)	170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교육청)	170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부산광역시교육청)	171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정(경기도교육청)	171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교육청)	171	
	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특별시)	142
		제4차 울산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울산광역시)	143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기본계획(세종특별자치시)		143	
시정4기 일자리 종합계획(세종특별자치시)		143	
제3차 충청북도 환경교육종합계획(2023~2025)(충청북도)		143	
제2차 대전광역시 보행교통 개선계획(대전광역시)		148	
제4차(2022~2026)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기본계획(대전광역시)		148	
세종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5개년 계획 (세종특별자치시)		148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경기도)		148	
제5기 태백시 지역사회보장계획(강원도 태백시)		157	
제천시 식량산업 종합계획(충청북도 제천시)		157	
2040년 칠곡군 도시기본계획(경상북도 칠곡군)		15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경상남도 창원시)		162	
사업		창의적인재육성-소부장분야전문인력양성-나노분야전문인력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6
		장병복지지원-보건복지지원-'23~'27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작성방향 연구(국방부)	126

구분	과 제 명	페이지
사업	국어발전기반조성 및 진흥-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 환경 개선-한국어교육 선진화 (내내역 : 한국어교육과정 개발 자문 및 한국어교재 자문 감수 운영(문화체육관광부))	126
	가사근로자 고용개선-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고용노동부)	126
	선원근로 복지 향상-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해양수산부)	127
	기상산업 진흥-기상정보 콜센터 구축 및 운영(기상청)	127
	법무행정개선-양성평등정책 지원(법무부)	13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국방부)	136
	전문체육육성-스포츠윤리센터운영(문화체육관광부)	136
	농업정책보험-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농림축산식품부)	136
	임대주택지원(용자)-행복주택(용자)(국도교통부)	136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형사, 교통,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역량강화-여성수사팀 조사환경 개선 (경찰청)	137
	새만금개발사업지원-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새만금개발청)	137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사업-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37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서울특별시)	144
	문화산업콘텐츠육성-인공지능·콘텐츠 융합 창작랩 운영(광주광역시)	144
	아동복지 증진-드림스타트 지원(세종특별자치시)	144
	희망복지지원-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구성 운영(성인지예산)(제주특별자치도)	144
	예방적건강관리강화-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대구광역시)	149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대구광역시)	149
	수자원보전관리-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주민참여예산)(대구광역시)	149
	시설관리-시설물설치 및 구입-우치공원 보행로 정비(광주광역시)	150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공공의료기관 직원 대상 교육(강원도)	150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마을기업 육성(강원도)	150	
공공보건사업 추진-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전라북도)	150	
건강가정육성 및 가족지원강화-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직접)(경상남도)	150	
여성복지증진-다문화 특성화사업(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59	

요  
요

I  
개  
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구분	과 제 명	페이지
사업	청사관리-청사수선관리(충청남도 부여군)	159
	다문화가족언어발달지원사업-다문화가족언어발달지원사업(전라북도 군산시)	159
	일자리 창출-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경상남도 양산시)	159
	수질오염 단속-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대구광역시 서구)	165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다문화 경연대회(북&다문화 축제 추진)(대구광역시 서구)	165
	직장 운동경기부 및 전문체육 육성-실업태권도팀 육성(대구광역시 수성구)	165
	문화예술·산업육성지원-광산무대나누기프로젝트(광주광역시 광산구)	165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울산광역시 울주군)	165
	모자보건사업-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상록 여성어린이 및 영양)(경기도 안산시)	165
	고연령화 대비 100세 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운영(경기도 화성시)	165
	감염병 예방 및 대응관리-검사실운영관리(예비, 신혼부부 건강관리)(경기도 김포시)	166
	지역사회 건강관리-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충청북도 제천시)	166
	지역사회 건강관리-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보조)(충청북도 제천시)	166
	대중교통관리-특별교통수단 운영(충청북도 제천시)	166
	생애주기별 맞춤형 힐링교육사업-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 사업(전라북도 순창군)	166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사업지원-부모교육 사업지원(전라북도 고창군)	166
	장애인복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경상남도 창원시)	166
	소방조직인력 관리-소방공무원 사기진작(경상남도 창원시)	167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육성-장애인스포츠클럽 이용권 지원(경상남도 진주시)	167
	노사협력-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경상남도 김해시)	167
	정신건강-자살예방사업(경상남도 밀양시)	167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인천광역시교육청)	172
	독서문화진흥-도서관운영지원(광주광역시교육청)	172
	협력종합예술활동-예술꿈담터(연습장)구축(서울특별시교육청)	173
	영재교육원 운영(광주광역시교육청)	173
	영재교육-영재교육원 운영(대전광역시교육청)	174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돌봄교실운영(경기도교육청)	174

□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사례

정책과제명	개선권고 과제	페이지
아동정책 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양성평등 의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248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중점분야의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여성가족부)	248
생활체감형정책 (I)	벤처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성차별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배포(중소벤처기업부)	249
	성평등 관점의 투자로 성과를 낸 모범사례 발굴·홍보(중소벤처기업부)	249
	투자 전문인력 육성 기관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투자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신규인력 양성과정에 포함하고, 투자심사역 대상 세미나 및 특강 개최(중소벤처기업부)	249
외국인 건강관리 지원 정책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 검토(보건복지부)	250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족관계 증명 장애요인 완화(보건복지부)	250
환경보전 종합계획	성별 노출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별 성별 분리통계 작성 및 결과 활용을 통한 우선관리 대상 유해인자 파악(환경부)	252
	환경보전 정책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시 성별 균형 고려(환경부)	252
	새로운 환경보전 이슈 대응 및 성인지적 정책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환경보전정책 추진 기반 마련(환경부)	252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과제 개발 등을 위해 양성평등 의제 논의 활성화 방안 마련(환경부)	252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난 건강영향 취약지구구축시, 성별에 따른 차이 및 특성 고려(환경부)	252
보건복지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관련 심의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위원회 규정 내 성별 고려 명시(보건복지부)	254
	보건의료기술 관련 성인지적 차원의 전략적 접근 및 정책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보건복지부)	254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돌봄지원 방안을 마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54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여성해양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선박 승선실습 기회 확대 등 취업 지원 강화(해양수산부, 교육부)	255
	해양전문인력의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관리 강화(해양수산부)	255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인공지능 윤리 준수를 위한 산업·학계 등 주체별 세부 체크리스트 개발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6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 개발·보급(교육부)	256
	고등교육기관에서 인공지능 기반 학문 분야의 과목 개설 및 윤리교육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257

요  
요

I  
개  
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정책과제명	개선권고 과제	페이지
전문체육 분야 정책	전문체육 분야 관련 데이터의 성별 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문화체육관광부)	258
	전문체육 분야 기관용 성평등 지표 조사 및 공표(문화체육관광부)	258
	전문체육인을 활용한 스포츠인권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문화체육관광부)	258
	전문체육 분야 인력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대응 역량 제고(문화체육관광부)	258
	전문체육 분야의 성평등 문화 조성과 여성 선수의 권익 보장 및 의사 결정 참여도 향상을 위한 성별 대표성 제고 방안 마련(문화체육관광부)	258
	체육계 인권 회복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에 전문성 함양 방안 마련(문화체육관광부)	25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시 온라인 게임, 인스턴트 메시지, SNS 이용시 디지털 성범죄 연계 발생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포함(교육부)	259
	사이버 성폭력 발생시 대응방법(실제 만남거절, 피해 사실에 대해 도움 받는 구체적 절차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교육부)	259
자살예방정책	성별·연령별 특성에 따른 자살행동 특징 및 대응방안 마련(보건복지부)	260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인식개선 방안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보건복지부)	260
	일반국민 대상 성별 내 연령별, 직종별 등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261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자격 취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현장의견 수렴 강화(고용노동부)	262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교육·훈련 및 고용 연계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262
노사관계 지원 정책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내 '남녀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연구·홍보사업' 추가(고용노동부)	263
	성평등 지원 사업 발굴·확산을 위해 노사관계 지원 사업 공모시 성평등 관련 사업 예시 등 포함하여 안내(고용노동부)	263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운영 지침' 내 성평등 노동 실현 관련 내용 추가(고용노동부)	263
	미조직 무노조 상태인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상담 및 지원사업 발굴(홍보) 및 단계적 지원 확대(고용노동부)	263
코로나19 대응 정책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시 일자리 위기의 주요 집단인 임시·일용직, 영세사업장(숙박음식점업 등) 고용보험 미가입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고용노동부)	265
	감염병 위기 등에 따른 성차별적 고용 조정(여성·임산부, 육아휴직 대상자 등 대상) 발생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등 마련(고용노동부)	265
	코로나 시기 직장의 휴·폐업이나 해고, 권고사직 및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잃고 재취업이 지연되는 여성 구직자 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여성가족부)	265
장애인 지원 정책	여성장애인들의 산부인과 진료 접근성 확보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266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관련 종사자 교육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266
	여성장애인의 기초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 방안 마련(교육부)	267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자(평생학습사 등)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강화(교육부)	267

정책과제명	개선권고 과제	페이지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여성 장애인 체육활동 제고 방안 마련(문화체육관광부)	267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시, 장애유형·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강화(문화체육관광부)	267	
청년정책 기본계획	노동시장 성별 분리 완화 및 생애주기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 지원 강화(중소벤처기업부)	268	
	청년의 성별 주거여건 개선 및 주거권 보장 강화(국토교통부)	269	
	성별 전공 분리 현상 완화를 위해 통합적 진로교육 및 직업 관련 다양한 활동·정보 제공(교육부)	269	
	전 생애적인 진로발달의 성별 격차를 고려하여 아동기와 청소년기, 청년기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진로발달 지원(교육부)	269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성별 수혜현황 관리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지원 강화(보건복지부)	269	
	청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유발 요인·정신건강 위험요인별 심리지원 강화(보건복지부)	269	
	청년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보건복지부)	270	
	사회 전반에서 인권과 안전에 대한 관심 및 대응역량 제고(교육부)	270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정책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271
		다양하고 유연한 교대 근무제도 도입을 통한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일·가정 양립 환경 마련(보건복지부)	271
간호인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유해 물질 위험 최소화(보건복지부)		271	
정부 인력양성·직업교육 훈련 사업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처 간 협업 강화(여성가족부)	272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정책개선 이행점검 사례

정책과제명 (기관명)	개선권고 과제	페이지
서울시 청년정책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기반화 강화</li> <li>○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모니터링 강화</li> <li>○ 일·생활 균형 및 수평적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최고 경영자의 조직문화 인식개선 포럼개최</li> <li>○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내실화 강화방안 마련</li> <li>○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li> </ul>	278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구분(34개), 성별특성(82개), 성별균형참여(351개), 성별통계(68개), 기타(45개)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 필요</li> </ul>	278

요  
약

I  
요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  
록

정책과제명 (기관명)	개선권고 과제	페이지
장애인정책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현황 분석</li> <li>○ 설문, 면접조사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수요조사</li> <li>○ 장애인 평생교육의 성별에 따른 격차 원인 분석 및 개선안 제시</li> </ul>	279
청년일자리 사업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정책 성별 목표 제시</li> <li>○ 각종 서식 성별 분리 작성</li> <li>○ 기업 선정 기준 개정</li> <li>○ 일생활균형 및 수평적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li> <li>○ 참여 기업과 청년 대상 만족도 조사 진행</li> <li>○ 참여 기업과 청년 간 중재 매뉴얼 개발</li> <li>○ 여성청년 취업 멘토·멘티 프로그램 개발·강화</li> </ul>	279
신축공공시설물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육아복합센터의 전반적인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 제시</li> <li>○ 아이사랑누리센터 내 화장실, 수유실 설치 시 점검사항 제시</li> <li>○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전반 및 휴게공간에 대한 개선사항 제시</li> </ul>	279
관광콘텐츠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콘텐츠 관련 사업담당자, 홍보물 제작업체, 문화해설사 등에게 성평등 교육 제공</li> <li>○ 축제, 행사 추진 시 대행기관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시</li> <li>○ 여성문화자원과 성평등 관광 콘텐츠 발굴 사업 시행</li> <li>○ 축제 평가지표에 성평등 관련 조항 지표 추가</li> <li>○ 공모전 심사기준에 성인지감수성 항목 추가</li> </ul>	280
창업정책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특화 창업보육사업 확대</li> <li>○ 창업관련 의사결정 여성참여</li> <li>○ 성인지통계 작성</li> <li>○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법인 창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li> </ul>	280
공공체육시설 (대구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 가족휴게실(수유실)활용성 제고 및 탈의실 환경개선 등</li> <li>○ 어린이, 어르신 등을 위해 안내표지판 크게, 바닥 등에 부착</li> <li>○ 다양한 체격조건에 맞는 기구 구비</li> <li>○ 공공체육시설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필요</li> <li>○ 옥상을 활용하여 성별,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li> <li>○ 여성 및 어르신 웨이트존 구비</li> <li>○ 워킹(걷기전용)풀 조성</li> <li>○ 수영장 경사로 설치</li> </ul>	280 } 281



정책과제명 (기관명)	개선권고 과제	페이지
시설설치사업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부서 성인지적 시설설치 권고</li> <li>- ① 화장실, ② 주차장, ③ 수유실, ④ 시설진입부, ⑤ 시설 내부시설, ⑥ 돌봄시설·놀이공간, ⑦ 도서관, ⑧ 의사결정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성인지 관점 시설 가이드 적용 권고</li> <li>○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베이스볼 드림파크,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등 대전의 주요 시설사업 추진 및 설계계획을 점검하고, 성인지적 시설 배치(남녀 이용인원에 근거한 화장실 남녀변기수 설치 고려, 수유실설치, 아이놀이방 설치, 배려주차장 설치, 대중교통과의 연계 등), 안전성(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 비상벨 설치, 주차장 CCTV 설치)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 권고</li> </ul>	281
문화시설 (광주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조성 시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편의시설 구비</li> <li>○ 돌봄시설 확대 및 실제 수요를 반영한 시설 개선</li> <li>○ 관람객의 신장, 시력, 보행능력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관람 지원 확대</li> <li>○ 이용자의 만족도 및 공간 조성 관련 의견 수렴 필요</li> </ul>	281
청소년정책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참여기구는 성인지적관점에서 정책의 환경과 청소년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li> </ul>	282
경기도 평화협력사업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누리길 : 안전성, 편의성 개선 및 콘텐츠 성인지성 개선</li> <li>○ 울곡기념관 : 장애인화장실 성별 구분, 장애인화장실 자동문으로 개선, 전시문구 “여류 화가”의 “여류” 삭제</li> <li>○ 화석정 : 관리사무소와 매점 분리, 그늘이 있는 쉼터 설치</li> <li>○ 반구정 : 반구정 계단 옆 경사로 설치</li> <li>○ 애기봉 : 성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애기봉’ 명칭 변경 고려</li> <li>○ 재인폭포 : 성차별적 안내판 삭제</li> <li>○ 평화누리길 도보해설사 교육 : 성인지교육 추가, 성인지적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및 교육, 평화콘텐츠 발굴 및 평화교육, 강사의 성인지교육 및 성비 고려</li> <li>○ 캠프 그리브스 사업 : 성별분리통계 산출, 강사 성인지교육, 성평등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의 성인지성 자문, 경사로 설치</li> </ul>	282
경기도 다문화가족 정책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선</li> <li>○ 시군센터 추진실적 양식 개선(성별, 문화다양성 정보 포함)</li>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 구성 파악</li> <li>○ 시군센터 종사자, 활동전문가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li> <li>○ 다문화가족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li> <li>○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의 다양성 확대</li> <li>○ 남성결혼이민자 및 남성배우자 등 남성가족구성원 대상 사업 확대</li> <li>○ 생애주기에 따른 사업 확대</li> <li>○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성별통계 작성 및 분석</li> </ul>	283
전통시장 지원사업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li> <li>○ 사업계획서 양식 점검 및 수정</li> <li>○ 상인회 회원 정보에 대표자 성별을 추가하여 관리</li> <li>○ 전통시장지원사업 관계자, 시장 매니저, 사업단 인력 대상 성평등 교육 진행</li> <li>○ 시장 상인 대상 성평등교육 제공</li> <li>○ 세부사업 기획 및 추진 시 성별특성 고려</li> <li>○ 사업 홍보물 제작 시 성평등 관점 고려</li> <li>○ 사업결과 보고 시 세부사업별 성별 통계 생산</li> </ul>	283

요약

I

II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부록

정책과제명 (기관명)	개선권고 과제	페이지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휴양시설 관련 조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2 조항을 신설</li> <li>- 강원도 산림휴양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할 것을 제안</li> </ul> </li> <li>○ 산림휴양시설 내부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 우선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li> <li>- 화장실 안전과 관련된 지침 마련</li> </ul> </li> <li>○ 자연휴양시설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과제로는 남녀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 계단코 미스럼 방지재 마감 및 보수, 기존 경사로 보수 및 점검,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필요함.</li> <li>- 장기과제로는 수유실 설치, 유아차, 휠체어 대여 및 보관함 설치, 화장실 안전벨 설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숙박 시설 설치가 필요함.</li> </ul> </li> </ul>	284
소상공인 육성자금사업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나 결과보고서 작성시 소상공인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li> <li>○ 지침 별표 2의 '소상공인육성자금 평가표' 평가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세부 구간 조정</li> <li>○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조례 제정 및 도 소상공인육성자금사업의 특례보증 지원 계획 수립</li> </ul>	284
전남관광 콘텐츠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콘텐츠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 성차별적 표현, (여성)폭력에 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과 같은 성차별적 요소 개선</li> </ul>	284
스마트 공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관리 및 교육의 효율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 주관 경남테크노파크의 전담 관리자 배정 및 고용안정성 제공</li> <li>○ 신규인력 및 재직자 성인지 교육 실시 필요</li> <li>○ 양성사업 중 교육수행기관에 여성강사가 없어 여성강사 확보 필요</li> <li>○ 전문인력 양성사업 홍보를 해당학과 학교내뿐 아니라 교외에도 다양한 홍보 루트 구축</li> <li>○ 비전공자의 경우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식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필요</li> </ul>	285
문화전시 공공시설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회관,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 성별 균형참여 확대, 성인지적 공간개선, 공간개선을 위한 예산확보</li> <li>○ 도로과 : 경남문화예술회관 시설 진입로 보도블럭 점검, 도립미술관 시설 진입로 보도블럭 점검, 경남대표도서관 버스 정류장, 도서관 보행로 보차분리</li> <li>○ 교통정책과 : 경남대표도서관 버스 노선 조정</li> </ul>	285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와 홍보물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별표 5 ] 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시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포함' 명시</li> <li>○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물 발행 등에 대한 조례」 제정시 홍보물의 성평등 관련 성에 관한 사항 반영</li> </ul>	286

정책과제명 (기관명)	개선권고 과제	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 자치법규 : 1,039건</li> <li>◦ 개선필요 자치법규 : 389건</li> <li>◦ 성인지적 개선 요구건수 : 495건</li> </ul>	286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개 개선과제 제시</li> </ul>	286
청년창업 인프라조성사업 (인천시 연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선정 심사위원 및 평가 위원단 구성 시 성별 구성을 고려한다는 규정 필요</li> <li>◦ 사업 추진 계획 시 여성친화사전점검표 활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검토되지 않음</li> <li>◦ 사업 결과 보고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나 참여자 성별 통계를 생성하지 않음</li> </ul>	287
부평구 해설사와 함께하는 「걷다보니 부평(워킹 역사투어)」 (인천시 부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범위 확대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li> </ul>	288
정서진 아라뱃길 청년창업 공간 운영사업 (인천시 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 및 보안장치가 운영되고 있지만 외진 곳에 위치, 불특정다수 관광객의 방문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li> </ul>	289
창업한 청년 사업강화 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인천시 강화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결정단위의 성평등한 참여</li> <li>◦ 성중립적 홍보물</li> <li>◦ 사후평가 및 환류</li> </ul>	289
용인시 도시재생 사업 (경기도 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협의체 여성 대표성, 소수자 대표성 제고 및 성인지교육 실시</li> <li>◦ 여성친화도시 사업 연계</li> <li>◦ 김량장동(시장) : 김량장 여성 상인 이야기 발굴 및 아카이빙 등</li> <li>◦ 신갈오거리 : 성평등 독서 동아리 운영(돌봄센터) 등</li> </ul>	289
용인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경기도 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한 조례 규칙 규정의 개선(위원회 성비 명시 및 난임 휴가 및 보건 휴가에서의 성별형평)</li> <li>◦ 조직문화 개선 방안</li> <li>◦ 민원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보호</li> <li>◦ 인사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li> <li>◦ 성희롱 성폭력 대응 체계 실효성 제고</li> <li>◦ 성평등 조직 문화 조성 워크숍</li> </ul>	289

요  
요

I  
개  
요

II  
성별영향평가가 추진 결과

III  
특정성별영향평가가 결과

IV  
성별영향평가가 성과와 과제

부  
록

정책과제명 (기관명)	개선권고 과제	페이지
문화도시 조성 계획 (경기도 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의 성별 대표성 확보</li> <li>○ 시민 의견 수렴의 성별 대표성 확보</li> <li>○ 프로그램 참여 시 자녀 돌봄 서비스 확대</li> <li>○ 기록사업 여성 일상사, 문화사 포함</li> <li>○ 여성 역사문화 공간 조성</li> <li>○ 다양한 인구집단 접근성 증진을 위한 야간 주말,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li> <li>○ 성별통계 생산 관리</li> <li>○ 성인지 문화사업 체크리스트 적용</li> </ul>	290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제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 마련</li> </ul>	292
학생생활규정(중학교) (인천광역시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차별적 규정 점검</li> <li>○ 성별 고정관념 강화 규정 점검</li> </ul>	292
학생생활규정(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차별적 규정 점검</li> <li>○ 성별 고정관념 강화 규정 점검</li> </ul>	292
남성 육아휴직 (인천광역시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본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장애요인 분석 및 정책제안</li> </ul>	292
학생생활규정 (전라남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 411교 전수조사로 실시하여 자체점검목록, 삭제·수정 권고안, 우수사례 제시</li> </ul>	292

##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2023년 8월 인쇄

2023년 8월 발행

발행인 : 김 현 숙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174  
FAX / 02-2100-6482

인쇄처 : 중앙기획·인쇄

전화 / 02-736-2866~7, 02-737-161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402-10

